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종합 분석

2010. 9

연구진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 자전거 수단분담율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2006)	12
1. 조사개요	12
2. 수도권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13
제2절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2009)	15
1. 조사개요	15
2. 77개 시·군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18
제3절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2007)	22
1. 조사개요	22
2. 자전거 보유대수, 이용율 및 교통수단분담율	24
제3장 조사개요 및 자료집계	27
제1절 조사개요	29
1. 조사목적	29
2. 조사범위	30
3. 조사내용 및 방법	32
4. 조사수행	35
5. 조사자료 검수 및 입력	36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절 조사자료 집계	42
1. 유효 데이터 구축	42
2. 유효 표본수	47
3. 유효표본의 기초분석	59
 제4장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분석	65
제1절 자전거 보유현황 분석결과	67
1. 자전거 보유대수 및 구입시기	67
2. 보유자전거의 종류 및 가격	70
제2절 개인별 자전거 이용실태 분석결과	72
1. 자전거 평균 이용율과 이용빈도	72
2.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와 레저용 이용 장소	75
3.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77
제3절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분석결과	79
1.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79
2.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82
제4절 자전거분담율의 영향요인 분석	89
1. 분석방법론	89
2. 분석결과	92
 제5장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99
제1절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개선방안	101
1. 현행 조사의 문제	101
2.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개선방안	103
제2절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104
1. 자전거 이용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104



차 례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106
---------------------------------	-----

참고문헌	109
------------	-----

부 록	111
-----------	-----

부록 1.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분석결과	113
--	-----

부록 2.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설문지	192
---------------------------------	-----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조사내용	13
<표 2-2>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최종 유효율	13
<표 2-3> 2006년 수도권 교통수단분담율	14
<표 2-4>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시행일시	16
<표 2-5>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지역 ...	16
<표 2-6>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내용 ...	17
<표 2-7> 2009년 77개 시·군 자전거 수단분담율	20
<표 2-8>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장차연구 자전거 관련 조사지역	23
<표 2-9>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장차연구 자전거 관련 조사내용	23
<표 2-10> 자전거 보유대수(환경부, 2007)	25
<표 2-11> 자전거 이용율(환경부, 2007)	25
<표 2-12>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환경부, 2007)	26
<표 3-1>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통행범주	31
<표 3-2>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조사지역	31
<표 3-3>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조사내용	32
<표 3-4> 가구통행실태조사 방법론 비교	33
<표 3-5> 3차 자료검수 기준	46
<표 3-6>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지자체	48
<표 3-7> 지자체별 원자료 수와 유효 표본 수	50
<표 3-8> 남성의 연령별 유효 표본수와 표본율(개인자료)	56
<표 3-9> 여성의 연령별 유효 표본수와 표본율(개인자료)	57
<표 3-10> 가구원수별 유효 표본수와 표본율(가구자료)	58



<표 3-1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비율	60
<표 3-12> 가구의 주택형태 비율	62
<표 3-13> 응답자의 직업 비율	63
<표 4-1>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	68
<표 4-2> 자전거 구입시기	69
<표 4-3> 보유 자전거의 종류	71
<표 4-4> 자전거 구입가격	71
<표 4-5> 자전거 평균 이용율	73
<표 4-6> 자전거 이용빈도	74
<표 4-7>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76
<표 4-8> 레저용 자전거 이용 장소	76
<표 4-9>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78
<표 4-10>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80
<표 4-11> 통행목적비율 비교	81
<표 4-12> 교통수단분담율(Expansion 후)	84
<표 4-13> 수단분담율 비교	85
<표 4-14> 통행목적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87
<표 4-15> 통행목적별 자전거 평균통행시간	88
<표 4-16> 자전거분담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설정	92
<표 4-17> 시도별 자전거 건조환경 자료	93
<표 4-18> 토빗회귀모형의 수정 결정계수와 모수 추정결과	95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연구흐름도	8
<그림 2-1> 조사수행방법	15
<그림 2-2> 77개 시·군의 평균 수단분담율(%)	19
<그림 3-1> 조사수행과정	29
<그림 3-2>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조사방법(대행조사)	34
<그림 3-3> 검수단계별 검수내용	37
<그림 3-4> 조사자료의 입력양식(가구당 1개씩의 엑셀 파일 생성)	39
<그림 3-5> 가구별 엑셀파일 내 Main 시트의 입력 양식	40
<그림 3-6> 가구별 엑셀파일 내 Sub 시트의 입력양식	41
<그림 3-7> 통계분석 입력양식(각 지자체별로 3개씩의 파일로 포맷변환)	43
<그림 3-8> 시도별 유효 표본수 비교	49
<그림 3-9> 시도별 성별 연령별 표본을 비교	57
<그림 3-10> 표본과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비율 비교	59
<그림 3-11> 표본과 모집단의 주택형태와 직업비율 비교	61
<그림 4-1> 전국 자전거 보유율과 구입시기 비율	67
<그림 4-2> 시도별 자전거 보유율 비교	68
<그림 4-3> 시도별 자전거 구입시기 비교	69
<그림 4-4> 전국 보유자전거의 종류와 가격 비율	70
<그림 4-5> 전국 자전거 평균 이용율과 이용빈도	72
<그림 4-6> 시도별 자전거 평균 이용율 비교(전수화 후)	73
<그림 4-7> 시도별 자전거 이용빈도 비교	74
<그림 4-8> 전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와 레저용 이용 장소 비율	75



그림 차례

<그림 4-9> 전국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비율	77
<그림 4-10> 시도별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비율 비교	78
<그림 4-11> 전국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79
<그림 4-12> 시도별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비교 ..	79
<그림 4-13> 자전거 수단분담율 전수화(expansion) 과정	82
<그림 4-14> 전국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83
<그림 4-15> 시도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비교	84
<그림 4-16> 전국 통행목적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86
<그림 4-17> 전국 자전거 평균통행시간(분)	88

부록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록 표 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비율	113
<부록 표 2 > 가구의 주택형태 비율	122
<부록 표 3> 응답자의 직업 비율	127
<부록 표 4>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 ...	132
<부록 표 5> 시군구별 자전거 구입시기	137
<부록 표 6> 시군구별 보유 자전거의 종류	142
<부록 표 7> 시군구별 자전거 구입가격	147
<부록 표 8> 시군구별 자전거 평균 이용율	152
<부록 표 9> 시군구별 자전거 이용빈도	157
<부록 표 10> 시군구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162
<부록 표 11> 시군구별 레저용 자전거 이용 장소 ...	167
<부록 표 12> 시군구별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172
<부록 표 13> 시군구별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	177
<부록 표 14> 시군구별 교통수단분담율(Expansion 후)	182
<부록 표 15> 시군구별 통행목적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187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10
Global Leader KRIL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범정부적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최근 우리나라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로 인하여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및 고에너지, 국민건강위협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급증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체교통수단으로 자전거 부상
 - 자전거타기 국민운동과 웰빙열풍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자전거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네덜란드 BMP(Bicycle Master Plan)
 - 독일 Cycle Friendly City
 - 프랑스 Velib와 Velob 등
-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자전거 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용되면서 자전거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자전거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9년 2월, 무동력·무공해·웰빙의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 육성과 전국 자전거 생활권화를 목표로 범정부적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현재 1.2%인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을 2012년까지 5%로 확대
 - 현재 9,170km인 자전거도로를 2012년에 17,600km로 확충

- 현재 16.6%인 자전거 보급률을 2012년에 30%까지 증대

○ 2009년 12월에는 1995년에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률과 함께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2010년에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하였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 반드시 포함
 - 『도로교통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도로상 통행우선순위(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폐지하고, 어린이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등을 규정
 -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 자전거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기본통계는 미구축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와 관련된 과거 통계자료 및 전문가 등에 의한 추정자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이 1.2%라는 것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통근·통학 목적에 국한된 분담율일 뿐 전국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아님
- 자전거 보유율 역시 마찬가지로 800만대로 추정하여 16.6%라는 수치를 사용하고 있음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을 비롯하여 자전거 보유율,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등 자전거와 관련된 신뢰성 있는 기본통계 구축이 시급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에 대한 지자체별 통계자료 산출기준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자전거 통계를 산출할 필요성 있음

2. 연구목적

☐ 통계자료에 근거한 선진화된 자전거정책의 기반 마련

- 지자체별 동일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구축된 자전거 DB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국의 자전거 통계를 산출하고, 이러한 신뢰성 있는 자전거 기초자료에 근거한 선진화된 자전거정책의 기반 마련 필요
-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자전거 안전대책,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자전거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규칙 개선에 기여

☐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 2009년 희망근로에 의한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국 단위의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31개 시·군·구 583,419세대 가구원수 1,457,990명의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시행
 - 2010년 현재, 약 200개 시군구 자료 취합
- 이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개별 지자체의 자전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bottom-up 방식의 전국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및 보유율 도출을 최종목표로 함
 -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포맷변환
 - 유효표본율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검수과정 거침
 - 시·군·구 단위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및 보유율 등의 통계를 구축한 후 전국 통계 생성하는 방식 적용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의 주요 항목별 분석

- 자전거 보유현황 분석
 -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
 - 자전거 구입시기
 - 보유 자전거의 종류 및 구입 가격 등
- 개인별 자전거 이용실태 분석
 - 자전거 평균 이용율과 이용빈도
 - 자전거 이용의 주목적
 - 자전거 평균이용회수
 -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 자전거 1회 평균이용시간
 - 주로 가는 장소 등

☐ 자전거 통행특성 및 교통수단분담율 산출

- 자전거 통행특성 분석
 -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통행목적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자전거 평균통행시간
- 전국 단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산출
 - 표본조사에 따른 전수화(expansion) 방식
 -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

☐ 자전거 수단분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자동차 보유와 자전거 이용관계 등 통행수단별 상관관계 분석
- 현행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의 문제점 제시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제고방안 및 정책방향 제시

2. 연구방법

☐ 자전거 보유현황 및 교통수단분담율 관련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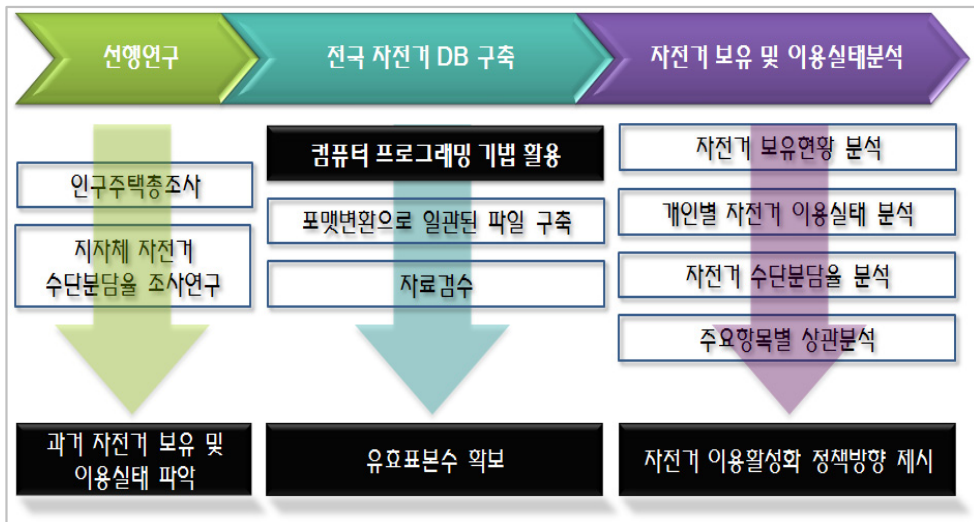
- 인구주택총조사, 국가교통 DB(KTDB) 등 전국단위 자전거 조사 관련
- 서울시, 대전시 등 지자체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전거 수단분담율 조사 연구
- 대규모 설문조사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자전거 문화 정착연구 등

☐ 전국 자전거 DB를 구축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 활용

- 약 58만 세대별로 작성된 자료를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파일 포맷으로 변환(각 세대에 속한 가구원 개개인의 하나 이상의 통행 단위로 변환 필요)
- 1,457,990가구원에 대한 총 통행수는 2,847,472통행
- 전산입력시의 구조적·논리적 오류 또는 응답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검수하여 유효표본 확보

☐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항목별 통계분석

-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 교통수단분담율 산정을 위한 빈도분석
- 200개 지자체를 횡단면으로 하는 토빗회귀분석을 이용한 자전거 수단분담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별 상관분석과 요인분석 등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 2 장 자전거 수단분담율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2006)
- 제2절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2009)
- 제3절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2007)



제2장 자전거 수단분담율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전국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 항목은 자전거 보유대수 및 교통수단분담율이라 할 수 있음
 - 교통수단분담율이란 1일 통행량 중 교통수단별 통행분포 비율로써, 교통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이용됨
 - 수단분담율, 즉 비율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교통수단 포함 여부에 따라서 또는 교통수단분담율 산정 방식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음
- 먼저 개별 연구자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방식(문대식 외, 2007; 김명수 외, 2008; 이경환 외, 2008 등)을 제외하고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주로 5년 단위로 실시되는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최신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200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하 SDI)에서 수행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와 2006년 한국교통연구원(이하 KOTI)에서 수행된 지방 5대 광역권 가구통행실태조사 및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 등을 통해서 도출된 바 있음
 - 이 중에서 지방 5대 광역권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는 자전거 수단을 포함시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수행은 하였으나, 자전거를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구분하여 분담율을 제시하지 않고 기타수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함
- 기타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07년에 공동으로 수행한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 연구에서 전국 20개 주요도시의 자전거 보유대수와 이용을 및 수단분담율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제시하도록 함

제1절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2006)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는 1996년과 2002년, 그리고 2006년에 SDI에서 수행(제4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가 2010년에 예정되어 있음)되었으며,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최신 기준자료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정기 교통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함
- 2006년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목적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통행실태 및 교통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한 기종점통행량(OD)을 구축하고, 교통관련정책의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교통지표를 산정하는데 있음
 - ※ 기종점통행량(OD): 행정동 단위의 교통존(수도권의 경우 서울시 522개, 인천시 136개, 경기도 529개 등으로 총 1,522개 존으로 구성)을 중심으로 교통존 간 통행량을 의미함

☐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 행정동 단위
 - 1차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차 대상지역: 수도권 교통영향권역인 충남, 충북, 강원도 12개 지역
- 시간적 범위: 2006년
 - 평일 본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가구원의 통행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2006년 11월 1일 수요일의 통행을 기준으로 조사함(부득이한 경우 2006년 10월 31일 화요일의 통행과 2006년 11월 2일 목요일의 통행을 조사함)
 - 주~통행조사: 초·중·고등학교의 휴교일에 맞추어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2006년 10월 29일 일요일의 통행을 기준으로 조사함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가구현황조사, 가구원 특성조사 및 개인별 통행조사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세부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가구현황조사	총 가족수, 미취학아동수, 차량 소유여부 및 종류, 주택종류, 거주형태, 다른 곳에 주택소유여부, 가구의 월평균소득, 걸어서 이용가능한 지하철/전철역 명
가구원 특성조사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여부, 출생년도, 성별, 운전면허증 취득여부,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조사당일 통행유무, 직장(학교)주소, 직장(학교)에서 걸어서 이용가능한 지하철/전철역 명
개인별 통행조사	통행의 출발지 및 도착지,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통행목적, 통행수단, 교통카드 사용여부, 자가용 주차요금 지불여부, 자가용 통행료 지불여부

- 최소 2% 이상의 유효 표본율을 얻기 위하여 평일 본조사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3% 이상, 주말통행조사의 경우 평일 본조사 가구수의 5% 이상이 되도록 조사함

〈표 2-2〉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최종 유효율

(단위: 부, %)

지역	총 가구수	배포부수		회수부수		최종 유효율	
		배포부수	배포율	회부부수	회수율	유효부수	유효율
서울시	3,309,890	133,330	4.0	117,386	88.0	95,968	2.9
인천시	823,023	33,409	4.2	28,267	82.2	21,580	2.6
경기도	3,329,177	136,257	4.1	108,736	79.8	96,062	2.9
합 계	7,462,090	302,996	4.1	254,389	84.0	213,610	2.9

2. 수도권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분석방법

- 먼저 데이터의 경우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누락되기 쉬운 비일상적인 통행 및 과소응답은 전화보완조사로 보완한 다음 논리검수절차를 거침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집계된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 전수화(expansion) 과정을 거쳐 1,522×1,522개의 기종점통행량(OD)을 구축한 다음 발생통행과 도착통행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됨
 - 기종점통행량(OD)은 전수화존을 설정한 다음, 성별·연령별 인구, 가구원수, 동별 인구 등으로 전수화계수를 산출하여 보정
- 따라서 이러한 기종점통행량(OD)에 기반한 교통수단분담율은 주소지 기반이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원이 하루 동안 활동하는 활동지(1,522개의 교통존)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표본조사 후 전수화 과정을 거쳐 산출되므로 전수화 오차(expansion error)를 포함하고 있음

□ 수도권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전수화된 1,522×1,522개의 기종점통행량(OD)을 기준으로 수단통행량을 분석하면 수도권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을 알 수 있음. SDI(2007)의 경우 교통수단을 도보, 승용차, 통근/통학버스, 일반버스, 광역/좌석버스, 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기타버스, 지하철/전철/철도, 택시, 오토바이 및 기타, 자전거로 구분하고, 2006년 수도권의 통행수단별 통행량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본 연구의 내용 범위에 맞게, 교통수단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지하철 및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수단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3〉 2006년 수도권 교통수단분담율

(단위: 통행, %)

교통수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전체	
도보	5,717,582	19.7	1,492,955	23.4	5,737,428	23.7	12,948,928	21.5
자전거	381,468	1.3	64,681	1.0	328,288	1.4	775,055	1.3
승용차	6,552,393	22.6	2,120,679	33.3	9,198,872	38.0	18,210,028	30.2
버스	7,704,680	26.6	1,468,482	23.0	5,226,027	21.6	14,638,542	24.3
지하철/철도	5,511,256	19.0	347,446	5.5	1,090,627	4.5	7,015,608	11.6
택시	1,848,634	6.4	420,764	6.6	1,075,371	4.4	3,351,212	5.6
오토바이/기타	1,282,158	4.3	457,740	7.2	1,521,550	6.3	3,412,118	5.7
합 계	28,998,171	100.0	6,372,747	100.0	24,178,163	100.0	60,351,49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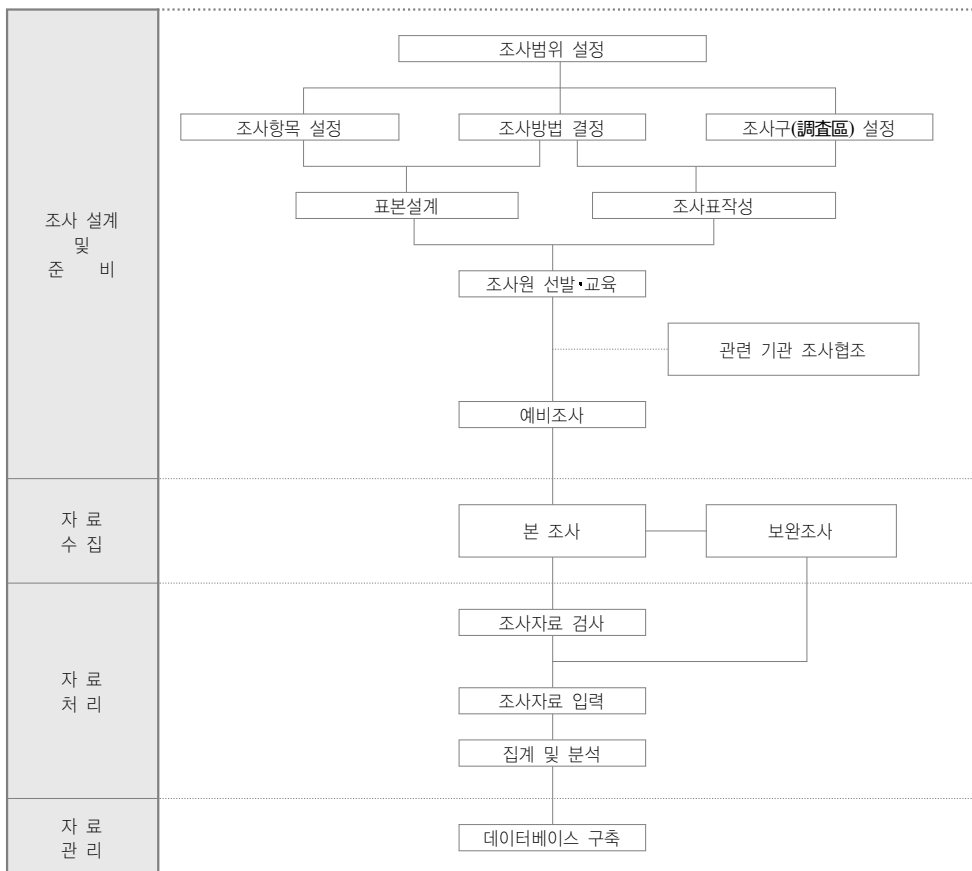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pp. 232~233 참조.

제2절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2009)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교통수단 수송분담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 수행된 지방 5대 광역권 통행실태조사(한국교통연구원, 2007)에서 제외된 7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인통행실태조사(한국교통연구원, 2010)를 실시한 후 교통수단별 통행수 및 수송분담율을 산정



〈그림 2-1〉 조사수행방법

□ 조사범위

○ 조사기간

- 예비조사 : 2009년 11월 20일 (금)
- 본 조 사 : 2009년 11월 24일(화)~12월 23일(수)(총 5주) 화요일 오후~금요일 오전
- 보완조사 : 2010년 2월 9일(화)~18일(목)(설 특별수송대책기간은 제외)

〈표 2-4〉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시행일시

구분	조사실시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조사대상일	화	화, 수	수, 목	목
조사시간대	- 17:00~21:00	10:00~15:00 17:00~21:00	10:00~15:00 17:00~21:00	10:00~15:00 -

○ 조사대상

-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7세 이상 개인(2009년 10월 기준)
- 조사대상 통행범주 : 평일(화, 수, 목) 하루 동안의 총 통행

○ 조사지역

- 2006년도 전국 5대 광역권 통행실태조사에서 제외된 77개 시·군 지역

〈표 2-5〉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지역

구분	대상 지역수			조사대상 지역
	총	시	군	
강원	12	5	7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남	8	2	6	보령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북	4	1	3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전남	16	4	1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북	9	2	7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남	13	4	9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북	13	5	8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제주도	2	2	-	제주시, 서귀포시

□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기본적인 개인특성 및 개인별 통행특성을 조사하며, 구성별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선박, 화물차 등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의 통행을 조사하되, 도보통행은 환승목적이 아닌, 도보만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5분 이상 이동**한 경우만을 조사함(통근 및 통학목적인 경우는 5분 미만 이동한 경우라도 조사함)

〈표 2-6〉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개인특성	인적사항	· 성별, 연령, 직업
개인통행특성	통행특성	· 통행유무(비통행시 사유), 통행시간, 통행 기점/종점
	통행목적	· 출근, 등교, 귀가 · 업무(수금, 배달, 납품, 작업, 접대, 거래처 방문 등), · 귀사(업무후 직장 복귀), 학원수강 · 쇼핑/여가/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통행수단	· 도보/ 자전거 · 승용차(승합차)/ 택시 · 통근/통학버스, 시내/좌석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 고속버스, 기타버스(학원버스 등) · 도시철도(지하철/전철), 일반철도(광역철도 포함) · 기타

○ 조사방법

- 인구밀도가 낮고 공간적 범위가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컴퓨터에 기반한 전화설문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법을 활용
- CATI 조사는 서버에서 입력된 표본모집단 정보(전화번호부 리스트)를 이용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결과를 각 면접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임. 면접원은 지정된 표본에게 전화를 하고 인쇄된 조사표에 응답 내용을 기입하는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

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바로 입력함

○ 표본조사

- 각 해당 시군내 인구특성(성별 연령별 인구통계비율), 지역분포(읍면동별 인구 수)를 고려한 층화할당추출법을 사용
- 사전에 시군별로 구분되어진 KT의 인명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CATI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함(1차로 표본의 10배수를 추출)

2. 77개 시·군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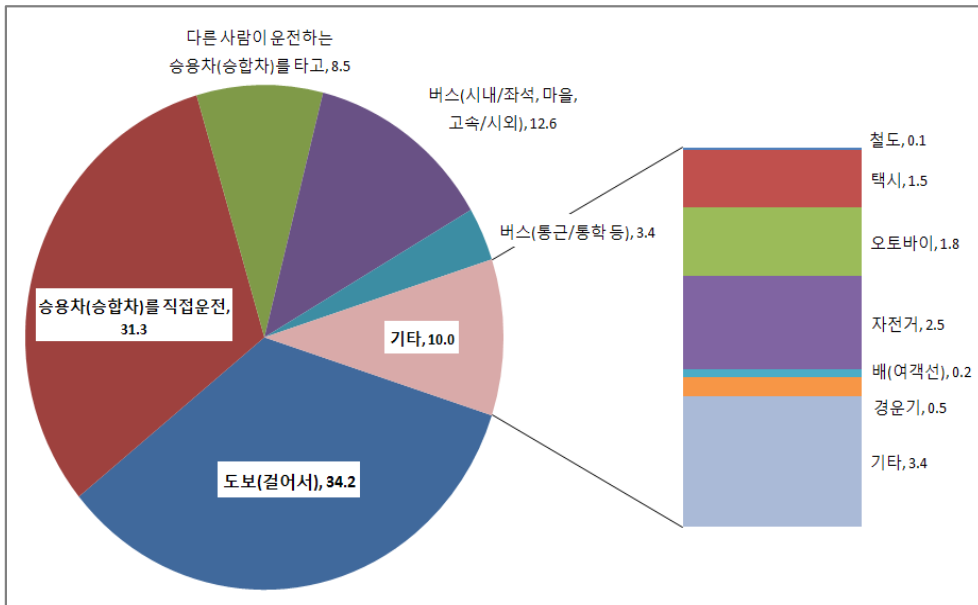
- KOTI에서 수행된 2009년의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은 성별, 연령별, 읍/면/동별 모집단의 인구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층화추출, stratified sampling) 한 다음 교통수단을 도보, 승용차(직접운전), 승용차(다른사람이 운전), 시내/좌석/마을/고속/시외버스, 통근/통학/전세버스, 지하철/전철, 철도, 택시, 오토바이, 자전거, 배(여객선), 경운기, 기타(화물차 등)의 13개로 나누어 산정함
- SDI의 교통수단분담율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이 실제 활동한 활동지를 기반으로 77개 교통존 간 기종점통행량(OD)을 구한 다음 발생통행량을 기준으로 교통수단 분담율을 산정함
 - 반면 SDI와 달리 2009년 77개 시·군의 교통수단분담율은 전수화를 거치지 않은 표본조사에 의거한 수단분담율임

☐ 77개 시·군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77개 시·군 전체의 수단선택비율을 살펴보면, 도보수단의 분담율이 34.2%, 승용차(직접운전) 수단의 분담율이 31.3%, 그리고 버스(시내/좌석, 마을, 고속/시외) 수단의 분담율이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77개 시·군 전체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2.5%로 분석됨
- 13개의 교통수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교통수단분담율을 본 연구내용에 맞게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지하철 및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수단으로 구분하

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직접운전 하는 경우와 다른사람이 운전한 경우 승용차 및 승합차를 승용차 수단으로 간주함
- 시내/좌석/마을/고속/시외/통/통학/전세버스를 모두 버스수단으로 간주



〈그림 2-2〉 77개 시·군의 평균 수단분담율(%)

〈표 2-7〉 2009년 77개 시·군 자전거 수단분담율

구 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전체		34.2	2.5	39.8	16.0	0.1	1.5	1.8	4.1
강원도	강릉시	28.9	1.8	51.4	13.6	-	2.8	0.9	0.6
	동해시	36.0	0.8	42.7	17.5	-	1.7	0.5	0.8
	태백시	32.7	0.2	47.2	14.5	-	5.4	-	0.2
	속초시	39.4	1.6	40.0	14.4	-	4.1	0.3	0.2
	삼척시	39.3	2.4	42.5	12.7	0.4	1.6	0.4	1.0
	영월군	37.9	1.2	46.2	9.6	-	2.0	1.1	1.8
	평창군	32.1	1.6	50.2	12.2	-	0.7	1.4	1.8
	정선군	38.7	1.0	45.0	11.6	0.4	0.8	0.2	2.5
	양구군	36.5	2.8	46.7	10.6	-	0.3	1.4	1.8
	인제군	35.9	0.5	49.5	11.5	-	0.2	1.0	1.3
	고성군	34.1	1.6	42.1	19.4	-	0.7	1.2	1.0
	양양군	33.5	2.5	45.8	16.1	-	0.2	0.7	1.3
충북	제천시	37.7	1.2	45.2	10.5	-	3.3	0.9	1.3
	괴산군	30.5	3.3	44.8	14.6	-	0.5	2.3	4.0
	단양군	32.5	1.6	43.8	16.5	0.1	1.4	1.1	3.1
	증평군	44.5	3.2	37.1	12.5	0.5	0.6	1.1	0.6
충남	보령시	33.1	2.2	44.1	16.7	-	0.6	1.3	1.9
	서산시	27.1	1.5	51.8	15.5	-	0.8	1.5	1.7
	부여군	32.5	4.7	42.0	14.9	-	1.1	2.9	2.1
	서천군	30.0	4.2	46.3	13.2	-	0.7	1.9	3.5
	청양군	34.6	2.0	41.4	15.8	-	0.6	2.4	3.2
	홍성군	34.1	1.8	43.5	14.2	0.4	1.3	2.0	2.7
	예산군	30.8	1.6	44.6	17.4	0.6	0.9	1.8	2.3
	태안군	28.6	1.2	45.9	18.5	-	1.2	1.9	2.8
전북	정읍시	28.6	4.9	41.1	15.5	0.7	3.2	1.2	4.8
	남원시	29.0	7.9	39.0	13.8	-	2.0	1.8	6.5
	진안군	40.4	0.7	30.8	17.1	-	0.7	1.4	8.9
	무주군	33.9	1.5	36.1	20.3	-	0.3	2.8	5.0
	장수군	32.3	2.1	38.8	16.1	-	0.5	3.4	6.8
	임실군	28.4	3.3	37.4	22.2	0.2	1.0	3.5	3.9
	순창군	37.0	4.3	36.6	13.8	-	1.1	3.2	4.1
	고창군	31.2	1.4	42.8	16.1	-	1.6	2.3	4.6
	부안군	28.2	2.7	37.2	21.7	0.3	1.3	2.4	6.1
전남	목포시	41.3	1.5	33.9	17.1	-	5.0	0.1	1.0
	여수시	28.6	0.7	37.5	28.4	0.1	2.5	0.5	1.7
	순천시	39.0	1.8	34.6	20.2	0.1	2.1	0.4	1.8
	광양시	35.8	2.7	38.3	18.0	-	2.2	1.0	2.0
	구례군	31.7	2.6	43.2	13.7	0.2	0.9	4.1	3.6
	고흥군	39.8	1.5	28.7	19.1	-	0.8	3.7	6.4

〈표 2-7〉 계속

구 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전남	보성군	32.6	1.7	36.6	18.0	-	1.1	4.4	5.7
	장흥군	35.0	3.3	35.9	16.0	-	0.6	3.5	5.9
	강진군	39.2	3.9	31.9	13.8	-	0.8	4.2	6.1
	해남군	38.3	0.9	32.1	13.7	-	2.4	2.6	9.8
	영암군	37.2	2.5	33.1	15.7	0.1	0.3	2.7	8.6
	무안군	26.1	2.4	40.3	19.3	-	2.2	1.6	8.2
	영광군	29.2	1.4	39.3	21.3	0.1	1.0	1.5	6.1
	완도군	42.2	0.8	28.9	11.6	-	1.8	1.0	13.9
	진도군	38.2	1.5	34.4	12.1	-	1.1	2.5	10.4
	신안군	37.1	1.7	29.5	14.3	0.2	2.2	2.9	12.3
경북	김천시	32.1	1.2	44.2	17.4	0.4	1.7	1.0	2.0
	안동시	31.9	1.1	42.5	19.6	-	2.8	0.5	1.7
	영주시	31.6	3.1	45.6	14.7	0.2	1.0	1.5	2.3
	상주시	29.6	12.5	40.9	9.4	-	1.1	2.4	4.0
	문경시	34.4	1.5	41.0	14.4	-	1.6	2.0	5.2
	의성군	31.6	1.9	44.8	10.1	-	0.4	3.8	7.3
	청송군	37.5	1.3	42.0	10.9	-	0.5	2.0	5.8
	영양군	39.4	5.3	41.0	8.9	-	0.2	0.9	4.3
	영덕군	36.0	3.9	39.7	16.1	-	-	1.5	2.8
	예천군	35.2	2.0	41.3	11.0	-	1.7	3.9	4.8
	봉화군	33.0	2.0	44.2	12.9	-	0.5	1.8	5.5
	울진군	39.0	2.9	43.6	11.0	-	0.6	1.6	1.3
	울릉군	55.3	-	30.3	8.8	-	2.3	2.1	1.2
경남	진주시	34.8	4.2	32.3	25.5	-	1.7	0.4	1.1
	통영시	27.3	1.9	35.7	27.5	-	2.2	1.3	4.1
	사천시	29.1	2.9	45.9	14.4	-	2.8	1.2	3.5
	거제시	34.4	3.9	33.7	23.9	-	1.7	1.7	0.7
	의령군	33.0	5.9	35.9	15.4	-	1.4	3.4	5.1
	함안군	24.5	3.2	48.6	14.8	-	1.3	2.6	4.9
	고성군	30.0	3.1	42.8	16.5	0.1	0.6	2.2	4.6
	남해군	35.2	1.4	33.4	21.4	-	0.9	2.1	5.6
	하동군	29.8	2.0	44.5	13.4	0.4	1.4	2.0	6.6
	산청군	39.1	1.4	29.9	17.3	-	0.7	2.3	9.3
	함양군	37.6	4.3	35.0	14.3	-	1.1	1.9	5.8
	거창군	37.2	6.9	36.4	10.7	0.2	0.9	3.1	4.7
제주도	합천군	36.7	2.8	33.9	14.2	0.3	0.6	3.7	7.8
	제주시	30.6	1.4	38.8	24.2	-	3.2	0.5	1.3
	서귀포시	26.3	1.2	44.9	15.6	0.1	2.2	1.1	8.8

제3절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2007)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조사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와 국내 주요도시 내에서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로 구분됨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의식조사: 일반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자전거 정책의 근거를 제시
- 국내 주요도시 내에서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자전거 관련 이용시설,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자전거 이용 저해 요인 및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자전거 시설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범위

○ 조사기간

- 일반시민 대상 의식조사: 2006년 8월 18일~2006년 8월 25일
- 자전거 이용자 대상 의식조사: 2006년 9월 8일~2006년 9월 19일

○ 조사대상

- 일반시민 대상 의식조사: 만 15세 이상 남녀 1,320명
- 자전거 이용자 대상 의식조사: 최근 1년 이내 거주지역에서 자전거 이용 경험 이 있는 만 15세 이상 남녀 1,300명

○ 조사지역

- 전국 20개 주요도시

〈표 2-8〉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 자전거 관련 조사지역

도시유형	지역 수	조사대상지역
대도시형	7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중소도시형	5	청주, 전주, 창원, 춘천, 부천
신도시형	2	고양, 성남
농어촌형	4	이천, 나주, 상주, 진해
관광도시형	2	여수, 제주

□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기본적인 개인특성 및 개인별 통행특성을 조사하며, 구성별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2-9〉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 자전거 관련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일반국민 대상 자전거 보급 및 이용현황	자전거 보유실태	· 주이용 교통수단, 자전거 보유대수 및 구입시기 · 자전거 보유여부 및 보유 자전거 실제 이용자
	자전거 이용실태	· 최근 1년 이내 자전거 이용경험 · 자전거 주 이용 수단(목적) 및 이용 이유 · 자전거 주 이용 장소 및 레저용 자전거 이용 장소 · 자전거 이용빈도 및 자전거 1회 평균 이용시간
	자전거 비용실태	· 최근 1년 이내 자전거 비용 이용 · 향후 자전거 이용 의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자전거 이용 관련 개선사항(자전거 이용자 한정) ·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대환경(자전거 비이용자 한정)
도시 내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자전거 보유실태	· 자전거 보유여부 · 자전거 보유대수 및 구입시기
	자전거 이용실태	· 자전거 주 이용 수단(목적) 및 이용 이유 · 자전거 주 이용 장소, 이용빈도 및 1회 평균 이용시간 · 출퇴근/등하교시 자전거 이용여부 · 환승시 이용 교통수단 및 필요 편의시설 · 여가목적 자전거 이용 장소 및 장소 만족도

〈표 2-9〉 계속

구분	조사내용	
도시 내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자전거 주차장 실태	- 자전거 주차장 이용여부 및 이용빈도, 주 이용 장소 - 자전거 주차장 문제점, 향후 이용종류
	자전거도로 실태	- 자전거도로 이용여부, 도로 동의 정도 - 자전거 도로까지 이동시 문제점, 개선사항
	자전거 안전	- 자전거 이용시 사고위험 여부, 사고경험 여부, 위험요소 - 자전거 사고원인과 사고장소, 보호장비 착용 여부
	환경인식	- 거주도시의 대기오염 상태정도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전거 이용의 도움정도 -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동참의향
	자전거 이용 만족도	- 자전거 이용관련 전반적인 만족도와 만족도 평가 이유 - 자전거 대여 사업 시행시 이용의향, 개선사항
	자전거 수단분담율	- 자전거 수단분담율 - 자전거 이용율

○ 조사방법

- 일반시민 대상 의식조사: 전화조사(Telephone Survey)를 실시하되, 인구 비례에 따른 임의할당법을 이용하여 표본 추출
- 자전거 이용자 대상 의식조사: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되, 인구 비례에 따른 임의할당법을 이용하여 표본 추출

2. 자전거 보유대수, 이용율 및 교통수단분담율

□ 자전거 보유대수

- 자전거 보유율은 일반 시민 응답자 1,320명 중 696명이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52.7%의 보유율을 보임
- 자전거 평균 보유대수는 1.50대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상주시가 1.98대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청주시(1.81대), 그리고 진해시(1.61대) 순으로 나타남

〈표 2-10〉 자전거 보유대수(환경부, 2007)

(단위: 대)

구분	평균 자전거 보유대수																			
성별	남							여							전체					
	1.55							1.46							1.50					
도시 유형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신도시형		농어촌형				관광 도시형	
	1.43							1.54					1.55		1.66				1.38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청주	전주	창원	춘천	부천	고양	성남	이천	나주	상주	진해	여수	제주
	1.51	1.30	1.37	1.30	1.41	1.60	1.36	1.81	1.49	1.40	1.42	1.50	1.58	1.52	1.45	1.36	1.98	1.61	1.50	1.26

□ 자전거 이용율

- 총 응답자 1,300명 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피설문자수를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율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도시형의 경우 서울시가, 중소도시형에서는 전주시가, 신도시형에서는 고양시, 농어촌형에서는 상주시, 그리고 관광도시형에서는 여수시가 자전거 이용율이 높음
 -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상주시의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자전거 이용율(환경부, 2007)

(단위: %)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신도시형		농어촌형				관광 도시형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청주	전주	창원	춘천	부천	고양	성남	이천	나주	상주	진해	여수	제주
31.5	17.0	28.6	15.7	15.7	27.3	26.0	48.0	56.0	25.5	30.0	28.0	40.0	25.0	21.8	42.0	74.5	24.0	24.0	19.6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20개 도시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피설문자수를 이용하여 도출함
- 20개 시의 평균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5.1%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상주시가 21.6%로 가장 분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도시유형별로는 근거리 이동이 잦은 농어촌형 도시가 10.7%로 가장 높고, 전철 및 지하철이 없는 도시보다는 있는 도시가 수단분담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2-12〉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환경부, 2007)

구 분	평균 자전거 보유대수																					
성별	남								여						전체							
	6.1								4.2						5.1							
도시 유형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신 도시형		농어촌형				관광 도시형	
	3.4								6.3						1.0		10.7				5.9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청주	전주	창원	춘천	부천	고양	성남	이천	나주	상주	진해	여수	제주		
	4.6	1.0	3.9	4.3	2.0	2.9	1.8	8.0	8.0	7.3	4.0	4.0	3.6	1.9	1.8	10.0	21.6	10.0	8.0	3.9		



제 3 장 조사개요 및 자료집계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자료 집계

2010
Global Leader KR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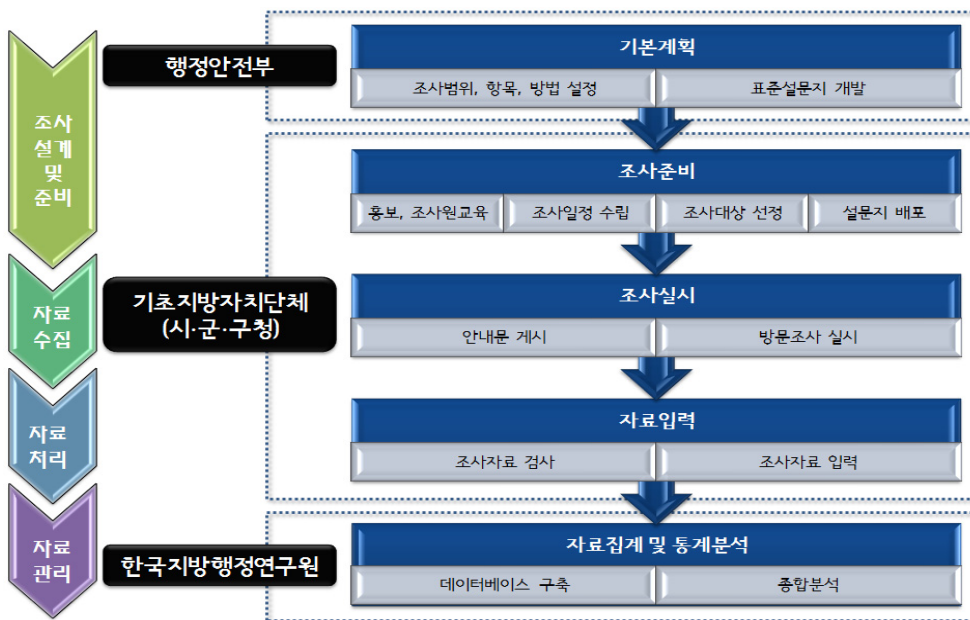
제3장

조사개요 및 자료집계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전국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는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의 일일 통행특성과 통행량 및 가구의 자전거 보유대수를 조사·집계하여, 자전거 통행의 전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자전거 교통정책 수립 및 자전거 관련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수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 3-1〉 조사수행과정

2. 조사범위

☐ 조사기간

○ 2009년 6월 1일~11월 30일(총 6개월)

-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조사 바로 전날의 통행을 기입하도록 함. 즉 월요일에 조사하는 경우 가구원에게 일요일 통행을 기입하도록 하고, 화요일에 조사시에는 월요일, 수요일 조사시에는 화요일 등으로 기입하도록 함

☐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7세 이상의 개인(초등학생 이상)

- 주민등록 상에는 살지 않지만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구성원을 기재하도록 함

○ 조사대상: 관할지역 내 총 세대수의 4.1% 이상

- 통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읍·면·동별로 분할하여 표본추출
- 조사대상지역이 특정한 부분으로 표본이 집중되는 현상 방지

○ 조사대상 통행범주: 조사당일 하루 동안의 총 통행(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모든 통행)

-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선박, 화물차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의 총 통행
-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통행으로 기록함
- 도보통행의 경우 10분 이상 이동한 경우만을 조사함(단, 등하교, 출퇴근, 학원 통행 등의 경우 도보로 10분 미만 이동한 경우라도 기록함). 예를 들어 집 근처 슈퍼마켓, 회사근처 식당, 갈아타는 곳의 정류장간 이동 등 도보로 10분 이내 이동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음

〈표 3-1〉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통행범주

조사대상 제외 통행	조사대상 통행
10분 이내의 도보통행(도보로만 10분 이상 목적지까지 이동한 경우만 도보통행으로 간주함.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분 이내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철도역까지 걸어간 도보통행과 환승통행 등은 제외) -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용달)이 손님의 의사에 따라 이동한 통행	10분 미만이라도 등하교, 출퇴근, 학원 통행 등 단독 도보통행은 조사대상에 포함됨 - 영업용 차량이 본인의 개인목적에 따라 이동한 출퇴근 통행

☐ 조사지역

-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31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

〈표 3-2〉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조사지역

구분		지자체 수	조사대상 지자체 수			
			합계	시	군	구
합계		232	231	77	86	69
특별시	서울	25	25	-		25
광역시	부산	16	16	-	1(기장군)	15
	대구	8	8	-	1(달성군)	7
	인천	10	10	-	2(강화군, 옹진군)	8
	광주	5	5	-	-	5
	대전	5	5	-	-	5
	울산	5	5	-	1(울주군)	4
도	경기도	31	31	27	4	-
	강원도	18	18	7	11	-
	충청북도	12	12	3	9	-
	충청남도	16	16	7	9	-
	전라북도	14	14	6	8	-
	전라남도	22	22	5	17	-
	경상북도	23	22	10	12	-
	경상남도	20	20	10	10	-
	제주도	2	2	2	-	-

3. 조사내용 및 방법

□ 조사내용

- 전국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조사내용은 기본적인 가구와 개인특성 및 개인별 자전거 이용실태와 일일 자전거 통행특성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함
- 전국 자전거 통행실태조사의 조사표 양식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3-3〉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조사내용

구 분	세부조사항목	
가구 및 개인특성 (인적사항)	가구특성	· 가구원 수, 소유차량, 주택의 종류
	개인특성	· 성별, 연령, 직업, 운전면허 여부
가구 및 개인 자전거 이용특성	가구특성	· 자전거 보유대수 · 자전거 구입시기 · 자전거 구입가격
	개인특성	· 자전거 이용경험 · 자전거 이용빈도 · 자전거 이용의 주목적 · 자전거 평균이용회수 · 자전거 1회 평균이용시간 · 주로 가는 장소
개인통행특성	통행특성	· 통행유무(비통행시 사유) · 출발시각과 도착시각 · 도착지 위치
	통행목적	· 출근 · 등교 · 집으로 돌아가려고(귀가) ·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업무 및 업무 후 복귀 · 여가/오락/친교, 물건을 사려고(쇼핑) ·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통행수단	· 도보 · 자전거 · 승용차(승합차) · 버스(시내/시외/통근/통학/전세 등) ·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화물차 등)

□ 조사방법

-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기본적으로 조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수행
 - 행정안전부: 설문 문항과 조사결과 기록지 등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마련하여 배부, 조사요령 교육, 시·군·구에 전국 자전거 통행실태조사에 관한 공문 발송 등
 - 지방자치단체 : 조사를 담당할 공무원 지정, 조사원 관리·운용, 설문조사·입력 등
- 가구통행실태조사 방법은 가구방문조사, 우편이용조사, 전화조사, 행정조직 이용조사, 학교방문조사, 직장방문조사의 6가지 방법으로 구분됨

〈표 3-4〉 가구통행실태조사 방법론 비교

조사방법	장점	단점
가구방문조사	• 무작위 표본조사 가능 • 조사지역별 유효율 편차가 낮음 • 행정업무 부담 경감	• 비용 과다 • 대규모 조사 수행시 체계적 조사 곤란 • 조사시 시민호응 낮음
우편이용조사	• 조사원 필요 없음 • 비용 적게 소요	• 회수율 저조 • 계층별로 유효율 편차 예상
전화조사	• 무작위 표본조사 가능 • 정확한 설문지 작성 가능 • 보완 용이	• 대규모 동시 조사 어려움 • 피설문자 접촉 어려움 • 계층별 유효율 편차 예상
행정조직 이용조사	• 무작위 표본조사 가능 • 비용 절감 • 시민호응 가능	• 조사지역별 자료의 유효율 편차 심함 • 행정업무 가중 • 체계적 조사교육 곤란 • 조사표 배포 및 회수의 어려움
학교방문조사	• 비용 절감 • 조사지역별 유효율 편차가 낮음 • 조사표의 배부와 회수가 용이 • 체계적 조사 가능	• 간접조사이므로 조사표의 단순화 요구 • 학생이 없는 가구 누락
직장방문조사	• 학생매체 조사의 보완조사로 활용가능 • 직장지에 대한 집중조사 가능	• 다양한 조사설문 곤란 • 직장호응에 따른 조사자료 유효율 편차 • 자영업자 계층 누락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07), 제4권 광역권 여객통행실태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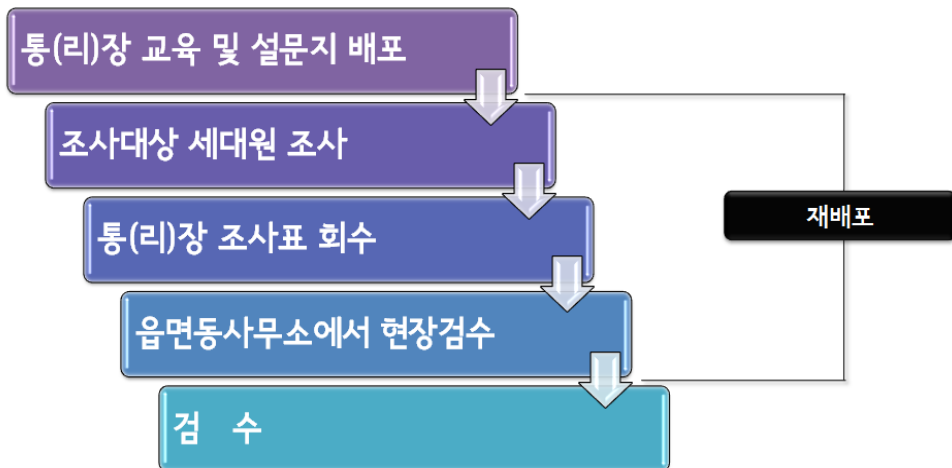
○ 본 조사에서 표본조사는 방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세대방문조사와 통(리) 반장 등에 의한 대행조사 방법을 활용함

- 세대방문조사

- 조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세대원에게 설문조사 실시
- 작성된 설문조사표는 사무실에 제출한 다음 책임자가 검수하되, 작성된 설문조사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각 세대에 방문하여 재작성
- 조사원은 당일 회수한 모든 설문지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반납
- 아주 사소한 상황이라도 사전에 지시받거나 교육받지 않은 내용은 조사원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책임자에게 보고 후 처리

- 통(리) 반장 등에 의한 대행조사

- 예외적으로 통반장 등의 협조 하에 통장 등에게 설문지 작성방법과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설문지 회수방법 등을 교육한 다음 설문지를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정해진 기간(3~5일)동안 작성 후 수거
- 설문지작성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회수된 설문조사표에 대해서 책임자가 현장 검수
- 작성이 미흡한 경우 재배포하여 조사 재 실시



〈그림 3-2〉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조사방법(대행조사)

- 표본조사는 통계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집락표출 및 무작위표출 방식을 혼용하여 표본구성
 - 각 읍면동 내에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대표 통(마을) 추출(집락표출, Cluster Sampling)
 - 추출된 각 통에 속해 있는 세대 중 무작위로 정해진 조사대상수만큼 추출(무작위표출, Random Sampling)

4. 조사수행

☐ 조사원 모집 및 선정

- 『희망근로프로젝트 종합지침』에서 정한 근로 대상자 중에서 당해 사업성격에 적합한 근로자 선정
- 조사원 수는 시·군·구당 일일 4명을 기준으로, 총 세대수의 4.1%인 목표량을 월 20일 동안 6개월 내 조사가능한 인원으로 정함
 - 일일조사량: 자치구 16, 일반시 12, 군 8세대 기준
 - 희망근로 근로 대상자: 1,272명
- 단,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사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조사목표량, 실제 조사활동 기간, 조사거리등에 따른 일일조사량 변동 등의 사유로 조사원을 증원

☐ 조사원 교육

- 행안부에서 시·군·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집합교육 이수자는 지역 내 조사원에게 확산교육 실시
- 조사원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 설문지 작성 요령 및 작성 방법
 - 가구방문 면접 요령 및 유의 사항 등

- 담당 공무원은 읍·면·동명, 조사가 수행될 통(리)명, 조사원 성명, 조사원의 연락처 명단을 확보하고, 조사원에게 조사하여야 할 조사 매수를 확인시켜 줌

☐ 조사홍보

- 포스터와 현수막 제작 및 부착
 - 본 조사사업의 시행을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알리는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
 - 현수막과 포스터는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조사의 목적과 조사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디자인하여 사업시행의 홍보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 반상회보지 이용
 - 반상회보지 기재요청의 내용은 조사시행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활용, 주민 협조 당부사항 등이 포함
 -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 담당 부서에 공식문서로 요청

☐ 전화 도우미 설치 운영

- 전화상담 도우미는 개별 가구의 설문 작성시 작성요령 설명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운영
 - 조사표 양식에 따라 각 개별가구에서 설문을 작성할 때 이해가 안되는 항목이나, 기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역할을 수행

5. 조사자료 검수 및 입력

☐ 조사자료 검수

-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의 오류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조사설계, 조사수행, 조사자료 집계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품질관리 프레임과 연계하여 검수(오류)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준하여 2차에 걸쳐 단계별로 오류 검

수를 실시하고 보완(에디팅, 재조사, 삭제 등)하여 자료의 유효성을 확보

- 조사원은 작성된 설문조사표를 시·군·구청 책임 공무원에 제출하고, 책임자가 원본을 검토 및 확인
 - 실제 조사 미실시 및 허위작성 등 부정행태를 점검
 - 조사원의 기입오류, 누락된 자료 등 수정보완, 재조사 실시
- 검수단계
 - 1차 검수(내근검수): 설문조사의 유효표본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에서 작성된 조사표를 검수지침에 의거하여 내근 검수요원(시·군·구별 담당자)이 직접 검수
 - 1차 검수의 주요 검수 내용: 가족 수와 가족번호 수 일치여부, 개인별 통행조사지 작성여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조사지 등을 주요 검수항목으로 설정하여 검수
 - 예를 들면 가구현황조사, 개인별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 개인별 일일 자전거 통행 특성 조사표 중 하나라도 기록되지 않은 경우, 총 가구수와 작성가구원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가구현황 등 항목 누락여부 등을 직접 확인
 - 2차 검수(입력기 검수): 조사표 검수가 완료된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행위 자체의 잘못으로 발생된 오류를 수정하며, 자료의 논리적 검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조사항목별 논리적 검수를 실시하고 보완

검수단계	검수대상	통제되는 오류	조치사항
1차검수	수집된 조사표의 검수	기입오류, 누락, 불명확한 글자나 숫자, 논리오류	검수지침에 의하여 검수요원이 보완
2차검수	입력자료의 검수	논리오류	논리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를 검수하고 조사표를 재확인하여 보완

〈그림 3-3〉 검수단계별 검수내용

☐ 조사자료 입력

- 설문결과를 주어진 결과기록지에 전산으로 입력하되, 자료입력 오류방지를 위하여 전산능력자 활용
-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조사원본과 전산파일을 5년간 보관·관리
- 자체 분석가능한 범위에서 실태분석 실시, 자체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전산파일은 행안부로 제출
- 4인 가족(남편, 아내, 초등학생, 미취학아동)을 기준으로 전산입력 형태는 다음과 같음
 - 각 가구당 엑셀파일 하나가 생성되는데, 파일 하나 당 Main 시트와 Sub 시트 및 코드표로 구성됨
 - Main 시트에는 총괄부문과 가구현황조사 자료를 입력하고, 가구원당 작성되는 Sub_01~Sub_04 시트에는 개인별 자전거 이용특성과 일일 자전거 통행특성 자료를 입력함
 - 가구원이 6인이면 Main 시트 1개와 Sub_01~Sub_06 시트 6개가 입력되어 엑셀파일 내에 시트가 7개 존재함(코드표 제외)

Main 시트

Sub 시트

1 페이지

25	1) 외출을..	1	2)선택시
26			
27	첫번째 룰을		

〈그림 3-4〉 조사자료의 입력양식(가구당 1개씩의 엑셀파일 생성)

- Main 시트(총괄부문 및 가구현황조사) 입력양식

설문조사지

엑셀파일

자전거 보급 및 이용 현황 조사

문항번호(이)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11350640-0001

자전거 보유 및 이용 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자전거DB구축을 위해 자전거 보급 및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를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2009년 월 XX시정 담당자: 홍길동 실장

조사에 대한 동의사항이나 불응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XXX-XXXX
AM 08:00 ~ PM 10:00

• 작성시 유의사항 및 꼭 작성요망

연락처 2009년 7월 8일
연락처 시간 : 10시 00분부터 12시 00분까지 (▶ 중 연락 시간 : 120분 소요)

성명 (가주원 중 연락처가없는) : 홍길동

전화번호 : 02-9999-2521 (연락처 연락처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동 홍정아파트 202호 777호

조사지역 조사명 1차조사 2차조사 일괄 3차조사

상향 하향

자전거 보급 및 이용실태 조사

(동일코드-일련번호)
동일코드는 코드포에서 동코드를 입력

ID 41198550-0001

분류번호 2009년 7월 8일

연락처 02-9999-2521 (02-123-1234)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세무주 소 439-10 동일빌라 8 401

조사지역 고강동

조사명 주택가 (조사명 설정을 기입하십시오)

1차조사 1차조사 설정을 기입하십시오

2차조사 2차조사 설정을 기입하십시오

일괄 일괄 (조사명 설정을 기입하십시오)

3차조사 3차조사 설정을 기입하십시오

자동 입력되는 부분임

A.가구현황조사(가주원 중 대표자 한분이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조사내용은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주원 본인 작성

A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포함) 4 명

가주원 중 미취학아동(유치 조영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6년이하) 몇 명입니까? 1 명

A2.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표명별로 적어 주십시오. (□□ 표시)

■ ① 2인승 승용차 1 대 □ ② 9인승 승용차 대 □ ③ 택시 대 □ ④ 오토바이 대 □ ⑤ 기타 () 대

A3.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는? □ ① 승용차 □ ② 연동주력(탈락) □ ③ 다목적/다기능주력

A4.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유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① 총 차량 대수 ■ ② 생활전용 □ ③ 스포츠 및 레저용 ■ ④ 악동용 □ ⑤ 기타

2 대 1 대 1 대 1 대

A5. 현재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구입연도는 언제 구입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 ② 2-3년 이내 □ ③ 4-5년 이내 □ ④ 6-10년 이내 □ ⑤ 10년 이상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A6. 현재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구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유아용 차량은 제외)

■ ① 0~50만원 ■ ② 50~100만원 □ ③ 100~200만원 □ ④ 200~500만원 □ ⑤ 500만원 이상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A. 가구현황조사

A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포함) 4 명

가주원 중 미취학아동(유치 조영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6년이하) 몇 명입니까? 1 명

A2.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표명별로 적어 주십시오. (□□ 표시)

■ ① 2인승 승용차 1 대 □ ② 9인승 승용차 대 □ ③ 택시 대 □ ④ 오토바이 대 □ ⑤ 기타 () 대

A3.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는? □ ① 승용차 □ ② 연동주력(탈락) □ ③ 다목적/다기능주력

A4.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유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① 총 차량 대수 ■ ② 생활전용 □ ③ 스포츠 및 레저용 ■ ④ 악동용 □ ⑤ 기타

2 대 1 대 1 대 1 대

A5. 현재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구입연도는 언제 구입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 ② 2-3년 이내 □ ③ 4-5년 이내 □ ④ 6-10년 이내 □ ⑤ 10년 이상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A6. 현재 귀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구입가격은 얼마입니까? (유아용 차량은 제외)

■ ① 0~50만원 ■ ② 50~100만원 □ ③ 100~200만원 □ ④ 200~500만원 □ ⑤ 500만원 이상

1 대 1 대 1 대 1 대 1 대

자동 입력되는 부분임

〈그림 3-5〉 가구별 엑셀파일 내 Main 시트의 입력양식

제2절 조사자료 집계

1. 유효 데이터 구축

☐ 자료포맷 변환

- 엑셀 파일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입력을 완료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포맷이라 할 수 없음
-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data set을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개씩의 텍스트 또는 엑셀 형식의 파일로 구성해야 하며 각 변수별 일정한 칼럼으로 구성해야 함
-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지자체당 3개의 파일, 즉 가구현황파일, 개인 자전거 이용특성파일, 개인 통행특성파일로 정리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만약 부천시가 조사한 가구수가 13,000개라면, 부천시가 제출한 엑셀파일의 수는 13,000개에 해당함. 이러한 가구현황자료는 13,000개의 라인을 갖는 단 1개의 파일로 정리되어야 함
 - 또한 13,000개의 엑셀파일은 각각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별로 시트가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Sub 시트에 개인의 자전거 이용특성자료와 통행특성자료가 입력되어 있음. 따라서 이 역시 각각 단 2개의 파일(부천시 자전거 이용특성파일과 통행특성파일)로 포맷을 변환해야 함
 - 가구현황파일의 경우 13,000개의 라인을 갖는 반면, 개인 자전거 이용특성파일의 경우 모든 세대원 수를 포함하므로 부천시의 평균 세대원 수가 3인 이라면 $13,000 \times 3 = 39,000$ 개의 라인을 갖게 됨
 - 개인 통행특성 파일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원이 하루에 단 2 통행, 즉 출근과 퇴근, 또는 등교와 하교만을 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13,000 \times 3 \times 2 = 78,000$ 개의 라인을 갖는 1개의 파일로 포맷을 변환함

○ 각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변환된 3개의 파일 포맷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님

[illegible][illegible]

〈그림 3-7〉 통계분석 입력양식(각 지자체별로 3개씩의 파일로 포맷변환)

통행
자료
파일

〈그림 3-7〉 계속

□ 3차 자료검수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표는 1차 내근검수와 2차 입력기 검수를 차례로 수행하여 엑셀파일 형태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1차적으로 시·군·구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작성된 조사표 내용의 누락여부 및 기입오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함
 - 1차 검수가 끝난 조사표를 엑셀자료 형태로 입력하여, 조사항목별 논리적 검수를 재검증
- 그러나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조사자와 담당 공무원 모두 경험이 부족하고,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특히 비도시지역의 경우 작성 오류 또는 입력 오류가 다수 발생함

- 대부분의 지자체가 1차 검수와 2차 검수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missing data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입력이 완료되어 제출된 조사자료라 할지라도 포맷을 변환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자료를 다시 한번 검수하여 향후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종 유효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입력하여 제출된 엑셀파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과정상 조사원의 실수, 자료입력 오류 등에 대한 검수를 수행함
- 첫째, 똑같은 가구(세대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일)에 대한 엑셀 자료를 복사하여 제출하였거나, 똑같은 가구에 대해서 날짜를 달리해서 중복조사를 시행한 경우 등의 중복자료를 삭제하였음. 또한 같은 자료를 복사하여 모든 항목이 동일하지만 ID를 달리 부여해서 마치 각기 다른 자료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여 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였음
 - ▶ **세대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동일한 파일 삭제**
- 둘째, 4인 가구를 샘플로 하여 샘플자료를 배포한 바, 샘플자료를 삭제하지 않아서 통계분석이 가능한 자료 포맷으로 변경할 때, 샘플 자료가 마치 개인자료인 것처럼 자료로 남는 경우를 삭제(또는 샘플파일을 조사표를 입력한 것처럼 복사해서 제출한 경우도 있음)
 - ▶ **읍면동 번호와 ID가 샘플자료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면 삭제**
- 셋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차 자료검수 기준에 의하여 검수

〈표 3-5〉 3차 자료검수 기준

오류코드	내용 설명
가구 자료 파일	H001 • 가구원 수가 빈 칸이 없어야 함
	H002 • 미취학 아동수가 가구원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음
	H003 • 자동차소유에 없음인데, 기입된 차량숫자가 있으면 안됨
	H004 • 자동차소유에 있음인데, 기입된 차량숫자가 0이면 안됨
	H005 • 총 자전거대수는 종류별 자전거 대수의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H006 • 총 자전거대수는 소유기간별 자전거 대수의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H007 • 총 자전거대수는 구입가격별 자전거 대수의 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단, 종류별 자전거 보유대수의 합과 보유기간별 자전거 보유대수의 합 및 구입가격별 자전거 보유대수의 합이 모두 같다면 총 자전거대수가 기 입되지 않았더라도 오류로 체크하지 않고, 이를 총 자전거대수로 대체함
개인 자료 파일	P001 • 출생년도, 성별, 운전면허증, 자전거경험유무 중 빈 칸이 없어야 함
	P002 • 1993년 이후 출생자는 운전면허를 가질 수 없음
	P003 • 최근 1년 이내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B2~B6에 빈 칸이 없어야 함 • 단, B5는 통행시간과 통행거리 중 하나만 응답하여도 무방함
통행 자료 파일	T001 • 통행수서, 나이, 성별, 외출유무 중 빈 칸이 없어야 함
	T002 • 외출을 한 경우 출발지, 통행목적, 통행수단에 빈 칸이 없어야 함
	T003 •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에 빈 칸이 없어야 함
	T004 • 도착시각은 출발시각보다 커야함
	T005 • 통행시간은 순차적이어야 함

○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검수 기준은 최소한의 검수 기준으로써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H001의 경우 가구원 수, 차량유무, 주택형태 등 모든 항목에 빈 칸이 없어야 함

- 그러나 지자체별로 missing data가 상당히 많아 이러한 항목을 모두 제외시켰을 경우 유효 표본율이 급격히 낮아져 최소한의 기준을 남기고 삭제함

○ 또한 지자체 별로 특정 항목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검수 기준을 이용하되, 지자체 별로 유효 표본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상이한 검수기준을 적용**하였음

- 청주시의 경우 개인별 일일 통행특성조사 중 외출유무인 A25 셀에 아무런 값도 입력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행 표본 수가 상당히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자료 조사원이 설문지를 엑셀파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판단됨. 따라서 외출유무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설문에 답하였다면 그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분석하였음

- 다만, 통행하지 않은 이유에 답한 것이 있을 경우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유효 표본수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입력하여 제출한 조사자료는 통계분석이 가능한 포맷으로 전환한 다음 검수 과정을 거쳐 유효 표본으로 구축됨

☐ 분석대상 지자체

- 또한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는 31개 지자체의 자료가 입력되지 않아서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총 200개 지자체의 조사자료를 수집하였음
 - 자료를 미제출한 지자체(서울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대전 중구, 울산 북구,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동두천시, 가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북도 연기군, 청양군,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담양군, 고흥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문경시, 청송군, 고령군,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본 연구의 통계분석 범위에서 제외됨
 -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만이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권선구와 팔달구를 제외하고 장안구만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원시의 자료는 장안구의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분석결과라 할 수 있음

〈표 3-6〉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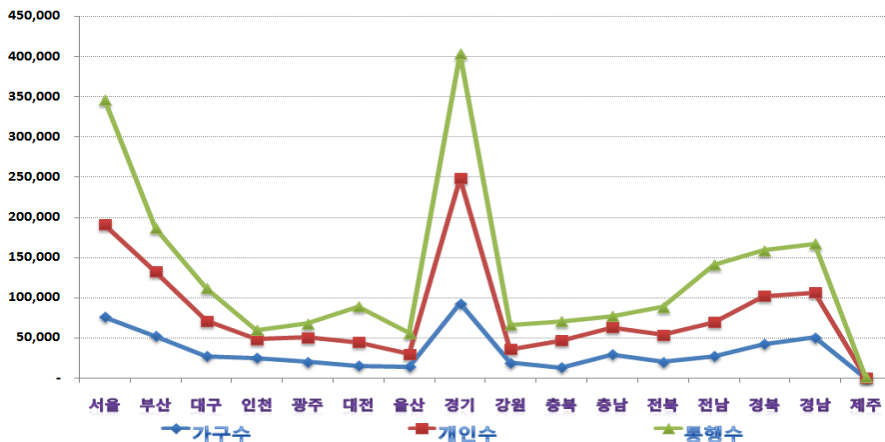
구분		대상 지자체 수	자료 제출 지자체수	자료 미제출 지자체 수	
				개수	지자체
합 계		231	200	31	-
특별시	서울	25	20	5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광역시	부산	16	16	-	-
	대구	8	8	-	-
	인천	10	7	3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광주	5	5	-	-
	대전	5	4	1	중구
	울산	5	4	1	북구
도	경기도	31	24	7	화성시, 양주시, 포천시, 오산시, 동두천시, 가평군, 여주군 ※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만 제출함(권선구와 팔 달구 미제출)
	강원도	18	17	1	태백시
	충청북도	12	12	-	-
	충청남도	16	15	1	연기군
	전라북도	14	12	2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22	16	6	담양군, 고흥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22	20	2	문경시, 고령군
	경상남도	20	18	2	거창군, 함안군
	제주도	2	2	-	-

□ 총 유효표본수

○ 파일 포맷 변환 및 자료검수 후 200개 지방자치단체별 유효 표본 수는 다음과 같음

-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중복되거나, 앞서 설명한 논리오류가 가장 많은 자료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경기 안성시(1,795개 중), 충북 청주시(5,750개 중), 서울 용산구(2,308개 중복)와 부산 진구(1,544개 중복), 인천 서구(1,465개)와 대전 서구(1,994개) 등이 많았음
- 특히 경기 안산시의 경우 가구 수의 경우 8,937개, 개인 수의 경우 23,439개, 그리고 통행 수의 경우 무려 26,089개가 중복되어 삭제하였음. 이 밖에도 통행 수의 경우 성남시(37,989개), 부천시(19,700개), 시흥시(18,896개), 경북 포항시(12,783개) 등이 중복되는 자료가 많았음

- 총 유효 표본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구 수는 경기도(92,577개)와 서울시(75,883개)가 가장 많고, 제주도(140개)와 충청북도(12,961개) 및 증평군(96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특성과 통행특성 자료 수 역시 지자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각각 248,381개와 403,35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전국의 가구별 평균 가구원 수는 2.50인이고, 인당 평균 통행 수는 비통행을 제외했을 경우 평균 1.69통행/일/인으로 분석됨
 - 국가교통 DB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5대 광역시에 대한 가구통행실태 조사에서 주변 광역권(50개 시·군 조사¹⁾)를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2006년 조사된 광역권의 권역별 가구원 수는 대전 광역권 3.26인, 광주 광역권 3.35인, 대구 광역권 3.43인, 부산울산 광역권 3.24인, 수도권 3.24인, 전주대도시권 3.23인으로 본 연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7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에 조사된 수단분담율 조사(KOTI, 2010)에서 77개 시·군의 인당 평균 통행수는 비통행을 제외했을 때, 2.40이고 포함했을 때에는 1.64로 나타남



〈그림 3-8〉 시도별 유효 표본수 비교

1)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의 항목들 중에서, 기존에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 DB)이나 수도권 교통본부(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구통행실태조사로부터 교통 수단분담율을 비교할 수 있음.

〈표 3-7〉 지자체별 원자료 수와 유효 표본 수

(단위: 개)

구 분		지자체에서 보고한 조사세대수 ¹⁾	원자료 수			유효 표본 수 ²⁾		
			가구	개인	통행	가구	개인	통행
전 국		466,932	583,419	1,457,990	2,847,472	523,135	1,290,686	2,091,458
서울	소계	51,024	83,992	222,552	452,041	75,883	191,121	346,495
	종로구	2,990	2,883	7,375	13,768	2,817	7,251	12,003
	중구	2,392	2,391	6,385	10,006	2,306	6,340	6,530
	용산구	N.A.	4,963	7,473	17,388	2,655	7,263	16,091
	성동구	N.A.	7,424	22,321	49,807	7,235	22,177	41,001
	광진구	1,777	1,777	3,631	7,419	1,621	3,161	5,198
	동대문구	6,344	6,109	23,397	36,213	5,667	10,913	21,936
	종랑구	4,908	4,906	12,242	31,167	4,431	12,051	27,724
	성북구	5,072	2,682	9,788	15,949	2,551	7,331	9,750
	강북구	2,834	2,833	5,485	11,825	2,711	5,327	10,498
	도봉구	3,102	3,120	9,433	20,985	3,016	8,562	17,884
	노원구	N.A.	6,430	20,427	42,277	6,077	17,960	31,583
	서대문구	103	103	253	632	100	238	493
	마포구	N.A.	5,055	13,995	30,207	4,559	11,896	22,710
	양천구	2,703	1,797	6,702	23,787	1,446	5,367	17,770
	강서구	N.A.	8,528	24,671	43,399	8,383	24,292	31,629
	구로구	4,676	4,907	4,604	9,882	3,670	4,407	8,913
	관악구	4,240	4,227	10,664	26,232	3,657	9,725	19,895
	서초구	3,025	2,981	9,209	14,518	2,820	4,960	7,876
	송파구	N.A.	3,606	3,663	5,883	3,293	2,622	4,726
	강동구	6,858	7,270	20,834	40,697	6,868	19,278	32,285
부산	소계	55,996	55,319	142,791	256,087	52,070	132,206	186,228
	중구	2,121	1,786	4,427	8,386	1,722	4,345	5,743
	서구	2,311	2,311	7,286	17,680	2,185	7,096	17,091
	동구	1,685	1,684	4,489	8,285	1,580	4,315	5,891
	영도구	2,405	2,405	6,433	14,213	2,336	6,401	12,548
	부산진구	6,548	6,538	13,116	17,215	4,994	11,315	7,989
	동래구	4,212	4,210	10,304	19,233	4,061	10,112	16,475
	남구	4,697	4,693	13,016	20,700	4,601	12,943	13,315
	북구	4,782	4,530	12,894	23,772	4,405	12,734	21,067
	해운대구	6,260	6,201	15,725	25,804	5,998	15,415	17,033
	사하구	4,042	4,038	8,155	15,382	3,773	7,631	12,013
	금정구	4,081	4,074	5,403	6,776	3,998	5,375	2,621
	강서구	960	960	2,296	5,727	889	2,286	4,775
	연제구	3,507	3,507	9,793	22,827	3,380	9,642	19,189
	수영구	2,979	2,979	14,770	25,726	2,957	8,077	14,863
	사상구	3,839	3,836	10,549	16,309	3,663	10,404	9,639
	기장군	1,567	1,567	4,135	8,052	1,528	4,115	5,976

〈표 3-7〉 계속

(단위: 개)

구 분		지자체에서 보고한 조사세대수 ¹⁾	원자료 수			유효 표본 수 ²⁾		
			가구	개인	통행	가구	개인	통행
대구	소계	32,544	29,224	73,100	144,240	26,863	70,827	111,716
	중구	N.A.	1,214	2,476	5,002	1,179	2,453	3,845
	동구	5,200	5,196	13,869	24,309	5,012	13,750	18,831
	서구	3,600	3,598	7,216	17,632	3,427	6,703	13,534
	남구	3,134	3,127	6,056	12,502	2,989	5,287	10,519
	북구	7,798	7,782	22,286	42,334	7,355	22,103	31,896
	수성구	4,402	4,397	10,220	24,333	4,238	10,034	20,498
	달서구	8,410	850	2,375	4,195	843	2,297	2,783
	달성군	N.A.	3,060	8,602	13,933	1,820	8,200	9,810
인천	소계	29,700	27,359	56,103	94,708	25,329	47,936	59,976
	중구	698	695	1,593	3,612	660	999	2,836
	동구	1,445	1,439	2,465	2,850	1,410	2,413	1,474
	연수구	3,320	3,320	12,585	19,031	3,266	10,326	11,221
	남동구	4,703	2,441	4,873	7,970	2,322	4,213	5,320
	부평구	9,626	9,577	28,603	48,683	9,317	28,338	35,936
	계양구	4,578	4,568	669	1,018	4,500	427	622
	서구	5,330	5,319	5,315	11,544	3,854	1,220	2,567
광주	소계	21,950	21,756	53,788	99,807	20,046	50,335	67,805
	동구	2,024	2,023	3,640	7,118	1,961	3,438	6,622
	서구	4,226	4,130	10,630	26,066	3,140	9,594	16,752
	남구	4,010	3,987	9,102	10,292	3,916	8,995	5,921
	북구	7,146	7,073	17,425	30,070	6,553	15,365	18,695
	광산구	4,544	4,543	12,991	26,261	4,476	12,943	19,815
대전	소계	17,805	17,775	45,409	98,469	15,548	44,251	89,312
	동구	3,983	3,957	10,507	20,597	3,832	10,205	16,953
	서구	7,474	7,472	20,670	43,982	5,478	20,104	43,210
	유성구	3,802	3,802	8,075	16,944	3,749	7,934	14,865
	대덕구	2,546	2,544	6,157	16,946	2,489	6,008	14,284
울산	소계	14,438	14,438	34,309	75,872	13,934	29,427	55,959
	중구	5,709	5,709	13,720	29,473	5,531	9,804	18,293
	남구	4,633	4,633	9,734	22,838	4,555	9,552	18,978
	동구	1,749	1,749	4,828	9,929	1,623	4,376	7,890
	울주군	2,347	2,347	6,027	13,632	2,225	5,695	10,798
경기	소계	73,350	109,527	318,083	580,007	92,577	248,381	403,358
	수원시	4951	2,619	4,733	8,605	2,460	4,202	5,767
	성남시	10667	10,187	49,040	67,499	9,618	25,785	29,510
	의정부시	5957	5,942	16,012	33,305	5,896	15,616	24,120
	안양시	N.A.	5,869	8,696	14,773	5,603	7,539	9,461
	부천시	13413	13,436	31,998	78,309	12,426	27,205	58,609

〈표 3-7〉 계속

(단위: 개)

구 분		지자체에서 보고한 조사세대수 ¹⁾	원자료 수			유효 표본 수 ²⁾		
			가구	개인	통행	가구	개인	통행
경기	광명시	4764	4,635	12,446	21,243	4,540	12,336	16,489
	평택시	N.A.	4,323	10,119	20,179	3,993	8,601	17,057
	안산시	11539	11,483	55,605	98,865	2,546	32,166	72,776
	고양시	N.A.	7,162	9,771	16,535	5,837	7,031	12,370
	과천시	931	911	2,923	6,314	814	2,851	4,865
	구리시	N.A.	2,617	2,759	5,556	2,414	2,459	4,553
	남양주시	N.A.	8,056	28,008	50,040	7,889	23,096	33,529
	시흥시	9851	9,906	30,611	51,164	8,876	27,170	32,268
	군포시	4415	1,227	3,160	4,809	1,214	3,149	3,176
	의왕시	1640	1,638	5,849	13,556	1,583	5,710	11,520
	하남시	N.A.	2,165	3,131	4,061	1,996	2,838	1,826
	용인시	N.A.	3,164	5,956	12,276	3,100	4,848	9,483
	파주시	1810	1,806	4,313	9,207	1,748	4,253	6,705
	이천시	N.A.	1,095	1,109	2,548	1,007	913	2,175
	안성시	N.A.	2,728	7,197	15,648	933	6,607	11,812
	김포시	3412	3,397	10,166	19,596	3,182	9,783	16,565
	광주시	N.A.	2,430	7,486	12,461	2,388	7,314	9,020
	연천군	N.A.	2,422	6,534	12,588	2,244	6,497	9,142
	양평군	N.A.	309	461	870	270	412	560
강원	소계	19,440	21,130	47,896	104,413	19,148	35,734	66,025
	춘천시	3865	3,854	8,179	23,398	3,387	3,798	6,288
	원주시	2787	2,702	4,398	9,933	2,212	4,186	7,900
	강릉시	2749	2,743	4,960	11,024	2,725	4,591	9,568
	동해시	2182	2,102	10,411	16,363	2,008	5,180	10,010
	속초시	N.A.	2,019	3,638	7,342	1,972	3,570	5,446
	삼척시	898	903	1,855	3,432	863	1,756	2,620
	홍천군	769	779	1,325	3,568	755	891	2,960
	횡성군	N.A.	606	1,300	2,623	580	1,285	1,911
	영월군	1451	656	1,064	2,306	597	993	1,778
	평창군	549	572	1,028	2,150	511	812	1,301
	정선군	750	754	923	1,668	672	872	1,163
	철원군	713	713	1,947	5,308	570	1,653	4,273
	화천군	501	501	599	1,212	257	549	1,039
	양구군	563	565	1,591	3,379	515	1,580	2,403
	인제군	546	546	1,678	2,911	513	1,606	2,025
	고성군	537	535	1,604	3,094	484	1,021	1,725
	양양군	580	580	1,396	4,702	527	1,391	3,615

〈표 3-7〉 계속

(단위: 개)

구 분		지자체에서 보고한 조사세대수 ¹⁾	원자료 수			유효 표본 수 ²⁾		
			가구	개인	통행	가구	개인	통행
충북	소계	16,305	20,064	49,582	95,410	12,961	46,320	70,264
	청주시	7179	6,969	20,207	39,617	1,219	19,832	30,752
	충주시	N.A.	3,375	8,420	14,161	3,227	6,917	8,770
	제천시	2563	2,563	2,562	5,074	2,541	2,537	4,118
	청원군	1945	485	869	1,679	410	816	1,280
	보은군	N.A.	665	1,515	2,573	588	1,481	1,380
	옥천군	N.A.	1,185	2,866	5,615	1,040	2,854	3,956
	영동군	1019	968	2,425	3,840	845	1,961	2,037
	진천군	993	998	3,067	6,330	926	3,024	4,954
	괴산군	528	685	1,436	2,920	404	1,374	2,320
	음성군	1501	1,501	4,158	8,566	1,387	4,111	7,020
	단양군	577	571	1,851	4,512	278	1,213	3,203
	증평군	N.A.	99	206	523	96	200	474
충남	소계	19,552	31,807	69,529	119,122	29,343	62,654	77,364
	천안시	8674	8,667	17,791	28,394	8,189	16,814	18,140
	공주시	2198	2,198	4,197	7,286	1,985	4,160	5,033
	보령시	N.A.	1,195	2,735	5,918	1,024	2,580	4,526
	아산시	5589	5,589	13,696	23,285	5,438	13,580	13,968
	서산시	N.A.	2,390	6,709	11,074	2,267	6,608	7,046
	논산시	N.A.	2,475	2,588	6,334	2,240	2,347	6,048
	계룡시	N.A.	1,166	2,272	4,265	1,155	2,240	3,113
	금산군	N.A.	839	1,617	3,849	702	1,393	2,575
	부여군	1251	1,251	1,637	3,104	1,072	1,408	2,252
	서천군	1378	1,377	2,732	4,960	1,193	2,714	3,620
	청양군	N.A.	644	568	1,028	488	45	233
	홍성군	N.A.	1,794	4,405	2,575	1,594	3,770	645
	예산군	462	461	937	1,227	401	864	346
	태안군	N.A.	1,215	6,057	12,574	1,069	2,571	7,188
	당진군	N.A.	546	1,588	3,249	526	1,560	2,631
전북	소계	13,010	21,652	56,106	115,648	20,068	53,648	88,499
	전주시	4973	4,972	14,658	34,291	4,776	14,616	27,760
	군산시	N.A.	3,186	6,483	12,202	3,105	6,281	9,167
	익산시	N.A.	4,244	14,143	27,243	4,147	14,084	20,610
	정읍시	2081	2,081	5,423	9,690	1,869	5,272	7,469
	남원시	1267	881	2,595	5,016	822	2,348	4,195
	김제시	1626	1,623	2,452	4,744	1,492	2,182	3,491
	완주군	1394	774	1,513	2,388	709	1,510	1,325
	진안군	496	496	1,694	3,658	472	1,076	2,629
	임실군	552	552	1,238	2,508	491	1,229	1,828
	순창군	621	617	1,351	2,819	547	1,227	2,155
	고창군	N.A.	1,118	2,187	4,826	1,035	1,976	3,242
	부안군	N.A.	1,108	2,369	6,263	603	1,847	4,628

〈표 3-7〉 계속

(단위: 개)

구 분		지자체에서 보고한 조사세대수 ¹⁾	원자료 수			유효 표본 수 ²⁾		
			가구	개인	통행	가구	개인	통행
전남	소계	20,762	29,651	71,751	170,761	26,996	69,382	140,979
	목포시	N.A.	5,723	13,715	27,478	5,372	12,293	21,753
	여수시	4298	3,810	10,093	19,637	3,691	9,740	14,249
	순천시	3945	3,950	9,850	36,776	3,755	9,706	35,549
	나주시	1670	1,610	3,942	12,339	1,432	3,926	11,772
	광양시	N.A.	2,626	6,905	13,491	2,505	6,864	10,823
	곡성군	934	934	1,375	4,316	874	1,349	3,458
	구례군	495	496	1,166	1,389	351	1,138	521
	보성군	1024	1,024	2,265	4,466	883	2,233	3,659
	화순군	749	748	1,539	3,996	393	1,476	3,195
	장흥군	795	795	1,796	4,839	728	1,780	3,822
	강진군	754	754	1,582	4,845	627	1,549	3,958
	해남군	1518	1,518	3,953	9,677	1,343	3,925	7,376
	무안군	1377	1,377	3,559	6,613	1,184	3,532	4,539
	함평군	1003	1,003	2,411	4,620	772	2,398	3,103
	영광군	N.A.	1,085	2,412	6,741	993	2,389	6,618
	완도군	2200	2,198	5,188	9,538	2,093	5,084	6,584
경북	소계	45,932	45,186	105,651	211,558	42,039	101,840	158,939
	포항시	9419	8,766	22,377	42,555	8,413	21,836	29,772
	경주시	4760	4,744	11,527	27,968	4,482	11,460	22,313
	김천시	1283	1,305	3,513	4,422	1,226	2,807	3,572
	안동시	1947	1,947	1,977	3,177	1,874	1,954	1,909
	구미시	6571	6,562	17,704	34,172	6,412	17,483	27,849
	영주시	808	811	595	620	694	518	258
	영천시	1848	1,847	4,497	8,664	1,695	4,483	6,414
	상주시	2227	2,143	2,616	6,488	1,911	2,530	5,315
	경산시	3723	3,719	10,367	19,467	3,660	10,115	13,566
	군위군	1545	1,545	3,122	4,641	1,232	3,000	2,492
	의성군	1305	1,309	3,107	6,221	1,181	2,516	4,260
	청송군	621	621	1,319	4,226	582	1,284	3,927
	영양군	260	259	390	718	244	384	407
	영덕군	800	799	993	2,378	708	989	1,996
	청도군	980	978	2,310	5,183	781	2,217	3,592
	성주군	850	850	2,055	6,778	739	1,904	5,420
	칠곡군	2742	2,742	7,094	14,547	2,563	7,038	12,619
	예천군	2154	2,151	5,548	11,022	1,980	5,147	7,816
	봉화군	1580	1,580	3,425	6,139	1,480	3,397	4,110
	울진군	509	508	1,115	2,172	182	778	1,332

〈표 3-7〉 계속

(단위: 개)

구 분		지자체에서 보고한 조사세대수 ¹⁾	원자료 수			유효 표본 수 ²⁾		
			가구	개인	통행	가구	개인	통행
경남	소계	35,124	54,391	110,897	227,904	50,190	106,220	167,449
	창원시	6119	6,117	8,874	16,965	5,909	7,627	12,817
	마산시	N.A.	10,075	10,184	18,153	9,776	10,102	12,402
	진주시	5108	4,332	12,378	28,862	4,040	12,084	23,497
	진해시	N.A.	2,878	6,724	10,479	2,745	6,388	6,510
	통영시	1700	1,694	4,018	9,584	1,635	3,807	5,514
	사천시	2274	2,270	4,646	7,513	2,007	4,088	5,204
	김해시	6885	6,886	16,716	29,336	6,744	16,619	20,010
	밀양시	N.A.	1,864	4,828	10,117	878	4,794	8,092
	거제시	5882	5,882	15,074	26,041	5,432	15,042	18,053
	양산시	4055	4,049	9,882	27,193	3,868	8,666	21,313
	의령군	655	652	1,549	3,483	550	1,526	2,756
	창녕군	N.A.	1,116	2,396	6,776	906	2,380	6,568
	고성군	1246	1,161	2,439	5,021	956	2,072	3,588
	남해군	1200	1,200	2,708	5,031	1,069	2,698	3,030
	하동군	N.A.	1,518	3,855	9,074	1,421	3,792	6,905
	산청군	N.A.	679	1,585	8,577	544	1,562	6,441
	함양군	N.A.	747	1,769	4,139	631	1,711	3,820
	합천군	N.A.	1,271	1,272	1,560	1,079	1,262	929
제주	소계	-	148	443	1,425	140	404	1,090
	제주시	N.A.	46	118	485	41	87	320
	서귀포시	N.A.	102	325	940	99	317	770

주: 1) 추진실적으로 지자체별 조사현황파일에 보고되어 있는 세대수

2) 손상된 파일, 중복파일 및 오류파일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자료 수

☐ 성별·연령별 유효 표본수와 표본율

- 다음으로 개인자료를 성별·연령별로, 그리고 가구자료를 가구원수별로 구분하여 전국의 유효 표본수를 정리하고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5세 미만을 제외한 200개 지자체의 전체 유효표본수는 개인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1,288,240개로 표본율은 3.20%에 해당함

- 5세를 기준으로 5세 미만의 인구를 제외한 이유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 카테고리가 5세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임
- 자료 검수 후 유효 표본율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4.77%와 4.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제주시가 0.11%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따라서 사실상 제주시의 경우 제출된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자료로는 표본율이 너무 낮아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의 표본이 638,227개로 전체 유효 표본에서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효 표본율은 3.19%이고, 여성의 유효 표본율을 3.22%로 나타냈음
- 성별 유효 표본율이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는 전라남도로 각각 4.81%와 4.73%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8〉 남성의 연령별 유효 표본수와 표본율(개인자료)

(단위: 개, %)

구분	남성+여성 합계		남성								
	표본수	표본율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남성 표본수	남성 표본율
전국	1,288,240	3.20	15,796	97,527	63,456	98,255	128,891	108,120	126,182	638,227	3.19
서울	190,868	2.58	1,896	13,549	10,622	15,392	18,440	16,028	18,642	94,569	2.58
부산	132,131	3.92	1,008	8,089	8,304	9,838	12,134	12,904	13,289	65,566	3.94
대구	70,689	3.02	994	5,327	3,634	5,088	6,984	6,158	7,152	35,337	3.03
인천	47,896	2.49	595	3,701	2,837	3,934	4,456	3,948	3,848	23,319	2.42
광주	50,225	3.76	556	3,168	2,408	3,957	3,976	3,836	6,491	24,392	3.69
대전	44,249	3.96	435	3,960	2,228	3,813	4,961	3,636	2,774	21,807	3.89
울산	29,386	3.43	490	2,581	1,262	2,525	3,722	2,849	1,739	15,168	3.46
경기	247,503	2.79	3,528	21,043	13,123	19,550	27,509	19,003	18,039	121,795	2.75
강원	35,682	2.67	552	2,871	1,593	2,323	3,757	3,703	3,968	18,767	2.81
충북	46,133	3.34	526	3,510	2,145	3,318	4,520	3,702	4,828	22,549	3.26
충남	62,525	3.66	672	4,363	2,710	5,088	6,500	5,735	7,247	32,315	3.77
전북	53,643	3.25	952	5,504	2,115	3,877	5,500	3,502	5,458	26,908	3.32
전남	69,114	4.77	912	4,810	2,313	4,596	6,627	5,873	9,054	34,185	4.81
경북	101,692	4.30	1,379	7,563	3,937	7,215	9,275	8,666	12,489	50,524	4.29
경남	106,100	3.83	1,294	7,443	4,218	7,716	10,474	8,555	11,120	50,820	3.67
제주	404	0.11	7	45	7	25	56	22	44	206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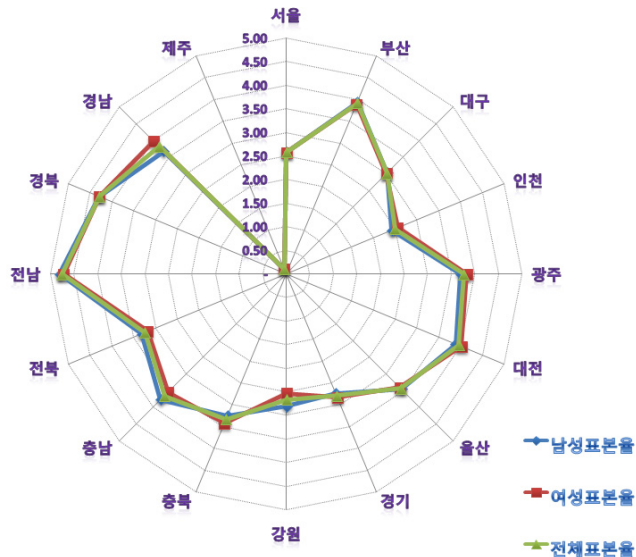
주: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5세 미만을 제외한 인구 카테고리로 구분하였음.

〈표 3-9〉 여성의 연령별 유효 표본수와 표본율(개인자료)

(단위: 개, %)

구분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여성 표본수	여성 표본율
전국	14,344	81,118	66,319	114,156	133,490	107,935	132,651	650,013	3.22
서울	1,840	11,742	11,095	16,544	19,037	16,830	19,211	96,299	2.57
부산	913	6,565	8,667	10,142	13,078	13,557	13,643	66,565	3.90
대구	835	4,282	3,282	5,971	7,382	6,549	7,051	35,352	3.01
인천	580	3,170	3,000	4,599	4,917	4,084	4,227	24,577	2.55
광주	545	2,586	3,034	4,079	4,136	4,278	7,175	25,833	3.83
대전	394	2,923	2,669	4,611	5,388	3,388	3,069	22,442	4.02
울산	368	1,756	1,296	3,193	3,564	2,533	1,508	14,218	3.41
경기	3,200	18,477	13,617	24,205	29,213	17,869	19,127	125,708	2.84
강원	455	2,159	1,405	2,770	3,884	3,045	3,197	16,915	2.53
충북	462	2,917	2,278	3,851	4,526	3,686	5,864	23,584	3.42
충남	597	3,552	2,859	5,009	6,237	5,056	6,900	30,210	3.55
전북	874	4,429	2,043	5,019	4,959	3,628	5,783	26,735	3.18
전남	969	4,262	2,458	5,378	6,278	5,814	9,770	34,929	4.73
경북	1,223	6,167	4,053	8,255	9,378	8,818	13,274	51,168	4.30
경남	1,081	6,084	4,558	10,502	11,458	8,782	12,815	55,280	3.99
제주	8	47	5	28	55	18	37	198	0.11

주: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5세 미만을 제외한 인구 카테고리별 구분하였음.



〈그림 3-9〉 시도별 성별 연령별 표본율 비교

□ 가구원수별 유효표본수와 표본율

- 성별·연령별 및 가구원수별 유효표본수는 전수조사인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2009년 기준의 주민등록인구 자료는 시군구별로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가구원수별 유효표본수는 16개 시도가 총 523,135가구로 평균 32,696가구에 해당하며, 표본율은 3.66%에 해당함
 - 가구 유효 표본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남으로 유효 가구수는 약 5만가구이고, 표본율은 4.96%임

〈표 3-10〉 가구원수별 유효 표본수와 표본율(가구자료)

(단위: 개, %)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체	
						표본수	표본율
전국	62,210	129,287	119,675	163,504	48,459	523,137	3.66
서울	7,259	16,405	18,873	26,434	6,912	75,883	2.90
부산	8,021	13,223	13,473	14,316	3,037	52,070	4.39
대구	2,509	6,279	6,357	9,294	2,424	26,863	3.30
인천	1,324	3,882	5,824	11,068	3,231	25,329	3.87
광주	3,923	6,603	4,085	4,059	1,376	20,046	4.36
대전	1,255	3,461	3,943	5,198	1,691	15,548	3.94
울산	698	2,805	3,202	5,893	1,336	13,934	4.71
경기	7,411	18,013	22,361	34,555	10,237	92,577	3.06
강원	2,742	5,158	4,143	5,045	2,062	19,150	3.82
충북	1,821	4,008	2,523	3,293	1,316	12,961	2.57
충남	5,545	9,270	5,733	6,443	2,352	29,343	4.65
전북	2,337	5,513	4,118	5,849	2,251	20,068	3.33
전남	4,406	9,124	5,218	5,742	2,506	26,996	4.91
경북	6,517	13,329	8,961	10,275	2,957	42,039	4.69
경남	6,437	12,174	10,843	16,003	4,733	50,190	4.96
제주	5	40	20	37	38	140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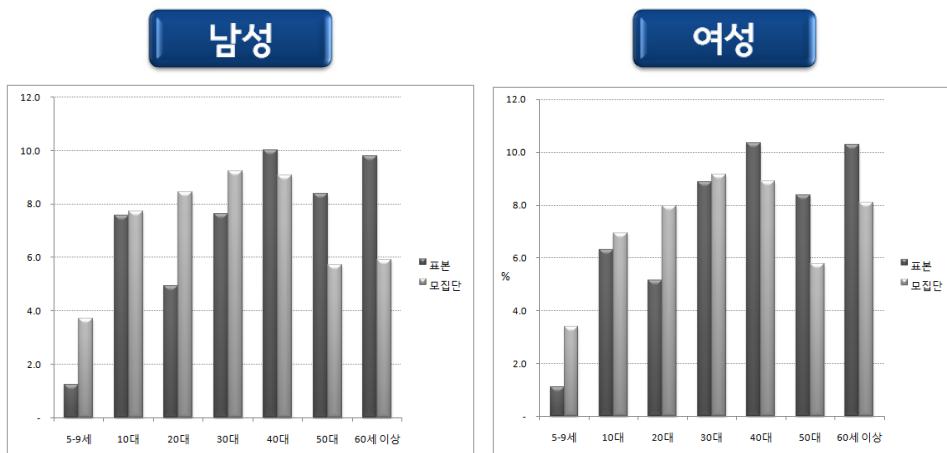
주: 유효 표본율은 통계청의 200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시되어 있는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산정함.

3. 유효표본의 기초분석

- 조사결과 나타난 유효표본의 가구 및 응답자 기초분석결과를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성별·연령별, 주택형태별, 그리고 직업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연령별 비율

- 유효표본의 가구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9.5%, 여성이 50.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연령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남성의 경우 10.0%, 여성의 경우 10.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남성의 경우 9.8%, 여성의 경우 10.3%)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조사대상 가구원 중에서 20대의 비율이 낮게 집계되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모집단의 비율에 비해 적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높아 모집단의 비율에 비해서 많이 조사되었음



〈그림 3-10〉 표본과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비율 비교

〈표 3-1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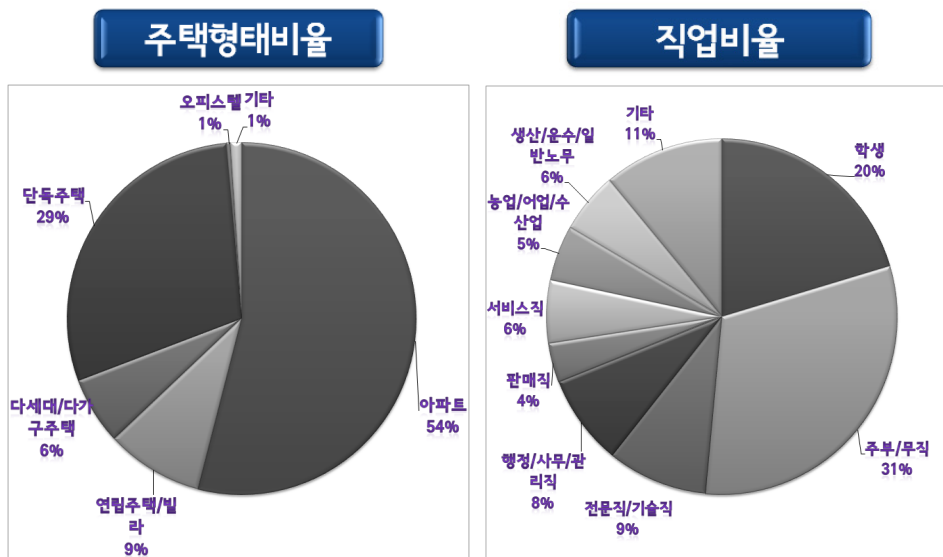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전국	1.2	7.6	4.9	7.6	10.0	8.4	9.8	49.5	1.1	6.3	5.1	8.9	10.4	8.4	10.3	50.5
	3.7	7.7	8.5	9.2	9.1	5.7	5.9	49.8	3.4	6.9	8.0	9.1	8.9	5.8	8.1	50.2
서울	1.0	7.1	5.6	8.1	9.7	8.4	9.8	49.5	1.0	6.2	5.8	8.7	10.0	8.8	10.1	50.5
	3.1	7.0	9.7	9.7	8.5	6.0	5.3	49.5	2.9	6.4	9.8	9.4	9.1	6.4	6.6	50.5
부산	0.8	6.1	6.3	7.4	9.2	9.8	10.1	49.6	0.7	5.0	6.6	7.7	9.9	10.3	10.3	50.4
	3.1	7.6	8.8	8.0	9.0	6.9	5.9	49.3	2.8	6.7	8.3	8.2	9.7	7.2	7.8	50.7
대구	1.4	7.5	5.1	7.2	9.9	8.7	10.1	50.0	1.2	6.1	4.6	8.4	10.4	9.3	10.0	50.0
	3.7	8.5	8.5	8.7	9.2	5.9	5.3	49.8	3.3	6.9	8.2	9.1	9.4	6.1	7.2	50.2
광주	1.1	6.3	4.8	7.9	7.9	7.6	12.9	48.6	1.1	5.1	6.0	8.1	8.2	8.5	14.3	51.4
	4.2	8.6	9.3	9.1	8.5	5.1	4.7	49.5	3.9	8.0	9.2	9.3	8.6	5.2	6.4	50.5
인천	1.2	7.7	5.9	8.2	9.3	8.2	8.0	48.7	1.2	6.6	6.3	9.6	10.3	8.5	8.8	51.3
	4.0	8.5	8.1	9.7	10.5	5.1	4.0	50.1	3.7	7.9	7.8	10.0	10.0	4.7	5.7	49.9
대전	1.0	8.9	5.0	8.6	11.2	8.2	6.3	49.3	0.9	6.6	6.0	10.4	12.2	7.7	6.9	50.7
	4.0	8.7	9.3	9.3	9.2	5.2	4.3	50.1	3.7	7.7	9.0	9.6	9.2	5.0	5.8	49.9
울산	1.7	8.8	4.3	8.6	12.7	9.7	5.9	51.6	1.3	6.0	4.4	10.9	12.1	8.6	5.1	48.4
	5.0	7.5	6.7	11.1	9.4	5.1	5.6	50.3	4.5	6.5	6.4	11.0	7.8	4.9	8.6	49.7
경기	1.4	8.5	5.3	7.9	11.1	7.7	7.3	49.2	1.3	7.5	5.5	9.8	11.8	7.2	7.7	50.8
	3.1	6.9	5.6	6.9	9.2	6.7	11.3	49.7	2.9	6.0	4.3	6.6	8.5	7.0	15.0	50.3
강원	1.5	8.0	4.5	6.5	10.5	10.4	11.1	52.6	1.3	6.1	3.9	7.8	10.9	8.5	9.0	47.4
	3.6	7.4	7.9	8.3	9.1	5.9	8.0	50.0	3.3	6.7	6.5	7.9	8.7	5.9	10.9	50.0
충북	1.1	7.6	4.6	7.2	9.8	8.0	10.5	48.9	1.0	6.3	4.9	8.3	9.8	8.0	12.7	51.1
	3.8	7.9	8.3	8.4	8.9	5.6	7.2	50.1	3.4	7.0	7.3	8.2	8.4	5.5	10.1	49.9
충남	1.1	7.0	4.3	8.1	10.4	9.2	11.6	51.7	1.0	5.7	4.6	8.0	10.0	8.1	11.0	48.3
	3.7	7.5	8.1	8.4	8.5	5.8	8.3	50.2	3.4	6.9	6.7	7.8	7.8	5.7	11.6	49.8
전북	1.8	10.3	3.9	7.2	10.3	6.5	10.2	50.2	1.6	8.3	3.8	9.4	9.2	6.8	10.8	49.8
	3.8	7.8	7.8	7.8	8.1	6.0	8.0	49.1	3.5	7.1	6.6	7.7	8.1	6.2	11.7	50.9
전남	1.3	7.0	3.3	6.6	9.6	8.5	13.1	49.5	1.4	6.2	3.6	7.8	9.1	8.4	14.1	50.5
	3.9	7.5	6.7	7.7	8.2	6.1	8.9	49.0	3.6	6.8	5.5	7.5	7.9	6.2	13.5	51.0
경남	1.4	7.4	3.9	7.1	9.1	8.5	12.3	49.7	1.2	6.1	4.0	8.1	9.2	8.7	13.1	50.3
	3.5	7.6	7.9	8.2	8.4	6.0	8.0	49.7	3.2	6.4	6.6	7.9	8.1	6.1	11.8	50.3
경북	1.2	7.0	4.0	7.3	9.9	8.1	10.5	47.9	1.0	5.7	4.3	9.9	10.8	8.3	12.1	52.1
	4.0	7.9	7.6	9.3	9.3	5.8	6.0	49.9	3.6	6.8	6.7	9.2	8.8	5.7	9.3	50.1
제주	1.7	11.1	1.7	6.2	13.9	5.4	10.9	51.0	2.0	11.6	1.2	6.9	13.6	4.5	9.2	49.0
	4.6	8.3	8.2	9.8	8.8	5.1	4.8	49.6	4.2	7.6	7.9	10.0	8.6	5.1	7.0	50.4

주: 1)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2) 각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은 【부록】의 〈표 1〉 참조.

□ 주택형태와 직업 비율

- 주택형태별 가구 수를 살펴보면 아파트(54.02%)와 단독주택(29.36%)이 약 83%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과 인천으로 각각 83.41%와 70.35%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연립주택 및 빌라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과 인천으로 각각 17.17%와 16.93%로 나타남
 - 서울과 부산의 경우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비율도 12~14% 내외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직업종류별 분포는 가구원 중에서 주부/무직의 비율이 31.1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학생으로 20.39%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을 보이고 있음
 - 제주시의 경우 유효 표본율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0.5% 미만으로 주택형태와 직업의 종류 모두 특정 형태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11〉 표본과 모집단의 주택형태와 직업비율 비교

〈표 3-12〉 가구의 주택형태 비율

(단위: %)

구 분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전국	54.02	8.99	6.24	29.36	0.37	1.02
서울	50.91	17.17	14.34	15.99	0.45	1.14
부산	44.57	13.82	12.73	27.53	0.73	0.62
대구	48.40	8.26	8.57	33.41	0.05	1.32
인천	70.35	16.93	3.13	8.57	0.34	0.68
광주	60.67	1.26	1.13	35.37	0.18	1.39
대전	83.41	4.89	2.35	8.50	0.06	0.78
울산	67.78	7.36	4.20	19.99	0.31	0.36
경기	66.96	10.52	6.67	14.67	0.50	0.68
강원	51.84	4.17	2.39	40.02	0.14	1.44
충북	53.16	3.92	0.99	41.41	0.03	0.47
충남	43.35	5.85	2.48	46.44	0.52	1.36
전북	40.72	6.04	2.49	48.72	0.17	1.87
전남	36.41	2.94	1.51	57.30	0.52	1.31
경북	40.72	6.04	2.49	48.72	0.17	1.87
경남	53.68	3.31	3.20	38.57	0.35	0.87
제주	2.14	4.29	2.14	91.43	-	-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은 【부록】의 〈표 2〉 참조.

〈표 3-13〉 응답자의 직업 비율

(단위: %)

구 분	학생	주부/ 무직	전문직/ 기술직	행정/ 사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 어업/ 수산업	생산/ 운수/일 반노무	기타
전국	20.39	31.10	9.25	8.30	3.58	5.68	5.04	5.56	11.10
서울	20.30	31.81	10.94	10.69	3.71	5.49	0.08	3.28	13.70
부산	18.14	34.54	9.39	7.85	5.02	6.70	0.98	7.88	9.51
대구	20.74	34.45	8.28	6.84	3.78	5.10	1.38	5.93	13.50
인천	22.26	34.16	13.27	8.57	2.60	6.49	0.20	4.79	7.66
광주	18.43	37.74	7.94	7.32	4.78	7.75	0.72	5.04	10.28
대전	23.55	28.27	9.64	11.16	2.69	5.55	0.31	3.37	15.46
울산	21.43	30.16	10.91	7.24	2.66	4.73	1.49	11.56	9.81
경기	23.34	30.83	9.65	10.01	2.94	4.91	1.60	4.69	12.02
강원	19.97	28.51	7.58	7.41	3.92	7.22	7.36	4.92	13.12
충북	19.69	30.44	9.27	6.88	2.61	5.67	9.03	6.09	10.31
충남	17.35	27.54	9.21	7.04	4.33	5.07	11.54	6.66	11.26
전북	25.40	26.40	6.88	7.16	4.30	4.60	10.96	6.30	8.00
전남	18.00	26.56	6.83	6.05	3.31	5.82	20.87	4.93	7.63
경북	18.56	28.90	7.10	6.37	3.17	6.05	13.10	6.76	9.99
경남	17.79	31.64	9.37	6.55	3.54	5.90	9.02	6.58	9.63
제주	26.55	9.93	2.98	4.47	1.24	3.47	35.73	4.71	10.92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은 【부록】의 〈표 3〉 참조.



제 4 장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분석

- 제1절 자전거 보유현황 분석결과
- 제2절 개인별 자전거 이용실태 분석결과
- 제3절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분석결과
- 제4절 자전거분담율의 영향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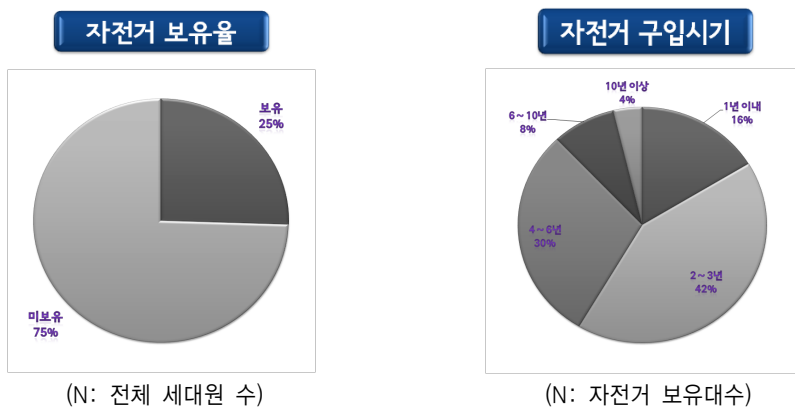
제4장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분석

제1절 자전거 보유현황 분석결과

1. 자전거 보유대수 및 구입시기

- 먼저 전체 응답자 1,588,610명이 보유한 자전거대수는 총 405,062대로 전국의 자전거 보유율은 25.50%로 나타남
- 이때 전체 응답자 수는 총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앞에서 제시한 유효 개인 표본수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항목별로 보다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이나 연령을 기입하지 않았지만 자전거 보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기입을 하였다면 이를 포함시켜서 분석하였기 때문임
- 자전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도(45.07%)와 강원도(34.36%), 그리고 경상북도(30.13%) 순으로 분석되었음
- 자전거 구입시기는 3년 이내가 58.4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6년 이내가 87.97%로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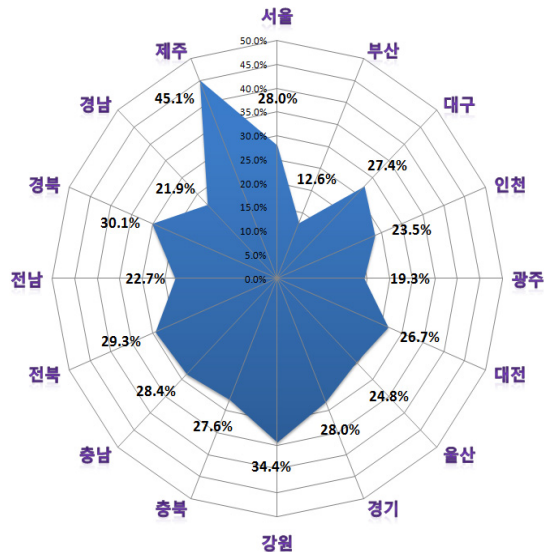
〈그림 4-1〉 전국 자전거 보유율과 구입시기 비율

〈표 4-1〉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

(단위: 명, 대, %)

구분	총 세대원 수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보유율
전국	1,588,610	405,062	25.50
서울	238,871	66,790	27.96
부산	147,950	18,700	12.64
대구	84,048	23,029	27.40
인천	87,706	20,641	23.53
광주	52,829	10,222	19.35
대전	49,652	13,275	26.74
울산	46,418	11,532	24.84
경기	302,662	84,891	28.05
강원	56,689	19,481	34.36
충북	37,582	10,358	27.56
충남	79,493	22,596	28.43
전북	60,841	17,856	29.35
전남	74,445	16,901	22.70
경북	116,810	35,191	30.13
경남	152,117	33,375	21.94
제주	497	224	45.07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은 【부록】의 〈표 4〉 참조.



〈그림 4-2〉 시도별 자전거 보유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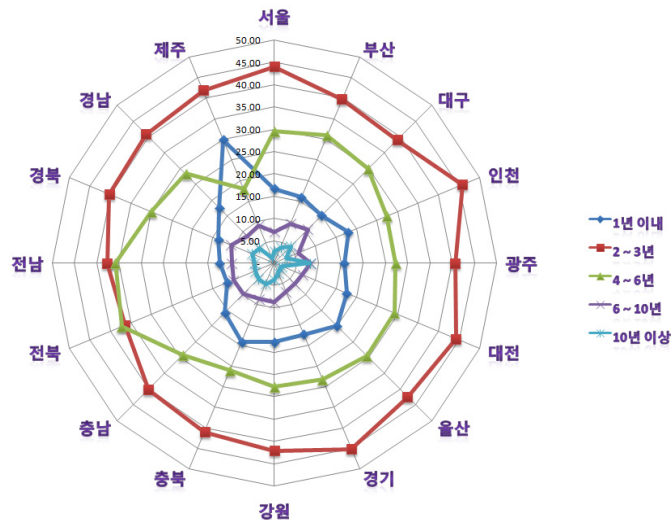
〈표 4-2〉 자전거 구입시기

(단위: %)

구분	1년 이내	2~3년	4~6년	6~10년	10년 이상
전국	16.31	42.17	29.49	8.27	3.76
서울	16.72	44.01	29.47	7.06	2.73
부산	16.00	39.69	30.86	9.54	3.91
대구	15.02	39.11	29.84	10.72	5.30
인천	17.99	45.87	27.35	5.89	2.90
광주	15.78	40.69	27.35	8.19	7.98
대전	17.64	44.26	29.32	6.90	1.88
울산	19.85	42.35	29.54	6.58	1.67
경기	17.30	45.12	28.29	6.90	2.39
강원	17.68	42.00	27.72	8.79	3.80
충북	19.13	40.98	26.07	8.77	5.06
충남	15.77	40.07	29.15	9.92	5.10
전북	11.40	36.47	37.28	10.12	4.73
전남	12.33	37.64	35.83	9.71	4.49
경북	13.64	40.25	30.03	10.62	5.45
경남	17.46	40.95	28.17	8.64	4.77
제주	29.88	41.91	17.84	9.13	1.24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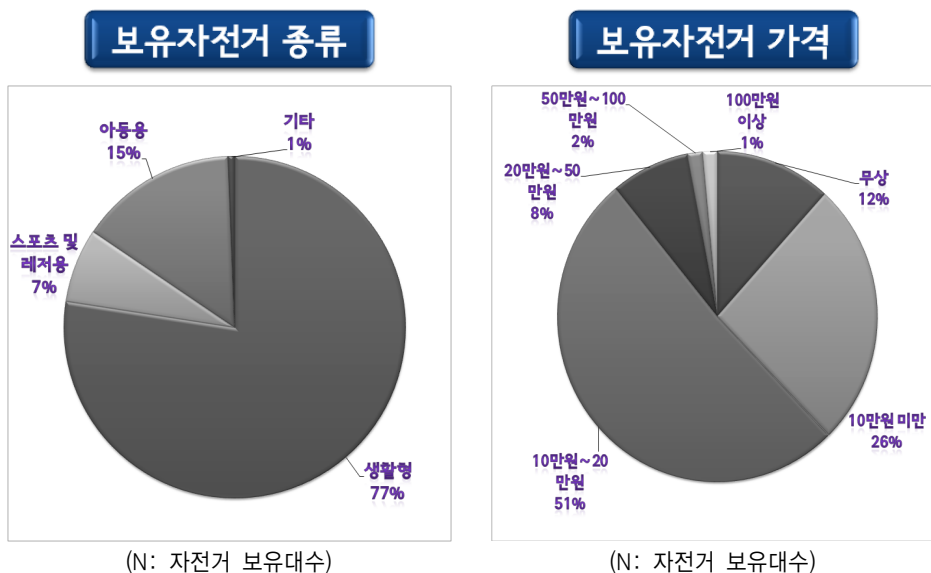
2) 각 시군구별 자전거 구입시기는 【부록】의 〈표 5〉 참조.



〈그림 4-3〉 시도별 자전거 구입시기 비교

2. 보유자전거의 종류 및 가격

- 전체 자전거 보유대수를 분모로 하여 전국의 보유자전거 종류와 가격비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전국의 보유자전거 종류를 살펴보면, 생활형 자전거가 7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용 자전거 비율도 14.96%로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생활형 자전거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83.95%)와 전북(83.93%)로 분석됨
 - 스포츠 및 레저용 자전거 비율은 부산이 14.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11.58%)와 울산시(8.74%)가 높게 나타남
- 전국의 자전거 구입가격은 20만원 미만이 8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만원~20만원인 경우가 51.3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무상으로 구입한 자전거를 제외하고, 보유 자전거의 평균가격을 구간별 중간 값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약 16만원으로 분석됨. 단, 100만원 이상의 경우 100만원이라 간주하였음



〈그림 4-4〉 전국 보유자전거의 종류와 가격 비율

〈표 4-3〉 보유 자전거의 종류

(단위: %)

구분	생활형	스포츠 및 레저용	아동용	기타
전국	77.44	6.99	14.96	0.61
서울	75.53	11.58	12.48	0.41
부산	72.41	14.50	12.63	0.46
대구	83.95	4.14	11.59	0.32
인천	74.77	6.28	18.70	0.26
광주	77.92	1.57	18.73	1.78
대전	75.26	4.17	20.47	0.11
울산	68.96	8.74	22.01	0.30
경기	74.22	7.93	17.19	0.66
강원	80.13	6.57	12.81	0.48
충북	83.83	4.31	11.65	0.21
충남	78.85	6.32	13.12	1.72
전북	83.93	4.03	11.29	0.75
전남	79.25	4.36	14.90	1.48
경북	82.78	3.40	13.27	0.56
경남	77.38	4.83	17.40	0.39
제주	74.23	2.31	23.46	-

주: 각 시군구별 보유자전거의 종류는 【부록】의 〈표 6〉 참조.

〈표 4-4〉 자전거 구입가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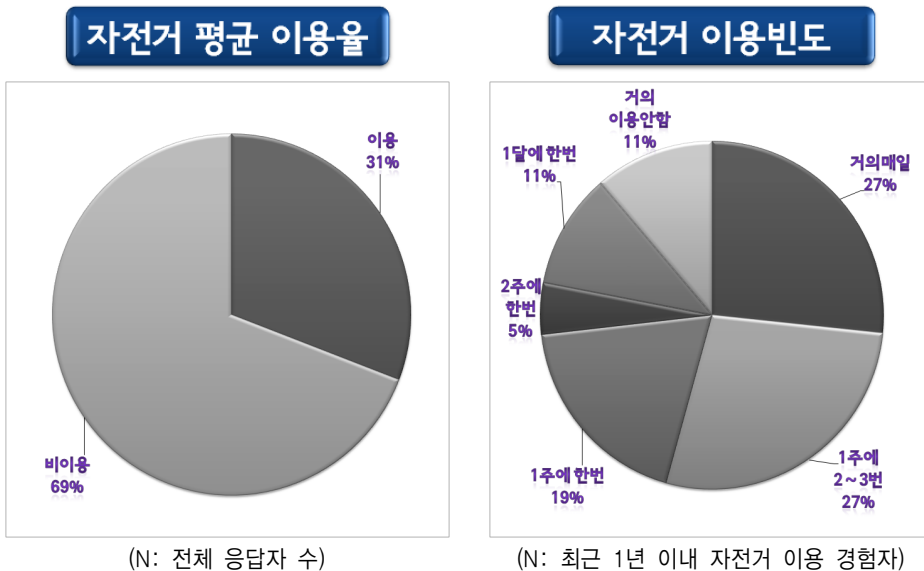
구분	구입가격						평균가격 (만원/대)
	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국	11.71	26.03	51.32	7.97	1.52	1.45	15.68
서울	10.25	22.00	51.20	11.39	2.62	2.53	18.36
부산	9.40	24.99	48.86	12.93	1.98	1.85	17.69
대구	10.95	37.61	45.39	4.54	0.73	0.77	13.48
인천	12.36	23.08	52.24	9.00	1.59	1.73	16.22
광주	11.74	34.79	48.50	3.94	0.56	0.48	13.03
대전	12.15	28.04	49.48	8.05	1.12	1.15	15.04
울산	11.93	21.98	50.64	10.55	2.25	2.65	17.82
경기	11.24	23.19	53.42	8.74	1.72	1.69	16.37
강원	16.83	24.01	48.40	7.80	1.45	1.50	14.98
충북	16.30	27.69	48.27	5.61	0.85	1.27	13.89
충남	11.29	27.25	52.79	6.45	1.38	0.84	14.77
전북	10.72	24.98	58.70	4.35	0.71	0.54	13.90
전남	10.40	23.97	56.43	7.41	1.17	0.61	14.94
경북	12.11	31.42	50.98	4.23	0.66	0.60	13.37
경남	13.28	29.44	48.43	6.62	1.13	1.10	14.48
제주	40.98	11.48	46.72	0.82	-	-	8.44

주: 각 시군구별 자전거 구입가격은 【부록】의 〈표 7〉 참조.

제2절 개인별 자전거 이용실태 분석결과

1. 자전거 평균 이용율과 이용빈도

- 개인별 자전거 이용실태 분석결과 중 최근 1년 동안 자전거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0.86%만 해당되고,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별 자전거 평균 이용률은 유효 개인 표본 수인 전체 응답자 수를 분모로 하여 산정하였음. 이는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비율을 적용하여 전수화(expansion) 과정을 수행한 후 평균 이용율을 산정한 결과임
- 최근 1년 간 자전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355,833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1주에 2~3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27.66%로 가장 높았고, 1주에 한번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73.20%로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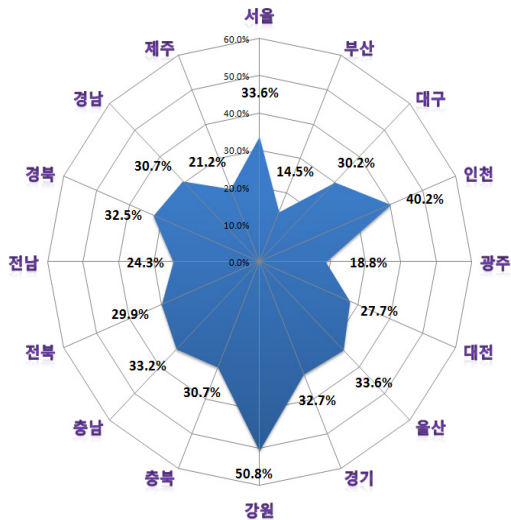
〈그림 4-5〉 전국 자전거 평균 이용율과 이용빈도

〈표 4-5〉 자전거 평균 이용율

(단위: 명, %)

구분	총 응답자수	자전거이용 경험자수	자전거 평균 이용율	
			전수화 전	전수화 후
전국	1,288,240	355,833	27.62	30.86
서울	190,868	57,890	30.33	33.64
부산	132,131	16,685	12.63	14.49
대구	70,689	22,308	31.56	30.24
인천	47,896	11,636	24.29	40.22
광주	50,225	8,927	17.77	18.77
대전	44,249	10,727	24.24	27.70
울산	29,386	9,391	31.96	33.57
경기	247,503	76,833	31.04	32.70
강원	35,682	15,556	43.60	50.77
충북	46,133	13,078	28.35	30.65
충남	62,525	19,229	30.75	33.15
전북	53,643	15,987	29.80	29.91
전남	69,114	16,063	23.24	24.33
경북	101,692	32,771	32.23	32.45
경남	106,100	28,462	26.83	30.67
제주	404	290	71.78	21.24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시군구별 자전거 평균 이용율은 【부록】의 〈표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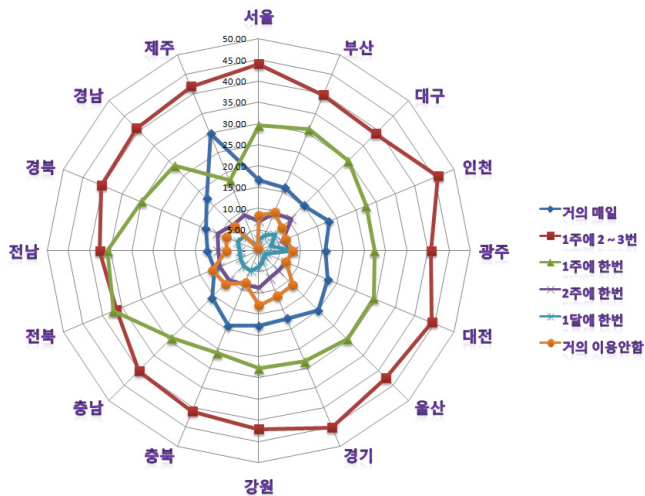
〈그림 4-6〉 시도별 자전거 평균 이용율 비교(전수화 후)

〈표 4-6〉 자전거 이용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1주에 2~3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거의 이용안함
전국	26.66	27.66	18.88	4.81	10.73	11.26
서울	35.04	29.60	15.71	3.67	7.60	8.38
부산	24.19	28.25	21.14	4.70	11.98	9.73
대구	35.13	28.01	15.97	4.34	8.89	7.65
인천	24.79	27.30	21.33	6.13	13.53	6.93
광주	36.08	30.09	15.69	3.77	6.40	7.97
대전	23.83	30.29	19.90	4.72	14.36	6.90
울산	25.18	25.10	18.80	5.33	14.25	11.34
경기	21.10	27.34	20.76	6.11	13.19	11.51
강원	27.79	28.33	15.91	4.23	10.83	12.90
충북	23.30	28.35	23.99	4.92	11.28	8.15
충남	26.87	29.17	17.65	4.57	10.65	11.10
전북	29.72	29.08	18.09	3.92	7.30	11.90
전남	34.50	29.18	16.91	3.88	7.89	7.64
경북	35.04	29.60	15.71	3.67	7.60	8.38
경남	35.58	27.29	17.08	3.99	8.05	8.02
제주	33.11	23.31	31.76	5.41	5.74	0.68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시군구별 자전거 이용빈도는 【부록】의 〈표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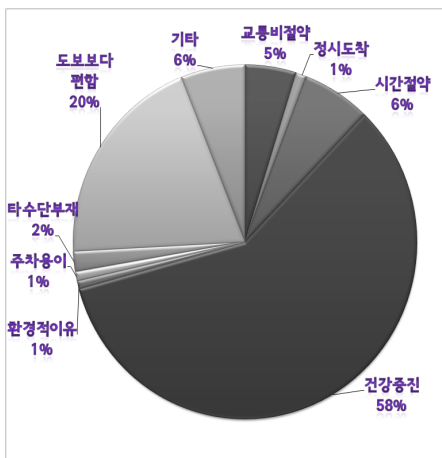


〈그림 4-7〉 시도별 자전거 이용빈도 비교

2.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와 레저용 이용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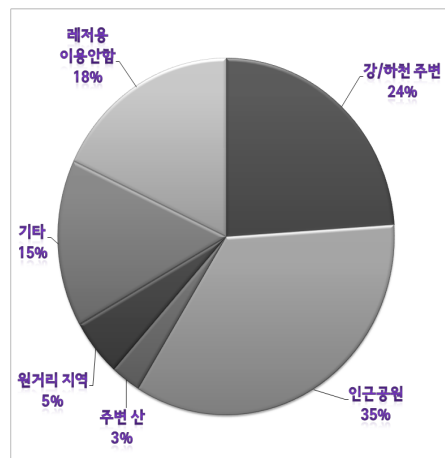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자전거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증진이 58.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도보보다 편해서 19.78%, 그리고 시간절감을 위해서 6.38% 순으로 나타났다
- 레저목적인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명승지 등의 인근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34.82%로 가장 높았고, 강 둔치나 하천 주변이 23.93%로 그 다음으로 높았음. 그러가 레저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18.03%로 높게 나타났다
 - 유효 표본율이 낮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표본율이 극히 작아서 자전거 이용실태조사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레저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생활용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전라도와 경상도로 전북이 34.03%, 전남이 30.26%, 그리고 경남이 29.49%, 경북이 29.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자전거이용의 주된 이유



(N: 최근 1년 이내 자전거 이용 경험자)

레저용 자전거 이용장소



(N: 최근 1년 이내 자전거 이용 경험자)

〈그림 4-8〉 전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와 레저용 이용 장소 비율

〈표 4-7〉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

구분	교통비 절약	정시 도착	시간 절약	건강 증진	환경적 이유	주차 용이	타수단 부재	도보보다 편함	기타
전국	4.83	0.98	6.38	58.55	0.74	0.84	1.84	19.78	6.05
서울	3.61	1.03	6.33	62.16	0.59	0.61	0.70	13.75	11.22
부산	4.88	0.76	3.71	69.14	0.48	0.75	2.53	14.74	3.02
대구	6.45	1.07	8.22	54.38	0.75	1.30	1.02	22.85	3.97
인천	6.03	0.66	4.07	69.16	0.39	0.71	0.49	12.70	5.78
광주	6.47	0.79	6.67	55.99	0.87	0.47	1.66	21.37	5.71
대전	6.23	0.91	7.04	62.56	1.00	0.95	0.91	16.83	3.57
울산	4.14	0.78	5.58	62.29	0.83	0.91	1.58	13.48	10.42
경기	4.26	1.28	6.12	64.33	0.94	0.73	1.10	15.75	5.49
강원	5.41	0.45	6.21	58.26	0.65	0.85	2.94	20.72	4.50
충북	2.80	1.24	5.02	66.46	0.55	0.65	2.08	19.16	2.04
충남	5.24	0.70	6.08	49.40	1.22	1.22	2.83	28.05	5.26
전북	6.05	1.13	6.04	40.40	0.54	0.71	3.53	29.48	12.12
전남	3.50	1.60	5.49	53.73	0.52	0.84	3.89	27.13	3.30
경북	5.47	0.54	7.16	49.50	0.68	1.03	3.36	29.12	3.14
경남	6.13	0.85	9.04	51.64	0.83	1.15	2.41	23.86	4.08
제주	1.57	-	1.57	62.07	-	0.31	1.57	32.60	0.31

주: 각 시군구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부록】의 〈표 10〉 참조.

〈표 4-8〉 레저용 자전거 이용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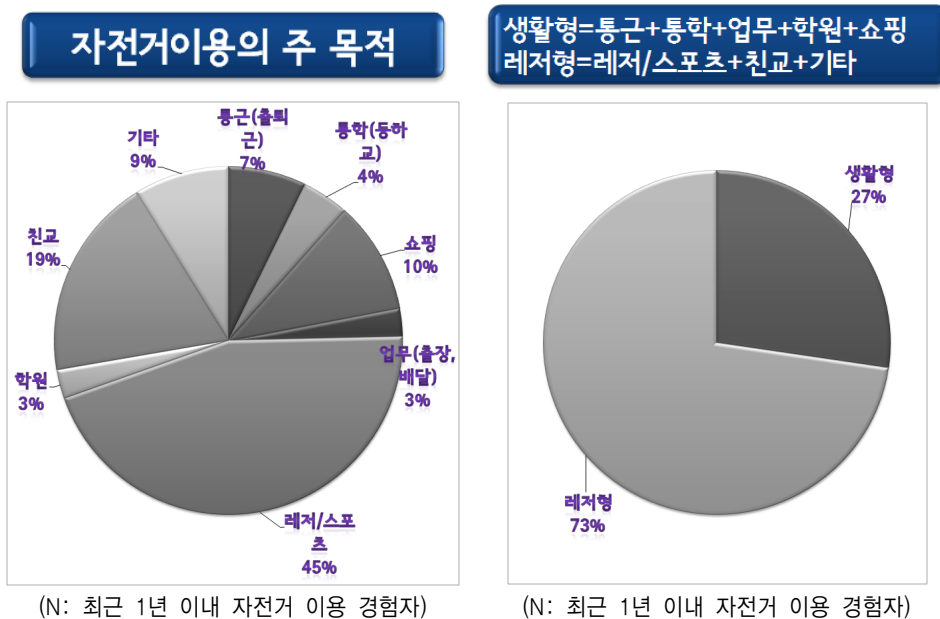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강/하천 주변	인근 공원	주변 산	원거리 지역	기타	레저용 이용안함
전국	23.93	34.82	2.90	5.17	15.15	18.03
서울	39.52	27.83	1.60	3.12	17.96	9.97
부산	25.04	29.18	3.72	6.46	16.68	18.92
대구	21.44	29.75	2.86	6.15	14.37	25.42
인천	3.96	64.56	2.02	7.16	18.78	3.52
광주	12.70	42.17	1.59	14.64	6.75	22.15
대전	25.13	44.73	1.58	4.87	11.63	12.05
울산	37.02	29.91	3.17	3.52	13.68	12.69
경기	21.62	47.50	2.85	5.20	14.61	8.21
강원	32.67	24.79	3.36	3.27	14.71	21.21
충북	18.77	46.28	2.24	6.78	12.33	13.60
충남	10.25	32.18	6.31	7.02	15.98	28.26
전북	19.56	21.68	2.22	2.81	19.70	34.03
전남	16.29	29.72	4.09	6.04	13.61	30.26
경북	23.02	26.40	3.38	4.24	13.97	29.00
경남	18.63	28.66	3.49	6.02	13.71	29.49
제주	28.57	48.64	6.80	2.38	13.61	-

주: 각 시군구별 레저용 자전거 이용장소는 【부록】의 〈표 11〉 참조.

3.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 최근 1년 동안 자전거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 목적은 레저 및 스포츠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4.9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교(18.89%), 쇼핑(10.43%) 순으로 나타났음
 - 출퇴근, 즉 통근 목적으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11.47%)과 자전거 출퇴근 수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가 속해 있는 경남(35.31%)이고, 레저 및 스포츠 목적인 경우는 인천(62.33%)임
- 출퇴근과 업무, 등하교와 학원 및 쇼핑 목적을 생활형으로, 그리고 레저/스포츠와 친교 및 기타 목적을 레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생활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27.34%이고 레저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72.65%로 집계됨
 - 지자체별로는 생활형의 경우 경남(35.31%)이, 레저형의 경우 제주도(82.03%)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음



〈그림 4-9〉 전국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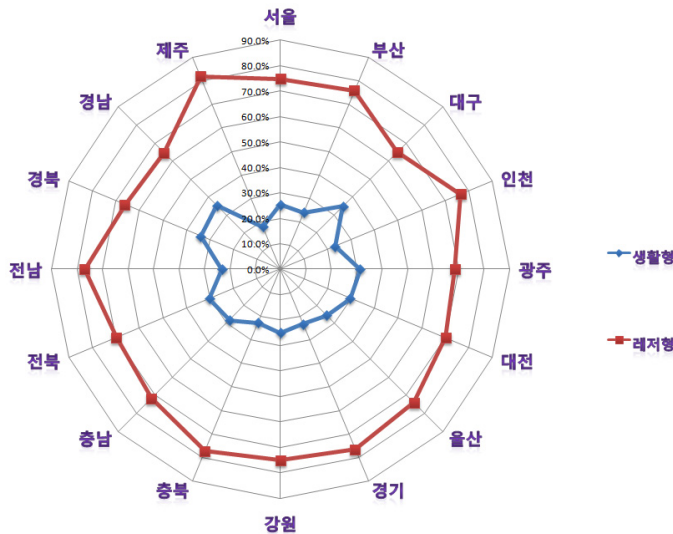
〈표 4-9〉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단위: %)

구분	통근 (출퇴근)	통학 (등하교)	쇼핑	업무 (출장, 배달)	레저/ 스포츠	학원	친교	기타	생활형	레저형
전국	7.25	4.35	10.43	2.63	44.96	2.69	18.89	8.81	27.34	72.66
서울	6.08	4.54	10.02	1.60	52.97	3.12	10.88	10.79	25.35	74.65
부산	7.28	2.30	9.28	4.11	46.30	1.04	22.71	6.98	24.01	75.99
대구	8.30	3.73	15.81	3.02	34.41	4.02	20.94	9.77	34.88	65.12
인천	8.26	4.23	6.69	1.08	62.33	2.96	11.62	2.83	23.21	76.79
광주	8.54	2.88	12.14	4.91	40.90	2.93	23.50	4.19	31.41	68.59
대전	8.70	4.80	11.44	1.47	48.92	3.34	15.51	5.82	29.75	70.25
울산	11.47	2.89	6.34	2.11	52.44	2.87	17.80	4.07	25.69	74.31
경기	6.37	3.80	8.41	1.46	56.14	3.23	14.88	5.72	23.26	76.74
강원	7.94	5.21	7.66	2.69	45.85	1.42	22.01	7.21	24.93	75.07
충북	4.57	5.14	8.79	2.65	47.73	1.49	23.12	6.50	22.64	77.36
충남	6.43	4.65	12.21	3.27	34.16	1.56	29.08	8.62	28.14	71.86
전북	6.03	6.73	10.43	3.86	23.06	3.05	29.31	17.53	30.10	69.90
전남	5.50	4.96	6.28	4.43	35.93	1.84	23.23	17.84	23.01	76.99
경북	7.84	4.61	14.78	4.15	31.48	2.44	24.44	10.26	33.82	66.18
경남	11.01	4.87	13.66	3.50	33.42	2.27	21.24	10.02	35.31	64.69
제주	4.41	8.14	4.41	-	25.42	1.02	40.00	16.61	17.97	82.03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주: 각 시군구별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은 【부록】의 〈표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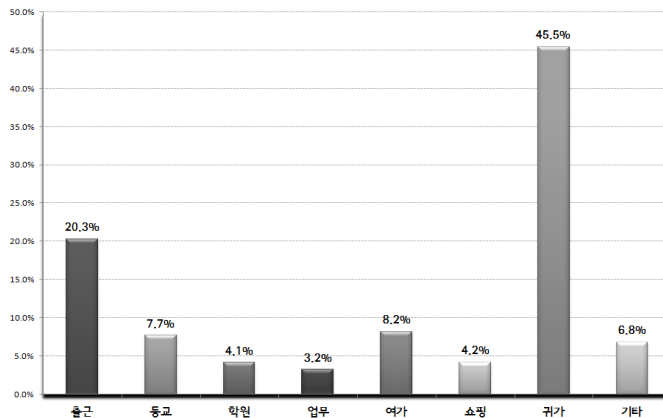


〈그림 4-10〉 시도별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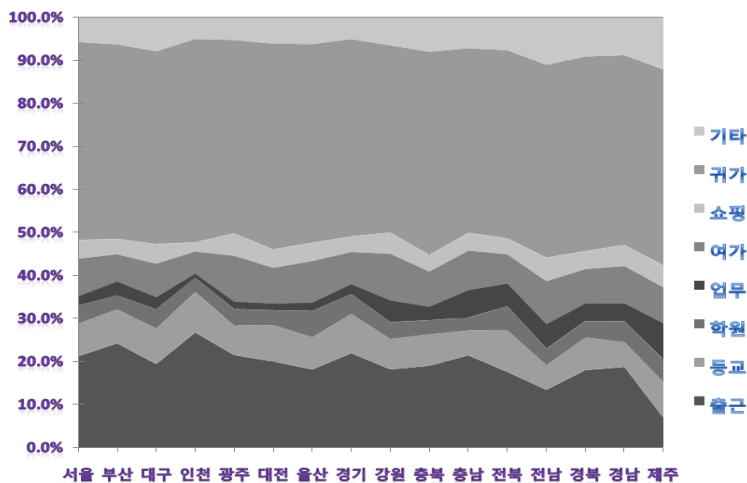
제3절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분석결과

1.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의 통행특성 분석결과, 전체 교통수단의 통행목적 비율은 귀가통행이 4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출근통행(20.27), 여가통행(8.18%), 등교통행(7.71%)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4-11〉 전국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그림 4-12〉 시도별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비교

- 시도별 통행목적비율을 살펴보면,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추세는 비슷하나, 제주시의 출근목적통행 비율은 약 7%로 낮은 반면 기타목적통행 비율은 약 12%로 높게 나타남

〈표 4-10〉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단위: %)

구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전국	20.27	7.71	4.15	3.24	8.18	4.16	45.45	6.84
서울	21.22	7.53	4.20	2.21	8.72	4.33	46.08	5.71
부산	24.27	7.82	3.23	3.26	6.32	3.54	45.30	6.25
대구	19.39	8.24	4.46	2.86	7.78	4.52	44.88	7.87
인천	26.79	9.31	3.36	0.96	5.12	2.13	47.32	5.01
광주	21.50	6.83	3.82	1.75	10.65	5.21	44.99	5.25
대전	20.02	8.46	3.40	1.59	8.30	4.26	47.88	6.10
울산	18.15	7.46	6.11	1.95	9.67	4.23	46.23	6.18
경기	21.94	9.09	4.60	2.33	7.46	3.62	45.92	5.03
강원	18.17	7.05	3.89	5.09	10.80	4.97	43.54	6.49
충북	19.01	7.29	3.26	3.18	8.17	3.80	47.31	7.98
충남	21.43	5.76	2.96	6.40	9.19	4.15	42.94	7.16
전북	17.57	9.67	5.57	5.31	6.78	3.70	43.79	7.62
전남	13.39	5.78	3.76	5.79	9.95	5.43	44.87	11.02
경북	18.02	7.54	3.83	4.11	7.98	4.11	45.32	9.09
경남	18.73	5.77	4.81	4.23	8.65	4.88	44.15	8.79
제주	6.88	8.44	5.05	8.53	8.35	5.05	45.60	12.11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시군구별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은 【부록】의 〈표 13〉 참조.

- 제Ⅱ장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교통수단분담율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크게 서울시와 인천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와 지방의 5대 광역시 및 그 인접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광역권 가구통행실태조사(한국교통연구원, KOTI)를 들 수 있음
- 이들 연구는 2006년에 수행되었으며, 추가로 지방의 5대 광역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7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에 수단분담율 조사를 가구통행실태조사로 수행된 바 있음

○ 이들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통행목적비율을 본 연구와 비교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국의 통행목적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귀가목적통행의 경우 45.5%로 2009년 수행된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45.1%) 및 광역권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귀가목적통행 비율과 비슷하고, 수도권 귀가목적통행 비율(41.0%)보다 다소 높게 도출됨
- 그 밖에 2009년 수행된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는 등교와 학원목적통행 및 업무, 여가, 쇼핑목적통행의 경우 본 연구의 통행목적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남
- 한편 출근목적통행의 비율은 본 연구에서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의 10.9%와 수도권의 18.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11〉 통행목적비율 비교

(단위: %)

통행목적비율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본 연구(전국)		20.3	7.7	4.1	3.2	8.2	4.2	45.5	6.8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2006년) ¹⁾	서울시	16.4	7.8	4.3	10.5	5.7	4.3	41.5	9.6
	인천시	18.9	10.2	4.2	9.4	4.1	4.1	39.9	9.2
	경기도	19.2	9.9	5.0	10.0	4.4	4.1	37.5	9.9
	수도권	18.6	9.2	4.8	10.8	5.3	0.0	41.0	10.2
광역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2006년) ²⁾	대전광역권	14.8	12.4	6.8	5.2	4.9	2.8	44.2	9.0
	광주광역권	13.0	12.1	7.6	5.8	5.0	3.1	43.7	9.7
	대구광역권	14.3	12.5	8.0	4.9	4.8	2.9	44.3	8.3
	부산울산광역권	16.2	12.2	8.2	2.9	4.5	2.7	45.6	7.8
	전주대도시권	12.7	11.9	7.2	5.0	5.9	2.9	43.7	10.7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 (2009년) ²⁾	77개 시·군	10.9	7.8	3.4	4.8	9.9	5.6	45.1	12.4

주: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에서 수행한 조사로, 수도권 교통본부(20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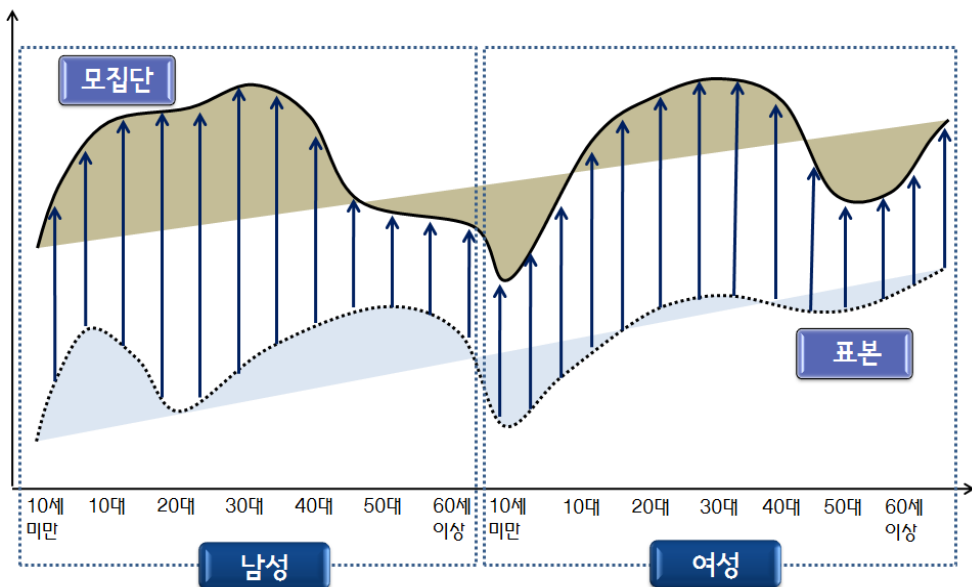
2)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수행한 조사로, 한국교통연구원(2007, 2010) 참조.

2.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전체 통행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평균적으로 3.20%에 불과한 유효표본을 이용하여 전국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가구원의 성별·연령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전수화(expansion)한 결과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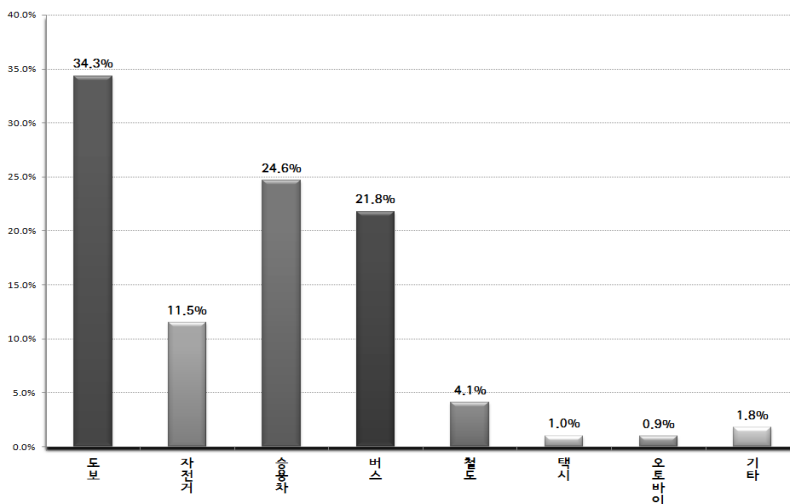
- 전수화란 표본자료에 적정한 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전체 모집단의 특성과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는 일련의 과정임. 전수화계수는 일반적으로 각 지역별로 사회경제지표별로 세분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사회경제지표별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산출하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은 좋아지지만 카테고리가 너무 세분화될 경우 표본자체가 없는 카테고리(zero category)가 발생할 수 있어 과소추정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적정한 크기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야 함
-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의 수단분담율을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비율에 맞게 보정



〈그림 4-13〉 자전거 수단분담율 전수화(expansion) 과정

○ 전수화(expansion) 과정을 거친 후, 전체 통행의 전국 자전거 교통 수단분담율은 11.5%로 나타났다

- 수단분담율은 상대적인 비율에 해당하므로 분모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 교통수단은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상대적인 자전거 교통 수단분담율을 산정하였음



〈그림 4-14〉 전국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지역별 자전거 교통 수단분담율은 강원도가 20.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천시(17.57%), 충남(16.37), 경북(14.0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시(4.26%), 광주시(5.05%)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제주도의 경우 표본율이 너무 낮아 표본자체가 없는 카테고리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전수화를 수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수화를 하지 않은 교통 수단분담율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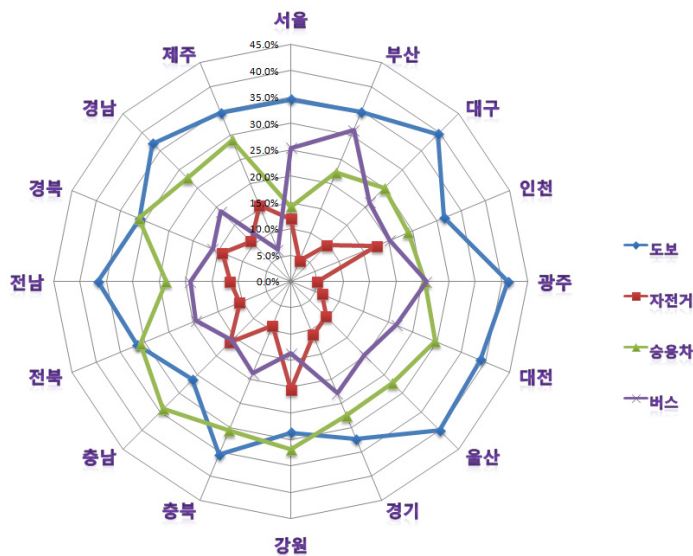
〈표 4-12〉 교통수단분담율(Expansion 후)

(단위: %)

구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전국	34.33	11.48	24.65	21.76	4.07	1.00	0.95	1.77
서울	34.47	11.85	14.22	25.30	12.10	0.79	0.64	0.64
부산	34.75	4.26	22.33	31.04	4.05	1.17	0.91	1.48
대구	39.50	9.64	25.06	21.14	1.77	0.83	0.69	1.37
인천	31.54	17.57	24.08	20.25	4.82	0.53	0.24	0.97
광주	41.21	5.05	25.37	25.71	0.43	1.02	0.32	0.87
대전	38.94	6.40	29.58	21.67	1.26	0.85	0.29	1.01
울산	39.96	9.39	27.21	19.77	0.07	1.03	1.88	0.70
경기	32.36	10.96	27.58	22.98	4.11	0.71	0.39	0.92
강원	28.68	20.52	31.85	13.67	0.10	1.81	1.04	2.34
충북	35.57	9.16	30.59	18.85	0.07	1.86	1.42	2.48
충남	26.28	16.37	34.14	15.86	0.45	1.04	2.22	3.64
전북	31.55	10.56	30.84	19.53	0.02	1.81	1.53	4.15
전남	36.51	11.58	23.63	19.07	0.05	1.86	2.02	5.27
경북	30.94	14.07	31.17	16.10	0.22	0.99	2.28	4.23
경남	36.92	10.73	27.73	18.75	0.12	1.19	1.77	2.80
제주 ¹⁾	35.59	15.60	28.99	6.51	0.09	0.55	0.73	12.94

주: 1) 제주도의 경우 표본율이 너무 낮아 전수화 과정 상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수화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음.

2) 각 시군구별 교통 수단분담율은 【부록】의 〈표 14〉 참조.



〈그림 4-15〉 시도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비교

-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을 2006년 수행된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및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SDI에서 수행된 2006년의 수도권 자전거 수단분담율은 본 연구와 같이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전수화 과정을 거친 후 도출되었음. 반면 KOTI에서 수행된 2009년의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은 표본을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인구비율에 맞추어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을 한 다음 같은 계층에서는 랜덤추출(random sampling)을 하는 방식으로 도출됨
-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과업에서 도출된 자전거 수단분담율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도출되었음
- 자전거 수단분담율이 가장 높은 상주시의 자전거 분담율은 46.06%로 매우 높지만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에서는 12.5%로 나타났음. 반면 여수시와 목포시의 경우 비슷하게 도출됨

〈표 4-13〉 수단분담율 비교

(단위: %)

수단분담율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오토 바이	기타
본 연구(전국)		34.3	11.5	24.6	21.8	4.1	1.0	0.9	1.8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2006년) ¹⁾	서울시	19.7	1.3	22.6	26.6	19.0	6.4	1.5	2.9
	인천시	23.4	1.0	33.3	23.0	5.5	6.6	1.3	5.9
	경기도	23.7	1.4	38.0	21.6	4.5	4.4	1.8	4.5
	수도권	21.5	1.3	30.2	24.3	11.6	5.6	1.6	4.1
77개 시·군 수단분담율조사 (2009년) ²⁾	77개 시·군	34.2	2.5	39.8	16.0	0.1	1.5	1.8	4.1

주: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에서 수행한 조사로, 수도권 교통본부(2007) 참조.

2)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수행한 조사로, 한국교통연구원(2010) 참조.

- KOTI의 2009년 77개 시·군 수단분담율 조사는 5분 이상 이동한 경우를, 본 연구는 10분 이상 이동한 경우만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5~10분에 해당하는 도보 통행의 비율이 본 연구의 경우 누락되어 있음

○ SDI와 KOTI의 경우 교통존(SDI의 경우 행정동 단위, KOTI의 경우 행정구 단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주소지 단위의 분담율과는 다소 상이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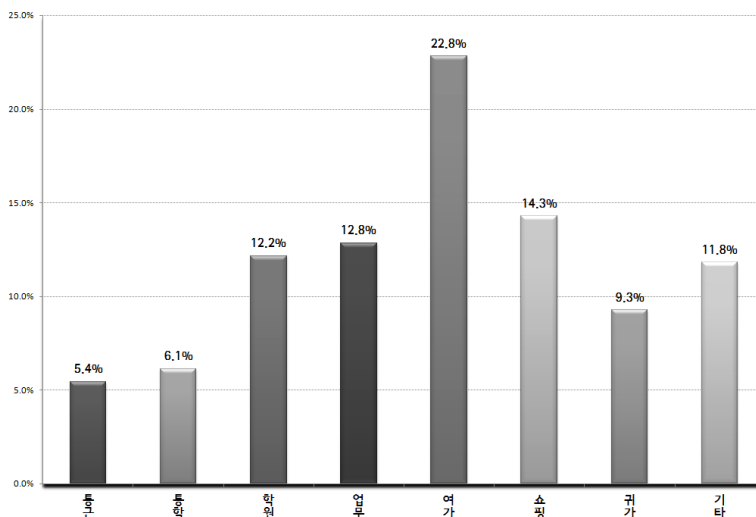
○ 또한 SDI의 경우 특정 날짜를 정하여 3일 동안 조사를 수행하였고, KOTI의 경우 11월 말~12월 말까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계절적 편차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통행목적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 통행목적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여가목적통행이 22.82%으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쇼핑목적(14.27%)과 업무목적(12.83%)으로 분석되었음

○ 반면 대표적인 생활형이라 할 수 있는 통근·통학목적의 경우 29개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5.62%만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근·통학목적의 자전거 수단분담율 1.2%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에 해당함



〈그림 4-16〉 전국 통행목적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

〈표 4-14〉 통행목적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단위: %)

구분	통근	통학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통근·통학
전국	5.44	6.11	12.16	12.83	22.82	14.27	9.25	11.80	5.62
서울	5.20	7.64	15.36	12.37	23.52	13.07	9.42	9.29	5.84
부산	3.05	1.67	3.69	12.14	14.57	7.80	4.10	4.74	2.72
대구	6.86	5.81	15.65	13.67	25.66	17.19	10.32	18.24	6.55
인천	4.47	3.14	8.84	12.11	25.05	13.29	6.45	6.42	4.13
광주	4.05	3.48	8.08	11.36	11.03	4.61	6.16	7.26	3.91
대전	4.46	3.92	8.74	4.87	13.15	8.25	6.12	3.80	4.30
울산	8.65	4.19	10.50	18.13	18.69	8.54	9.65	7.26	7.35
경기	5.34	4.70	14.77	10.20	24.74	16.76	8.66	10.70	5.16
강원	9.26	12.30	14.99	18.22	37.82	20.83	16.43	15.33	10.11
충북	4.26	7.34	8.81	10.35	16.96	12.35	7.95	9.33	5.12
충남	5.72	13.35	16.32	14.97	34.05	22.31	12.09	15.17	7.34
전북	5.91	7.84	8.32	13.86	24.05	15.68	10.51	18.89	6.60
전남	4.95	6.86	10.87	12.87	23.51	11.31	10.74	13.22	5.53
경북	6.42	8.27	12.23	15.70	26.65	22.93	12.64	16.36	6.97
경남	7.41	8.03	10.67	11.64	18.96	14.46	10.83	14.14	7.56
제주	8.00	13.04	18.18	3.23	57.14	3.64	14.69	9.09	1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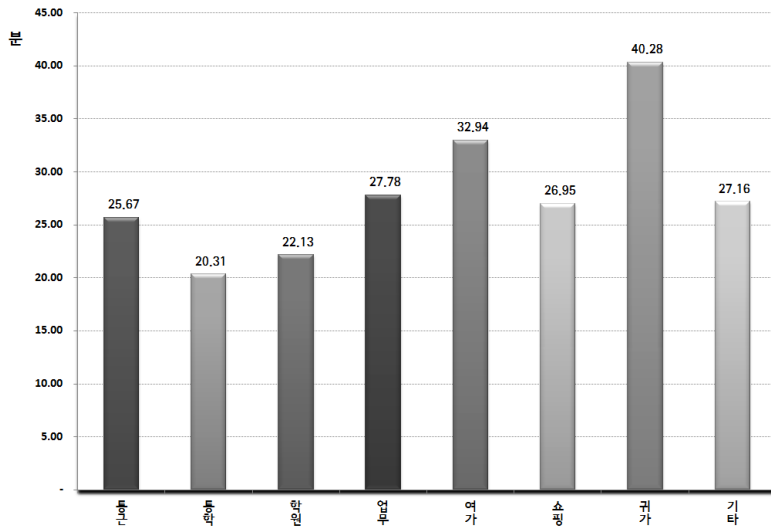
주: 1) 제주도의 경우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각 시군구별 통행목적별 자전거 수단분담율은 【부록】의 〈표 15〉 참조.

□ 자전거 평균통행시간

○ 전국의 자전거 평균통행시간은 27.33분으로 분석되었음

- 출근과 등교통행의 경우 각각 자전거를 평균적으로 25.67분과 20.31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통행에는 32.94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전거 평균통행시간이 30.70분으로 가장 길고, 제주도가 17.06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 출근목적통행의 자전거 평균통행시간 역시 서울의 평균통행시간이 29.44분으로 가장 긴 반면 경북의 평균통행시간이 20.86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4-17〉 전국 자전거 평균통행시간(분)

〈표 4-15〉 통행목적별 자전거 평균통행시간

(단위: 분)

구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평균
전국	25.67	20.31	22.13	27.78	32.94	26.95	40.28	27.16	27.33
서울	29.44	20.38	23.73	31.04	38.25	26.18	41.25	30.12	30.70
부산	26.08	24.65	26.21	29.16	35.85	31.51	50.83	30.58	30.02
대구	25.98	22.05	25.50	35.39	32.45	29.22	37.86	27.75	28.16
인천	27.48	20.28	22.46	24.63	33.79	28.78	62.86	26.85	28.33
광주	26.26	22.19	21.84	21.69	32.74	26.23	34.00	27.06	27.47
대전	27.08	21.76	18.28	36.11	31.84	23.67	25.00	27.21	26.96
울산	28.99	21.01	21.35	27.98	26.96	29.63	30.00	30.42	27.46
경기	28.68	21.28	22.24	31.43	34.34	28.46	37.34	29.57	29.24
강원	22.36	18.52	19.64	43.96	32.25	23.52	26.83	26.26	26.89
충북	21.63	20.10	20.06	23.42	31.64	34.98	38.96	26.59	26.00
충남	25.56	20.31	21.53	24.26	29.43	29.16	24.06	26.27	26.11
전북	21.77	19.67	19.62	29.77	31.12	25.08	55.00	28.16	25.52
전남	24.11	19.87	22.26	23.70	29.73	26.07	72.86	28.21	25.88
경북	20.86	18.65	19.38	22.55	26.44	26.26	44.69	23.06	23.05
경남	20.96	19.29	21.00	29.61	31.03	23.81	38.18	25.77	24.65
제주	23.33	11.17	20.00	25.00	16.43	20.00	30.00	18.33	17.06

제4절 자전거분담율의 영향요인 분석

1. 분석방법론

□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 Plaut(2005), Zahran 외(2008), Heinen 외(2010) 등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 기후와 날씨
- 계절
- 지형과 경관

○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 도시환경(Civic Environment): 도시형태, 인구밀도, 토지이용특성 등
-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 안전시설 등
- 자전거 관련시설: 주차시설, 의류보관시설, 샤워시설 등

○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Factors)

- 성별, 나이, 소득
- 고용형태
- 자동차 보유대수 등

○ 기타 다른 요인

- 이용자의 체력이나 건강상태
- 태도와 사회적 규범, 습관
- 심리적 요인(Psychological Factors)
- 통행비용과 통행시간

□ 본 연구에서 산출된 자전거 분담율을 이용한 결정요인 분석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동력 교통수단(Non-motorized mode) 이용자에 대한 실증적인 행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승용차, 철도, 버스 등의 동력교통수단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론과 차별화되는 분석방법을 적용
 - 또한 날씨와 기후, 자전거 이용자의 체력 등 이용자의 행태와 더불어 해당 도시의 자연환경과 토지이용특성, 건조환경 등을 반영한 모형을 적용할 필요성 있음
- 이에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200개 지자체별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및 이용자 행태분석을 별도로 수행함

□ 행태분석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인 로짓모형

- 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행태 특성을 파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론은 통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로짓모형(logit model), 프로빗모형(probit model)과 같은 수단선택모형(이산선택모형)임. 이 중에서 로짓모형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로짓모형에서 개인 n 이 J 개의 선택 대안 중 대안 i 를 선택할 확률, $P_n(i)$ 는 <식 1>과 같이 계산됨

$$\begin{aligned}
 P_n(i) &= \text{Prob}(U_{in} \geq U_{jn}, \forall j \in C_n) \\
 &= \frac{e^{V_{in}}}{\sum_{j=1}^J e^{V_{jn}}}
 \end{aligned}
 \quad \text{<식 1>}$$

- 로짓모형의 설명변수는 크게 수단특성상수, 수단고유변수, 공통변수, 대안특유의 사회·경제적 변수 등으로 분류
-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는 자료 검수를 한 다음에도 1,290,686인의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수단선택모형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 대안적으로 종속변수를 제한하는 토빗회귀분석 이용

- 토빗회귀분석은 종속변수(분담율)를 0과 1사이의 값을 갖도록 제한하여, 위에서 제시한 자전거 수단분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변수로 회귀시키는 방법임
 - 이때 200개 지방자치단체를 횡단면으로 하여 자료를 구축하되, 제주도의 경우 유효표본율이 너무 작아 제외하였음. 따라서 최종 관찰점 수는 198개인 횡단면 자료분석이라 할 수 있음
- 보통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대신에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전거 수단분담율이 도보, 승용차, 대중교통 등 여러 수단 중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분담율, 즉 비율을 의미하므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임
- 토빗회귀분석모형은 <식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y_i^* = x_i' \beta + \sigma \epsilon \quad \text{<식 2>}$$

여기서 σ : scale parameter(상수)

- 이때 종속변수 y_i 는 <식 3>과 같이 제한됨

$$y_i = \begin{cases} \underline{c}_i & \text{if } y_i^* \leq \underline{c}_i \\ y_i^* & \text{if } \underline{c}_i < y_i^* < \bar{c}_i \\ \bar{c}_i & \text{if } \bar{c}_i \leq y_i^* \end{cases} \quad \text{<식 3>}$$

본 연구에서, $\underline{c}_i=0$, $\bar{c}_i=1$ 로 고정됨

- 본 연구에서 <식 2>의 오차항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가진다고 가정하였으며, E-views 프로그램의 Censored-Truncated Regression을 이용하여 추정함
- 또한 <식 2>의 모수는 <식 4>의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추정됨

$$l(\beta, \sigma) = \sum_{y_i = c_i} \ln F((c_i - x_i' \beta) / \sigma) + \sum_{c_i < y_i < \bar{c}_i} \ln f((y_i - x_i' \beta) / \sigma) + \sum_{y_i = \bar{c}_i} \ln (1 - F((\bar{c}_i - x_i' \beta) / \sigma)) \quad \text{<식 4>}$$

여기서 f : ϵ 의 밀도함수

F : ϵ 의 누적분포함수

2. 분석결과

□ 자전거분담율의 결정요인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

○ 본 연구에서 자전거분담율의 결정요인 분석에 이용되는 설명변수는 건조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소, 제도문화적 요소 및 도시형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음

〈표 4-16〉 자전거분담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설정

구분	결정요인
건조환경	자전거 인프라와 관련된 도로연장과 자전거보관대수,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실적, 공공자전거대수
사회경제적 요소	자전거 보유율, 성비, 인당 자동차등록대수
제도문화적 요소	조례제정여부
도시형태적 요소	인구밀도, 도로밀도

○ 건조환경의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써, 자전거 인프라 및 관련시설과 관련된 변수임

〈표 4-17〉 시도별 자전거 건조환경 자료

(단위: km, 대, 개소)

구분	자전거도로연장				자전거 보관대수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개소	공공자전거 대수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 전용차로	합계			
전국	1,427.9	9,770.0	189.1	11,387.1	470,829	126,992	16,229
서울	139.9	622.9	1.6	764.4	103,000	5,129	3,566
부산	36.8	269.0	0.5	306.2	7,603	991	680
대구	45.4	500.2	-	545.6	27,398	8,446	108
인천	97.0	354.3	-	451.3	3,759	991	-
광주	58.3	415.5	-	473.8	11,348	19,512	1,480
대전	70.7	423.7	2.8	497.2	35,896	15,207	1,200
울산	35.3	177.5	-	212.9	5,204	1,867	50
경기	287.8	2,260.2	38.6	2,586.7	85,806	11,346	2,313
강원	89.0	679.6	12.6	781.2	24,103	11,587	1,752
충북	82.1	610.6	4.6	697.2	17,896	7,967	45
충남	76.8	467.3	50.8	594.9	16,142	3,033	680
전북	49.1	587.1	16.3	652.4	37,967	10,102	38
전남	67.0	610.4	12.1	689.4	12,474	7,536	1,400
경북	108.7	601.6	33.1	743.4	31,165	6,562	220
경남	183.9	538.7	16.2	738.8	40,521	15,594	2,697
제주	-	651.6	-	651.6	10,547	1,121	-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09년말 기준)

- 자전거도로연장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연장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및 총 자전거 도로연장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음
- 자전거 보관대수는 대중교통주변과 학교, 도서관 주변 그리고 공공기관 주변의 보관대수를 합친 대수를 이용함
- 자전거 안전시설의 경우 횡단보도턱, 안전표지판 및 볼라드, 그리고 기타시설로 구분됨
-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대수는 지자체별 무인자전거와 유인자전거의 합계를 의미함

- 사회경제적 요소의 경우 <부록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지자체별 자전거 보유율과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시되어 있는 성비, 즉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기타 인당 자동차등록대수를 활용하였음
- 지자체별 조례제정여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www.elis.go.kr)을 검색하여 구축하였는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 그렇지 못한 경우 0의 값을 부여함
- 마지막으로 도시형태 및 토지이용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밀도와 도로밀도를 활용하였음
 - 행정구역 면적은 각 시도통계연보를, 그리고 도로면적은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하여 발표하는 토지지목별 지적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총 토지지목면적에서 차지하는 도로면적 비율을 구하였음

□ 자전거분담율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 198개 지자체를 횡단면으로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토빗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먼저 <모형 1>은 자전거 보유율,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연장, 성비 및 조례제정여부를 198개 지자체별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에 OLS로 회귀시킨 결과에 해당함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 보유율과 성비를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가 유의하지 않음
 - 또한 OLS 기법은 오차항의 평균이 0이고, 동분산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모형 1>의 경우 대표적인 이분산성 검정법인 White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H_0 : \sigma_1^2 = \sigma_2^2 = \dots = \sigma_n^2$)을 기각하였으므로 <모형 1>에 제시되어 있는 변수의 계수추정치는 일치추정량이라 볼 수 없음. 이에 <모형 1>을 채택하지 않고, 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표 4-18〉 토빗회귀모형의 수정 결정계수와 모수 추정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추정방법	OLS	Tobit	Tobit	Tobit	Tobit
상수	0.443 (1.629)	0.443 (1.651)*	-0.070 (-2.882)***	0.460 (1.700)*	0.437 (1.633)
자전거 보유율	0.763 (9.464)***	0.764 (9.589)***	0.784 (9.754)***	0.751 (8.945)***	0.767 (9.627)***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연장	-0.0002 (-1.749)	-0.0002 (-1.772)*	-0.0002 (-1.611)	-0.0002 (-1.773)*	-0.0001 (-0.646)
성비(남성/여성)	-1.050 (-1.918)*	-1.050 (-1.944)*		-1.117 (-2.003)**	-1.038 (-1.926)*
조례제정여부	0.026 (1.640)	0.026 (-1.662)*		0.027 (1.720)*	0.026 (1.677)*
자전거 전용도로연장			-0.0004 (-0.652)		
인당 자동차등록대수				0.048 (0.480)	
자전거 보관대수					-0.000003 (-1.132)
자전거 안전시설개소					-0.000002 (-0.234)
공공자전거대수					0.00001 (0.392)
결정계수(R^2)	0.356	0.357	0.340	0.357	0.361
수정결정계수(R^2)	0.342	0.339	0.326	0.337	0.333

주: 괄호 안은 OLS의 경우 t-통계량을, 토빗회귀분석의 경우 z-통계량을 의미하고, ***는 99%, **는 95%, *는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모형 2>의 경우 <모형 1>에서 제시한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해당함

- 자전거 분담율의 경우 99% 수준에서 유의하고, 상수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연장 및 성비, 그리고 조례제정여부는 9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결정계수 및 수정결정계수 값이 다소 낮게 추정되었음. 이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각각의 관찰점이 도시형태나 토지이용특성 및 기후 등이 상당히 이질적(heterogeneous)이기 때문

임. 이는 추후 보다 정교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횡단면자료의 이질성 문제를 해소시킨다면 보다 많은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적절한 모형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모형 2>에서 먼저 자전거 인프라와 관련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연장의 모수 추정치는 음의 부호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연장의 모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았음

- 자전거 인프라와 관련되는 변수는 자전거 전용도로연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연장, 자전거 전용차로연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자전거도로연장보다는 이를 구분하여 이용하는 것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연장의 모수 추정치는 음의 부호를 띄고 있으므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주행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행자와의 상충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연장이 긴 지자체의 자전거 분담율이 더 낮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도로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거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공간을 혼합시키는 정책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자전거 이용율을 끌어올리는 보다 합당한 정책으로 판단됨

○ 남성 대 여성의 비율 변수에 대한 모수 추정치 역시 (-) 부호를 가지고 있어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은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 <표 4-9>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비율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자들은 주로 생활형보다는 레저용(72.7%)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회적 관행상 승용차의 크기나 가격으로 지위를 평가하는 배금주의 의식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승용차 이용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사료됨

○ 또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여부는 자전거 교통수단분담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자체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고유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추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경우 정책의지가 높아 부담율이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모형 4>와 <모형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기타 설명변수는 설명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유의하지 않게 도출됨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자전거 보급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과 관련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결측치(missing data)가 198개 지자체별로 상당히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 자전거 안전시설의 경우에도 횡단보도턱이나 안전표지판 및 블라드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으나 블라드 등의 안전시설은 불법주정차를 방지한다는 측면은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에 따른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됨
 - 추후 자전거 안전과 관련된 변수, 또는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등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변수를 이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제 5 장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개선방안

제2절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제5장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개선방안

1. 현행 조사의 문제

□ 조사방법의 문제

- 본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준비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조사 매뉴얼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원을 관리·운용하여 설문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매뉴얼 상에서 표본조사는 통계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각 읍면동 내에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마을(통)을 집락표출하고, 각 마을 세대 중 무작위표본을 추출(random sampling)하여 표본을 구성하도록 함
 - 조사원은 희망근로 대상자를 활용
- 전문조사기관이 아닌 담당 공무원과 희망근로 대상자에 의해 수행된 조사결과, 당초 기획된 바대로 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통계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읍면동 표본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읍면동내에서는 무작위 표본 추출하도록 하였으나, 성별 및 연령별 편향이 심함
- 전 조사 프로세스를 담당 공무원 1인의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은 업무과중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움
 - 담당 공무원이 희망근로 대상자인 조사원에 대한 교육 전반을 담당하며, 읍면동명, 조사가 수행될 통(리)명 등 표본대상 목록을 확보하여 집락표본추출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조사부수를 검수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전 과정을 통제

☐ 조사자료 검수 및 입력의 신뢰성 미비

-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가 불충할 경우 현장 검수를 통해 재배포·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현장 검수 활동 미진
 - 주요 항목이 누락되어 유효 표본이 되지 못한 조사표를 그대로 자료로 입력한 경우가 다수 존재
- 특히 본 조사결과가 향후 자치단체 자전거 정책 지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담당 공무원에 의해 신뢰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조사부수를 채우기 위해 설문조사 입력과정에서 동일한 조사지를 중복 입력
 - 자전거 이용이 낮아 보이는 설문지가 설문지 코딩과정에서 제거될 우려도 있음

☐ 조사기간의 문제

- 본 조사의 조사기간은 2009년 6월 1일 ~ 11월 30일로 약 6개월간 진행
 - 본 조사는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사 전년의 하루 동안의 통행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여름 응답자와 가을 응답자의 자전거 이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조사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응답시기의 계절적 차이로 인한 오차 발생 가능성 내포

☐ 조사내용의 불충

- 본 조사는 자전거 기초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이용경험 등 기초적인 자전거 이용특성과 통행특성을 주 내용을 구성
 - 기초통계로서 본 조사내용의 중요도가 높긴 하지만, 자전거 통계의 구축 목적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조사내용이 보강되어야 함
 - 현재의 조사내용은 개인의 자전거 통행특성 추적(1차~12차)에 과다한 분량이 할당되어 있음

2.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개선방안

☐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조사수행

- 담당 공무원과 희망근로 대상자에 의해 수행되는 자전거 이용실태조사는 신뢰성 있는 자전거 통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보다 신뢰성 있는 자전거 이용실태조사가 추진되어야 함
 -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실시되는 자전거 이용조사는 통근·통학 목적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에 국한되어 있으며, 조사내용량의 한계로 충분한 실태조사가 어려우므로, 자전거 이용에 초점을 맞춘 조사가 필요

☐ 조사방법 및 시기의 개선

- 인구밀도가 낮고 공간적 범위가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컴퓨터에 기반한 전화설문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 활용
 - CATI 조사는 서버에서 입력된 표본모집단 정보(전화번호부 리스트)를 이용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결과를 각 면접원들에게 배분
 - 면접원은 지정된 표본에 전화를 하고 인쇄된 조사표에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바로 입력
- 표본추출은 각 시군 내 인구특성(성별, 연령별, 인구통계비율), 지역분포(읍면동별 인구수)를 고려한 층화할당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사용
- 조사기간은 최대 한 달 이내로 설정해, 동일한 환경 내에서 자전거 이용실태조사가 수행되도록 함

☐ 조사내용의 개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전거 비이용을 유도하는 원인이 규명되어야 함
 -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이용 관련 개선사항

- 자전거 비이용자의 경우, 자전거 비이용 이유, 향후 자전거 이용 의향 및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대환경 등을 조사

○ 자전거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요 및 기존 시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

- 자전거 주차장 이용 여부 및 빈도, 자전거도로 이용 여부 및 문제점/개선사항
- 자전거 이용시 사고위험 여부, 사고경험 여부, 위험요소 및 자전거 사고원인과 사고장소,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

제2절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1. 자전거 이용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 장·단기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방향

○ 현재 자전거 이용율은 약 31%로 최근 1년간 자전거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훨씬 높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여전히 필요한 시점임

○ 한국의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레저(45%) 및 친교(19%)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쇼핑(10%)·통근(7%)·통학(4%)용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낮음

-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또한 건강증진(59%), 도보보다 편해서(20%) 등의 이유이지, 교통비 절약(4.8%), 시간 절약(6.4%), 타수단 부재(1.8%) 등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낮음

○ 따라서 한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한국적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정책적 목표로서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레저와 친교 등 여가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자전거가 교통대체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통근·통

학·쇼핑 등 생활형으로 이용하여, 자전거의 교통수단분담율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

□ 타겟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방향

- 한국의 자전거 이용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주 타겟층은 사회적 약자 계층인, 여성, 노인, 아동 및 청소년층이 될 것임
- 자전거 이용률과 인구사회적 변수와의 상관성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것은 한국의 경우, 서구와 달리 남성 비율이 더 많은 지역의 자전거 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위신과 체통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과 사회적 관행상 승용차의 크기나 가격으로 지위를 평가하는 배금주의 의식이 확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승용차 이용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이용자가 여성인 경우 자전거 이용률이 높다는 통계적 상관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지만, 한국의 자전거 문화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성별 주 타겟층을 여성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자전거 이용목적의 경우에서도 통근용 이용률은 7%에 불과하므로, 레저(건강)와 친교, 쇼핑 등에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전거 정책 마련이 먼저 필요함
- 한편, 한국의 자전거 이용 목적이 여가 및 건강증진 수단으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타겟화 될 수 있는 계층은 노년층과 청소년층임
 -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취학 아동 및 청소년층의 경우, 현재 4%에 불과한 통학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여가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방향

- 여가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은 스포츠 활동으로서 이용보다는 생활 속의 여가활동으로서 이용하는 특성을 보임

- 현재 25.5%로 나타난 자전거 보유율 가운데 보유 자전거의 종류는 생활형(77.4%)이 스포츠 레저용(7%)보다 훨씬 높기 때문임
- 보유 자전거의 평균가격도 약 16만원 선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선임
- 이는 여가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방향이 자전거를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자전거 동호회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여가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전국의 자전거 평균통행시간은 27.33분으로, 이 가운데 여가통행은 32.94분으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여가용 자전거 이용은 주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여가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 및 안전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여가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인근공원(34.82%)과 강 둔치나 하천 주변(23.93%)의 친자전거 환경 필요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방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의 대표적 사례는 자전거도로와 같은 자전거 인프라 건설,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 자전거 제공, 볼라드 등의 자전거 안전시설 등이 있음
- 자전거 환경 관련 변수와 자전거 이용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요소들이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인도에 선을 그어 자전거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도 확보될 수 없으므로 자전거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박진경·이준, 2010)

□ 지역 공동체 사업과 연계된 자전거 정책 수립

- 한국의 자전거 이용특성은 생활공간 주변에서, 여가수단으로서 이용하는 특성을 보임
 - 이는 남성이 통근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보다 높은 교통수단분담율을 보이고 있는 서구의 특성과는 다른 경향임
- 생활공간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정책 지원을 위하여, 자전거를 활용한 지역 공동체 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한편으로는 자전거 이용률 제고의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임
 - ※ 대구 삼덕동의 자전거 재활용 센터
 -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로 유명한 대구 삼덕동의 경우, 최근 자전거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 낡은 자전거를 재미있는 테마 자전거로 재활용하여, 자전거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을 주목시키고 자전거 이용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연결

□ 자전거 통계 구축 및 자전거 통합시스템 제공

-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단위의 자전거 정책들이 실현될 것임
 - 자치단체마다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실태들을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자전거 이용률, 교통수단분담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조사되어야 하는 필수 통계가 있음
 - 즉, 지자체별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자전거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함

-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른 자전거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시책이 자전거 통계시스템 구축임
 -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조사된 신뢰성 있는 자전거 통계 DB가 정기적으로 생성되어야 하며, 각 자치단체가 필요한 기초 통계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자전거통합시스템에는 자전거 기초통계 DB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전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축
 - 즉, 자전거 등록, 자전거 위험도로 신고 Hot-line, 자전거 교육 등의 콘텐츠 제공

□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정책적 지원이 법률로서 규정되어 실효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자전거 통계 구축 및 자전거통합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자전거 조례 제정 여부와 자전거 이용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조례가 지정된 경우, 자전거 이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자전거 조례 제정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자전거 조례 제정에 대한 독려와 지원이 필요할 것임

참 고 문 헌

- Heinen, E., van Wee, Bert., & Matt, Kees. (2010), Commuting by Bicycle: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Transport Reviews, vol. 30, no.1, pp. 59-96.
- Parkin, J., Wardman, M., & Page, M. (2008). Estimation of the Determinants of Bicycle Mode Share for the Journey to Work using Census Data, Transportation, vol. 35, No. 1, pp. 93-109.
- Plaut, P. O. (2005), Non-motorized Commuting in the US, Transportation Research D, vol. 10, no. 5, pp. 347-356.
- Zahran, S., Brody, S. D., Maghelal, P., Prelog, A., & Lacy, M. (2008), Cycling and Walking: Explain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ealthy Modes of Transportation in the United States, Transportation Research D, vol. 13, no. 7, pp. 462-470.
- 강기홍·이소영·오은주(2009), 『자전거제도 해외사례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명수·문대식·박상진(2008), “녹색교통환경 실현을 위한 자전거통행 활성화-대전시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1195-1198.
- 대전광역시(2009),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서』.
- 문대식·김명수·환현중(2007),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이용 실태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교통기술과 정책, 제4권 4호, pp. 97-119.
- 박동균·이상광(2002), “중소도시 자전거교통의 활성화 방안: 안동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15권 2호, pp. 99-126.
- 박병호·임민희·서미숙(2007), “일본사례를 통한 청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방안”, 건설기술논문집, 제26권 1호, pp. 59-72.
- 박진경·이 준(2010),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토빗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2권 3호, pp. 149-164.
- 백남철(2005), “복합교통류를 위한 도로 다이어트(Multi-Modal Road Diets)와 자전거 르네상스: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며”, 걷고싶은 도시, 제3/4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09~’13)』.
- 서울특별시(2009),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제3차 5개년계획』.

- 수도권 교통본부(2007),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 수도권 교통본부(2009), 『수도권 장래교통 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수정)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 신희철·이훈기,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구축방안: 도로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 이경환·김승남·안건혁(2008), “중소도시의 토지이용 및 도시형태와 자전거 통근통행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3권 5호, pp. 49-61.
- 이광훈(1997),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구상: 정비 5개년 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재영(2008),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역할”, 도시문제, pp. 46-60.
- 이재영(2008), 『SP자료를 이용한 자전거이용자의 행태 및 경로선택 특성분석』, 대전발전연구원.
- 인천광역시(2009),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최종보고서』.
- 임영태·류재영·홍정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 국토연구원.
- 임영태·백남철·이재영·박재현(2008),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 최병국·신도겸(2008),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2008), 『2007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 한국교통연구원(2010), 『2009년 국가교통수요조사 및 DB 구축사업』.
- 행정안전부(2009),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대책』, 자전거정책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자전거 정책추진계획』, 자전거정책과 보도자료.
- 홍석기·한영주·이신해(2009), 『시민의 자전거 생활문화공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2007),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
- 황경수(2001),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제14권 2호, pp. 227-253.
- 황정훈·정웅기, 『대구시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방안』, 대구경북연구원.



부 록

- 부록 1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분석결과
부록 2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 분석결과

〈부록 표 1〉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비율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0.7	5.2	5.9	7.7	8.4	8.3	11.8	48.2	0.6	4.1	5.9	7.2	9.5	9.3	15.1	51.8
		2.7	7.0	10.4	8.8	8.2	5.7	7.0	49.7	2.4	6.0	9.5	8.4	8.5	6.4	9.0	50.3
	중구	0.7	7.3	6.7	7.1	8.1	8.1	11.5	49.6	0.9	5.6	6.1	6.8	8.1	8.6	14.4	50.4
		2.6	5.9	10.0	10.3	8.3	6.0	6.8	50.0	2.6	5.4	9.7	9.2	8.0	6.5	8.7	50.0
	용산구	0.2	3.8	6.2	5.8	8.8	11.0	12.1	48.0	0.3	3.5	6.7	6.7	10.0	12.3	12.6	52.0
		2.8	5.8	9.1	10.1	8.0	5.6	7.0	48.4	2.6	5.4	10.1	9.7	8.2	6.5	9.0	51.6
	성동구	0.9	8.6	5.9	7.5	10.2	8.0	8.0	49.1	0.9	8.0	6.6	8.2	10.6	8.3	8.4	50.9
		3.1	6.2	10.1	10.9	8.3	5.6	5.6	49.9	3.0	5.8	9.8	10.1	8.2	6.2	7.1	50.1
	광진구	0.3	27.0	1.0	0.4	12.9	5.1	0.6	47.4	0.2	26.7	3.0	1.8	18.1	2.1	0.8	52.6
		3.1	7.0	10.4	10.0	8.5	5.6	4.7	49.4	2.9	6.4	11.4	9.6	8.9	5.8	5.6	50.6
	동대문구	0.2	2.8	3.8	9.3	11.3	10.4	14.3	52.2	0.1	1.9	3.5	10.1	8.9	9.4	13.8	47.8
		2.8	6.3	11.0	9.6	8.0	6.0	6.3	50.0	2.7	5.8	10.3	8.8	8.2	6.6	7.6	50.0
	종랑구	0.9	6.2	3.8	7.8	10.6	7.4	11.8	48.4	0.7	5.9	4.7	9.3	9.5	8.0	13.4	51.6
		3.2	7.2	9.2	9.4	9.0	6.2	5.3	49.5	2.9	6.7	9.3	9.2	9.4	6.4	6.6	50.5
	성북구	1.3	6.9	5.7	9.4	9.1	8.0	9.6	49.9	1.3	5.1	6.1	9.9	8.7	8.7	10.5	50.1
		3.0	6.5	9.9	9.9	7.9	5.9	6.3	49.4	2.8	6.0	9.7	9.4	8.4	6.6	7.7	50.6
	강북구	0.3	1.6	3.8	5.9	7.7	10.0	25.2	54.5	0.2	1.9	2.5	5.4	7.8	10.7	17.0	45.5
		3.1	6.4	9.2	9.6	8.1	6.1	6.7	49.2	2.8	5.9	9.0	9.2	8.6	7.2	8.1	50.8
	도봉구	1.0	8.5	6.0	6.1	9.4	10.3	8.3	49.7	0.7	7.7	6.9	6.6	10.8	10.3	7.3	50.3
		3.4	7.6	8.5	9.0	9.1	6.3	5.5	49.3	3.2	7.0	8.4	9.2	10.0	6.2	6.7	50.7
	노원구	2.1	8.7	5.2	8.8	10.5	7.3	7.1	49.8	2.1	7.2	5.8	10.3	10.3	6.9	7.6	50.2
		3.6	8.2	8.2	9.3	9.4	5.7	4.7	49.1	3.3	7.4	8.3	9.7	10.0	5.7	6.5	50.9
	서대문구	0.8	6.7	8.4	7.1	10.5	13.4	12.1	59.0	0.4	3.8	5.9	4.2	10.0	10.5	6.3	41.0
		2.9	6.5	9.9	9.7	7.9	5.4	6.4	48.7	2.7	6.1	10.4	9.3	8.3	6.3	8.1	51.3
	마포구	0.9	5.2	4.8	9.0	8.5	7.9	11.9	48.3	1.0	4.2	4.9	9.5	8.4	9.8	13.7	51.7
		3.0	5.8	9.8	11.2	7.6	5.2	5.9	48.5	2.8	5.6	11.3	10.5	7.9	6.1	7.4	51.5
	양천구	1.8	9.5	5.7	7.7	12.6	8.1	7.5	53.0	1.8	7.5	5.8	7.8	10.6	6.6	7.1	47.0
		3.7	8.7	8.3	8.6	10.1	6.2	4.2	49.8	3.3	7.8	8.2	9.1	10.5	5.8	5.4	50.2
	강서구	1.1	7.2	6.3	9.4	9.0	7.3	8.4	48.6	1.2	6.3	6.7	10.1	8.9	7.7	10.6	51.4
		3.2	7.3	9.3	9.8	8.8	6.2	4.6	49.2	2.9	6.7	9.7	9.5	9.6	6.4	6.0	50.8
	구로구	0.2	5.6	7.1	10.0	13.7	6.2	2.3	44.9	0.1	10.7	5.6	12.7	17.5	6.4	2.1	55.1
		3.2	6.5	9.8	10.5	8.5	6.6	5.3	50.3	3.0	5.9	9.6	9.6	8.7	6.8	6.1	49.7
	관악구	0.8	6.8	6.1	8.6	8.0	9.8	11.6	51.7	0.8	4.9	6.1	7.7	8.8	11.2	8.7	48.3
		2.7	5.6	13.1	11.8	7.0	5.6	5.3	51.0	2.5	5.1	12.4	9.3	7.3	6.4	6.0	49.0
	서초구	1.3	9.8	5.9	6.5	11.0	9.3	9.0	52.9	1.0	6.9	5.0	6.8	11.8	10.4	5.2	47.1
		2.8	7.1	9.7	8.9	8.3	6.7	5.1	48.7	2.5	6.5	10.7	9.3	9.4	7.3	5.6	51.3
	송파구	0.0	3.3	5.1	8.9	12.3	10.6	7.3	47.6	0.0	1.0	3.4	11.0	19.1	12.3	5.6	52.4
		3.2	7.8	9.4	9.0	9.0	6.5	4.3	49.1	2.9	7.2	10.0	9.2	10.0	6.4	5.2	50.9
	강동구	1.3	7.2	6.7	8.5	8.4	8.8	8.5	49.3	1.2	5.8	7.1	8.6	9.3	9.8	8.9	50.7
		3.1	8.3	9.5	8.6	9.4	6.7	4.3	49.9	2.9	7.0	9.2	8.6	10.5	6.5	5.3	50.1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합계	여성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0.6	5.2	5.6	9.1	7.7	7.3	12.1	47.5	0.4	5.2	6.0	8.2	7.8	8.5	16.5	52.5
		2.2	5.4	8.7	8.6	8.1	7.3	8.0	48.4	2.3	4.8	8.3	8.0	8.8	8.3	10.9	51.6
	서구	1.4	7.9	6.1	7.6	9.0	8.5	9.1	49.7	1.3	7.5	6.3	7.9	8.8	9.0	9.5	50.3
		2.7	6.4	8.9	7.6	8.1	7.2	7.8	48.7	2.4	5.7	8.2	7.1	8.8	8.1	11.0	51.3
	동구	0.5	5.1	7.1	8.2	7.3	10.8	10.5	49.4	0.4	4.2	8.4	6.6	8.0	12.4	10.6	50.6
		2.5	6.0	9.1	8.0	7.8	7.2	8.6	49.2	2.3	5.3	8.0	6.8	8.4	8.4	11.7	50.8
	영도구	0.8	7.3	7.7	6.1	8.3	9.7	8.7	48.5	0.8	6.4	6.9	6.0	9.8	11.1	10.6	51.5
		2.6	7.3	9.7	7.6	8.1	7.2	7.2	49.7	2.4	6.0	8.3	6.9	8.8	7.8	10.1	50.3
	부산진구	0.5	3.3	4.3	7.9	11.8	12.8	11.0	51.7	0.8	2.4	4.4	8.1	12.4	12.8	7.5	48.3
		2.8	7.2	9.4	8.3	8.5	6.7	6.3	49.2	2.5	6.4	9.3	8.1	9.2	7.2	8.3	50.8
	동래구	0.5	8.1	5.6	5.3	10.9	11.0	7.9	49.3	0.4	6.3	6.6	5.8	14.0	11.1	6.6	50.7
		2.9	8.0	8.8	7.0	8.9	7.5	6.0	49.2	2.5	6.7	8.3	7.6	10.5	7.8	7.4	50.8
	남구	1.0	6.4	5.9	7.6	7.9	8.6	11.4	48.8	0.9	5.3	6.3	8.1	8.6	10.3	11.8	51.2
		3.1	7.1	9.5	8.3	8.3	7.0	6.4	49.5	2.8	6.3	8.7	8.2	9.2	7.5	7.8	50.5
	북구	1.0	7.9	6.4	6.1	9.4	10.0	9.1	49.8	0.7	6.5	6.7	6.9	10.8	10.1	8.5	50.2
		3.9	8.7	8.0	8.4	10.2	6.2	4.3	49.7	3.4	7.6	7.6	9.4	10.3	5.9	6.1	50.3
	해운대구	0.6	5.9	9.8	6.3	9.3	11.7	6.8	50.4	0.4	4.5	9.2	5.3	11.9	10.4	7.9	49.6
		3.7	8.4	7.3	8.2	9.7	6.3	5.2	48.9	3.3	7.4	7.3	9.4	10.2	6.4	7.0	51.1
	사하구	0.4	3.8	4.8	8.7	10.6	10.7	10.2	49.3	0.4	3.6	6.0	9.5	10.9	10.5	9.8	50.7
		3.3	8.0	8.7	8.2	9.4	6.8	5.0	49.5	3.1	7.2	8.3	8.5	10.1	6.7	6.7	50.5
	금정구	0.1	1.7	8.1	8.6	10.3	8.0	14.4	51.1	0.1	0.7	8.3	9.0	6.5	8.9	15.3	48.9
		2.8	8.0	9.6	7.1	8.8	7.1	5.9	49.3	2.5	6.8	8.9	7.5	10.1	7.4	7.6	50.7
	강서구	0.3	4.9	4.0	4.9	5.9	8.2	16.7	45.0	0.3	3.5	5.4	3.5	6.5	8.7	27.1	55.0
		2.4	6.7	9.5	6.9	8.9	7.6	8.3	50.2	2.0	6.4	7.8	5.3	8.4	7.3	12.7	49.8
	연제구	0.9	6.6	6.3	7.4	7.2	9.6	12.4	50.4	0.6	4.9	6.0	7.2	8.0	11.2	11.7	49.6
		3.0	7.4	8.9	7.7	8.7	7.3	6.2	49.2	2.6	6.3	8.6	8.0	9.9	7.8	7.5	50.8
	수영구	0.9	6.9	5.4	9.3	8.2	8.5	10.3	49.5	0.9	5.1	5.9	9.6	8.9	9.1	11.0	50.5
		2.7	6.5	8.8	7.6	7.9	7.7	7.0	48.3	2.5	5.9	8.5	8.1	9.7	8.6	8.5	51.7
	사상구	0.9	7.0	5.4	9.3	9.6	8.0	8.9	49.1	1.1	5.7	6.4	10.9	8.4	8.8	9.5	50.9
		3.3	8.2	9.2	8.5	10.0	6.5	4.5	50.2	3.0	7.1	8.8	8.5	10.0	6.4	6.0	49.8
	기장군	1.6	6.9	4.3	8.2	9.5	6.7	12.1	49.3	1.4	5.8	4.2	9.8	7.9	7.9	13.7	50.7
		3.7	6.9	7.3	9.0	8.7	6.3	7.3	49.2	3.4	6.1	6.4	9.0	8.4	6.5	11.0	50.8
대구광역시	중구	0.7	4.7	9.2	7.3	10.0	10.4	8.9	51.2	0.6	4.2	5.4	8.5	10.8	10.0	9.3	48.8
		2.2	5.9	10.1	7.9	7.1	6.6	8.4	48.3	2.0	4.9	9.8	7.1	7.8	8.1	12.0	51.7
	동구	1.5	7.5	5.1	5.9	9.4	8.6	12.2	50.1	1.3	6.5	4.7	6.5	9.8	9.3	11.9	49.9
		3.4	7.2	8.9	9.1	8.3	6.3	6.5	49.9	3.0	5.8	8.3	8.8	8.7	6.9	8.7	50.1
	서구	0.4	3.6	3.3	4.7	9.1	14.3	13.4	48.9	0.2	2.0	2.0	5.5	13.6	16.7	11.1	51.1
		3.0	7.9	9.6	8.5	8.9	6.6	5.7	50.2	2.7	6.2	8.7	7.8	9.3	7.2	7.8	49.8
	남구	0.4	2.4	4.1	6.1	10.4	12.2	16.9	52.5	0.3	1.5	2.5	6.9	11.3	12.9	12.1	47.5
		2.6	6.7	10.0	8.1	7.2	6.4	7.2	48.2	2.3	5.5	10.7	7.8	8.3	7.6	9.6	51.8
	북구	1.8	8.7	5.0	9.0	10.0	6.5	8.0	49.0	1.6	7.1	5.5	11.1	9.4	6.8	9.6	51.0
		4.4	8.5	8.3	10.2	9.2	5.1	4.5	50.1	3.8	7.2	8.1	10.5	8.8	5.2	6.2	49.9
	수성구	1.3	10.2	6.7	5.6	10.0	10.3	8.6	52.7	0.9	6.5	5.3	5.6	12.1	10.4	6.4	47.3
		3.6	10.0	7.7	7.1	9.8	6.2	5.2	49.6	3.1	7.7	7.3	8.5	10.7	6.2	7.0	50.4
	달서구	2.0	9.0	4.9	9.1	10.2	7.2	5.0	47.5	1.7	8.3	5.6	11.8	10.8	7.2	7.1	52.5
		4.1	9.5	8.4	8.6	10.0	5.6	3.9	50.1	3.6	7.8	8.0	9.5	10.2	5.4	5.5	49.9
	달성군	1.9	8.4	4.5	8.6	10.4	6.1	9.0	48.8	1.6	8.2	4.6	10.5	9.1	6.5	10.7	51.2
		4.6	8.3	7.0	10.6	9.8	5.0	5.4	50.7	4.1	6.8	6.3	10.6	8.5	4.9	8.1	49.3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광주광역시	동구	0.5	4.7	5.5	8.6	8.8	11.7	13.1	52.8	0.3	4.2	4.8	7.0	10.0	12.0	8.8	47.2
		2.7	7.1	12.7	7.1	6.6	6.0	7.4	49.6	2.5	6.8	11.6	6.2	7.3	6.7	9.3	50.4
	서구	1.0	5.6	4.1	6.2	7.3	7.5	16.4	48.1	0.9	4.4	5.4	6.1	8.2	8.4	18.6	51.9
		4.6	8.7	8.6	9.5	8.7	5.0	4.2	49.4	4.2	7.8	8.8	10.2	8.8	5.1	5.8	50.6
	남구	0.8	3.9	5.3	7.1	7.3	9.2	15.2	48.8	0.9	3.3	5.5	7.4	8.0	9.9	16.2	51.2
		3.2	8.5	10.0	6.9	8.1	6.2	5.7	48.7	2.9	8.2	9.5	7.2	9.4	6.5	7.5	51.3
	북구	0.7	6.0	4.7	6.7	6.3	7.9	15.1	47.4	0.7	3.7	7.0	6.5	7.1	9.9	17.6	52.6
		3.9	8.8	9.8	8.6	8.5	5.3	4.6	49.4	3.6	8.1	9.6	8.8	9.0	5.4	6.1	50.6
	광산구	2.1	9.3	4.8	10.9	10.5	5.2	6.2	49.0	2.0	8.9	6.1	12.4	9.2	5.1	7.3	51.0
		5.7	8.8	7.5	11.9	9.1	3.6	3.6	50.1	5.2	8.3	7.9	11.9	7.5	3.5	5.5	49.9
인천광역시	중구	0.6	2.7	2.8	5.0	5.3	10.3	18.2	45.0	1.8	3.6	3.8	6.2	7.4	13.6	18.6	55.0
		3.6	6.4	8.7	11.1	8.7	5.8	6.4	50.7	3.4	5.5	8.0	9.6	8.0	6.2	8.6	49.3
	동구	0.2	2.0	2.7	5.8	7.3	10.6	21.0	49.7	0.2	1.1	2.2	6.1	7.5	12.0	21.2	50.3
		3.1	6.3	9.0	9.2	8.5	6.5	7.2	49.8	3.0	6.0	8.1	8.0	8.5	6.8	9.9	50.2
	연수구	1.5	10.0	6.8	6.8	11.0	7.6	5.7	49.4	1.7	9.0	6.4	8.6	11.5	6.7	6.6	50.6
		4.0	9.7	7.6	8.8	11.7	4.8	3.4	50.2	3.7	9.0	7.1	9.7	11.3	4.0	5.0	49.8
	남동구	0.2	3.1	5.4	8.0	5.4	13.5	11.0	46.6	0.2	2.3	5.0	9.4	9.7	16.5	10.3	53.4
		3.8	8.2	8.6	9.5	10.0	5.5	4.2	50.0	3.5	7.7	8.2	9.6	9.9	5.3	5.8	50.0
	부평구	1.3	8.0	6.2	9.3	9.6	7.6	7.3	49.3	1.3	6.9	7.0	10.1	9.5	7.4	8.4	50.7
		3.8	8.2	8.5	9.7	10.0	5.3	4.3	49.8	3.5	7.6	8.4	9.8	9.8	5.1	6.0	50.2
	계양구	7.0	29.3	6.1	4.4	8.2	4.0	3.3	62.3	3.0	14.8	1.6	8.2	7.3	2.6	0.2	37.7
		4.4	9.3	7.5	9.8	11.4	4.4	3.1	49.9	4.1	8.8	7.6	10.7	10.5	3.8	4.7	50.1
	서구	0.8	6.3	3.2	4.8	8.4	5.5	2.5	31.4	0.6	3.8	3.2	17.4	28.2	13.1	2.3	68.6
		4.6	8.6	7.5	10.6	10.8	4.8	3.6	50.5	4.3	8.0	7.2	11.0	9.6	4.3	5.1	49.5
대전광역시	동구	1.2	7.9	5.2	9.8	7.8	10.6	6.5	49.1	1.2	5.3	8.0	10.5	9.9	8.6	7.4	50.9
		3.1	7.5	10.8	8.3	8.0	6.0	6.4	50.1	2.9	6.8	9.6	7.6	8.2	6.4	8.4	49.9
	서구	1.3	11.4	5.2	6.9	12.5	7.3	5.3	49.8	1.1	8.9	5.5	9.3	13.0	6.9	5.5	50.2
		3.9	9.1	8.7	8.9	9.6	5.3	3.8	49.3	3.6	8.1	9.3	9.7	10.0	4.9	5.1	50.7
	유성구	0.0	4.8	4.0	11.9	13.5	6.9	6.8	47.8	0.0	3.4	4.8	15.0	13.8	7.1	8.1	52.2
		4.7	9.2	9.8	10.7	9.3	4.3	3.3	51.3	4.4	8.0	8.4	10.9	8.6	3.6	4.7	48.7
	대덕구	0.8	7.9	5.7	8.2	9.8	9.0	8.3	49.9	0.7	5.3	6.0	8.0	11.2	9.3	9.6	50.1
울산광역시	중구	1.3	6.4	3.9	7.9	10.9	9.4	7.4	47.3	1.0	3.9	3.8	10.9	14.4	10.9	7.8	52.7
		4.0	9.0	8.4	9.1	10.2	6.3	4.2	51.1	3.4	7.4	7.3	9.2	10.1	6.0	5.5	48.9
	남구	1.8	11.0	3.5	10.4	16.5	9.0	4.6	56.8	1.2	6.8	3.8	12.6	10.4	5.2	3.2	43.2
		4.3	9.4	8.2	9.4	10.7	5.9	3.2	51.1	3.7	7.8	7.5	10.2	10.5	5.3	3.9	48.9
	동구	1.9	10.1	6.6	5.1	9.4	13.5	5.0	51.6	1.1	7.2	5.9	6.1	12.0	12.2	3.8	48.4
		3.8	9.5	9.4	9.2	11.1	6.9	2.7	52.6	3.5	7.6	7.8	8.6	11.2	5.2	3.5	47.4
	울주군	1.9	8.1	4.5	9.4	11.7	8.5	6.2	50.4	1.9	7.1	5.3	11.7	11.1	7.7	4.8	49.6
		5.0	7.5	6.7	11.1	9.4	5.1	5.6	50.3	4.5	6.5	6.4	11.0	7.8	4.9	8.6	49.7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경기도	수원시	1.7	11.3	5.2	5.0	10.3	7.3	7.1	47.9	1.5	8.5	5.1	10.1	15.1	7.1	47.1
		4.2	8.6	9.1	10.4	9.9	4.5	3.5	50.2	3.9	7.9	9.0	10.6	9.2	4.2	49.8
	성남시	1.3	8.4	7.7	8.1	10.0	6.0	9.0	50.4	1.0	6.8	6.6	8.9	9.8	6.1	49.6
		3.6	7.7	8.5	10.5	9.5	5.4	4.6	49.9	3.3	7.1	8.8	10.2	9.5	5.4	50.1
	의정부시	1.3	8.6	6.3	8.8	10.8	7.0	7.9	50.6	1.0	5.7	5.2	10.8	12.2	6.3	49.4
		4.1	7.7	7.5	10.0	9.9	5.2	5.2	49.5	3.8	7.2	7.4	10.6	9.4	5.3	50.5
	안양시	0.5	4.8	4.3	8.4	8.3	7.2	7.5	41.1	0.5	2.8	4.7	16.0	15.0	10.3	58.9
		3.9	8.4	8.1	9.8	10.0	5.5	4.2	49.8	3.6	7.6	8.2	10.0	10.1	5.1	50.2
	부천시	0.9	7.3	6.0	6.5	11.1	11.2	6.7	49.7	0.8	5.8	5.9	8.1	13.5	10.8	50.3
		3.8	8.4	8.6	9.7	10.3	5.3	3.8	49.9	3.5	7.7	8.7	9.8	10.2	4.9	50.1
	광명시	1.0	6.7	8.0	8.5	9.9	9.9	7.8	51.8	0.7	5.8	5.5	8.5	10.3	10.5	48.2
		3.9	7.8	8.2	10.5	9.3	5.4	4.4	49.5	3.6	7.0	8.7	10.5	9.2	5.2	50.5
	평택시	0.9	7.1	4.5	6.7	11.0	10.4	8.9	49.4	0.7	6.8	4.8	7.4	12.1	9.9	50.6
		4.4	7.8	8.1	10.6	9.5	4.8	5.5	50.6	4.1	7.4	7.3	10.1	8.3	4.7	49.4
	안산시	1.1	9.4	5.4	7.9	11.6	7.4	6.3	49.1	1.1	9.4	6.6	9.2	11.7	6.0	50.9
		4.6	8.9	8.6	11.5	10.4	4.0	3.2	51.1	4.3	8.2	8.2	11.2	9.1	3.5	48.9
	고양시	1.1	6.7	3.3	6.1	13.9	8.3	8.4	47.8	0.9	5.4	3.7	10.5	15.9	7.0	52.2
		4.5	8.6	6.1	10.2	10.8	4.4	4.7	49.3	4.1	7.9	6.6	11.4	10.0	4.2	50.7
	과천시	2.4	11.0	5.2	4.7	11.6	8.0	5.0	47.9	2.1	11.2	5.9	6.8	13.5	7.1	52.1
		4.6	9.4	6.1	8.6	11.3	4.9	4.5	49.4	4.1	8.1	5.6	10.0	11.0	4.7	50.6
	구리시	0.1	5.7	4.9	4.1	5.9	7.2	16.1	43.8	0.2	5.7	3.7	10.5	14.9	8.9	56.2
		4.3	8.3	7.3	10.0	10.4	5.0	4.3	49.6	4.0	7.7	7.5	10.8	9.7	4.9	50.4
	남양주시	1.5	7.8	4.8	9.1	9.9	6.5	9.5	49.2	1.7	7.2	5.3	9.5	8.8	6.6	50.8
		4.6	7.5	6.8	10.4	10.0	5.1	5.5	49.9	4.4	7.1	6.6	10.9	8.9	5.1	50.1
	시흥시	2.5	10.0	4.4	9.5	13.2	6.1	4.1	49.8	2.3	9.2	5.5	11.5	11.7	4.8	50.2
		5.1	8.4	8.6	12.6	10.7	3.6	3.1	52.0	4.8	7.8	7.2	12.1	8.5	3.1	48.0
	군포시	0.9	6.4	5.9	8.5	9.5	9.0	9.2	49.3	0.9	4.8	6.1	9.1	9.8	9.7	50.7
		4.2	8.1	7.7	10.8	10.0	4.9	4.0	49.7	3.9	7.5	8.0	11.1	9.8	4.4	50.3
	의왕시	0.5	14.7	4.6	2.3	16.8	6.1	1.5	46.5	0.5	19.3	5.2	3.3	18.5	3.8	53.5
		4.2	7.9	7.9	10.0	10.2	5.4	4.4	50.0	4.1	7.4	7.2	10.4	9.9	4.8	50.0
	하남시	0.3	2.9	4.2	10.2	8.8	11.5	12.8	50.6	0.1	2.9	4.5	11.9	10.2	11.1	49.4
		3.5	7.5	8.8	9.1	9.9	6.5	5.5	50.7	3.2	6.9	7.7	8.7	9.8	6.1	49.3
	용인시	2.3	10.6	2.7	7.1	9.0	4.2	6.4	42.6	1.5	7.8	3.2	18.1	13.9	6.0	57.4
		4.7	6.9	7.5	11.3	9.1	4.8	5.3	49.6	4.4	6.8	7.7	11.9	7.9	5.3	50.4
	파주시	1.6	7.6	4.6	10.2	11.5	8.2	7.5	51.2	1.1	6.3	5.4	11.7	10.6	7.1	48.8
		4.4	6.6	7.6	10.3	9.4	5.1	7.0	50.4	4.0	6.4	6.6	9.9	8.1	5.2	49.6
	이천시	0.1	8.5	5.1	7.6	10.1	7.6	4.2	43.2	0.1	7.0	8.9	11.5	16.3	9.2	56.8
		4.3	7.5	7.9	10.0	9.2	4.8	5.6	49.3	4.1	7.9	8.8	9.5	8.1	4.5	50.7
	안성시	1.8	11.3	4.8	8.3	12.2	9.7	3.8	51.9	1.3	7.7	6.5	9.1	12.0	7.9	48.1
		3.7	7.1	9.4	9.8	8.4	5.2	6.9	50.6	3.4	6.8	8.1	8.9	7.6	4.9	49.4
	김포시	1.3	10.7	3.7	9.1	13.3	6.6	3.6	48.4	1.8	10.3	5.3	11.2	13.4	5.7	51.6
		4.6	7.4	6.9	9.9	10.2	5.2	5.8	50.1	4.3	7.3	6.3	10.4	8.8	5.2	49.9
	광주시	4.2	8.8	3.2	9.7	13.1	5.1	5.4	49.5	3.7	7.6	3.7	13.6	10.6	4.7	50.5
		4.6	7.4	6.9	9.9	10.2	5.2	5.8	50.1	4.3	7.3	6.3	10.4	8.8	5.2	49.9
	연천군	2.1	5.8	3.4	4.9	6.9	8.6	18.1	49.7	1.8	4.7	2.8	4.7	6.9	8.9	50.3
		4.4	7.0	8.0	11.0	9.4	5.5	5.3	50.6	4.1	6.6	7.5	10.6	8.3	5.4	49.4
	양평군	-	4.9	6.1	6.1	10.7	18.7	20.4	66.7	0.2	2.2	1.5	7.5	5.8	9.5	33.3
		3.1	6.8	6.5	7.5	9.2	6.3	10.9	50.3	3.0	5.9	5.0	6.5	8.3	6.5	49.7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강원도	춘천시	0.8	8.8	4.7	5.6	7.6	7.5	19.7	54.7	0.5	6.3	3.3	7.7	9.5	8.0	10.0	45.3
		3.5	8.0	9.1	8.2	8.7	5.1	6.7	49.3	3.3	7.5	8.6	8.1	8.7	5.2	9.1	50.7
	원주시	0.9	7.6	4.0	5.8	11.9	13.1	10.9	54.2	0.7	5.0	3.6	6.6	12.0	10.8	7.0	45.8
		4.0	8.3	8.3	9.0	9.6	5.0	6.0	50.0	3.6	7.5	7.3	9.1	9.1	4.9	8.4	50.0
	강릉시	3.9	11.4	4.7	7.3	9.6	8.4	11.3	56.7	2.7	6.1	3.8	10.5	10.7	6.3	3.2	43.3
		3.4	7.9	8.4	8.1	8.5	5.9	7.3	49.5	3.2	7.0	7.2	7.9	8.9	6.2	10.0	50.5
	동해시	1.1	8.4	4.1	5.4	9.3	10.8	9.7	48.8	0.8	7.3	4.2	6.2	11.4	10.6	10.5	51.2
		4.0	7.2	7.1	9.1	9.1	6.5	7.3	50.4	3.5	6.3	6.0	8.7	9.0	6.4	9.7	49.6
	속초시	1.3	5.2	3.2	9.9	13.8	10.1	8.0	51.5	1.1	4.6	3.5	11.7	12.2	7.5	7.9	48.5
		4.0	7.5	6.4	8.9	9.9	5.7	6.3	48.7	3.8	7.2	6.4	9.2	9.7	5.8	9.2	51.3
	삼척시	0.4	6.2	4.5	6.0	12.1	12.9	9.0	51.1	0.7	4.6	2.8	6.5	11.8	10.1	12.3	48.9
		3.2	6.8	7.5	7.6	8.5	7.1	9.7	50.4	3.1	5.8	4.8	6.5	8.3	6.9	14.3	49.6
	홍천군	3.8	14.3	3.0	6.5	12.1	12.2	8.4	60.4	2.1	9.2	2.5	6.6	8.3	8.3	2.5	39.6
		3.4	6.2	7.2	7.9	9.5	6.2	10.6	51.0	3.2	5.8	4.9	6.9	8.2	5.9	14.2	49.0
	횡성군	0.5	4.8	6.5	5.3	8.4	12.9	13.8	52.2	0.5	4.2	5.1	4.9	8.3	11.0	13.7	47.8
		3.1	6.7	5.8	6.5	8.8	6.8	12.6	50.3	2.9	5.6	4.0	5.9	8.0	6.5	16.7	49.7
	영월군	1.1	3.7	2.7	6.7	9.1	12.6	14.4	50.4	0.8	3.1	1.8	7.2	8.2	9.8	18.7	49.6
		3.1	6.1	5.3	6.7	8.7	7.1	12.8	49.8	2.8	5.3	3.6	6.0	8.1	7.4	17.0	50.2
	평창군	1.1	6.3	4.3	8.1	17.5	13.4	5.4	56.2	1.1	8.7	3.3	7.1	12.7	6.5	4.3	43.8
		3.3	5.5	5.4	7.6	9.6	7.2	11.5	50.2	3.1	5.1	3.9	6.7	8.7	7.2	15.2	49.8
	정선군	0.7	3.8	11.9	5.5	10.3	12.2	6.1	50.5	0.3	3.3	9.4	7.8	11.0	11.7	6.0	49.5
		2.8	5.2	7.4	8.5	9.8	8.0	10.5	52.2	2.6	4.6	5.9	5.8	7.9	7.4	13.7	47.8
	철원군	0.7	10.6	5.1	6.3	12.4	10.4	4.2	49.8	1.7	9.0	5.2	7.3	14.4	7.6	5.2	50.2
		3.8	6.7	6.7	8.2	9.4	6.1	9.6	50.5	3.4	6.3	4.7	7.6	8.4	6.5	12.6	49.5
	화천군	0.2	0.7	3.8	13.6	14.9	7.4	8.9	49.5	0.2	0.5	5.3	18.9	11.4	7.8	6.4	50.5
		4.3	5.6	7.4	8.8	8.6	5.2	10.7	50.6	3.9	5.3	5.3	7.9	7.2	5.5	14.2	49.4
	양구군	5.1	7.7	2.7	7.7	9.7	6.1	9.8	48.8	5.1	6.5	3.3	8.9	8.5	4.9	14.0	51.2
		3.9	6.0	9.0	8.4	9.5	5.9	10.0	52.6	3.5	5.5	4.3	7.4	8.1	5.5	13.3	47.4
	인제군	1.1	13.6	7.5	3.9	11.0	11.0	3.6	51.6	0.6	11.2	6.6	4.8	14.8	5.5	4.9	48.4
		3.8	6.4	7.4	9.0	9.6	5.8	9.4	51.5	3.7	5.9	5.4	7.7	8.2	5.5	12.0	48.5
	고성군	1.1	6.9	3.8	3.2	10.0	14.0	16.9	55.9	1.0	6.9	3.8	3.5	8.5	8.3	12.2	44.1
		3.1	6.5	8.1	7.0	8.5	6.6	10.8	50.6	2.6	5.7	4.6	5.8	7.8	7.3	15.6	49.4
	양양군	0.6	5.0	3.1	6.5	6.5	7.0	22.1	50.9	0.8	2.9	2.4	5.2	5.8	8.7	23.2	49.1
		2.7	5.9	9.2	7.4	8.4	7.1	10.9	51.6	2.5	5.2	4.9	5.9	8.0	7.1	14.7	48.4
충청북도	청주시	1.6	8.9	5.9	8.6	10.2	7.6	6.7	49.5	1.4	7.8	6.5	9.7	10.4	7.1	7.7	50.5
		4.1	8.9	9.4	9.2	9.1	4.9	4.2	49.8	3.8	8.0	9.3	9.6	8.9	4.7	5.8	50.2
	충주시	0.0	5.0	3.9	8.0	9.7	7.7	10.9	45.4	-	4.8	4.7	9.2	9.5	9.1	17.4	54.6
		3.6	8.3	8.2	8.0	9.1	5.6	7.6	50.4	3.3	7.2	6.6	7.9	8.5	5.6	10.6	49.6
	제천시	0.2	4.2	3.6	7.3	11.9	11.2	10.6	49.0	0.1	1.9	3.8	14.7	14.1	8.7	7.7	51.0
		3.5	8.1	7.8	7.5	9.2	6.5	8.0	50.6	3.2	6.8	5.7	7.6	9.0	6.3	10.7	49.4
	청원군	0.2	7.1	2.7	5.0	12.9	8.6	18.1	54.7	0.2	5.4	3.2	4.4	8.3	8.7	15.1	45.3
		3.3	6.4	8.6	8.4	8.1	5.9	9.4	50.2	3.0	5.9	7.3	7.0	7.0	5.7	13.7	49.8
	보은군	1.0	5.0	2.4	2.6	6.2	10.7	21.3	49.3	0.7	4.1	2.4	3.1	6.3	11.3	22.8	50.7
		2.9	5.5	4.1	5.1	7.9	7.4	15.3	48.2	2.7	4.9	2.6	5.0	7.3	7.6	21.9	51.8
	옥천군	0.9	5.5	3.4	7.3	6.4	6.5	17.3	47.3	1.1	4.7	3.7	6.2	5.9	8.2	23.0	52.7
		3.2	6.3	6.7	6.8	8.0	6.8	11.8	49.5	2.9	5.3	4.9	6.1	7.3	7.1	16.9	50.5
	영동군	0.2	2.8	3.5	4.9	5.2	9.4	22.2	48.2	0.2	1.7	4.1	3.1	5.3	11.3	26.1	51.8
		2.9	6.8	6.7	6.3	7.8	6.4	12.7	49.6	2.6	5.5	4.2	5.4	7.3	7.0	18.4	50.4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충청남도	진천군	1.6	18.8	2.0	4.2	15.7	5.4	4.8	52.5	1.7	13.6	2.0	8.3	13.7	4.0	4.2	47.5
		4.0	6.4	8.1	9.7	9.1	5.4	8.6	51.3	3.8	5.5	6.2	8.4	7.3	5.3	12.2	48.7
	괴산군	0.3	2.5	1.7	3.9	12.6	10.6	14.9	46.5	1.5	1.7	1.5	5.1	13.3	8.9	21.5	53.5
		2.6	4.6	4.3	4.8	7.9	7.5	16.6	48.3	2.3	3.9	2.5	4.3	7.2	7.9	23.6	51.7
	음성군	2.0	6.7	6.7	6.6	7.3	8.1	12.8	50.1	1.6	5.2	5.0	5.1	7.6	9.0	16.4	49.9
		3.9	6.6	7.1	9.5	9.7	6.1	9.3	52.2	3.5	5.9	5.4	7.7	7.6	5.4	12.3	47.8
	단양군	1.2	6.4	2.0	4.8	6.5	10.2	18.4	49.5	0.2	5.1	2.7	5.5	7.5	10.0	19.5	50.5
		3.2	5.8	4.9	6.8	9.0	7.3	12.5	49.4	2.9	5.0	3.7	6.1	8.3	7.6	17.1	50.6
	증평군	0.5	7.5	10.0	2.5	11.5	10.0	3.0	45.0	-	6.5	7.5	10.0	16.0	11.5	3.5	55.0
		4.0	7.1	8.6	9.2	8.5	5.5	7.3	50.2	3.9	7.0	6.7	8.3	7.7	5.3	10.9	49.8
	천안시	1.2	10.1	4.3	8.2	13.8	7.8	7.7	53.2	0.9	8.9	3.9	8.0	11.7	6.2	7.3	46.8
		4.4	8.3	9.7	10.6	9.3	4.4	4.2	50.9	4.0	7.6	9.2	10.2	8.2	4.0	5.8	49.1
	공주시	0.2	2.6	2.4	4.5	7.9	10.1	18.5	46.3	0.3	2.4	3.8	6.2	10.0	12.1	19.0	53.8
		3.1	8.3	7.8	6.2	8.0	6.1	9.4	48.9	2.8	7.5	7.8	6.2	7.8	6.0	13.1	51.1
	보령시	0.7	4.4	3.0	5.1	6.5	10.2	21.0	50.9	1.1	3.2	2.6	4.5	6.1	12.1	19.5	49.1
		3.5	7.1	6.2	7.4	8.5	6.9	10.3	49.8	3.2	5.9	4.4	6.9	8.2	7.3	14.2	50.2
	아산시	1.4	6.4	5.8	11.4	8.5	7.1	9.8	50.4	1.1	4.9	7.8	10.6	8.2	6.5	10.5	49.6
		3.5	7.0	12.0	9.6	7.8	4.7	6.3	51.0	3.4	8.2	9.5	8.0	6.7	4.6	8.7	49.0
	서산시	1.4	8.7	4.9	7.5	11.1	9.5	6.8	49.7	1.4	8.6	5.7	7.9	12.0	7.6	7.0	50.3
		4.0	7.4	7.2	9.5	9.2	5.9	8.0	51.2	3.8	6.5	5.4	8.5	7.9	5.6	11.2	48.8
	논산시	0.0	0.3	1.4	12.4	18.9	20.4	22.7	76.4	0.0	0.0	0.6	5.2	8.3	5.0	4.5	23.6
		3.3	7.9	7.1	6.8	7.8	6.3	10.2	49.4	3.1	6.8	5.5	6.4	7.6	6.6	14.6	50.6
	계룡시	1.9	9.5	3.7	12.1	10.1	6.8	4.8	48.9	1.3	4.9	3.1	16.6	13.6	7.1	4.6	51.1
		5.4	9.9	5.6	9.8	11.9	4.6	3.0	50.1	4.9	9.2	5.1	11.4	11.3	3.4	4.7	49.9
금산군	0.1	3.2	4.9	3.8	6.4	8.8	19.3	46.6	1.5	2.3	4.5	2.6	8.2	9.6	24.8	53.4	
	2.9	6.4	7.9	6.3	7.1	6.8	12.4	49.8	2.6	5.5	5.2	5.4	6.7	7.1	17.8	50.2	
부여군	0.2	6.1	10.2	6.1	9.1	15.1	10.7	57.6	0.3	1.6	3.8	6.0	12.7	12.7	5.4	42.4	
	3.0	6.5	4.9	5.3	7.5	7.2	13.8	48.3	2.7	5.6	3.3	5.2	7.8	7.6	19.5	51.7	
서천군	0.7	4.6	0.6	5.3	8.2	6.8	20.5	46.6	0.4	4.2	1.2	6.7	7.2	7.3	26.3	53.4	
	2.9	5.7	5.0	5.6	7.2	7.4	14.1	47.9	2.7	5.1	3.1	5.1	7.3	8.0	20.7	52.1	
청양군	2.0	30.0	2.0	2.0	2.0	4.0	10.0	52.0	2.0	16.0	2.0	6.0	16.0	4.0	2.0	48.0	
	2.8	5.6	4.9	5.2	7.1	7.1	15.7	48.3	2.7	4.9	2.9	4.7	7.0	7.4	22.0	51.7	
홍성군	1.4	6.2	5.8	7.1	7.5	9.6	12.6	50.1	1.3	4.3	4.9	6.5	9.8	9.3	13.8	49.9	
	3.2	7.4	6.6	6.8	7.8	6.4	11.2	49.4	2.8	6.6	5.0	6.4	7.6	6.7	15.5	50.6	
예산군	0.7	1.3	3.6	2.2	11.1	19.1	16.2	54.2	1.4	1.5	2.0	3.0	12.5	12.9	12.5	45.8	
	2.9	6.6	6.0	6.2	7.9	7.2	12.3	49.1	2.8	6.1	4.2	5.7	7.9	7.3	16.9	50.9	
태안군	0.2	3.3	1.0	3.4	4.1	14.6	22.8	49.5	0.1	1.7	1.7	3.0	6.0	19.0	19.1	50.5	
	3.0	5.8	6.3	7.0	8.2	7.9	11.8	50.0	2.8	5.4	4.2	5.8	8.0	8.0	15.8	50.0	
당진군	2.1	11.9	5.0	8.8	13.5	6.8	3.3	51.3	2.4	9.7	4.8	11.3	11.3	6.1	2.9	48.7	
	3.5	6.6	6.5	8.5	8.9	6.8	10.3	51.1	3.2	6.1	4.6	7.0	7.6	6.5	13.8	48.9	
전라북도	전주시	1.2	8.5	5.9	8.8	8.6	7.0	9.8	49.8	1.3	7.1	5.6	9.8	8.1	7.5	10.8	50.2
		4.1	8.9	8.7	8.4	8.6	5.5	5.1	49.4	3.8	8.3	8.3	8.9	8.9	5.6	6.8	50.6
	군산시	1.9	9.0	4.0	8.9	8.5	6.1	9.0	47.5	1.5	5.6	4.8	14.1	10.0	7.4	9.1	52.5
		3.8	7.6	8.5	8.8	8.3	6.4	6.8	50.3	3.6	6.9	6.8	8.2	8.3	6.3	9.7	49.7
	익산시	2.9	17.1	2.0	5.6	14.1	4.1	4.2	49.9	2.5	14.3	2.3	10.0	11.7	3.9	5.5	50.1
		3.9	8.4	8.5	8.1	8.4	5.6	6.6	49.4	3.6	7.8	7.3	8.2	8.4	5.7	9.6	50.6
	정읍시	1.7	9.5	4.2	6.0	9.4	5.7	11.6	48.0	1.7	8.0	3.9	7.3	8.9	5.8	16.3	52.0
		3.6	7.0	5.7	6.9	7.5	6.1	11.0	47.8	3.5	6.4	4.7	6.8	7.3	6.7	16.9	52.2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전 라 북 도	남원시	3.3	13.0	3.0	9.5	13.6	4.5	3.9	50.9	3.5	10.3	3.2	13.9	9.6	4.9	3.7	49.1
		3.7	6.5	6.1	7.0	7.8	6.3	10.9	48.3	3.4	5.9	4.6	7.0	7.5	6.8	16.5	51.7
	김제시	0.4	4.1	8.0	10.5	8.9	10.1	20.0	62.0	0.2	2.6	3.9	5.7	6.8	8.0	10.7	38.0
		3.0	6.0	6.5	6.1	7.1	6.7	12.5	47.9	2.8	5.6	4.5	5.6	7.0	7.3	19.4	52.1
	완주군	0.2	3.2	1.1	2.1	4.6	6.0	30.9	48.1	0.1	2.5	1.3	1.4	4.4	7.7	34.5	51.9
		3.5	6.1	8.9	8.9	6.9	6.0	10.0	50.2	3.2	5.7	6.8	6.8	6.3	6.3	14.8	49.8
	진안군	1.2	5.1	2.2	7.3	8.9	9.1	16.0	49.9	1.1	4.5	3.3	8.2	8.0	9.4	15.7	50.1
		2.7	4.7	6.3	5.6	6.6	7.0	15.8	48.7	2.5	4.0	4.3	4.3	6.0	7.7	22.7	51.3
	임실군	0.7	6.6	3.5	6.5	8.5	8.2	16.4	50.4	1.1	5.3	3.4	7.1	7.7	9.3	15.8	49.6
		2.6	4.6	4.1	4.5	6.5	6.8	17.2	46.4	2.3	3.8	2.4	4.2	6.2	8.2	26.5	53.6
	순창군	1.0	3.7	2.9	6.2	8.1	8.6	21.2	51.6	1.4	2.6	2.8	6.9	6.0	9.2	19.5	48.4
		2.8	5.1	4.5	4.9	6.1	6.4	16.4	46.3	2.6	4.5	2.8	4.5	6.1	7.9	25.4	53.7
	고창군	0.8	4.5	4.0	5.4	10.9	14.0	16.0	55.6	0.4	2.5	2.5	4.6	8.7	12.1	13.7	44.4
		2.9	6.5	4.2	4.9	7.0	7.0	14.5	47.0	2.7	5.4	2.6	4.8	7.1	7.7	22.8	53.0
	부안군	0.8	4.4	3.7	5.1	7.5	11.9	17.1	50.6	0.7	3.7	2.9	4.7	9.1	13.2	15.1	49.4
		3.0	6.0	4.8	5.5	7.3	7.2	13.4	47.2	2.9	5.3	3.2	5.2	7.3	7.9	21.1	52.8
전 라 남 도	목포시	1.5	8.3	3.7	9.3	12.9	7.4	5.2	48.2	2.2	7.9	4.9	12.0	11.3	7.1	6.4	51.8
		4.2	8.5	8.6	8.8	8.6	5.8	5.4	50.0	4.0	7.6	7.6	8.7	8.6	5.8	7.7	50.0
	여수시	1.8	6.9	4.4	6.4	7.7	8.2	13.1	48.5	1.3	6.1	4.5	6.6	8.0	9.0	16.0	51.5
		4.1	8.0	7.3	8.3	8.9	6.7	6.7	50.0	3.8	7.3	5.9	8.2	8.8	6.5	9.6	50.0
	순천시	1.4	7.3	4.4	7.5	12.6	9.3	8.7	51.2	1.2	5.6	4.2	9.4	12.9	8.2	7.3	48.8
		4.5	9.1	7.1	8.5	9.2	5.3	6.0	49.6	4.1	8.1	6.5	9.1	8.7	5.0	8.7	50.4
	나주시	0.9	5.6	3.3	4.3	7.3	6.8	20.5	48.6	0.6	4.6	2.7	4.3	6.7	6.8	25.6	51.4
		3.1	6.2	6.6	6.4	7.1	6.1	12.2	47.7	3.0	5.9	4.9	5.6	6.5	6.9	19.4	52.3
	광양시	1.5	9.0	2.9	9.2	10.3	5.6	9.9	48.4	2.1	7.8	3.6	10.5	8.1	5.9	13.6	51.6
		5.2	8.6	6.7	10.7	9.7	5.1	4.9	50.9	4.8	8.0	6.0	10.3	8.3	4.3	7.5	49.1
	곡성군	0.4	1.3	1.3	5.2	9.1	8.8	26.2	52.4	0.3	1.3	2.1	6.9	7.6	8.6	20.7	47.6
		2.8	5.6	4.8	5.6	6.2	6.1	15.2	46.3	2.6	5.3	3.7	4.9	5.7	7.1	24.3	53.7
	구례군	0.4	4.4	1.8	3.5	6.1	8.3	25.4	49.9	0.3	4.7	1.8	2.3	5.0	12.2	23.7	50.1
		2.8	5.0	4.5	5.5	7.1	6.6	15.0	46.4	2.8	4.9	3.2	4.9	6.9	7.9	22.9	53.6
	보성군	1.7	5.4	1.6	3.0	5.8	6.8	19.8	44.1	1.9	4.9	1.8	4.0	5.5	8.6	29.2	55.9
		2.7	5.5	4.4	4.6	6.4	6.8	15.7	46.1	2.4	4.8	2.9	4.3	6.5	7.8	25.1	53.9
	화순군	0.1	4.4	3.5	3.7	7.3	11.5	28.4	59.1	0.3	2.7	2.2	3.1	5.7	10.0	16.9	40.9
		4.1	6.2	6.1	8.8	7.1	4.8	10.6	47.7	4.0	5.8	5.6	8.3	6.1	5.6	16.9	52.3
	장흥군	0.7	5.2	3.8	4.7	7.2	12.7	17.0	51.4	0.4	4.6	3.5	4.2	7.7	12.1	16.1	48.6
		3.1	5.8	3.8	5.0	6.9	6.6	15.0	46.3	2.8	5.3	2.7	5.0	7.0	7.5	23.4	53.7
	강진군	0.9	5.4	1.3	2.5	8.0	11.3	22.5	51.9	0.8	4.7	1.3	2.8	7.6	10.4	20.5	48.1
		2.9	6.1	4.1	4.8	6.9	6.7	14.8	46.3	2.6	5.5	2.6	4.8	7.0	7.7	23.6	53.7
전 라 남 도	해남군	1.2	7.7	1.4	3.1	8.8	11.4	14.9	48.4	1.1	7.3	1.7	3.9	10.8	10.7	16.1	51.6
		3.1	5.6	4.3	5.9	7.7	7.0	13.4	47.2	2.9	5.1	3.2	5.5	7.6	7.7	20.9	52.8
	무안군	1.5	6.8	3.0	7.0	7.4	7.2	15.4	48.3	1.5	6.3	3.4	7.6	6.8	8.2	17.8	51.7
		2.8	6.6	7.8	5.3	6.7	7.1	12.5	48.8	2.6	6.1	4.6	4.6	6.9	7.3	19.1	51.2
	함평군	0.7	5.0	2.5	3.1	5.5	10.6	21.7	49.1	0.5	5.0	1.9	3.2	6.9	12.1	21.3	50.9
		2.5	5.7	6.0	5.2	6.3	6.2	15.5	47.4	2.4	5.1	3.8	3.9	5.9	7.2	24.4	52.6
	영광군	0.8	5.8	3.8	5.4	7.3	10.3	18.3	51.7	0.7	5.0	3.3	6.2	7.0	10.1	15.9	48.3
		3.3	6.6	6.4	7.2	7.7	6.4	11.8	49.4	3.0	5.8	4.7	5.9	6.6	6.8	17.7	50.6
	완도군	1.4	7.2	3.1	7.7	10.0	9.7	11.8	51.0	1.8	6.7	3.1	8.7	8.8	8.0	11.8	49.0
		3.1	5.1	4.8	5.9	7.8	7.5	14.3	48.5	2.8	4.6	2.9	5.1	7.7	7.8	20.6	51.5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경상북도	포항시	1.3	9.2	3.7	7.1	10.1	9.1	9.5	50.1	1.3	7.1	3.5	8.0	10.2	9.3	10.6	49.9
		3.8	8.6	7.8	8.5	9.9	7.0	5.2	50.8	3.4	6.8	6.5	8.6	10.2	6.3	7.4	49.2
	경주시	0.7	6.3	4.6	4.9	8.0	10.1	16.1	50.7	0.6	5.1	3.7	4.9	8.6	11.6	14.7	49.3
		3.6	7.8	7.8	8.4	8.4	5.8	7.7	49.5	3.3	6.4	6.5	8.3	8.0	6.2	11.7	50.5
	김천시	1.8	10.8	2.7	5.7	9.2	6.7	11.3	48.1	1.1	7.8	2.9	8.0	9.0	8.4	14.7	51.9
		3.3	7.5	7.0	7.5	8.3	6.4	9.1	49.1	2.9	6.3	5.8	7.1	8.0	6.9	13.9	50.9
	안동시	0.3	2.5	6.8	4.2	4.6	7.5	23.6	49.4	-	1.5	5.4	9.2	7.4	9.1	18.0	50.6
		3.1	7.8	7.1	6.9	8.0	6.4	9.6	48.9	2.8	6.6	6.5	6.9	8.1	6.7	13.5	51.1
	구미시	1.8	9.9	4.9	9.8	11.5	7.4	4.3	49.6	1.8	8.4	6.3	11.7	11.2	6.4	4.6	50.4
		4.7	8.9	10.7	11.0	9.1	3.7	3.1	51.2	4.1	8.1	9.8	10.9	7.8	3.4	4.7	48.8
	영주시	0.2	1.0	0.8	7.5	14.3	16.8	31.7	72.2	-	0.2	0.6	3.9	5.6	5.6	12.0	27.8
		3.3	7.9	7.0	6.8	8.3	6.8	9.7	49.8	2.9	6.4	4.9	6.7	8.4	7.2	13.8	50.2
	영천시	0.9	6.3	3.8	5.1	7.9	8.3	15.8	48.2	0.8	5.9	3.9	6.2	8.5	8.9	17.6	51.8
		3.0	6.3	6.6	7.6	8.0	6.6	11.0	49.1	2.8	5.3	5.3	6.9	7.4	7.1	16.1	50.9
	상주시	0.0	5.8	2.6	4.1	8.7	13.5	24.7	59.4	0.0	2.1	2.0	5.5	7.3	10.0	13.7	40.6
		2.9	6.7	5.9	5.9	7.7	6.8	12.4	48.3	2.5	5.5	4.1	5.6	7.8	7.4	18.7	51.7
	경산시	2.1	7.4	4.9	10.4	9.5	6.5	8.5	49.5	1.6	6.5	5.4	11.9	8.7	6.5	9.9	50.5
		3.7	8.1	11.0	9.4	7.7	4.8	5.5	50.3	3.4	7.2	9.7	9.1	7.3	5.1	7.9	49.7
	군위군	0.4	3.4	1.9	2.6	5.9	9.0	23.7	46.9	0.5	2.2	1.4	2.8	5.8	10.7	29.6	53.1
		1.9	4.9	5.3	4.8	6.8	7.6	17.1	48.3	1.8	3.4	3.4	3.8	6.6	8.3	24.6	51.7
	의성군	2.7	8.2	2.5	5.4	9.8	8.8	11.8	49.3	2.4	7.4	2.3	6.5	9.1	8.6	14.5	50.7
		1.9	4.7	3.7	4.0	6.8	8.1	17.7	46.8	1.8	3.6	2.3	3.6	7.3	9.0	25.6	53.2
	청송군	0.9	2.8	1.3	2.7	5.8	9.9	23.1	46.5	0.7	2.9	1.9	2.7	5.7	12.9	26.7	53.5
		2.4	4.8	4.2	6.1	7.5	7.7	15.7	48.3	2.4	3.6	2.9	5.3	7.4	8.3	21.8	51.7
	영양군	0.3	4.4	10.7	19.3	10.4	4.2	7.0	56.3	0.3	6.3	15.1	8.9	7.8	2.3	3.1	43.8
		2.2	5.1	3.9	4.9	6.9	7.3	17.1	47.4	1.9	4.8	2.6	4.3	7.2	8.2	23.6	52.6
	영덕군	-	0.6	0.8	5.2	9.6	9.4	21.7	47.3	0.1	-	2.8	4.4	25.0	7.1	13.2	52.7
		2.4	5.0	5.1	5.5	6.8	7.1	14.2	46.0	2.3	4.3	3.9	4.8	7.1	8.6	23.0	54.0
	청도군	0.5	2.5	1.9	3.6	3.8	7.2	26.6	46.2	0.7	2.1	2.5	2.6	4.2	10.4	31.3	53.8
		2.1	5.7	4.8	4.3	6.6	7.4	15.1	45.9	2.0	4.7	3.4	4.4	7.1	8.7	23.7	54.1
	성주군	0.2	4.3	3.0	3.5	5.2	9.6	22.3	48.0	0.3	3.7	1.9	3.0	6.7	9.2	27.2	52.0
		2.7	5.9	5.1	5.7	8.0	7.3	13.8	48.6	2.4	4.7	3.3	5.1	7.6	8.3	20.0	51.4
	칠곡군	2.6	7.6	3.8	10.6	9.3	5.4	10.2	49.5	2.1	6.4	3.5	12.4	7.3	5.7	13.0	50.5
		4.3	6.4	11.0	11.5	7.8	4.2	6.0	51.2	3.7	6.7	8.8	9.9	6.3	4.4	9.0	48.8
	예천군	1.2	6.4	3.5	5.6	7.0	10.6	13.2	47.5	0.8	6.2	3.4	6.0	8.5	10.2	17.3	52.5
		2.1	5.2	4.9	4.7	6.9	7.6	16.4	47.6	1.9	4.1	2.9	4.1	7.1	8.4	23.8	52.4
	봉화군	0.5	4.6	1.6	4.2	8.3	10.5	19.2	48.8	0.5	3.2	1.4	4.0	9.7	11.5	20.8	51.2
		2.3	4.8	5.0	5.0	7.5	7.4	16.2	48.2	2.1	4.3	3.2	4.5	7.2	7.9	22.6	51.8
	울진군	0.5	6.4	3.5	5.7	10.0	11.1	11.1	48.2	0.9	4.4	5.1	8.9	11.7	11.8	9.0	51.8
		3.5	5.7	4.7	7.6	8.4	6.7	11.7	48.3	3.0	5.1	3.4	6.7	7.9	7.1	18.6	51.7
	창원시	0.3	4.9	3.1	7.6	14.8	8.0	2.8	41.5	0.2	3.1	4.1	17.8	22.1	7.7	3.5	58.5
		4.5	10.0	8.3	10.0	10.9	4.9	2.7	51.3	4.0	8.3	7.6	10.5	10.1	4.0	4.1	48.7
	마산시	0.1	2.8	3.9	3.5	6.2	8.4	16.5	41.4	0.1	1.8	5.2	10.7	11.6	11.6	17.6	58.6
		3.4	7.9	9.3	8.6	8.9	6.7	5.3	50.0	3.0	6.8	8.4	8.2	9.4	6.8	7.3	50.0
	진주시	1.3	9.1	6.5	5.6	8.7	9.7	10.1	50.9	1.0	7.0	5.7	6.2	10.3	10.3	8.7	49.1
		3.7	8.7	8.4	8.0	8.7	5.9	5.7	49.1	3.3	7.5	7.9	8.3	8.9	6.1	8.9	50.9
	진해시	1.1	5.2	4.2	7.8	8.4	8.1	13.7	48.6	0.8	4.5	4.3	8.3	7.9	9.4	16.3	51.4
		4.2	6.7	8.3	11.3	8.6	5.9	5.6	50.6	3.9	5.9	7.4	10.1	8.3	6.0	7.9	49.4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1〉 계속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5-9세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합계
경 상 도	통영시	1.0	7.4	4.6	7.9	9.2	9.6	11.2	50.9	1.1	5.9	4.2	7.2	8.9	9.0	12.9	49.1
		3.6	7.1	7.5	8.8	9.3	7.1	6.9	50.3	3.3	6.2	5.6	8.0	9.3	7.0	10.3	49.7
	사천시	0.8	6.3	3.4	6.7	7.6	9.0	16.0	49.7	0.5	3.9	3.1	8.1	7.7	10.2	16.7	50.3
		3.9	6.5	6.9	9.4	8.0	6.5	8.4	49.5	3.4	5.4	5.6	8.3	7.6	6.9	13.4	50.5
	김해시	2.1	9.6	3.3	10.7	13.3	5.6	4.6	49.1	1.7	8.2	4.3	15.2	11.9	4.6	5.0	50.9
		5.1	8.5	6.9	11.4	10.0	4.5	3.8	50.1	4.7	7.6	6.8	12.0	8.7	4.3	5.8	49.9
	밀양시	2.7	6.9	2.7	4.1	7.8	7.3	16.9	48.4	2.2	5.6	2.4	5.4	6.9	8.5	20.6	51.6
		3.0	6.9	6.6	6.4	8.2	6.9	10.3	48.3	2.8	5.7	4.9	6.4	8.3	7.5	16.1	51.7
	거제시	1.6	8.3	4.3	10.6	9.9	7.2	7.4	49.5	1.5	7.2	4.5	11.3	8.9	6.6	10.5	50.5
		4.7	7.2	9.1	12.6	10.4	5.6	4.0	53.6	4.4	6.3	6.2	10.2	8.5	4.4	6.4	46.4
	양산시	1.0	7.5	6.0	7.9	11.8	9.8	5.3	49.3	1.1	6.7	6.3	9.8	13.3	8.4	5.0	50.7
		4.6	8.0	6.7	10.8	10.2	4.9	4.7	50.1	4.2	7.4	6.8	11.2	8.8	4.8	6.7	49.9
	의령군	0.3	6.9	4.7	6.0	8.2	9.2	14.5	49.8	0.3	5.0	4.6	4.4	8.3	9.5	18.1	50.2
		2.4	4.7	4.6	5.7	6.6	6.3	15.4	45.8	2.2	3.9	3.5	4.6	6.1	7.4	26.5	54.2
	창녕군	0.3	3.4	1.6	2.7	6.1	10.4	24.0	48.5	0.4	3.7	1.1	3.3	5.9	11.3	25.7	51.5
		2.8	6.3	4.8	5.8	7.6	6.8	12.8	47.0	2.6	4.9	3.4	5.6	7.8	7.7	21.1	53.0
	고성군	1.0	3.8	3.8	6.2	7.0	8.4	18.3	48.5	0.8	4.7	4.2	5.7	6.9	8.5	20.8	51.5
		2.9	6.3	5.2	6.0	7.6	7.3	12.7	48.1	2.5	4.6	3.5	5.4	7.5	8.0	20.4	51.9
	남해군	0.8	5.7	2.5	3.0	5.8	7.8	21.2	46.7	0.5	4.1	1.4	3.6	5.6	8.1	29.9	53.3
		2.7	5.8	4.0	4.8	6.8	6.9	14.9	46.0	2.2	4.9	2.5	4.5	7.1	7.9	24.9	54.0
	하동군	1.0	9.6	1.5	5.8	12.2	10.8	7.3	48.2	1.1	7.9	2.4	7.0	12.2	9.4	11.8	51.8
		3.1	5.4	4.2	6.1	7.5	6.7	14.0	47.1	2.7	4.5	2.9	5.5	7.1	7.7	22.5	52.9
	산청군	1.2	5.7	1.5	3.6	9.4	6.1	20.6	48.0	0.6	6.8	2.0	3.9	7.2	6.8	24.6	52.0
		2.4	4.7	5.4	5.5	6.3	6.9	15.3	46.4	2.3	4.1	3.5	4.7	6.2	8.0	24.8	53.6
	함양군	2.5	7.4	3.0	6.9	8.9	6.0	15.8	50.5	1.2	5.1	3.0	7.0	7.1	6.8	19.3	49.5
		2.8	5.5	3.9	5.7	7.0	6.4	14.5	45.8	2.7	4.8	3.1	5.2	7.3	7.6	23.5	54.2
	합천군	-	-	0.6	2.1	4.7	7.1	24.7	39.2	-	-	1.0	3.6	11.2	12.1	32.8	60.8
		2.6	4.5	4.0	5.4	7.0	6.6	15.8	46.0	2.4	3.6	2.7	4.6	6.8	7.9	26.1	54.0
제 주 도	제주시	-	-	2.3	3.5	11.5	6.9	24.1	48.3	-	5.8	-	1.2	16.1	10.3	18.4	51.7
		4.7	8.5	8.3	10.0	8.8	4.9	4.3	49.6	4.2	7.8	8.3	10.4	8.6	4.8	6.3	50.4
	서귀포시	2.2	14.2	1.6	6.9	14.5	5.1	7.3	51.8	2.5	13.3	1.6	8.5	12.9	2.8	6.6	48.3
		4.1	7.6	7.7	9.2	8.7	5.7	6.5	49.6	4.0	7.0	6.6	8.6	8.3	6.1	9.8	50.4

주: 명암은 표본비율, 백색은 2005 인구주택총조사 비율임.

〈부록 표 2〉 가구의 주택형태 비율

(단위: %)

구 분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31.5	23.0	10.8	32.7	0.1	2.0
	중구	28.3	20.4	25.3	20.9	0.7	4.4
	용산구	18.1	21.6	31.9	27.0	0.5	0.8
	성동구	61.9	6.2	8.8	22.2	0.2	0.7
	광진구	32.2	27.3	24.1	15.4	0.1	1.0
	동대문구	88.3	2.9	1.6	6.4	0.3	0.5
	중랑구	16.4	16.3	48.8	18.0	0.0	0.5
	성북구	58.3	15.7	8.6	16.7	0.1	0.6
	강북구	28.7	23.0	8.8	38.3	0.2	0.9
	도봉구	51.4	14.6	11.7	20.2	0.6	1.5
	노원구	92.6	2.7	1.7	2.6	0.2	0.3
	서대문구	22.0	33.0	21.0	23.0	-	1.0
	마포구	28.0	28.7	18.1	23.1	0.6	1.6
	양천구	69.4	11.3	9.6	9.0	0.3	0.3
	강서구	55.1	30.2	9.5	4.0	0.5	0.5
	구로구	50.5	24.6	8.2	14.9	1.2	0.5
	관악구	30.4	16.8	20.6	28.2	1.1	2.9
	서초구	58.9	13.4	11.6	13.2	0.5	2.3
	송파구	33.7	29.4	23.6	9.9	0.8	2.6
	강동구	54.1	15.5	15.0	14.0	0.6	0.9
부산광역시	중구	47.3	39.6	6.4	6.4	0.1	0.2
	서구	25.5	12.9	9.2	51.7	0.1	0.5
	동구	16.0	8.4	5.4	67.8	0.9	1.5
	영도구	54.3	5.1	2.1	38.3	-	0.2
	부산진구	27.2	14.8	24.7	32.1	0.4	0.8
	동래구	39.7	13.0	8.0	38.2	0.5	0.5
	남구	48.0	20.0	5.6	26.0	0.2	0.2
	북구	65.1	11.4	1.9	20.8	0.1	0.7
	해운대구	49.0	9.8	22.9	13.4	4.2	0.7
	사하구	58.1	7.0	12.4	21.5	-	0.9
	금정구	44.4	19.7	24.7	10.1	0.9	0.1
	강서구	2.1	0.7	11.5	85.5	-	0.2
	연제구	39.7	9.5	7.6	41.8	0.1	1.4
	수영구	41.1	30.2	7.0	21.2	0.3	0.2
	사상구	53.1	8.1	22.9	16.0	-	-
	기장군	54.9	8.9	2.8	30.4	0.1	2.8
대구	중구	55.9	9.0	12.3	21.1	0.2	1.5
	동구	29.4	14.4	2.2	51.5	0.0	2.6
	서구	13.1	9.6	23.6	51.6	0.0	2.0
	남구	11.3	11.6	16.3	59.1	0.1	1.6

〈부록 표 2〉 계속

(단위: %)

구 분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광 역 시	북구	80.9	4.3	5.3	9.2	0.0	0.2
	수성구	47.7	7.4	7.7	35.6	0.1	1.5
	달서구	99.9	-	0.1	-	-	-
	달성군	68.6	4.9	1.9	23.8	-	0.8
인 천 광 역 시	중구	20.3	25.9	3.4	46.9	0.5	3.0
	동구	43.9	7.9	8.4	39.5	-	0.3
	연수구	97.4	0.2	1.3	0.2	0.8	0.1
	남동구	67.9	19.4	5.0	7.3	0.0	0.3
	부평구	77.7	15.8	1.7	4.3	0.2	0.3
	계양구	65.3	22.2	4.5	6.2	0.7	1.1
	서구	55.5	27.9	3.4	11.6	0.2	1.5
광 주 광 역 시	동구	20.6	4.4	4.6	69.4	0.8	0.3
	서구	56.5	1.9	1.1	38.4	0.2	2.0
	남구	69.1	1.0	0.7	28.8	0.1	0.2
	북구	54.2	0.7	0.4	41.5	0.2	3.0
	광산구	83.1	0.4	1.0	15.3	0.0	0.2
대 전 광 역 시	동구	93.6	2.7	0.4	2.8	0.0	0.4
	서구	80.1	5.4	2.7	11.3	0.1	0.3
	유성구	98.1	0.2	0.5	1.1	-	0.0
	대덕구	52.5	14.2	7.5	22.2	0.0	3.5
울 산 광 역 시	중구	47.7	12.5	8.4	30.9	0.1	0.5
	남구	97.9	0.7	0.2	1.0	0.0	0.1
	동구	58.8	11.4	4.0	24.5	0.4	0.9
	울주군	62.0	5.3	2.2	28.7	1.5	0.2
경 기 도	수원시	70.5	7.2	6.7	14.4	0.3	0.9
	성남시	38.0	15.4	22.6	21.4	2.4	0.2
	의정부시	92.3	7.1	0.5	0.2	-	-
	안양시	94.2	4.4	0.5	0.7	-	0.2
	부천시	51.5	20.4	8.0	17.8	0.6	1.7
	광명시	54.4	23.9	11.0	9.7	0.1	1.0
	평택시	46.4	8.6	2.3	39.5	1.2	2.0
	안산시	33.0	21.3	41.2	3.2	0.6	0.7
	고양시	99.8	0.1	0.0	0.0	0.0	0.0
	과천시	82.1	3.1	4.9	9.3	-	0.6
	구리시	64.8	8.6	4.3	21.1	0.3	0.9
	남양주시	63.1	16.7	4.0	15.7	0.1	0.5
	시흥시	94.6	2.2	2.3	0.5	0.1	0.4
	군포시	96.4	2.5	0.6	0.2	-	0.4
	의왕시	70.4	15.4	6.6	7.0	0.2	0.4
	하남시	45.2	3.6	5.3	44.6	0.3	1.1

〈부록 표 2〉 계속

(단위: %)

구 분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경기도	용인시	90.5	4.1	0.5	4.4	0.1	0.4
	파주시	49.4	3.6	1.5	45.0	0.2	0.4
	이천시	45.1	11.8	4.8	34.3	1.3	2.7
	안성시	66.3	4.9	3.6	23.1	1.5	0.6
	김포시	74.9	8.7	2.6	12.5	0.8	0.5
	광주시	89.6	3.5	2.0	4.4	0.2	0.4
	연천군	16.1	4.8	0.5	78.2	0.1	0.3
	양평군	2.2	5.6	1.1	87.3	-	3.7
강원도	춘천시	62.3	2.7	2.8	31.1	0.1	1.0
	원주시	48.7	1.9	3.8	44.7	0.2	0.6
	강릉시	89.0	1.4	0.8	8.7	0.0	0.1
	동해시	55.8	7.3	2.0	32.6	0.2	2.1
	속초시	71.9	2.4	1.9	22.1	0.3	1.5
	삼척시	39.7	3.8	1.5	52.1	0.1	2.8
	홍천군	39.8	9.7	2.3	46.9	0.1	1.2
	횡성군	11.2	3.6	1.0	83.1	0.2	0.9
	영월군	7.9	6.1	3.0	81.0	-	2.0
	평창군	15.6	5.1	4.8	69.1	0.4	5.0
	정선군	32.0	5.2	1.9	55.4	0.1	5.2
	철원군	36.7	18.4	1.1	42.5	-	1.4
	화천군	20.8	1.2	6.3	69.4	0.4	2.0
	양구군	45.4	3.7	1.0	48.3	-	1.6
	인제군	23.4	8.6	8.0	57.2	0.2	2.5
	고성군	0.6	0.4	2.1	95.4	-	1.5
	양양군	17.6	6.6	2.1	73.6	-	-
충청북도	청주시	98.2	0.6	0.2	1.1	-	-
	충주시	52.6	4.1	1.3	41.7	0.0	0.3
	제천시	98.9	0.9	0.0	0.2	-	-
	청원군	42.7	1.2	4.9	49.8	-	1.5
	보은군	-	0.2	0.2	99.5	-	0.2
	옥천군	35.9	2.4	-	61.4	-	0.2
	영동군	5.2	2.5	1.0	91.1	0.1	0.1
	진천군	39.6	14.7	1.7	43.2	-	0.8
	괴산군	1.0	0.3	3.3	94.9	-	0.5
	음성군	29.8	9.8	0.7	57.6	0.1	1.9
	단양군	17.6	4.0	3.7	72.4	-	2.2
충청남도	증평군	49.0	9.4	5.2	35.4	-	1.0
	천안시	58.3	6.0	3.5	29.2	1.3	1.6
	공주시	36.5	4.7	2.6	54.2	0.4	1.7
	보령시	14.7	2.1	1.0	80.7	-	1.5

〈부록 표 2〉 계속

(단위: %)

구 분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충청남도	아산시	56.4	4.7	3.2	35.2	0.0	0.4
	서산시	57.4	12.3	1.2	28.0	0.2	0.8
	논산시	8.5	2.1	0.4	88.7	0.1	0.2
	계룡시	99.9	-	0.1	-	-	-
	금산군	21.2	5.8	-	72.5	-	0.4
	부여군	21.3	6.7	2.7	66.0	0.1	3.3
	서천군	12.0	10.1	0.5	72.3	0.3	4.9
	청양군	16.6	12.5	4.6	64.8	0.2	1.3
	홍성군	16.9	5.6	5.8	67.5	0.9	3.4
	예산군	13.1	3.1	-	80.5	0.8	2.6
	태안군	10.2	6.0	0.8	82.6	0.4	-
	당진군	58.4	12.8	1.6	25.0	-	2.1
전라북도	전주시	57.1	2.4	2.6	37.8	0.1	0.1
	군산시	90.9	6.3	0.3	2.4	-	0.1
	익산시	56.9	2.4	0.9	37.8	0.0	2.0
	정읍시	30.3	1.3	0.4	66.9	0.1	0.9
	남원시	61.9	2.2	4.4	28.0	-	3.5
	김제시	27.4	1.2	3.4	67.7	0.3	0.1
	완주군	3.0	0.3	-	96.3	-	0.4
	진안군	26.5	1.1	1.7	70.8	-	-
	임실군	17.7	1.6	2.6	71.1	-	6.9
	순창군	16.9	0.7	0.2	81.8	-	0.4
	고창군	17.4	1.4	1.1	79.8	-	0.3
	부안군	9.8	2.1	1.4	83.6	0.2	2.9
전라남도	목포시	55.0	6.5	5.4	28.5	2.1	2.5
	여주시	47.4	2.3	0.2	49.6	0.1	0.5
	순천시	57.7	0.9	0.2	40.3	0.2	0.7
	나주시	17.9	0.6	0.1	77.9	-	3.4
	광양시	58.2	4.6	0.9	35.9	0.4	-
	곡성군	12.9	0.8	0.5	84.3	-	1.5
	구례군	1.7	1.2	-	95.6	0.3	1.2
	보성군	7.4	0.9	0.6	90.8	-	0.3
	화순군	6.7	0.3	0.5	91.7	-	0.8
	장흥군	6.9	1.9	3.4	87.1	-	0.7
	강진군	2.7	2.6	0.8	92.2	-	1.8
	해남군	5.0	0.5	0.1	93.5	0.1	0.7
	무안군	21.2	2.7	0.6	74.4	0.1	1.0
	함평군	2.3	0.5	0.4	93.4	-	3.4
	영광군	9.7	1.8	0.9	85.5	0.2	1.9
	완도군	25.8	4.5	1.0	67.9	-	0.9

〈부록 표 2〉 계속

(단위: %)

구 분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기타
경 상 북 도	포항시	49.8	8.2	1.2	39.3	0.3	1.2
	경주시	25.8	5.1	3.4	64.8	0.1	0.7
	김천시	62.5	4.7	1.6	30.6	-	0.7
	안동시	45.8	1.0	0.3	52.3	-	0.6
	구미시	53.7	11.5	5.7	24.8	0.3	4.0
	영주시	36.9	5.7	1.3	55.0	-	1.2
	영천시	28.0	3.1	0.7	66.2	0.1	2.0
	상주시	24.1	3.8	0.4	71.2	0.2	0.3
	경산시	82.1	3.9	0.5	12.9	0.0	0.6
	군위군	2.1	1.5	4.2	90.4	-	1.8
	의성군	22.3	5.2	1.5	66.1	-	4.9
	청송군	4.3	1.0	0.5	79.8	-	14.3
	영양군	5.3	10.2	31.6	49.6	-	3.3
	영덕군	11.0	3.2	3.7	80.4	0.1	1.6
	청도군	0.9	1.3	-	97.8	-	-
	성주군	3.0	0.7	2.2	89.7	-	4.5
	칠곡군	48.6	7.9	1.8	39.1	0.2	2.3
	예천군	31.6	4.9	0.8	61.9	0.3	0.6
	봉화군	9.9	2.1	6.6	80.6	-	0.8
	울진군	13.6	12.4	3.4	66.7	-	4.0
경 상 남 도	창원시	92.7	1.1	1.6	4.2	0.2	0.2
	마산시	48.3	3.1	1.9	45.3	0.7	0.6
	진주시	38.5	3.3	6.2	51.1	0.1	0.7
	진해시	44.2	5.4	1.1	48.8	0.3	0.2
	통영시	37.8	4.6	11.9	41.1	1.0	3.6
	사천시	40.2	2.8	1.9	53.9	0.2	1.0
	김해시	90.5	2.4	0.6	6.3	0.0	0.1
	밀양시	22.3	1.5	0.6	73.5	-	2.1
	거제시	52.0	6.4	4.7	34.2	1.0	1.8
	양산시	69.5	4.2	10.1	15.5	0.2	0.5
	의령군	7.2	1.5	7.7	83.5	0.2	-
	창녕군	5.5	3.6	0.2	88.2	-	2.5
	고성군	12.4	3.3	1.4	81.9	0.4	0.6
	남해군	3.1	0.7	0.4	95.5	-	0.3
	하동군	17.2	4.6	2.5	71.7	-	4.0
	산청군	0.9	0.2	0.4	97.8	-	0.7
	함양군	20.9	4.0	2.5	70.5	0.2	1.9
	합천군	9.3	1.9	0.5	87.7	0.1	0.6
제주도	제주시	-	-	2.4	97.6	-	-
	서귀포시	3.0	6.1	2.0	88.9	-	-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가구수를 기준으로 0.11%)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3〉 응답자의 직업 비율

(단위: %)

구 분		학생	주부/ 무직	전문직/기 술직	행정/ 사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 어업/ 수산업	생산/ 운수/일반 노무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16.7	39.6	11.1	9.7	3.5	3.8	0.0	3.5	12.1
	중구	19.1	39.3	9.9	9.1	3.3	7.7	0.0	2.6	9.0
	용산구	13.7	32.9	11.7	8.3	11.3	9.7	0.1	4.6	7.7
	성동구	24.7	27.8	12.3	12.4	3.6	6.3	0.0	4.0	8.9
	광진구	56.7	10.4	8.1	6.7	3.5	4.4	0.1	2.7	7.4
	동대문구	9.3	32.7	12.0	9.3	3.5	4.1	0.2	2.2	26.7
	중랑구	17.0	36.3	8.6	8.9	4.4	6.2	0.1	6.1	12.3
	성북구	19.5	31.9	8.5	12.0	2.1	3.4	0.1	2.0	20.6
	강북구	6.5	38.4	9.8	5.7	7.4	5.0	0.1	3.8	23.3
	도봉구	23.9	27.2	10.8	10.1	3.8	6.5	0.0	4.5	13.3
	노원구	24.3	31.2	7.9	10.2	1.8	3.5	0.0	1.7	19.4
	서대문구	21.8	24.8	12.2	11.3	6.7	10.1	-	2.9	10.1
	마포구	15.8	30.3	15.7	10.9	6.4	8.9	0.1	4.9	7.1
	양천구	27.1	24.0	15.4	12.5	2.0	4.9	0.1	2.1	12.0
	강서구	20.3	40.9	9.1	12.4	1.4	4.1	0.1	2.6	9.1
	구로구	24.0	23.4	15.5	14.6	5.3	6.4	0.2	3.6	7.1
	관악구	18.5	25.6	12.3	10.5	4.0	6.0	0.1	4.5	18.5
	서초구	26.1	25.3	14.4	11.0	2.3	3.9	0.5	1.3	15.1
	송파구	6.0	25.7	8.5	6.6	10.3	11.6	0.0	1.8	29.6
	강동구	21.7	30.7	10.8	11.5	3.1	4.7	0.0	2.5	15.1
부산광역시	중구	16.7	42.4	7.3	7.4	6.1	4.1	0.3	5.6	10.1
	서구	23.4	24.9	9.9	7.2	9.1	9.3	1.6	7.6	7.1
	동구	16.0	23.9	8.2	11.7	10.2	13.1	0.1	2.5	14.4
	영도구	22.0	26.7	12.0	9.2	3.1	8.3	0.9	8.4	9.5
	부산진구	10.6	31.6	10.8	6.1	6.1	7.5	0.6	12.7	14.1
	동래구	21.7	27.4	12.6	9.4	4.3	5.8	1.1	8.3	9.2
	남구	19.2	41.8	8.6	7.0	5.7	7.9	0.1	6.1	3.6
	북구	22.3	27.6	9.9	6.7	4.2	4.7	0.2	9.9	14.6
	해운대구	17.7	34.2	7.3	8.9	5.2	7.1	0.2	9.2	10.2
	사하구	14.3	39.2	10.4	8.0	5.1	4.6	0.9	5.7	11.8
	금정구	10.2	56.2	5.9	3.3	0.6	2.2	0.1	9.7	11.9
	강서구	12.6	35.2	6.6	3.3	1.7	7.7	20.4	8.8	3.7
	연제구	19.1	32.5	8.0	10.7	7.0	7.0	0.1	5.0	10.5
	수영구	18.6	35.4	11.8	5.5	6.0	10.3	0.2	4.6	7.5
	사상구	19.2	42.2	7.4	10.9	2.1	4.6	0.1	10.3	3.3
	기장군	19.2	38.3	12.1	5.0	1.7	3.9	6.7	3.9	9.2
대구	중구	15.3	32.2	13.5	8.2	6.5	6.7	0.2	4.5	12.9
	동구	20.2	33.6	8.2	4.6	4.3	5.7	2.2	5.7	15.6
	서구	8.2	37.2	8.7	3.8	8.5	9.2	0.0	10.4	14.0
	남구	7.5	38.2	7.3	5.9	7.9	7.1	0.1	5.9	20.1

〈부록 표 3〉 계속

(단위: %)

구 분		학생	주부/ 무직	전문직/ 기술직	행정/ 사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 어업/ 수산업	생산/ 운수/일반 노무	기타
광 역 시	북구	24.6	37.7	7.0	8.6	1.9	3.4	0.1	5.4	11.2
	수성구	25.1	25.7	10.5	8.1	3.3	5.4	0.6	5.4	16.0
	달서구	25.9	32.7	9.8	9.3	0.4	3.0	0.3	4.4	14.2
	달성군	24.9	34.6	7.6	6.2	2.1	3.6	7.1	5.7	8.3
인 천 광 역 시	중구	10.6	32.9	10.7	4.9	2.4	6.6	0.3	7.6	24.0
	동구	5.4	37.5	6.3	6.0	18.2	11.2	0.1	3.4	12.0
	연수구	28.7	29.3	10.2	9.7	1.6	2.9	0.2	5.2	12.3
	남동구	8.8	43.5	8.5	8.1	1.3	8.0	1.0	12.1	8.8
	부평구	23.5	34.4	15.9	8.6	1.8	7.2	0.1	3.6	4.8
	계양구	60.9	14.1	7.1	2.0	0.8	3.0	0.3	3.0	8.8
	서구	14.7	38.0	12.3	9.7	5.1	6.3	0.3	4.4	9.2
	광주광역시	13.3	25.3	13.2	10.2	5.5	13.3	0.1	5.1	13.8
대 전 광 역 시	서구	16.2	45.1	3.7	8.1	5.2	10.9	0.6	4.5	5.7
	남구	13.9	33.3	8.4	8.1	3.1	3.7	0.4	4.0	25.2
	북구	16.6	43.3	8.1	5.9	8.5	9.7	0.7	2.9	4.3
	광산구	26.8	32.1	9.1	7.1	1.1	4.5	1.2	8.6	9.4
	울산광역시	23.2	28.0	8.6	7.3	2.1	7.0	0.1	3.2	20.4
울 산 광 역 시	서구	28.9	25.3	8.1	13.8	3.6	5.3	0.3	2.0	12.8
	유성구	13.4	36.9	14.9	12.8	1.4	4.2	0.6	3.2	12.6
	대덕구	19.7	27.0	9.7	6.7	2.4	5.7	0.4	8.6	19.7
	울주군	23.6	23.9	11.6	6.5	1.5	5.0	6.8	9.3	11.7
경 기 도	수원시	28.5	30.2	11.5	8.9	4.2	5.3	0.3	2.4	8.7
	성남시	23.8	38.7	5.0	9.3	2.2	3.8	0.1	4.8	12.3
	의정부시	24.5	36.4	7.5	11.3	1.5	3.3	0.1	2.9	12.4
	안양시	14.4	46.4	11.2	10.1	1.1	4.1	0.1	1.7	10.9
	부천시	20.3	26.1	13.8	9.0	3.9	5.6	0.3	6.5	14.4
	광명시	18.9	34.9	14.8	9.7	3.1	6.3	0.1	5.8	6.2
	평택시	18.8	21.2	10.4	12.4	9.4	7.9	5.0	6.2	8.9
	안산시	27.0	24.5	10.9	8.6	2.0	8.2	0.2	6.6	12.0
	고양시	19.7	34.8	11.2	14.7	1.7	4.0	0.1	1.6	12.3
	과천시	33.4	25.9	11.4	13.6	1.2	2.2	0.5	0.6	11.3
	구리시	16.4	41.3	5.5	6.7	0.7	4.2	0.3	2.8	22.2
	남양주시	21.8	35.3	9.1	6.6	4.7	2.5	3.5	1.7	14.8
	시흥시	27.4	29.2	7.7	9.2	1.8	2.8	0.2	6.5	15.2
	군포시	18.8	34.4	7.9	9.5	2.7	2.3	0.0	5.2	19.3
	의왕시	41.3	19.0	7.5	10.2	2.8	5.0	0.2	6.3	7.7
	하남시	8.8	35.4	11.5	7.0	3.3	5.3	0.5	6.8	21.4

〈부록 표 3〉 계속

(단위: %)

구 분		학생	주부/ 무직	전문직/ 기술직	행정/ 사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 어업/ 수산업	생산/ 운수/일반 노무	기타
경 기 도	용인시	25.3	38.7	8.8	9.5	1.3	3.7	0.3	2.1	10.5
	파주시	19.4	20.5	10.2	20.4	1.2	4.1	7.7	3.7	12.8
	이천시	18.7	13.7	16.0	10.3	13.2	14.0	2.6	2.7	8.7
	안성시	26.9	18.7	8.8	18.3	4.0	7.2	2.8	6.8	6.6
	김포시	26.3	23.8	10.9	17.2	4.7	7.0	1.5	3.9	4.6
	광주시	22.0	35.9	9.7	10.0	0.6	4.7	0.2	2.5	14.3
	연천군	13.4	38.5	5.5	4.9	4.2	3.6	22.3	3.2	4.4
	양평군	9.0	5.1	4.6	9.3	1.7	4.4	55.0	3.2	7.6
강 원 도	춘천시	19.6	38.0	6.5	7.3	4.8	10.4	2.2	4.7	6.5
	원주시	17.7	27.4	8.8	7.9	3.1	5.5	12.1	5.5	11.9
	강릉시	27.7	34.3	9.9	5.4	1.4	4.0	0.7	3.1	13.7
	동해시	21.4	26.7	8.8	7.8	5.6	13.1	1.5	6.5	8.7
	속초시	13.5	26.7	7.7	7.8	4.3	7.4	0.8	3.0	28.6
	삼척시	15.3	34.2	8.6	4.0	6.2	6.5	2.6	18.1	4.5
	홍천군	30.0	16.4	9.8	8.7	4.7	5.3	6.6	4.0	14.4
	횡성군	15.0	21.0	4.1	11.3	2.3	4.8	30.4	1.7	9.3
	영월군	7.9	25.0	6.3	8.8	1.1	3.0	28.0	2.7	17.1
	평창군	18.0	17.6	6.1	7.7	1.9	5.5	19.1	6.3	17.8
	정선군	18.1	20.2	9.5	5.7	7.3	11.6	8.2	3.3	16.0
	철원군	22.5	23.6	6.7	11.5	5.2	11.4	6.2	3.5	9.4
	화천군	1.3	15.3	13.1	10.2	9.3	8.0	6.4	6.4	30.1
	양구군	25.2	32.1	3.0	5.5	0.7	1.9	11.0	1.8	18.7
	인제군	36.0	16.1	7.8	9.0	8.4	4.9	6.6	2.1	9.1
	고성군	16.1	26.0	2.6	3.4	2.3	1.7	27.2	4.5	16.3
	양양군	11.1	43.2	2.7	7.8	0.6	4.8	14.8	5.6	9.4
충 청 북 도	청주시	25.1	32.0	11.6	8.7	1.8	4.5	0.2	4.6	11.4
	충주시	12.7	43.6	8.6	7.9	4.8	8.5	5.4	7.3	1.2
	제천시	10.4	49.3	13.0	4.7	1.4	5.6	0.2	7.3	8.3
	청원군	15.1	20.2	6.5	4.9	1.6	6.2	22.4	6.5	16.5
	보은군	11.3	26.8	2.7	2.1	1.0	2.0	42.6	1.9	9.8
	옥천군	14.4	32.3	4.9	5.6	0.5	6.0	23.3	6.6	6.3
	영동군	6.5	29.6	7.4	4.1	1.8	4.8	34.2	4.3	7.3
	진천군	37.3	10.3	8.0	5.8	3.2	8.2	7.5	14.1	5.4
	괴산군	6.3	25.8	2.2	2.7	0.9	0.9	53.1	1.7	6.3
	음성군	18.0	12.2	6.8	4.8	4.8	5.7	11.2	8.3	28.2
	단양군	13.8	18.3	9.8	5.6	7.5	10.3	16.2	4.3	14.3
	증평군	19.5	16.5	7.0	6.0	3.5	13.5	4.5	10.0	19.5
충 청 남 도	천안시	24.4	24.8	9.4	9.7	2.8	5.4	5.8	6.7	11.1
	공주시	7.8	33.0	10.4	7.6	6.2	5.6	15.9	4.1	9.5
	보령시	10.5	27.0	5.0	4.6	2.2	3.7	30.1	6.2	10.7

〈부록 표 3〉 계속

(단위: %)

구 분		학생	주부/ 무직	전문직/ 기술직	행정/ 사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 어업/ 수산업	생산/ 운수/일반 노무	기타
충청남도	아산시	16.6	32.5	9.4	5.8	2.9	4.8	7.1	10.9	10.0
	서산시	23.5	26.5	10.2	7.7	4.0	5.9	4.2	4.7	13.4
	논산시	0.8	15.3	11.7	5.1	17.4	3.7	23.1	9.2	13.7
	계룡시	20.1	42.3	18.7	7.0	1.3	2.7	0.0	0.5	7.3
	금산군	6.6	42.6	4.9	1.9	5.0	2.2	28.5	5.5	2.9
	부여군	15.0	18.9	8.2	11.6	2.9	6.0	23.0	3.3	11.0
	서천군	10.4	33.5	5.8	5.7	7.2	5.8	21.2	6.1	4.4
	청양군	53.7	14.6	2.4	4.9	2.4	12.2	-	4.9	4.9
	홍성군	15.9	21.1	6.2	3.5	7.1	5.1	8.7	3.1	29.1
	예산군	7.4	30.2	2.9	4.3	2.1	6.1	31.3	8.2	7.5
전라북도	태안군	5.8	18.9	4.3	4.5	5.8	3.5	42.8	5.9	8.5
	당진군	29.7	14.6	16.9	9.6	7.1	8.2	2.0	5.3	6.6
	전주시	24.0	33.7	7.7	7.9	3.7	4.8	0.7	8.3	9.3
	군산시	21.9	41.3	7.9	6.6	1.8	2.9	0.6	10.5	6.6
	익산시	38.5	21.3	7.4	6.4	7.1	5.1	3.2	6.7	4.3
	정읍시	24.4	20.8	6.9	5.1	3.9	4.5	17.3	2.9	14.1
	남원시	32.3	17.8	10.2	9.0	6.1	6.6	1.6	4.2	12.3
	김제시	12.5	13.6	3.7	9.6	1.3	5.4	41.8	3.8	8.3
	완주군	6.4	33.2	1.9	1.9	0.6	0.4	48.9	2.6	4.1
	진안군	12.5	25.8	3.3	14.2	1.0	3.6	31.8	2.0	5.7
전라남도	임실군	15.1	16.8	4.7	14.8	9.9	6.4	18.9	2.6	10.7
	순창군	10.9	18.9	2.4	7.6	1.1	3.2	47.6	1.7	6.6
	고창군	11.9	16.0	5.0	5.9	1.9	2.8	49.0	1.6	5.7
	부안군	11.7	16.2	5.9	5.2	4.6	7.5	31.0	4.1	13.9
	목포시	23.8	28.8	8.8	6.2	5.6	9.5	1.1	9.6	6.5
	여수시	18.3	43.6	5.9	5.1	1.9	2.0	5.0	6.4	11.8
	순천시	17.7	24.8	10.9	10.0	6.7	13.5	6.2	3.6	6.6
	나주시	14.2	23.6	3.6	3.8	2.0	4.4	38.2	4.4	5.9
	광양시	22.1	35.0	14.1	5.3	1.5	3.2	8.1	6.5	4.2
	곡성군	3.6	26.1	4.3	5.9	4.2	5.3	42.4	3.3	5.0
	구례군	10.6	18.3	1.8	3.7	1.9	1.1	54.1	1.7	6.7
	보성군	13.4	25.8	2.2	4.2	3.4	5.8	38.6	1.8	4.8
	화순군	9.9	12.8	3.5	4.2	1.6	2.6	52.7	5.6	7.1
	장흥군	12.6	14.6	3.8	7.1	1.5	2.1	44.9	2.6	10.8
	강진군	12.1	16.2	3.4	3.7	0.9	4.6	52.0	1.9	5.1
	해남군	17.9	18.3	2.8	2.9	0.7	5.3	42.6	2.4	7.1
	무안군	19.2	17.1	4.2	7.4	3.5	3.0	38.4	2.5	4.8
	함평군	13.1	14.7	2.0	2.5	1.0	3.4	56.9	2.3	4.2
	영광군	14.6	20.6	3.5	4.7	3.4	3.4	37.7	1.7	10.4
	완도군	18.3	17.9	4.3	8.8	2.3	2.7	28.8	2.1	14.8

〈부록 표 3〉 계속

(단위: %)

구 분		학생	주부/ 무직	전문직/ 기술직	행정/ 사무/ 관리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 어업/ 수산업	생산/ 운수/일반 노무	기타
정 상 북 도	포항시	21.4	36.4	9.8	5.9	2.7	4.7	3.5	8.9	6.8
	경주시	16.0	24.8	5.8	6.9	2.8	4.5	20.2	7.2	11.8
	김천시	24.1	35.4	5.3	7.1	3.2	4.1	4.1	12.5	4.1
	안동시	10.5	57.4	3.8	3.0	1.7	3.7	9.9	2.1	7.8
	구미시	24.3	19.6	8.3	10.1	6.0	13.2	1.3	7.5	9.8
	영주시	2.2	44.0	7.3	6.3	4.9	16.1	9.0	4.1	6.1
	영천시	17.8	26.4	7.5	4.5	2.7	6.1	22.9	5.6	6.7
	상주시	10.2	21.1	6.6	3.8	1.8	3.4	28.1	2.1	22.8
	경산시	22.3	34.6	9.9	6.4	2.4	5.4	3.7	6.5	8.7
	군위군	7.2	18.3	4.1	2.2	2.6	4.8	53.5	5.0	2.3
	의성군	20.0	28.3	5.8	5.1	3.2	6.3	14.2	4.0	13.2
	청송군	7.8	21.0	3.5	3.7	1.9	3.0	43.5	2.6	13.0
	영양군	14.6	14.6	2.9	26.9	3.1	7.0	16.7	6.5	7.6
	영덕군	0.7	15.3	2.3	9.9	1.4	2.3	20.1	5.5	42.5
	청도군	6.3	25.4	2.1	2.6	0.6	2.1	50.7	3.0	7.3
	성주군	9.6	30.1	3.1	2.7	4.8	3.9	36.3	3.3	6.1
	칠곡군	20.0	31.6	7.2	6.1	2.0	3.2	10.7	8.9	10.4
	예천군	17.0	29.3	2.0	5.1	3.3	3.3	17.5	2.7	19.8
	봉화군	9.6	27.5	3.1	2.7	1.4	4.8	35.9	3.4	11.7
	울진군	14.2	17.3	6.5	9.2	6.3	6.6	13.1	8.0	18.8
정 상 남 도	창원시	11.5	39.1	9.6	10.1	3.6	3.9	0.1	13.4	8.8
	마산시	8.8	45.3	6.4	3.8	9.7	10.9	4.4	3.4	7.3
	진주시	24.5	24.8	9.2	6.6	3.1	6.3	7.7	5.6	12.2
	진해시	13.9	43.6	9.3	6.5	4.4	5.6	1.0	5.5	10.1
	통영시	17.4	23.2	8.9	4.5	4.3	7.4	8.2	9.0	17.1
	사천시	14.3	29.0	9.7	3.6	2.0	8.6	12.4	7.4	13.1
	김해시	25.3	31.7	11.3	7.8	1.6	3.9	1.3	5.6	11.4
	밀양시	15.8	30.8	4.1	4.4	3.4	5.5	24.0	4.9	7.0
	거제시	19.6	35.7	17.5	6.7	2.7	4.4	1.7	5.5	6.1
	양산시	20.1	28.1	8.8	8.7	3.3	5.5	0.9	15.3	9.4
	의령군	16.6	24.3	3.4	6.9	2.6	4.5	27.8	4.4	9.6
	창녕군	9.3	27.1	1.8	4.2	2.1	7.8	33.6	5.3	8.8
	고성군	12.0	17.2	4.7	8.5	1.1	3.8	36.1	3.6	13.0
	남해군	12.5	23.8	4.2	4.0	2.7	3.8	44.0	1.4	3.6
	하동군	20.2	19.7	5.8	6.4	4.6	12.0	19.6	4.8	7.0
	산청군	15.4	6.0	2.2	2.4	1.3	2.6	51.0	2.8	16.3
	함양군	17.8	19.7	3.9	9.6	2.6	4.2	23.3	3.8	15.1
	합천군	0.4	37.2	2.1	5.5	4.0	5.9	39.2	2.4	3.3
제주도	제주시	3.5	-	-	-	-	-	95.4	-	1.2
	서귀포시	32.9	12.7	3.8	5.7	1.6	4.4	19.3	6.0	13.6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은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4〉 시군구별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유율

(단위: 명, 대, %)

구 분		총 세대원 수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보유율
서울특별시	종로구	7,918	984	12.4
	중구	6,440	786	12.2
	용산구	6,464	734	11.4
	성동구	23,265	6,692	28.8
	광진구	6,624	2,527	38.1
	동대문구	17,563	5,459	31.1
	중랑구	13,450	3,047	22.7
	성북구	8,490	1,768	20.8
	강북구	8,196	2,010	24.5
	도봉구	9,324	3,507	37.6
	노원구	19,763	7,276	36.8
	서대문구	288	113	39.2
	마포구	13,911	4,761	34.2
	양천구	4,842	2,141	44.2
	강서구	26,435	5,730	21.7
	구로구	13,492	4,069	30.2
	관악구	10,040	2,647	26.4
	서초구	9,991	3,481	34.8
	송파구	11,418	2,648	23.2
	강동구	20,957	6,410	30.6
부산광역시	중구	4,658	220	4.7
	서구	7,247	800	11.0
	동구	4,290	551	12.8
	영도구	6,610	518	7.8
	부산진구	14,492	1,722	11.9
	동래구	12,813	2,483	19.4
	남구	13,714	1,894	13.8
	북구	13,240	1,421	10.7
	해운대구	15,620	1,627	10.4
	사하구	11,924	1,222	10.2
	금정구	6,854	666	9.7
	강서구	2,161	1,069	49.5
	연제구	9,999	1,585	15.9
	수영구	8,553	779	9.1
	사상구	11,372	1,366	12.0
	기장군	4,403	777	17.6
대구	중구	3,859	855	22.2
	동구	13,995	3,962	28.3
	서구	11,721	2,818	24.0
	남구	8,736	1,860	21.3

〈부록 표 4〉 계속

(단위: 명, 대, %)

구 분		총 세대원 수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보유율
광 역 시	북구	23,531	6,457	27.4
	수성구	13,710	4,552	33.2
	달서구	2,682	576	21.5
	달성군	5,814	1,949	33.5
인 천 광 역 시	중구	1,459	143	9.8
	동구	4,440	705	15.9
	연수구	11,168	3,431	30.7
	남동구	7,781	1,693	21.8
	부평구	31,473	7,170	22.8
	계양구	17,048	3,879	22.8
	서구	14,337	3,620	25.2
광 주 광 역 시	동구	4,127	691	16.7
	서구	7,468	1,237	16.6
	남구	12,172	1,793	14.7
	북구	14,392	2,843	19.8
	광산구	14,670	3,658	24.9
대 전 광 역 시	동구	12,650	2,912	23.0
	서구	15,606	4,494	28.8
	유성구	13,375	4,093	30.6
	대덕구	8,021	1,776	22.1
울 산 광 역 시	중구	18,010	4,193	23.3
	남구	16,528	4,571	27.7
	동구	4,865	805	16.5
	울주군	7,015	1,963	28.0
경 기 도	수원시	9,102	3,097	34.0
	성남시	28,738	5,460	19.0
	의정부시	19,808	5,859	29.6
	안양시	20,127	5,485	27.3
	부천시	41,492	11,589	27.9
	광명시	13,309	4,231	31.8
	평택시	11,980	3,310	27.6
	안산시	6,018	1,584	26.3
	고양시	20,214	5,706	28.2
	과천시	3,007	1,204	40.0
	구리시	8,547	2,852	33.4
	남양주시	25,500	6,384	25.0
	시흥시	31,830	8,894	27.9
	군포시	3,406	667	19.6
	의왕시	5,739	1,250	21.8
	하남시	6,785	2,311	34.1

〈부록 표 4〉 계속

(단위: 명, 대, %)

구 분		총 세대원 수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보유율
경기도	용인시	10,888	3,366	30.9
	파주시	4,524	1,741	38.5
	이천시	3,659	1,116	30.5
	안성시	2,658	669	25.2
	김포시	10,708	3,184	29.7
	광주시	7,609	2,338	30.7
	연천군	6,143	2,209	36.0
	양평군	871	385	44.2
강원도	춘천시	10,784	3,781	35.1
	원주시	6,903	2,432	35.2
	강릉시	9,250	4,012	43.4
	동해시	5,312	1,476	27.8
	속초시	4,751	1,085	22.8
	삼척시	2,530	518	20.5
	홍천군	2,614	1,255	48.0
	횡성군	1,324	531	40.1
	영월군	1,187	367	30.9
	평창군	1,093	563	51.5
	정선군	2,246	615	27.4
	철원군	1,621	519	32.0
	화천군	795	226	28.4
	양구군	1,595	484	30.3
	인제군	1,774	555	31.3
	고성군	1,492	499	33.4
	양양군	1,418	563	39.7
충청북도	청주시	3,135	768	24.5
	충주시	9,825	2,893	29.4
	제천시	8,405	1,974	23.5
	청원군	1,069	314	29.4
	보은군	1,390	497	35.8
	옥천군	2,823	628	22.2
	영동군	1,849	584	31.6
	진천군	3,246	1,393	42.9
	괴산군	804	182	22.6
	음성군	3,996	782	19.6
	단양군	700	219	31.3
	증평군	340	124	36.5
	천안시	19,494	6,839	35.1
	공주시	6,060	1,352	22.3
	보령시	2,525	974	38.6

〈부록 표 4〉 계속

(단위: 명, 대, %)

구 분		총 세대원 수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보유율
충청남도	아산시	15,270	3,395	22.2
	서산시	7,046	1,971	28.0
	논산시	5,903	1,452	24.6
	계룡시	4,167	1,242	29.8
	금산군	1,899	583	30.7
	부여군	3,460	939	27.1
	서천군	2,634	912	34.6
	청양군	1,742	640	36.7
	홍성군	4,356	934	21.4
	예산군	821	407	49.6
	태안군	2,374	428	18.0
	당진군	1,742	528	30.3
전라북도	전주시	15,574	3,235	20.8
	군산시	10,022	2,589	25.8
	익산시	14,569	4,239	29.1
	정읍시	5,274	1,675	31.8
	남원시	2,804	1,227	43.8
	김제시	3,629	1,339	36.9
	완주군	1,396	581	41.6
	진안군	1,147	453	39.5
	임실군	1,202	508	42.3
	순창군	1,386	519	37.4
	고창군	2,441	904	37.0
	부안군	1,397	587	42.0
전라남도	목포시	13,895	1,767	12.7
	여수시	10,286	1,452	14.1
	순천시	12,473	3,176	25.5
	나주시	3,579	1,176	32.9
	광양시	7,561	2,089	27.6
	곡성군	2,457	1,034	42.1
	구례군	892	296	33.2
	보성군	1,989	517	26.0
	화순군	869	384	44.2
	장흥군	1,734	595	34.3
	강진군	1,601	511	31.9
	해남군	3,765	585	15.5
	무안군	3,475	709	20.4
	함평군	2,020	663	32.8
	영광군	2,395	839	35.0
	완도군	5,454	1,108	20.3

〈부록 표 4〉 계속

(단위: 명, 대, %)

구 분		총 세대원 수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 보유율
경상북도	포항시	23,026	6,642	28.8
	경주시	11,478	4,519	39.4
	김천시	3,589	1,367	38.1
	안동시	5,452	1,213	22.2
	구미시	19,115	4,642	24.3
	영주시	2,132	607	28.5
	영천시	4,427	1,209	27.3
	상주시	5,913	2,653	44.9
	경산시	11,815	3,010	25.5
	군위군	2,742	998	36.4
	의성군	2,984	1,006	33.7
	청송군	1,278	317	24.8
	영양군	398	92	23.1
	영덕군	1,909	756	39.6
	청도군	1,879	483	25.7
	성주군	1,835	668	36.4
	칠곡군	7,798	2,547	32.7
	예천군	5,282	1,566	29.6
경상남도	창원시	21,216	5,016	23.6
	마산시	31,034	4,902	15.8
	진주시	12,343	4,466	36.2
	진해시	7,695	1,780	23.1
	통영시	4,169	460	11.0
	사천시	5,889	1,941	33.0
	김해시	23,289	6,178	26.5
	밀양시	1,956	524	26.8
	거제시	15,618	2,641	16.9
	양산시	11,410	968	8.5
	의령군	1,449	537	37.1
	창녕군	2,067	753	36.4
	고성군	2,163	652	30.1
	남해군	2,514	611	24.3
	하동군	3,760	685	18.2
	산청군	1,298	393	30.3
	함양군	1,635	463	28.3
	합천군	2,612	405	15.5
제주도	제주시	110	11	10.0
	서귀포시	387	213	55.0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5〉 시군구별 자전거 구입시기

(단위: %)

구 분		1년 이내	2~3년	4~6년	6~10년	10년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20.7	37.6	26.9	10.5	4.2
	중구	15.3	39.4	32.9	9.2	3.2
	용산구	15.4	30.2	31.4	15.2	7.7
	성동구	15.8	44.0	30.9	7.1	2.1
	광진구	27.5	45.1	22.6	3.5	1.2
	동대문구	16.6	44.0	27.9	8.2	3.3
	종랑구	13.0	35.2	39.4	10.2	2.2
	성북구	17.9	39.8	31.4	8.6	2.4
	강북구	15.7	35.0	25.2	8.5	15.6
	도봉구	15.6	43.7	30.0	8.4	2.3
	노원구	15.9	48.7	29.4	5.0	1.0
	서대문구	23.9	39.8	27.4	6.2	2.7
	마포구	17.7	40.7	29.7	8.8	3.1
	양천구	21.5	44.3	25.4	6.3	2.5
	강서구	20.9	44.4	25.5	6.1	3.2
	구로구	11.6	47.1	33.2	6.6	1.3
	관악구	20.2	40.3	28.3	8.2	3.1
	서초구	18.4	43.1	27.5	8.5	2.6
	송파구	13.5	43.0	33.2	6.3	4.1
	강동구	12.4	52.5	30.1	4.2	0.8
부산광역시	중구	21.3	52.1	21.3	3.3	2.1
	서구	19.6	47.3	21.1	6.7	5.3
	동구	22.4	38.4	23.8	9.1	6.3
	영도구	16.4	37.6	31.3	9.7	5.0
	부산진구	10.7	36.1	35.8	11.1	6.4
	동래구	8.1	38.1	36.8	12.7	4.2
	남구	13.9	40.8	35.2	7.3	2.9
	북구	14.0	44.7	33.8	6.4	1.1
	해운대구	14.8	35.5	35.9	10.5	3.3
	사하구	23.7	41.0	26.4	6.8	2.1
	금정구	16.8	38.3	31.0	11.5	2.4
	강서구	10.9	32.3	31.3	17.2	8.3
	연제구	15.6	46.1	26.8	7.8	3.7
	수영구	22.6	38.3	26.4	8.3	4.4
	사상구	30.6	37.1	21.9	7.8	2.6
	기장군	17.3	42.7	26.5	10.2	3.4
대구	중구	19.5	36.9	29.4	9.6	4.7
	동구	15.8	41.0	27.7	10.9	4.6
	서구	14.2	35.8	25.3	14.1	10.6
	남구	9.1	35.8	35.0	13.5	6.6

〈부록 표 5〉 계속

(단위: %)

구 분		1년 이내	2~3년	4~6년	6~10년	10년 이상
광역시	북구	15.1	40.0	31.2	10.2	3.5
	수성구	15.2	40.4	30.1	10.2	4.1
	달서구	23.4	38.2	26.8	9.2	2.5
	달성군	15.5	39.1	31.2	6.8	7.4
인천광역시	중구	13.0	41.1	39.1	5.3	1.4
	동구	19.4	34.0	28.5	6.9	11.2
	연수구	16.5	46.8	28.7	5.8	2.2
	남동구	22.1	42.8	27.5	6.3	1.3
	부평구	21.2	43.0	24.7	7.1	4.0
	계양구	18.3	49.3	26.6	3.9	1.9
	서구	10.7	51.1	31.2	5.3	1.7
광주광역시	동구	9.2	31.4	27.8	9.0	22.6
	서구	12.3	34.4	26.8	14.1	12.3
	남구	14.3	39.8	33.8	7.2	4.9
	북구	13.8	40.1	27.1	8.5	10.5
	광산구	20.6	45.5	24.5	6.3	3.1
대전광역시	동구	23.6	43.3	24.7	6.8	1.5
	서구	15.5	44.4	31.3	6.8	1.9
	유성구	17.1	47.4	27.5	6.7	1.3
	대덕구	14.8	38.0	35.9	7.7	3.6
울산광역시	중구	19.0	42.1	29.8	6.9	2.3
	남구	23.3	42.5	27.8	5.7	0.7
	동구	18.9	40.2	28.2	9.9	2.8
	울주군	14.4	43.4	33.5	6.6	2.0
경기도	수원시	18.2	42.1	29.1	8.1	2.5
	성남시	16.3	48.7	28.1	5.6	1.3
	의정부시	18.2	51.4	26.3	3.4	0.7
	안양시	18.8	40.7	28.9	8.6	3.0
	부천시	16.6	47.6	27.0	6.8	2.0
	광명시	21.1	45.8	23.0	6.9	3.2
	평택시	14.5	42.9	28.5	9.4	4.6
	안산시	14.5	31.4	32.2	9.7	12.2
	고양시	17.3	44.6	26.4	8.7	3.0
	과천시	20.9	42.3	29.0	6.5	1.4
	구리시	17.6	41.6	31.3	7.5	2.0
	남양주시	19.2	45.0	26.9	7.1	1.8
	시흥시	19.4	45.4	27.6	5.9	1.6
	군포시	12.2	47.7	31.7	6.9	1.5
	의왕시	15.1	46.2	31.1	6.2	1.4
	하남시	17.0	51.1	24.2	6.0	1.7

〈부록 표 5〉 계속

(단위: %)

구 분		1년 이내	2~3년	4~6년	6~10년	10년 이상
경기도	용인시	17.5	44.7	30.3	5.5	2.0
	파주시	14.6	45.9	30.0	7.7	1.8
	이천시	17.7	39.5	33.0	7.8	1.9
	안성시	17.7	43.6	28.8	6.3	3.7
	김포시	15.3	47.7	30.1	6.0	1.0
	광주시	12.1	41.2	40.3	5.8	0.6
	연천군	13.5	35.4	32.5	10.4	8.1
	양평군	8.9	46.7	27.7	11.2	5.6
충청남도	춘천시	16.3	36.8	30.0	10.8	6.0
	원주시	13.4	43.2	30.5	8.8	4.2
	강릉시	23.3	43.2	23.5	7.0	3.0
	동해시	19.8	43.4	26.4	8.0	2.4
	속초시	19.6	47.4	23.2	7.1	2.7
	삼척시	6.9	53.0	31.5	6.0	2.6
	홍천군	17.5	49.4	23.2	6.9	3.0
	횡성군	13.9	39.8	32.6	10.1	3.6
	영월군	9.6	43.5	26.6	9.1	11.1
	평창군	14.3	45.4	27.0	10.2	3.0
	정선군	19.6	40.5	20.6	15.7	3.6
	철원군	10.2	39.5	44.9	5.4	-
	화천군	21.9	36.3	30.2	8.8	2.8
	양구군	27.4	34.3	25.9	7.6	4.8
	인제군	22.5	46.7	25.5	3.7	1.6
	고성군	6.6	28.4	44.6	17.7	2.7
	양양군	20.6	39.8	24.7	10.7	4.3
충청북도	청주시	20.6	40.3	26.2	10.2	2.6
	충주시	21.3	38.5	25.0	8.5	6.7
	제천시	19.2	43.8	26.5	7.0	3.5
	청원군	22.0	35.5	25.9	12.9	3.6
	보은군	9.9	31.7	32.3	13.5	12.5
	옥천군	10.4	25.0	34.6	22.8	7.2
	영동군	13.4	34.4	39.2	9.3	3.8
	진천군	27.1	47.7	19.4	3.7	2.2
	괴산군	13.7	49.5	18.7	11.5	6.6
	음성군	13.6	51.1	23.9	5.6	5.8
	단양군	16.5	48.6	23.9	6.4	4.6
	증평군	20.3	49.3	19.6	8.0	2.9
충청남도	천안시	16.4	43.6	28.5	8.6	3.0
	공주시	15.4	35.4	28.4	11.6	9.2
	보령시	14.7	39.7	31.0	10.0	4.6

〈부록 표 5〉 계속

(단위: %)

구 분		1년 이내	2~3년	4~6년	6~10년	10년 이상
충청권 지자체	아산시	18.5	42.4	25.8	8.8	4.4
	서산시	18.0	38.0	33.7	6.5	3.9
	논산시	2.5	34.8	39.2	13.0	10.6
	계룡시	28.4	42.8	21.4	5.3	2.1
	금산군	21.7	47.6	25.0	3.2	2.5
	부여군	15.0	47.7	26.6	8.4	2.3
	서천군	8.0	23.4	25.4	25.9	17.3
	청양군	17.4	40.5	26.2	8.8	7.1
	홍성군	13.6	35.8	33.0	10.9	6.7
	예산군	9.0	12.9	28.9	34.3	14.9
	태안군	5.9	32.5	47.6	14.0	-
	당진군	14.3	48.7	28.6	6.3	2.1
전라권 지자체	전주시	17.8	44.2	25.6	9.4	2.9
	군산시	19.2	37.7	31.2	9.6	2.2
	익산시	4.2	33.9	56.8	4.8	0.4
	정읍시	10.4	38.7	38.7	10.0	2.2
	남원시	11.6	39.4	36.4	9.0	3.7
	김제시	11.1	30.2	31.5	14.9	12.3
	완주군	0.5	5.2	35.1	33.0	26.2
	진안군	10.8	36.9	30.2	15.2	6.8
	임실군	12.6	39.7	26.1	12.2	9.4
	순창군	12.0	28.7	26.7	13.2	19.4
	고창군	10.2	42.3	32.2	11.1	4.2
	부안군	10.3	37.3	30.0	13.8	8.6
전라권 지자체	목포시	8.2	47.2	31.4	10.2	2.9
	여수시	14.6	36.8	37.1	7.9	3.6
	순천시	15.6	33.2	41.6	7.2	2.5
	나주시	5.6	47.6	40.0	5.3	1.5
	광양시	19.6	38.2	31.6	7.5	3.1
	곡성군	7.5	27.2	35.9	14.0	15.5
	구례군	8.0	26.0	38.3	20.7	7.0
	보성군	5.4	21.0	42.2	25.4	6.0
	화순군	6.5	33.0	34.8	18.3	7.3
	장흥군	11.6	32.6	29.2	14.8	11.8
	강진군	9.6	33.3	37.0	10.2	10.0
	해남군	4.0	45.2	44.0	6.7	0.2
	무안군	14.9	52.3	29.0	3.1	0.7
	함평군	7.9	29.5	45.3	12.9	4.4
	영광군	9.2	34.1	30.2	16.8	9.8
	완도군	21.1	43.9	27.5	5.7	1.8

〈부록 표 5〉 계속

(단위: %)

구 분		1년 이내	2~3년	4~6년	6~10년	10년 이상
경상북도	포항시	12.3	44.6	28.9	10.9	3.4
	경주시	12.7	41.6	29.7	10.8	5.2
	김천시	9.5	39.5	39.8	8.8	2.4
	안동시	17.4	32.4	26.2	12.8	11.2
	구미시	18.2	43.3	26.5	7.6	4.4
	영주시	16.5	34.7	23.6	12.5	12.8
	영천시	14.7	37.4	26.3	13.2	8.3
	상주시	9.2	39.0	27.9	14.6	9.3
	경산시	20.8	38.6	28.2	8.9	3.5
	군위군	8.6	24.6	37.7	21.5	7.6
	의성군	12.3	37.9	29.5	11.5	8.7
	청송군	6.6	28.2	31.0	19.0	15.2
	영양군	21.3	37.0	18.5	5.6	17.6
	영덕군	15.4	40.6	29.2	10.3	4.5
	청도군	11.7	26.6	34.2	14.3	13.1
	성주군	3.3	22.7	41.9	20.3	11.8
	칠곡군	11.8	49.1	29.4	7.1	2.6
	예천군	10.3	38.3	44.9	3.9	2.6
경상남도	창원시	17.2	40.8	31.1	8.8	2.1
	마산시	19.5	41.1	26.9	7.3	5.2
	진주시	14.4	40.3	32.0	10.0	3.4
	진해시	18.4	35.4	27.6	9.9	8.7
	통영시	23.6	41.0	22.9	9.7	2.9
	사천시	15.8	42.9	29.7	8.3	3.3
	김해시	22.5	46.7	23.5	5.8	1.5
	밀양시	10.8	28.1	32.7	15.4	13.1
	거제시	20.1	48.2	24.6	4.7	2.4
	양산시	13.8	42.3	25.0	10.6	8.3
	의령군	11.5	29.6	34.0	16.8	8.1
	창녕군	8.6	29.5	30.3	14.7	17.0
	고성군	11.9	37.8	32.3	12.6	5.4
	남해군	16.3	34.3	25.6	12.7	11.1
	하동군	15.3	28.6	38.2	8.0	9.8
	산청군	5.2	27.2	49.2	13.0	5.4
	함양군	22.3	36.8	25.9	7.7	7.3
	합천군	11.2	36.5	25.0	12.4	15.0
제주도	제주시	33.3	16.7	-	50.0	-
	서귀포시	29.4	45.5	20.4	3.3	1.4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6〉 시군구별 보유 자전거의 종류

(단위: %)

구 분		생활형	스포츠 및 레저용	아동용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78.3	10.0	11.5	0.3
	중구	74.3	11.0	14.6	0.1
	용산구	63.3	30.6	5.6	0.5
	성동구	73.1	17.9	8.9	0.1
	광진구	85.1	9.6	4.9	0.5
	동대문구	77.4	8.1	14.4	0.2
	종랑구	85.2	2.4	12.3	0.1
	성북구	68.3	5.0	26.1	0.6
	강북구	80.8	15.1	3.9	0.2
	도봉구	61.0	28.0	10.8	0.3
	노원구	77.0	4.4	17.7	0.9
	서대문구	77.9	19.5	2.7	-
	마포구	78.4	10.1	10.6	0.9
	양천구	83.0	5.1	11.9	-
	강서구	73.6	8.8	17.3	0.3
	구로구	78.5	7.6	13.8	0.1
	관악구	65.3	17.1	16.0	1.6
	서초구	67.4	19.7	12.0	0.9
	송파구	88.1	9.4	2.4	0.2
	강동구	79.3	9.2	11.5	0.0
부산광역시	중구	74.4	3.4	21.0	1.3
	서구	70.4	9.4	20.0	0.3
	동구	86.4	5.5	7.8	0.4
	영도구	76.8	14.0	8.4	0.8
	부산진구	76.7	14.0	8.0	1.4
	동래구	88.4	6.7	4.5	0.5
	남구	70.8	14.5	14.3	0.4
	북구	63.1	16.3	20.2	0.4
	해운대구	89.5	4.1	6.0	0.4
	사하구	83.4	7.5	9.1	0.1
	금정구	33.2	62.4	3.6	0.7
	강서구	93.0	3.1	3.6	0.3
	연제구	65.0	22.2	12.4	0.4
	수영구	88.5	2.0	9.5	-
	사상구	20.7	42.6	36.0	0.7
	기장군	66.9	6.5	26.6	-
대구	중구	83.0	3.2	13.4	0.3
	동구	91.3	2.1	6.0	0.6
	서구	90.1	4.0	5.9	0.1
	남구	89.3	3.2	7.2	0.3

〈부록 표 6〉 계속

(단위: %)

구 분		생활형	스포츠 및 레저용	아동용	기타
광역시	북구	84.8	2.7	12.3	0.1
	수성구	76.8	9.7	12.9	0.6
	달서구	63.5	1.7	34.5	0.2
	달성군	74.5	2.7	22.6	0.2
인천광역시	중구	60.6	18.3	18.9	2.2
	동구	83.0	7.8	8.9	0.3
	연수구	80.1	4.9	14.5	0.5
	남동구	66.0	21.1	12.7	0.3
	부평구	78.3	2.4	19.2	0.1
	계양구	76.2	3.4	20.0	0.4
	서구	60.7	11.5	27.6	0.3
광주광역시	동구	55.6	1.9	42.6	-
	서구	92.3	1.1	5.4	1.2
	남구	67.4	4.4	19.7	8.5
	북구	95.3	1.0	3.3	0.4
	광산구	68.6	0.9	30.2	0.2
대전광역시	동구	66.2	4.6	29.1	0.1
	서구	74.5	5.4	19.9	0.1
	유성구	78.3	2.5	19.2	-
	대덕구	85.2	4.1	10.4	0.3
울산광역시	중구	79.9	4.6	15.0	0.5
	남구	59.9	12.3	27.7	0.1
	동구	74.7	7.2	18.0	0.1
	울주군	63.9	9.9	25.7	0.6
경기도	수원시	62.4	21.7	15.2	0.7
	성남시	75.4	3.4	19.9	1.3
	의정부시	81.0	3.2	15.8	-
	안양시	74.7	6.1	19.1	0.1
	부천시	74.8	8.7	14.9	1.6
	광명시	79.1	10.4	10.3	0.1
	평택시	79.6	12.1	8.1	0.2
	안산시	94.1	1.4	4.3	0.3
	고양시	72.0	8.3	17.2	2.6
	과천시	73.2	8.5	17.5	0.7
	구리시	83.6	9.0	7.3	0.2
	남양주시	61.6	13.1	25.2	0.2
	시흥시	73.4	2.8	23.7	0.2
	군포시	75.6	5.3	18.6	0.5
	의왕시	77.4	12.2	9.8	0.6
	하남시	84.4	4.5	10.3	0.8

〈부록 표 6〉 계속

(단위: %)

구 분		생활형	스포츠 및 레저용	아동용	기타
경기도	용인시	65.7	6.5	27.6	0.1
	파주시	63.8	17.5	18.3	0.4
	이천시	64.3	13.3	20.7	1.7
	안성시	75.4	7.2	16.3	1.2
	김포시	71.8	12.6	15.4	0.3
	광주시	73.8	0.9	25.1	0.2
	연천군	85.5	2.3	12.0	0.1
	양평군	76.5	12.3	10.2	1.0
충청남도	춘천시	79.1	8.8	12.1	0.1
	원주시	77.4	8.3	12.9	1.4
	강릉시	79.2	3.3	17.5	0.0
	동해시	82.2	4.6	12.9	0.3
	속초시	78.6	8.0	12.9	0.5
	삼척시	84.1	0.7	15.2	-
	홍천군	79.4	6.6	13.2	0.8
	횡성군	88.9	4.3	5.5	1.3
	영월군	75.9	7.1	11.8	5.2
	평창군	78.9	14.6	6.5	-
	정선군	82.2	8.0	9.8	-
	철원군	79.6	9.9	10.5	-
	화천군	71.9	4.8	23.4	-
	양구군	78.3	3.3	17.8	0.6
	인제군	84.2	8.5	6.9	0.4
	고성군	88.2	3.8	7.0	1.0
	양양군	87.4	9.2	3.4	-
충청북도	청주시	88.9	1.4	9.6	0.1
	충주시	84.7	1.7	13.4	0.2
	제천시	73.7	8.9	17.4	-
	청원군	83.7	4.2	10.0	2.1
	보은군	96.9	1.0	1.9	0.2
	옥천군	84.8	0.8	14.4	-
	영동군	96.3	0.9	2.5	0.4
	진천군	84.4	7.5	7.9	0.3
	괴산군	89.3	4.0	6.8	-
	음성군	85.6	3.8	10.6	-
	단양군	80.4	11.4	7.8	0.5
	증평군	53.8	17.5	28.8	-
충청남도	천안시	74.4	8.4	16.1	1.1
	공주시	85.2	3.5	11.0	0.3
	보령시	85.8	5.6	7.0	1.5

〈부록 표 6〉 계속

(단위: %)

구 분		생활형	스포츠 및 레저용	아동용	기타
충청남도	아산시	88.7	1.2	9.7	0.4
	서산시	82.9	4.1	12.7	0.3
	논산시	91.5	5.7	2.7	0.1
	계룡시	49.0	18.5	32.5	-
	금산군	63.8	0.2	9.4	26.6
	부여군	83.1	5.5	9.4	2.0
	서천군	77.5	4.9	17.6	0.1
	청양군	59.6	19.0	19.2	2.2
	홍성군	91.1	2.5	6.0	0.5
	예산군	91.8	6.5	1.7	-
	태안군	70.3	3.7	9.1	16.8
	당진군	67.3	10.6	21.4	0.8
전라북도	전주시	89.8	3.0	6.2	1.0
	군산시	59.7	12.7	27.5	0.0
	익산시	88.3	0.6	11.1	0.0
	정읍시	92.7	1.5	5.7	0.1
	남원시	84.7	1.9	13.1	0.3
	김제시	89.3	3.2	5.1	2.4
	완주군	87.4	4.0	1.0	7.6
	진안군	85.4	3.1	11.3	0.2
	임실군	79.5	6.3	12.8	1.4
	순창군	80.8	5.5	13.2	0.6
	고창군	86.8	3.7	8.7	0.8
	부안군	87.2	7.8	4.4	0.5
전라남도	목포시	54.9	14.1	29.7	1.3
	여수시	72.9	6.4	20.5	0.1
	순천시	87.6	1.3	11.0	0.1
	나주시	90.2	2.5	7.0	0.3
	광양시	72.2	4.0	23.7	0.1
	곡성군	86.7	5.2	7.5	0.6
	구례군	86.8	7.8	5.4	-
	보성군	87.2	1.2	8.3	3.3
	화순군	90.9	2.9	4.7	1.6
	장흥군	91.3	2.4	6.4	-
	강진군	90.4	4.3	5.3	-
	해남군	93.7	1.0	5.3	-
	무안군	76.1	1.4	22.5	-
	함평군	84.3	5.5	9.3	0.9
	영광군	87.2	5.3	7.3	0.2
	완도군	61.1	1.3	21.2	16.4

〈부록 표 6〉 계속

(단위: %)

구 분		생활형	스포츠 및 레저용	아동용	기타
경상북도	포항시	81.5	2.8	15.6	0.1
	경주시	86.7	4.8	7.9	0.6
	김천시	89.8	1.5	8.6	0.1
	안동시	90.8	2.1	6.8	0.2
	구미시	81.1	1.4	17.3	0.1
	영주시	23.2	5.4	67.9	3.6
	영천시	90.6	0.8	8.6	-
	상주시	92.2	2.5	3.2	2.2
	경산시	72.5	3.7	23.7	0.1
	군위군	87.5	1.1	6.6	4.8
	의성군	86.5	3.0	10.2	0.3
	청송군	85.2	5.7	8.2	0.9
	영양군	81.7	3.2	11.8	3.2
	영덕군	85.3	3.7	10.3	0.7
	청도군	98.1	0.2	1.7	-
	성주군	94.6	2.4	2.5	0.4
	칠곡군	60.6	10.4	28.7	0.4
	예천군	93.0	0.6	6.3	0.1
	봉화군	76.5	11.7	10.8	0.9
	울진군	84.7	8.8	5.8	0.7
경상남도	창원시	70.6	3.9	25.3	0.2
	마산시	80.0	4.7	15.1	0.2
	진주시	86.8	4.3	8.4	0.5
	진해시	83.3	3.5	13.2	0.1
	통영시	80.5	8.8	10.4	0.3
	사천시	74.8	12.0	12.6	0.6
	김해시	65.5	4.8	29.5	0.2
	밀양시	89.9	0.9	9.0	0.2
	거제시	80.6	0.7	18.6	0.0
	양산시	66.1	7.2	23.8	2.9
	의령군	89.0	5.6	5.2	0.2
	창녕군	96.7	1.9	1.1	0.4
	고성군	83.8	4.3	11.0	0.9
	남해군	94.7	0.2	5.2	-
	하동군	67.9	22.7	9.1	0.3
	산청군	92.6	0.8	6.4	0.3
	함양군	84.5	4.7	10.8	-
	함천군	93.2	1.6	5.0	0.3
제주도	제주시	55.6	4.4	40.0	-
	서귀포시	78.1	1.9	20.0	-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7〉 시군구별 자전거 구입가격

(단위: %)

구 분		구입가격						평균가격 (만원/대)
		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13.0	16.6	44.4	16.2	5.3	4.4	22.4
	중구	10.1	16.4	51.7	14.0	4.0	3.8	21.1
	용산구	14.5	18.7	34.0	20.8	7.7	4.4	24.4
	성동구	7.9	15.9	57.9	12.3	2.8	3.1	19.8
	광진구	11.1	23.1	52.5	9.0	2.5	1.8	17.0
	동대문구	7.1	27.0	50.7	9.5	2.8	3.0	18.7
	종랑구	9.3	31.1	45.3	12.1	1.0	1.1	16.1
	성북구	10.1	22.6	53.9	9.6	2.4	1.4	16.9
	강북구	12.7	28.8	43.0	9.8	2.5	3.2	17.8
	도봉구	12.2	28.0	42.1	13.2	2.9	1.5	17.5
	노원구	11.3	20.3	56.5	10.1	0.9	0.9	15.6
	서대문구	7.3	15.5	44.5	23.6	4.5	4.5	24.5
	마포구	9.9	18.9	50.3	15.5	3.0	2.3	19.5
	양천구	12.2	21.5	52.1	10.2	2.2	1.9	17.0
	강서구	14.5	18.0	53.0	10.6	2.2	1.7	16.8
	구로구	10.1	21.6	54.8	9.4	1.7	2.5	17.4
	관악구	15.9	25.5	38.5	11.2	4.5	4.4	20.1
	서초구	9.1	24.3	41.4	16.1	3.8	5.3	22.4
	송파구	9.3	31.6	43.3	10.1	2.7	3.1	18.3
	강동구	6.1	17.5	61.2	9.1	3.2	3.0	19.5
부산광역시	중구	8.3	27.5	52.5	10.0	0.4	1.3	15.7
	서구	12.2	36.2	44.0	5.8	1.1	0.8	13.8
	동구	11.9	37.5	35.5	12.1	1.8	1.1	15.8
	영도구	7.9	19.1	61.2	7.9	2.2	1.8	17.2
	부산진구	5.8	23.6	56.8	11.1	1.9	0.9	17.0
	동래구	8.4	21.5	53.6	15.4	0.6	0.5	16.6
	남구	7.8	27.5	53.3	8.6	1.3	1.6	16.3
	북구	8.3	21.4	47.1	13.9	2.1	7.1	22.8
	해운대구	11.4	19.6	47.8	16.7	1.9	2.5	18.9
	사하구	9.8	20.4	36.7	21.0	8.1	3.9	24.9
	금정구	9.3	23.3	33.3	32.3	1.8	-	20.0
	강서구	4.3	27.5	62.3	5.0	0.8	0.1	14.6
	연제구	10.0	19.5	43.0	21.4	3.7	2.4	21.0
	수영구	16.7	27.7	49.3	4.1	1.0	1.2	13.6
	사상구	14.1	33.9	41.7	8.2	0.8	1.3	14.5
	기장군	9.3	31.4	52.6	3.9	1.7	1.2	14.8
대구	중구	12.9	30.3	47.7	7.3	0.9	0.8	14.3
	동구	11.8	39.8	44.7	2.9	0.3	0.4	12.4
	서구	11.6	48.9	35.9	2.7	0.5	0.5	12.1
	남구	10.6	42.9	39.5	5.4	0.8	0.8	13.5

〈부록 표 7〉 계속

(단위: %)

구 분		구입가격						평균가격 (만원/대)
		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광 역 시	북구	8.5	33.6	52.5	4.2	0.5	0.8	13.8
	수성구	13.6	36.3	40.6	6.7	1.4	1.4	14.5
	달서구	18.9	35.8	39.0	4.9	0.9	0.5	12.4
	달성군	7.3	32.3	55.4	4.0	0.6	0.5	13.8
인 천 광 역 시	중구	15.4	26.4	45.3	10.4	2.0	0.5	15.1
	동구	11.2	24.0	54.7	8.0	0.4	1.6	15.4
	연수구	12.7	22.8	54.1	7.3	0.7	2.4	15.9
	남동구	11.0	21.5	50.3	12.6	2.7	1.8	18.0
	부평구	14.5	20.4	51.1	11.1	1.2	1.7	16.2
	계양구	11.5	29.4	50.6	6.4	1.0	1.3	14.7
	서구	9.5	22.5	55.2	7.6	3.5	1.7	17.6
광 주 광 역 시	동구	11.2	32.5	47.5	7.4	0.8	0.6	14.2
	서구	12.2	32.6	50.4	3.2	0.6	0.9	13.3
	남구	7.9	33.2	52.9	4.8	0.8	0.4	14.0
	북구	10.2	39.0	46.3	3.4	0.6	0.4	12.9
	광산구	15.0	33.1	47.7	3.5	0.3	0.4	12.3
대 전 광 역 시	동구	14.0	34.6	43.8	5.5	1.3	0.8	13.7
	서구	10.4	25.7	51.9	9.6	1.1	1.2	15.8
	유성구	11.9	26.9	50.1	8.7	1.2	1.2	15.3
	대덕구	14.4	26.0	50.8	6.7	0.7	1.5	14.6
울 산 광 역 시	중구	12.7	23.9	50.2	8.5	2.6	2.1	16.9
	남구	11.4	16.8	53.7	12.3	2.2	3.6	19.3
	동구	14.8	30.3	41.4	7.7	2.4	3.3	17.1
	울주군	10.2	26.7	48.1	12.1	1.5	1.3	16.6
경 기 도	수원시	12.5	23.6	57.3	5.1	0.7	0.8	14.1
	성남시	6.0	18.9	58.9	11.6	2.8	1.7	18.6
	의정부시	5.9	23.2	62.0	6.9	0.8	1.1	15.8
	안양시	12.8	24.6	44.9	11.6	2.6	3.5	18.7
	부천시	14.2	30.5	45.4	6.9	1.5	1.5	14.9
	광명시	13.4	22.7	44.9	12.2	3.6	3.3	19.2
	평택시	12.0	20.8	51.0	10.7	3.2	2.3	18.2
	안산시	13.5	28.0	50.5	6.2	1.0	0.7	14.1
	고양시	8.9	23.0	55.4	9.6	1.5	1.5	16.7
	과천시	11.4	22.2	52.8	10.7	1.2	1.7	16.5
	구리시	8.2	19.7	55.9	9.6	2.5	4.1	19.7
	남양주시	11.4	24.2	53.9	7.2	1.6	1.7	16.0
	시흥시	12.5	22.1	57.0	5.9	1.5	0.9	14.9
	군포시	9.4	14.5	56.9	16.4	1.5	1.4	18.2
	의왕시	15.1	22.8	44.2	14.5	1.5	1.8	17.0
	하남시	8.0	23.4	55.9	9.6	1.8	1.4	16.8

〈부록 표 7〉 계속

(단위: %)

구 분		구입가격						평균가격 (만원/대)
		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경 기 도	용인시	12.3	17.0	54.9	12.9	1.4	1.6	17.1
	파주시	16.0	24.1	49.3	7.6	1.1	1.8	15.1
	이천시	12.7	25.1	48.0	11.7	1.2	1.4	16.1
	안성시	14.1	23.1	55.1	5.8	1.1	0.8	14.2
	김포시	11.1	22.1	50.5	13.6	1.4	1.4	17.0
	광주시	9.2	15.8	69.3	4.5	0.6	0.6	14.6
	연천군	11.1	15.6	68.3	4.1	0.6	0.4	14.1
	양평군	9.1	38.9	44.0	5.7	1.8	0.5	14.4
강 원 도	춘천시	17.0	19.3	52.8	8.1	1.5	1.3	15.1
	원주시	15.2	31.9	40.1	9.2	1.7	1.9	15.6
	강릉시	15.0	22.3	49.7	9.5	1.7	1.8	16.1
	동해시	14.7	26.6	47.7	7.5	2.2	1.3	15.4
	속초시	22.2	22.6	41.7	9.6	1.6	2.4	15.4
	삼척시	4.7	11.9	67.2	15.9	-	0.4	17.2
	홍천군	21.0	19.8	51.5	4.1	1.7	1.9	14.3
	횡성군	32.5	23.8	40.3	1.9	1.1	0.4	10.3
	영월군	10.4	39.7	42.0	6.9	0.5	0.5	13.6
	평창군	19.2	30.0	39.2	7.1	2.1	2.5	15.4
	정선군	18.9	32.3	40.5	5.8	0.2	2.3	13.7
	철원군	9.9	31.0	58.5	0.6	-	-	12.1
	화천군	8.5	11.4	70.6	8.1	0.9	0.5	15.7
	양구군	25.1	25.7	41.1	6.9	1.1	0.2	12.2
	인제군	21.4	24.8	45.6	5.0	1.3	2.0	14.0
충 청 북 도	청주시	7.3	26.9	59.2	5.2	0.9	0.5	14.6
	충주시	13.6	28.1	52.1	4.6	0.9	0.8	13.7
	제천시	18.0	18.9	45.0	13.3	1.3	3.6	17.9
	청원군	18.1	34.2	40.3	4.2	3.1	0.3	13.5
	보은군	20.1	30.6	45.5	3.2	0.2	0.4	11.6
	옥천군	13.2	32.0	52.0	2.5	-	0.3	12.2
	영동군	9.6	35.9	51.2	3.1	0.2	-	12.5
	진천군	23.4	29.3	43.5	2.9	0.4	0.5	11.3
	괴산군	19.9	28.7	47.0	3.3	1.1	-	11.9
	음성군	20.6	30.4	42.7	3.8	0.5	2.0	13.2
	단양군	21.9	30.1	40.6	3.2	1.4	2.7	14.0
	증평군	12.9	31.7	51.1	2.9	1.4	-	12.9
충 청 남 도	천안시	13.3	30.1	46.2	8.1	1.2	1.2	14.9
	공주시	14.5	20.9	55.8	6.1	1.3	1.4	15.0
	보령시	11.7	26.1	55.6	4.8	0.8	1.0	14.2

〈부록 표 7〉 계속

(단위: %)

구 분		구입가격						평균가격 (만원/대)
		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충청남도	아산시	11.0	31.1	52.2	4.4	0.7	0.6	13.6
	서산시	11.3	18.8	62.7	5.1	1.1	0.9	14.9
	논산시	2.3	31.8	62.7	3.2	-	0.1	13.8
	계룡시	19.8	22.8	49.3	6.8	0.7	0.7	13.3
	금산군	5.8	15.0	73.6	5.1	0.6	-	14.7
	부여군	6.3	35.6	52.9	4.5	0.5	0.3	13.8
	서천군	6.7	18.7	69.9	3.5	0.4	0.7	14.6
	청양군	10.8	27.8	51.2	9.0	0.6	0.6	14.6
	홍성군	10.5	27.5	50.1	10.9	0.7	0.4	15.0
	예산군	7.9	26.0	17.0	17.9	29.7	1.5	35.2
	태안군	11.2	31.4	51.8	5.2	0.2	0.2	13.1
	당진군	11.5	23.4	55.1	8.1	1.0	1.0	15.1
전라북도	전주시	10.5	18.0	61.6	7.4	1.7	0.8	15.7
	군산시	9.2	26.4	56.1	6.2	1.3	0.8	15.0
	익산시	12.5	17.3	67.4	2.6	0.0	0.2	13.0
	정읍시	10.3	28.9	55.2	4.3	0.7	0.6	13.8
	남원시	8.6	32.9	55.5	2.2	0.6	0.2	13.1
	김제시	10.8	40.5	45.4	2.9	0.2	0.1	12.2
	완주군	3.3	18.8	75.2	2.8	-	-	14.1
	진안군	10.2	34.0	51.7	3.5	-	0.7	13.0
	임실군	15.2	20.3	55.1	4.1	2.0	3.3	16.6
	순창군	11.2	38.2	47.4	2.4	0.6	0.2	12.4
전라남도	고창군	10.9	28.9	53.9	5.6	0.3	0.3	13.5
	부안군	14.2	33.3	48.4	3.6	-	0.5	12.4
	목포시	10.9	22.0	44.3	17.8	4.8	0.3	19.0
	여수시	11.8	24.0	56.4	6.3	0.8	0.8	14.4
	순천시	12.8	22.9	58.3	4.6	0.5	1.0	14.0
	나주시	2.1	19.0	68.2	9.0	0.5	1.3	16.9
	광양시	10.2	23.0	53.0	11.0	2.0	0.9	16.4
	곡성군	3.6	36.2	55.4	4.1	0.4	0.4	14.0
	구례군	9.6	12.5	70.6	6.6	-	0.7	14.8
	보성군	3.3	13.8	79.5	3.3	-	0.2	14.6
	화순군	7.9	50.4	40.4	0.5	0.3	0.5	12.0
	장흥군	9.7	27.7	58.7	3.2	0.5	0.2	13.2
	강진군	14.7	17.3	60.6	6.9	0.4	0.2	13.7
	해남군	13.2	9.9	71.7	4.5	0.5	0.2	13.9
	무안군	17.7	25.7	51.6	4.3	0.1	0.6	12.5
	함평군	17.2	25.8	49.2	6.2	0.8	0.8	13.5
	영광군	9.7	21.9	62.0	6.1	0.1	0.2	13.9
	완도군	9.4	33.2	51.2	5.3	0.9	-	13.5

〈부록 표 7〉 계속

(단위: %)

구 분		구입가격						평균가격 (만원/대)
		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	
정 상 광 도	포항시	9.0	35.7	50.3	3.4	0.9	0.7	13.7
	경주시	13.7	41.8	38.3	4.5	1.1	0.6	13.0
	김천시	11.4	29.4	52.9	5.2	0.4	0.7	13.7
	안동시	17.3	30.0	45.7	5.4	0.5	1.1	13.2
	구미시	13.3	23.1	56.4	5.5	1.0	0.7	14.1
	영주시	18.1	26.1	52.2	2.7	0.3	0.5	12.2
	영천시	17.5	30.2	46.3	5.0	0.3	0.6	12.6
	상주시	5.1	31.9	60.1	1.9	0.3	0.5	13.7
	경산시	16.2	28.2	49.0	5.0	0.7	0.9	13.4
	군위군	7.7	32.6	53.9	4.9	0.6	0.2	13.7
	의성군	20.2	33.8	43.2	1.9	0.4	0.5	11.3
	청송군	20.1	18.9	53.1	6.0	0.9	0.9	13.6
	영양군	17.4	50.0	31.5	1.1	-	-	10.1
	영덕군	14.3	29.5	51.8	3.5	0.5	0.3	12.6
	청도군	15.2	24.3	58.2	2.2	-	-	11.9
	성주군	4.6	36.0	53.9	5.4	0.1	-	13.7
	칠곡군	8.2	32.5	53.7	5.1	0.2	0.2	13.5
	예천군	10.2	17.3	69.7	2.5	0.1	0.1	13.3
정 상 광 도	봉화군	21.6	37.0	35.5	5.5	-	0.4	11.3
	울진군	11.9	23.7	50.4	6.7	3.0	4.4	18.9
	창원시	11.9	24.7	50.8	9.7	1.4	1.5	16.0
	마산시	15.6	29.9	45.8	5.3	1.5	1.9	14.7
	진주시	14.4	39.6	40.5	4.6	0.5	0.4	12.4
	진해시	11.7	27.7	50.6	6.2	1.8	1.9	15.8
	통영시	18.4	20.7	51.0	6.9	1.1	1.9	14.9
	사천시	11.9	26.5	51.8	6.5	1.8	1.5	15.5
	김해시	12.4	30.8	48.4	6.1	1.3	1.0	14.5
	밀양시	16.1	37.1	44.9	1.1	0.4	0.5	11.6
	거제시	12.9	22.0	52.0	11.7	0.7	0.7	15.3
	양산시	13.7	31.2	46.4	7.1	1.2	0.5	14.0
	의령군	17.7	44.9	30.5	6.0	0.7	0.2	11.9
	창녕군	11.2	26.6	56.9	4.4	0.4	0.4	13.5
	고성군	13.5	43.9	37.2	4.1	1.2	0.1	12.5
	남해군	11.6	15.2	67.1	6.0	-	0.2	13.8
	하동군	8.5	13.3	67.8	5.4	1.8	3.2	18.0
	산청군	11.5	17.0	58.7	12.5	0.3	-	15.1
제주도	함양군	12.3	21.0	59.4	6.3	0.4	0.6	14.2
	함천군	15.1	35.2	47.5	1.9	0.3	0.1	11.6
	제주시	33.3	6.7	60.0	-	-	-	9.7
	서귀포시	42.1	12.2	44.9	0.9	-	-	8.3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8〉 시군구별 자전거 평균 이용율

(단위: 명, %)

구 분		총 응답자수	자전거이용 경험자수	자전거 평균 이용율	
				전수화 전	전수화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7,246	784	10.8	12.4
	중구	6,337	515	8.1	8.6
	용산구	7,263	985	13.6	15.0
	성동구	22,177	6,950	31.3	31.5
	광진구	3,160	1,563	49.5	40.1
	동대문구	10,913	3,591	32.9	38.0
	종량구	12,050	2,863	23.8	25.4
	성북구	7,322	1,468	20.0	21.4
	강북구	5,323	1,787	33.6	31.5
	도봉구	8,561	3,327	38.9	40.1
	노원구	17,762	7,574	42.6	42.5
	서대문구	239	123	51.5	48.7
	마포구	11,887	5,795	48.8	51.4
	양천구	5,367	2,209	41.2	41.9
	강서구	24,290	5,073	20.9	22.6
	구로구	4,407	1,454	33.0	36.6
	관악구	9,710	2,323	23.9	24.1
	서초구	4,959	2,480	50.0	49.9
	송파구	2,624	725	27.6	28.1
	강동구	19,271	6,301	32.7	34.4
부산광역시	중구	4,345	157	3.6	3.7
	서구	7,096	695	9.8	9.6
	동구	4,312	526	12.2	12.3
	영도구	6,400	516	8.1	8.7
	부산진구	11,257	1,556	13.8	12.0
	동래구	10,110	2,180	21.6	22.5
	남구	12,943	1,362	10.5	11.6
	북구	12,734	1,008	7.9	9.1
	해운대구	15,406	1,431	9.3	12.1
	사하구	7,630	945	12.4	17.6
	금정구	5,375	918	17.1	23.5
	강서구	2,286	1,228	53.7	56.6
	연제구	9,641	1,551	16.1	16.8
	수영구	8,077	829	10.3	10.6
	사상구	10,404	1,017	9.8	11.5
	기장군	4,115	766	18.6	19.9
대구	중구	2,453	594	24.2	25.3
	동구	13,635	3,712	27.2	26.1
	서구	6,703	2,064	30.8	36.6
	남구	5,287	1,457	27.6	28.1

〈부록 표 8〉 계속

(단위: 명, %)

구 분		총 응답자수	자전거이용 경험자수	자전거 평균 이용율	
				전수화 전	전수화 후
광역시	북구	22,103	6,546	29.6	31.4
	수성구	10,017	4,154	41.5	41.6
	달서구	2,297	385	16.8	19.1
	달성군	8,194	3,396	41.4	42.2
인천광역시	중구	991	51	5.1	10.2
	동구	2,413	431	17.9	24.8
	연수구	10,315	2,921	28.3	30.5
	남동구	4,200	1,013	24.1	28.2
	부평구	28,332	6,294	22.2	24.4
	계양구	427	381	89.2	87.3
	서구	1,218	545	44.7	51.4
광주광역시	동구	3,437	536	15.6	15.2
	서구	9,579	1,335	13.9	16.0
	남구	8,924	1,530	17.1	20.6
	북구	15,342	2,454	16.0	16.0
	광산구	12,943	3,072	23.7	25.9
대전광역시	동구	10,205	1,931	18.9	20.9
	서구	20,104	5,138	25.6	26.7
	유성구	7,934	2,138	26.9	35.4
	대덕구	6,006	1,520	25.3	29.7
울산광역시	중구	9,772	3,138	32.1	37.2
	남구	9,550	3,430	35.9	37.3
	동구	4,370	619	14.2	15.4
	울주군	5,694	2,204	38.7	40.6
경기도	수원시	4,196	2,187	52.1	52.0
	성남시	25,782	3,819	14.8	17.0
	의정부시	15,616	6,134	39.3	41.8
	안양시	7,537	2,710	36.0	45.4
	부천시	27,175	9,797	36.1	38.2
	광명시	12,336	3,784	30.7	32.2
	평택시	8,597	3,056	35.5	37.3
	안산시	32,165	11,580	36.0	37.9
	고양시	7,020	2,974	42.4	47.7
	과천시	2,851	1,418	49.7	50.6
	구리시	2,459	1,154	46.9	53.8
	남양주시	22,995	5,629	24.5	27.7
	시흥시	26,959	7,019	26.0	27.0
	군포시	3,149	421	13.4	16.0
	의왕시	5,709	1,238	21.7	20.7
	하남시	2,838	1,472	51.9	47.2

〈부록 표 8〉 계속

(단위: 명, %)

구 분		총 응답자수	자전거이용 경험자수	자전거 평균 이용율	
				전수화 전	전수화 후
경기도	용인시	4,847	1,869	38.6	40.7
	파주시	4,251	1,551	36.5	36.6
	이천시	913	511	56.0	55.5
	안성시	6,605	1,764	26.7	27.6
	김포시	9,782	2,462	25.2	26.1
	광주시	6,969	1,410	20.2	19.0
	연천군	6,339	2,593	40.9	43.0
	양평군	413	281	68.0	60.7
강원도	춘천시	3,798	2,596	68.4	69.9
	원주시	4,182	1,969	47.1	48.2
	강릉시	4,587	3,208	69.9	67.6
	동해시	5,180	1,501	29.0	30.3
	속초시	3,569	761	21.3	23.4
	삼척시	1,756	338	19.2	23.8
	홍천군	890	708	79.6	76.6
	횡성군	1,285	489	38.1	38.4
	영월군	989	338	34.2	35.9
	평창군	812	449	55.3	51.2
	정선군	872	347	39.8	42.0
	철원군	1,629	348	21.4	21.4
	화천군	551	201	36.5	37.7
	양구군	1,580	517	32.7	32.8
	인제군	1,598	485	30.4	30.3
	고성군	1,013	460	45.4	41.8
	양양군	1,391	841	60.5	67.0
충청북도	청주시	19,742	5,554	28.1	30.0
	충주시	6,917	691	10.0	13.3
	제천시	2,537	915	36.1	40.0
	청원군	816	320	39.2	39.1
	보은군	1,470	505	34.4	34.3
	옥천군	2,854	686	24.0	25.3
	영동군	1,961	422	21.5	25.4
	진천군	3,024	2,180	72.1	68.3
	괴산군	1,372	291	21.2	26.6
	음성군	4,027	936	23.2	23.0
	단양군	1,213	479	39.5	40.9
	증평군	200	99	49.5	47.7
	천안시	16,794	5,195	30.9	32.1
	공주시	4,160	1,190	28.6	35.7
	보령시	2,568	1,113	43.3	45.2

〈부록 표 8〉 계속

(단위: 명, %)

구 분		총 응답자수	자전거이용 경험자수	자전거 평균 이용율	
				전수화 전	전수화 후
충청권 내	아산시	13,580	3,464	25.5	27.7
	서산시	6,586	2,171	33.0	33.2
	논산시	2,349	1,310	55.8	50.2
	계룡시	2,237	878	39.2	45.8
	금산군	1,357	583	43.0	47.2
	부여군	1,407	558	39.7	43.0
	서천군	2,714	746	27.5	29.6
	청양군	50	22	44.0	12.3
	홍성군	3,729	805	21.6	21.0
	예산군	863	222	25.7	23.6
	태안군	2,571	497	19.3	20.8
	당진군	1,560	475	30.4	29.1
전라 북·남	전주시	14,616	3,745	25.6	26.6
	군산시	6,281	2,479	39.5	41.3
	익산시	14,083	2,892	20.5	17.7
	정읍시	5,272	1,262	23.9	23.6
	남원시	2,347	1,047	44.6	41.0
	김제시	2,181	1,053	48.3	47.7
	완주군	1,510	503	33.3	23.4
	진안군	1,076	516	48.0	46.0
	임실군	1,229	626	50.9	47.0
	순창군	1,227	461	37.6	37.8
	고창군	1,974	728	36.9	35.6
	부안군	1,847	675	36.5	35.2
전라 남·북	목포시	12,287	1,040	8.5	9.8
	여수시	9,595	995	10.4	11.4
	순천시	9,626	3,006	31.2	32.7
	나주시	3,924	1,072	27.3	27.0
	광양시	6,864	2,089	30.4	33.1
	곡성군	1,349	856	63.5	66.2
	구례군	1,138	435	38.2	38.0
	보성군	2,206	426	19.3	20.3
	화순군	1,475	659	44.7	43.2
	장흥군	1,778	721	40.6	38.0
	강진군	1,546	556	36.0	35.6
	해남군	3,925	621	15.8	14.9
	무안군	3,532	686	19.4	19.4
	함평군	2,398	759	31.7	30.2
	영광군	2,389	946	39.6	36.6
	완도군	5,082	1,196	23.5	22.2

〈부록 표 8〉 계속

(단위: 명, %)

구 분		총 응답자수	자전거이용 경험자수	자전거 평균 이용율	
				전수화 전	전수화 후
경상북도	포항시	21,834	7,015	32.1	32.7
	경주시	11,460	5,231	45.6	46.6
	김천시	2,807	1,974	70.3	71.2
	안동시	1,955	681	34.8	36.8
	구미시	17,479	3,537	20.2	20.3
	영주시	519	188	36.2	28.2
	영천시	4,483	1,112	24.8	24.3
	상주시	2,530	1,479	58.5	62.9
	경산시	10,107	2,860	28.3	29.9
	군위군	3,000	1,196	39.9	41.5
	의성군	2,489	629	25.3	20.1
	청송군	1,283	346	27.0	30.5
	영양군	384	108	28.1	25.8
	영덕군	991	506	51.1	53.2
	청도군	2,195	546	24.9	29.1
	성주군	1,904	670	35.2	36.9
	칠곡군	6,953	2,437	35.0	35.4
	예천군	5,144	1,203	23.4	22.4
	봉화군	3,397	813	23.9	25.1
	울진군	778	240	30.8	29.9
경상남도	창원시	7,626	2,026	26.6	36.7
	마산시	10,102	2,047	20.3	26.6
	진주시	12,081	5,224	43.2	43.0
	진해시	6,388	1,315	20.6	22.4
	통영시	3,807	539	14.2	15.5
	사천시	4,085	1,576	38.6	39.4
	김해시	16,615	5,010	30.2	32.5
	밀양시	4,709	1,679	35.7	35.2
	거제시	15,042	2,071	13.8	15.5
	양산시	8,642	1,564	18.1	19.6
	의령군	1,526	648	42.5	40.6
	창녕군	2,379	989	41.6	38.5
	고성군	2,071	742	35.8	36.9
	남해군	2,696	924	34.3	38.4
	하동군	3,792	696	18.4	17.0
	산청군	1,562	504	32.3	31.3
	함양군	1,711	491	28.7	27.0
	합천군	1,266	417	32.9	31.5
제주도	제주시	87	9	10.3	5.0
	서귀포시	317	281	88.6	85.2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9〉 시군구별 자전거 이용빈도

(단위: %)

구 분		거의 매일	1주에 2~3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거의 이용안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18.1	23.0	22.1	6.5	14.7	15.7
	중구	21.8	32.3	22.6	3.6	9.9	9.9
	용산구	10.2	26.2	20.2	8.1	13.0	22.4
	성동구	22.1	26.2	21.5	6.1	17.6	6.5
	광진구	38.6	16.9	8.1	4.9	8.9	22.6
	동대문구	18.6	40.2	18.7	3.6	10.0	8.9
	종랑구	8.1	13.1	10.0	1.9	3.8	63.2
	성북구	20.6	22.7	21.3	4.0	13.9	17.5
	강북구	45.1	27.4	12.4	4.3	7.5	3.3
	도봉구	25.4	26.7	17.0	6.2	14.0	10.9
	노원구	21.6	24.7	22.9	5.1	9.5	16.3
	서대문구	29.3	32.5	12.2	3.3	13.8	8.9
	마포구	19.4	27.3	28.4	4.0	10.6	10.3
	양천구	29.8	29.0	20.5	6.3	10.7	3.6
	강서구	13.4	26.7	23.6	6.7	14.9	14.7
	구로구	14.3	16.7	16.1	6.1	20.2	26.6
	관악구	19.5	24.5	15.9	6.5	16.6	16.9
	서초구	19.0	26.0	15.5	7.5	13.6	18.5
	송파구	35.2	27.0	13.9	2.8	14.0	7.0
	강동구	20.4	27.1	27.9	3.5	8.1	13.0
부산광역시	중구	18.2	17.6	23.3	10.7	13.8	16.4
	서구	14.2	33.2	23.4	5.3	17.8	6.2
	동구	36.0	19.8	15.6	8.2	14.5	5.9
	영도구	27.3	22.1	15.5	3.9	16.9	14.3
	부산진구	32.7	22.5	14.5	7.0	16.8	6.6
	동래구	22.5	26.9	21.5	2.9	10.2	15.9
	남구	14.4	28.9	23.4	5.1	10.6	17.6
	북구	18.8	31.5	38.8	3.6	6.4	0.9
	해운대구	19.8	29.8	21.6	5.6	15.0	8.2
	사하구	16.3	19.3	13.2	7.5	24.3	19.5
	금정구	6.3	42.8	25.7	2.9	5.7	16.6
	강서구	56.7	21.4	16.3	1.0	3.4	1.2
	연제구	26.0	30.3	21.0	5.4	12.6	4.7
	수영구	28.1	27.1	17.9	4.5	7.1	15.3
	사상구	26.1	36.1	20.1	3.7	11.7	2.2
	기장군	13.6	34.7	28.7	5.1	10.3	7.5
대구	중구	40.8	28.7	17.4	4.2	4.2	4.7
	동구	33.1	33.2	18.2	3.2	6.0	6.3
	서구	21.4	22.9	15.6	4.6	18.5	17.1
	남구	41.9	31.2	13.4	3.3	6.1	4.1

〈부록 표 9〉 계속

(단위: %)

구 분		거의 매일	1주에 2~3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거의 이용안함
광 역 시	북구	26.4	32.0	19.9	4.7	9.3	7.6
	수성구	33.3	26.7	13.2	5.6	10.4	10.7
	달서구	23.9	19.2	30.6	8.1	13.0	5.2
	달성군	62.3	18.8	8.7	3.2	5.0	2.1
인 천 광 역 시	중구	13.0	18.5	35.2	1.9	18.5	13.0
	동구	38.2	19.4	17.8	5.6	11.6	7.4
	연수구	19.3	27.9	19.6	7.4	20.2	5.5
	남동구	18.0	21.3	32.3	10.5	7.5	10.5
	부평구	29.5	29.9	22.1	4.8	11.3	2.4
	계양구	26.1	28.3	14.0	4.3	14.0	13.3
	서구	10.1	17.1	12.7	7.6	15.0	37.5
광 주 광 역 시	동구	41.0	31.5	11.8	3.0	9.3	3.4
	서구	27.7	31.1	15.5	3.9	5.0	16.8
	남구	28.2	31.1	16.3	3.9	7.8	12.6
	북구	43.9	32.1	11.2	3.1	6.0	3.6
	광산구	36.6	27.2	19.7	4.3	6.1	5.9
대 전 광 역 시	동구	27.7	27.6	17.4	5.2	12.0	10.0
	서구	21.0	31.2	22.0	3.3	17.0	5.5
	유성구	23.7	32.8	19.1	7.0	11.4	5.9
	대덕구	28.5	27.0	17.0	5.6	12.6	9.2
울 산 광 역 시	중구	30.0	24.8	19.5	3.6	8.5	13.6
	남구	25.1	24.5	19.1	8.3	14.0	9.0
	동구	34.0	21.5	16.4	6.3	10.8	11.1
	울주군	16.0	27.5	18.0	2.9	23.8	11.8
경 기 도	수원시	33.4	25.9	16.1	4.8	10.9	8.9
	성남시	8.5	26.0	29.4	11.3	13.6	11.2
	의정부시	14.3	28.8	24.3	6.8	13.6	12.3
	안양시	17.9	26.3	16.4	5.8	14.1	19.5
	부천시	26.3	27.9	14.8	4.6	11.5	14.8
	광명시	21.4	31.8	20.6	5.3	14.0	6.9
	평택시	19.0	25.2	28.3	4.6	15.8	7.2
	안산시	22.1	25.2	24.6	6.9	13.0	8.1
	고양시	21.2	26.1	19.7	5.5	13.8	13.7
	과천시	30.6	27.8	17.0	4.8	11.0	8.8
	구리시	37.6	32.8	13.7	2.5	7.2	6.3
	남양주시	19.2	31.5	23.1	5.0	13.7	7.4
	시흥시	20.1	26.3	21.0	7.3	13.9	11.3
	군포시	17.5	39.6	23.2	1.9	14.9	2.8
	의왕시	12.0	14.5	12.8	7.3	20.4	33.0
	하남시	27.3	44.0	21.6	2.1	2.8	2.2

〈부록 표 9〉 계속

(단위: %)

구 분		거의 매일	1주에 2~3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거의 이용안함
경 기 도	용인시	19.4	27.0	19.0	6.6	13.6	14.4
	파주시	16.0	26.8	17.5	8.7	15.3	15.7
	이천시	29.7	28.9	9.2	2.4	8.7	21.0
	안성시	16.8	20.1	16.9	8.4	16.6	21.3
	김포시	8.9	19.6	22.1	8.9	24.9	15.7
	광주시	20.2	32.1	25.2	7.2	8.8	6.5
	연천군	37.6	27.7	14.4	1.8	7.2	11.4
	양평군	29.2	35.1	15.3	5.9	9.0	5.6
강 원 도	춘천시	26.4	25.2	15.3	4.4	12.3	16.4
	원주시	22.1	30.1	19.9	6.3	10.9	10.6
	강릉시	30.5	28.9	16.0	4.0	11.2	9.5
	동해시	22.5	29.7	17.3	2.7	13.2	14.5
	속초시	21.1	26.3	24.1	3.1	12.1	13.4
	삼척시	36.4	36.4	5.7	1.7	8.0	11.7
	홍천군	37.0	23.5	14.4	3.9	7.6	13.5
	횡성군	24.1	27.4	15.3	4.9	17.4	10.8
	영월군	27.1	33.8	11.3	6.7	9.4	11.8
	평창군	27.1	31.7	18.9	3.1	10.4	8.8
	정선군	31.5	20.6	13.2	4.9	10.3	19.5
	철원군	28.2	47.3	11.7	1.1	4.3	7.4
	화천군	42.6	23.0	8.3	2.5	17.6	5.9
	양구군	41.4	21.5	13.3	4.3	7.5	12.0
	인제군	25.9	22.4	12.1	7.8	12.3	19.5
	고성군	19.6	42.2	19.8	4.6	8.3	5.7
	양양군	34.6	25.0	10.6	2.6	4.0	23.2
충 청 북 도	청주시	20.2	28.5	19.8	6.3	15.3	9.9
	충주시	35.5	29.1	14.5	6.3	9.1	5.5
	제천시	19.3	32.0	17.2	4.8	11.5	15.2
	청원군	33.2	23.7	12.3	4.0	18.8	8.0
	보은군	37.6	34.3	10.3	2.6	7.7	7.5
	옥천군	25.9	32.6	28.6	1.9	4.2	6.8
	영동군	36.6	29.9	20.0	4.8	3.1	5.7
	진천군	10.3	20.7	46.8	4.7	11.7	5.8
	괴산군	46.6	29.8	13.0	2.7	4.5	3.4
	음성군	29.8	31.6	31.6	2.6	3.0	1.5
	단양군	41.8	33.7	9.3	1.9	2.5	10.9
	증평군	32.0	37.0	13.0	5.0	9.0	4.0
충 청 남 도	천안시	23.9	27.0	13.6	5.2	12.8	17.5
	공주시	34.7	23.9	15.2	6.0	13.0	7.3
	보령시	36.7	29.3	13.7	5.1	7.4	7.8

〈부록 표 9〉 계속

(단위: %)

구 분		거의 매일	1주에 2~3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거의 이용안함
충청남도	아산시	17.2	31.4	27.8	4.4	12.7	6.5
	서산시	29.6	34.4	20.7	4.5	7.8	3.0
	논산시	27.4	31.5	7.6	6.4	11.4	15.6
	계룡시	20.5	25.7	15.1	4.7	12.4	21.4
	금산군	46.1	32.2	13.3	0.5	2.3	5.6
	부여군	27.4	22.5	14.8	3.8	11.3	20.2
	서천군	24.3	36.5	24.0	0.8	4.9	9.5
	청양군	37.1	25.7	5.7	-	5.7	25.7
	홍성군	45.2	26.8	14.1	2.1	6.6	5.3
	예산군	68.7	15.9	8.6	0.9	1.3	4.7
	태안군	17.5	28.8	30.4	7.6	6.8	8.9
	당진군	22.3	30.5	20.2	4.2	15.4	7.4
전라북도	전주시	26.7	27.2	18.5	4.0	7.8	15.9
	군산시	23.7	27.8	21.8	4.4	9.2	13.1
	익산시	24.5	31.1	21.7	2.7	5.6	14.4
	정읍시	44.1	22.6	13.8	2.0	6.1	11.5
	남원시	32.6	30.3	19.4	6.4	7.8	3.5
	김제시	37.1	30.2	14.0	2.8	6.0	10.0
	완주군	43.3	45.3	9.9	0.6	0.2	0.6
	진안군	19.8	28.3	17.2	4.3	13.8	16.7
	임실군	38.0	26.0	18.8	6.4	5.7	5.1
	순창군	29.2	32.0	17.4	6.0	8.2	7.3
	고창군	34.7	28.2	11.2	7.0	8.5	10.3
	부안군	33.0	34.2	13.0	3.8	8.2	7.7
전라남도	목포시	20.3	26.5	17.5	9.6	18.4	7.6
	여수시	22.9	28.4	18.6	3.0	10.4	16.7
	순천시	26.5	31.2	22.0	3.6	9.4	7.3
	나주시	58.0	24.5	11.0	1.7	3.1	1.8
	광양시	28.8	29.3	22.6	6.5	6.9	5.9
	곡성군	62.4	16.1	6.8	2.6	6.0	6.2
	구례군	59.4	29.5	6.7	1.6	2.1	0.7
	보성군	53.2	30.9	6.8	1.4	7.5	0.2
	화순군	41.8	30.9	10.6	3.6	5.9	7.1
	장흥군	38.3	25.7	12.3	2.5	9.3	11.9
	강진군	33.5	27.9	19.8	3.4	3.4	12.1
	해남군	31.8	35.5	23.5	3.2	2.6	3.4
	무안군	19.4	30.9	25.9	3.2	8.3	12.4
	함평군	39.3	31.2	15.8	4.3	6.2	3.2
	영광군	44.1	31.5	9.5	3.0	4.7	7.3
	완도군	23.7	34.0	15.1	2.7	10.8	13.8

〈부록 표 9〉 계속

(단위: %)

구 분		거의 매일	1주에 2~3번	1주에 한번	2주에 한번	1달에 한번	거의 이용안함
경상북도	포항시	30.9	30.8	18.0	3.6	7.7	8.9
	경주시	36.1	28.7	13.9	4.0	8.6	8.6
	김천시	22.7	37.7	23.3	0.8	5.7	9.8
	안동시	43.2	18.2	10.3	6.3	9.0	13.1
	구미시	27.9	35.3	18.1	3.6	9.2	5.8
	영주시	53.2	18.9	12.6	3.2	8.9	3.2
	영천시	32.6	30.3	13.0	2.2	11.5	10.3
	상주시	56.7	22.0	6.4	2.6	3.8	8.5
	경산시	25.2	34.0	14.5	7.2	11.0	8.1
	군위군	47.3	31.1	12.4	1.0	2.8	5.5
	의성군	36.6	23.2	13.2	1.7	5.2	20.1
	청송군	35.1	24.7	13.2	3.2	11.2	12.6
	영양군	12.8	19.3	12.8	4.6	15.6	34.9
	영덕군	55.8	19.5	6.7	1.4	6.5	10.1
	청도군	44.2	31.2	17.9	0.9	2.2	3.6
	성주군	50.7	37.2	7.6	1.2	1.2	2.1
	칠곡군	35.6	23.5	20.4	6.7	7.4	6.3
	예천군	50.0	23.4	17.3	1.2	3.2	4.9
경상남도	창원시	30.3	24.2	16.2	5.1	9.7	14.5
	마산시	37.3	30.5	12.9	2.3	7.6	9.4
	진주시	34.7	28.2	17.9	4.7	9.1	5.4
	진해시	39.1	28.0	16.0	2.6	5.8	8.5
	통영시	26.5	27.4	18.1	4.8	11.9	11.3
	사천시	52.0	26.9	9.3	2.7	5.1	4.0
	김해시	25.2	27.9	17.7	5.5	11.0	12.6
	밀양시	40.6	29.6	15.3	3.2	5.2	6.1
	거제시	50.6	19.1	16.4	2.1	6.9	5.0
	양산시	9.9	29.9	39.3	5.7	7.8	7.5
	의령군	33.7	19.7	12.5	4.0	11.6	18.5
	창녕군	57.1	26.8	12.6	0.4	2.4	0.6
	고성군	33.2	33.5	13.2	2.5	7.8	9.8
	남해군	38.7	29.3	18.0	5.3	3.4	5.3
	하동군	29.0	34.0	21.4	3.6	9.5	2.6
	산청군	51.6	26.0	12.3	5.7	4.1	0.4
	함양군	48.0	22.6	10.5	3.4	7.9	7.7
	합천군	56.9	20.8	9.3	2.4	6.5	4.1
제주도	제주시	66.7	33.3	-	-	-	-
	서귀포시	32.1	23.0	32.8	5.6	5.9	0.7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10〉 시군구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교통비 절약	정시 도착	시간 절약	건강 증진	환경적 이유	주차 용이	타수단 부재	도보보다 편함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5.0	0.1	1.5	74.7	0.4	0.6	1.0	9.0	7.7
	중구	2.9	0.2	4.6	66.9	0.2	2.5	0.2	18.1	4.6
	용산구	4.4	0.5	4.2	72.5	1.3	0.3	0.5	13.2	3.0
	성동구	1.7	0.3	6.2	75.9	0.1	0.5	0.6	12.9	1.9
	광진구	15.8	2.8	30.2	18.7	0.8	0.8	1.9	22.6	6.3
	동대문구	4.0	1.1	7.9	70.8	0.6	0.6	0.5	12.3	2.1
	중랑구	1.1	0.1	2.2	27.8	0.0	0.1	0.2	5.8	62.7
	성북구	1.3	0.3	2.7	68.7	0.3	1.1	1.0	14.6	10.0
	강북구	9.5	1.1	1.8	83.2	0.9	0.2	0.3	2.4	0.6
	도봉구	7.2	1.7	9.9	57.7	1.3	1.4	2.3	15.7	2.7
	노원구	4.3	2.3	6.4	65.5	0.7	0.7	1.1	13.6	5.3
	서대문구	2.4	-	1.6	81.3	-	-	0.8	9.8	4.1
	마포구	1.7	0.3	6.0	68.0	0.7	0.4	0.5	16.9	5.5
	양천구	4.5	0.9	14.5	60.9	0.9	0.9	0.6	16.1	0.5
	강서구	2.0	0.4	2.1	72.6	0.6	0.4	0.2	16.8	5.0
	구로구	5.5	1.2	6.3	59.2	0.6	0.5	1.2	20.6	4.8
	관악구	3.6	1.4	9.8	62.7	1.0	1.1	0.9	13.1	6.3
	서초구	3.9	1.1	8.9	63.4	1.7	1.2	0.9	14.5	4.5
	송파구	6.3	3.3	8.9	61.0	1.5	1.7	0.4	16.0	1.0
	강동구	3.3	1.7	4.0	67.5	0.2	0.5	0.3	17.3	5.1
부산광역시	중구	1.4	-	6.1	73.6	1.4	2.0	-	12.2	3.4
	서구	1.0	0.1	2.0	74.4	1.0	0.3	1.2	18.9	1.0
	동구	2.3	0.4	3.8	76.7	0.4	2.3	0.4	10.5	3.3
	영도구	5.2	0.8	7.2	66.7	0.8	0.4	0.8	9.7	8.5
	부산진구	9.4	0.8	4.8	57.4	0.4	1.7	1.3	23.0	1.3
	동래구	11.7	2.1	5.5	64.0	0.8	0.6	2.5	9.9	2.9
	남구	2.1	0.5	2.6	69.9	1.2	0.4	0.6	19.6	3.1
	북구	4.3	1.4	3.7	79.5	0.3	0.7	0.3	8.0	1.9
	해운대구	5.0	0.3	3.6	67.8	0.3	0.1	0.7	14.7	7.5
	사하구	2.8	0.8	1.6	73.4	0.2	2.1	1.3	8.7	9.0
	금정구	1.2	-	6.1	82.8	0.1	0.2	-	9.1	0.4
	강서구	5.3	1.1	2.4	43.0	-	1.5	23.0	23.7	-
	연제구	3.2	0.6	4.3	77.3	0.5	0.3	0.4	10.0	3.5
	수영구	3.1	0.4	2.3	54.5	0.2	0.5	0.7	36.7	1.6
	사상구	3.6	0.3	1.6	86.6	-	0.2	0.1	7.4	0.2
	기장군	0.9	0.3	2.4	81.8	0.6	0.4	0.6	10.8	2.1
대구	중구	6.0	1.5	7.2	51.3	0.2	1.2	0.2	31.0	1.3
	동구	4.8	1.7	8.4	50.1	0.3	1.1	1.6	30.7	1.3
	서구	5.3	3.0	6.5	64.6	2.8	4.6	0.8	12.2	0.1
	남구	5.6	1.8	6.8	46.6	0.8	1.3	1.2	34.6	1.2

〈부록 표 10〉 계속

(단위: %)

구 분		교통비 절약	정시 도착	시간 절약	건강 증진	환경적 이유	주차 용이	타수단 부재	도보보다 편함	기타
광 역 시	북구	8.1	0.4	8.4	54.5	0.3	0.7	0.7	19.9	7.0
	수성구	8.7	0.9	12.6	46.9	1.2	1.7	1.7	21.4	4.8
	달서구	3.7	0.5	2.1	44.2	-	0.3	-	21.5	27.7
	달성군	3.8	0.3	4.7	66.8	0.4	0.3	0.4	21.9	1.4
인 천 광 역 시	중구	5.9	-	-	76.5	2.9	-	-	2.9	11.8
	동구	8.5	1.1	2.5	82.8	-	0.7	1.4	1.4	1.6
	연수구	6.3	0.7	3.7	74.3	0.4	0.9	0.3	9.9	3.6
	남동구	5.8	0.9	2.8	76.9	0.5	0.6	1.2	6.7	4.6
	부평구	5.8	0.6	3.8	64.5	0.3	0.7	0.4	16.3	7.6
	계양구	7.0	1.8	14.1	53.4	1.0	0.3	1.3	15.4	5.7
	서구	5.6	0.3	5.0	79.9	1.1	0.6	-	5.3	2.1
광 주 광 역 시	동구	5.2	4.6	9.5	63.1	1.0	1.5	0.8	12.7	1.5
	서구	5.2	0.4	3.6	70.8	0.5	0.4	1.2	14.4	3.5
	남구	6.2	0.9	3.1	64.6	2.2	0.4	1.7	15.5	5.3
	북구	2.8	0.4	4.9	63.5	1.0	0.3	3.0	23.8	0.2
	광산구	10.3	0.6	10.8	37.7	0.2	0.5	0.9	27.0	12.0
대 전 광 역 시	동구	20.4	0.8	11.4	50.0	0.8	0.6	1.0	6.7	8.3
	서구	1.9	0.7	5.8	67.1	1.0	0.6	0.7	19.6	2.6
	유성구	4.5	1.4	6.4	70.2	0.8	1.4	0.7	13.9	0.7
	대덕구	5.2	1.1	6.5	52.5	1.4	2.1	1.8	24.7	4.8
예 산 광 역 시	중구	6.9	0.9	8.5	57.5	1.1	1.3	0.9	12.4	10.6
	남구	2.7	0.1	3.6	66.7	0.6	0.3	2.4	7.4	16.2
	동구	4.8	0.8	6.3	60.7	0.6	1.8	3.1	15.5	6.3
	울주군	2.2	1.7	4.3	62.7	0.9	1.0	0.9	24.0	2.3
경 기 도	수원시	4.8	2.1	12.3	47.0	0.7	1.1	1.0	28.0	2.9
	성남시	0.9	0.5	2.6	86.8	0.1	0.3	0.1	1.7	6.9
	의정부시	2.0	0.5	6.1	63.7	0.2	0.2	0.4	14.0	12.9
	안양시	5.1	0.9	6.4	64.3	0.6	0.9	0.6	14.3	6.9
	부천시	10.0	3.1	10.6	48.0	1.6	1.8	1.7	19.0	4.2
	광명시	3.4	1.2	4.8	75.2	0.6	0.3	0.7	11.2	2.6
	평택시	2.9	0.7	2.6	72.4	1.6	1.0	1.3	13.7	3.8
	안산시	6.4	2.0	5.5	58.7	1.3	0.2	1.3	22.4	2.2
	고양시	3.5	1.1	5.8	63.8	1.3	1.3	0.7	17.9	4.6
	과천시	3.5	1.8	20.8	44.9	1.3	1.0	1.5	23.3	1.7
	구리시	4.5	0.6	4.1	81.7	0.9	0.2	0.3	6.9	0.9
	남양주시	1.2	0.3	1.3	80.9	0.9	0.3	0.7	6.9	7.6
	시흥시	3.7	0.4	6.3	71.7	0.6	0.3	0.7	8.3	8.1
	군포시	2.4	0.5	1.2	87.7	0.5	-	-	4.5	3.3
	의왕시	3.3	0.2	8.9	52.3	1.1	1.1	1.7	21.5	9.9
	하남시	3.2	4.5	7.2	64.7	1.0	1.3	4.3	13.3	0.5

〈부록 표 10〉 계속

(단위: %)

구 분		교통비 절약	정시 도착	시간 절약	건강 증진	환경적 이유	주차 용이	타수단 부재	도보보다 편함	기타
경기도	용인시	1.5	0.4	4.2	73.2	0.1	0.2	1.5	9.3	9.4
	파주시	2.2	0.6	6.2	61.7	0.6	0.9	2.9	20.2	4.7
	이천시	4.5	0.7	6.2	62.5	3.4	3.7	1.7	13.1	4.2
	안성시	7.2	0.1	5.8	53.3	1.6	2.1	1.9	21.1	7.0
	김포시	1.4	0.7	2.8	70.2	1.5	0.9	0.3	14.3	7.8
	광주시	0.9	1.2	3.3	72.5	0.1	0.7	0.3	18.9	2.2
	연천군	1.4	0.8	5.9	53.7	0.3	0.3	1.1	32.7	3.8
	양평군	1.7	-	4.8	45.5	0.7	0.7	7.5	36.3	2.7
강원도	춘천시	5.7	0.5	5.3	65.8	0.3	0.3	1.5	17.6	2.9
	원주시	7.6	0.7	4.9	57.9	1.2	0.8	3.7	20.4	2.8
	강릉시	8.0	0.4	7.8	57.6	0.4	0.5	1.5	15.8	8.1
	동해시	3.9	0.5	5.1	71.7	0.5	0.2	0.5	15.7	1.9
	속초시	4.6	0.3	1.2	70.6	0.4	5.5	0.8	10.7	6.1
	삼척시	2.0	-	5.5	63.6	0.6	0.6	1.4	22.8	3.5
	홍천군	2.2	0.2	3.8	67.6	0.6	2.9	1.6	13.8	7.2
	횡성군	1.2	-	6.5	55.6	0.2	0.4	7.2	25.8	3.1
	영월군	2.6	0.3	4.9	38.4	0.9	0.6	7.6	41.0	3.8
	평창군	7.2	0.4	5.5	40.1	1.3	0.9	5.3	35.5	3.7
	정선군	4.9	0.6	8.0	39.4	0.6	1.1	2.9	39.9	2.6
	철원군	3.7	0.8	14.1	30.6	1.6	0.5	14.9	28.8	5.0
	화천군	17.6	1.4	9.9	46.4	0.9	2.3	4.1	16.2	1.4
	양구군	4.1	0.8	7.9	36.6	1.2	1.4	5.0	28.5	14.5
	인제군	3.3	0.4	11.2	41.8	1.2	0.4	3.9	34.3	3.5
	고성군	2.6	0.4	2.4	20.5	0.7	0.2	1.5	69.4	2.2
	양양군	0.7	0.4	8.1	80.4	0.2	-	6.4	3.8	-
충청북도	청주시	1.8	1.5	5.3	78.1	0.3	0.4	0.3	9.2	2.9
	충주시	7.8	0.3	1.9	73.2	0.3	0.4	0.4	14.0	1.7
	제천시	3.8	0.1	2.5	85.0	0.5	0.4	1.0	5.5	1.1
	청원군	7.3	0.3	5.4	47.7	1.5	1.5	11.5	21.5	3.3
	보은군	3.9	0.6	3.9	43.5	1.0	1.0	5.1	38.8	2.2
	옥천군	1.0	0.3	3.9	39.0	-	-	2.2	52.5	1.2
	영동군	3.5	1.2	8.0	23.9	0.5	0.5	4.5	58.0	-
	진천군	3.4	2.8	5.0	56.9	1.2	1.5	4.1	24.5	0.6
	괴산군	4.1	-	5.5	31.6	0.7	0.3	4.5	51.9	1.4
	음성군	1.4	0.3	2.1	68.3	0.3	0.8	0.9	22.3	3.5
	단양군	1.3	0.2	16.1	63.9	0.2	0.4	6.9	10.9	0.2
	증평군	5.0	-	5.9	55.4	3.0	1.0	2.0	26.7	1.0
	천안시	6.7	0.7	6.7	52.9	1.4	1.2	2.6	22.4	5.4
	공주시	4.4	0.4	6.1	55.0	0.6	0.8	6.0	21.5	5.3
	보령시	6.9	0.3	9.6	30.2	0.7	1.2	8.2	38.5	4.4

〈부록 표 10〉 계속

(단위: %)

구 분		교통비 절약	정시 도착	시간 절약	건강 증진	환경적 이유	주차 용이	타수단 부재	도보보다 편함	기타
충청남도	아산시	1.2	0.1	3.2	50.6	0.0	0.2	0.5	35.5	8.6
	서산시	2.9	1.7	2.3	57.2	1.1	2.5	4.3	25.8	2.1
	논산시	0.4	0.2	0.8	66.1	6.3	0.5	0.7	24.9	0.2
	계룡시	2.9	1.5	5.6	49.3	0.2	0.1	0.3	24.2	15.8
	금산군	42.2	2.3	15.3	30.9	-	-	3.3	4.7	1.3
	부여군	6.8	1.4	9.8	36.1	1.9	4.2	3.9	33.1	2.9
	서천군	2.3	-	4.1	23.9	0.1	0.8	0.9	65.6	2.3
	청양군	-	-	-	-	-	-	-	-	-
	홍성군	6.1	1.1	16.5	42.6	2.7	4.3	4.2	20.4	2.1
	예산군	12.4	0.8	18.8	35.6	0.4	2.0	5.2	24.8	-
	태안군	-	-	9.7	34.4	0.4	1.0	3.0	49.1	2.4
당진군	1.3	-	3.6	65.9	-	0.8	2.3	11.4	14.6	
전라북도	전주시	9.2	0.2	4.4	55.0	0.5	0.7	2.0	14.3	13.7
	군산시	8.5	0.9	4.0	46.6	0.4	0.7	3.1	24.5	11.4
	익산시	1.2	0.3	3.7	33.2	0.3	0.2	0.6	27.7	32.9
	정읍시	8.2	1.6	3.3	30.5	0.2	1.5	3.1	48.8	2.7
	남원시	3.8	3.4	11.0	39.2	0.8	0.6	2.9	36.1	2.3
	김제시	7.9	0.8	8.5	30.9	0.6	1.0	8.0	39.1	3.2
	완주군	-	-	17.7	12.4	-	-	0.4	69.5	-
	진안군	4.3	0.4	6.8	43.8	0.8	0.8	7.8	33.3	2.1
	임실군	3.0	-	7.5	39.9	2.6	0.5	8.1	31.6	6.7
	순창군	5.1	0.4	11.7	32.9	1.1	0.8	13.0	31.2	3.8
	고창군	6.8	9.5	6.1	27.1	0.5	1.2	6.8	38.9	3.0
	부안군	6.1	0.6	11.0	41.4	0.4	1.0	6.1	31.8	1.5
전라남도	목포시	8.8	6.8	4.0	66.1	0.3	1.4	0.4	10.0	2.3
	여주시	4.1	1.3	4.3	69.2	0.6	0.9	1.6	16.4	1.5
	순천시	1.8	2.6	0.9	68.7	0.1	1.1	0.9	19.6	4.3
	나주시	1.9	-	4.9	22.0	0.2	0.5	1.7	68.2	0.7
	광양시	2.0	0.3	3.1	77.3	1.2	0.3	1.9	12.8	1.1
	곡성군	16.6	5.7	10.7	43.8	0.3	0.7	2.3	13.4	6.4
	구례군	1.2	-	25.6	64.0	0.5	-	1.6	2.3	4.8
	보성군	1.9	-	1.4	40.2	0.7	0.5	21.9	33.2	0.2
	화순군	4.9	0.6	10.9	35.1	1.4	1.1	14.1	30.7	1.4
	장흥군	3.2	0.7	7.8	32.3	1.4	3.5	11.5	37.4	2.2
	강진군	0.9	0.2	11.4	48.8	0.2	0.2	4.5	32.6	1.3
	해남군	4.7	1.0	1.3	33.8	0.3	0.8	6.0	50.4	1.6
	무안군	0.7	0.1	8.9	51.0	0.1	0.3	3.8	30.8	4.2
	함평군	0.8	1.4	3.8	32.5	0.7	0.8	2.9	57.2	-
	영광군	2.6	0.4	10.5	35.7	0.5	0.5	9.4	37.7	2.6
완도군	2.3	0.3	4.6	52.4	0.3	0.7	2.3	23.6	13.4	

〈부록 표 10〉 계속

(단위: %)

구 분		교통비 절약	정시 도착	시간 절약	건강 증진	환경적 이유	주차 용이	타수단 부재	도보보다 편함	기타
경 상 남 도	포항시	5.4	0.3	6.9	56.9	0.3	0.7	1.7	24.8	3.0
	경주시	7.6	0.5	10.4	35.4	1.2	1.2	6.2	36.3	1.2
	김천시	7.0	1.7	4.1	51.3	0.2	0.5	4.1	30.5	0.8
	안동시	7.9	2.6	3.9	44.5	0.6	2.2	1.2	32.4	4.8
	구미시	5.0	0.3	3.4	59.7	0.5	1.0	0.5	25.3	4.2
	영주시	18.4	2.1	11.1	42.1	1.6	5.3	2.6	8.4	8.4
	영천시	2.7	0.3	4.3	76.3	1.2	0.2	2.0	12.5	0.5
	상주시	12.3	0.6	13.8	29.9	1.0	2.8	7.6	31.4	0.7
	경산시	5.6	0.7	5.1	52.5	0.5	0.9	1.3	20.3	13.1
	군위군	0.9	0.7	9.5	40.5	0.2	0.5	6.9	39.3	1.6
	의성군	5.2	0.2	11.1	32.0	0.8	1.5	4.1	41.4	3.8
	청송군	2.3	0.3	5.4	44.4	-	0.3	14.1	31.1	2.3
	영양군	6.4	4.6	3.7	22.9	1.8	1.8	8.3	48.6	1.8
	영덕군	3.9	-	3.2	65.5	1.8	1.4	4.9	18.5	0.8
	청도군	2.2	-	3.1	42.9	-	0.7	7.1	43.1	0.9
	성주군	7.8	0.6	17.0	24.7	-	0.7	3.4	44.8	0.9
	칠곡군	2.0	0.3	8.9	58.2	1.4	0.4	1.3	25.5	1.9
	예천군	1.5	0.3	2.4	56.2	0.2	2.1	2.0	33.4	1.8
	봉화군	2.5	-	7.0	36.1	1.5	0.6	4.9	45.8	1.6
	울진군	4.5	0.4	6.5	37.4	1.6	2.8	10.6	33.7	2.4
경 상 북 도	창원시	17.6	1.4	9.5	44.7	1.4	1.3	1.5	17.5	5.0
	마산시	9.2	0.8	3.9	71.9	0.3	1.0	1.2	10.0	1.8
	진주시	6.2	0.9	9.5	48.9	1.1	1.4	2.0	28.0	2.1
	진해시	2.4	0.2	20.2	53.1	0.3	0.2	1.3	18.6	3.7
	통영시	1.5	1.1	4.4	57.6	3.1	1.3	0.4	28.9	1.7
	사천시	13.5	1.6	11.3	45.7	1.0	1.8	3.6	19.3	2.2
	김해시	3.9	0.4	5.6	61.6	0.5	0.5	1.5	14.2	11.7
	밀양시	3.9	1.4	11.7	41.8	0.7	0.5	5.4	33.3	1.3
	거제시	2.5	1.4	7.0	51.1	0.1	4.4	1.7	27.8	3.9
	양산시	10.8	1.7	12.8	47.8	1.9	0.7	1.3	19.9	3.1
	의령군	7.5	1.8	7.1	24.3	0.6	1.2	7.8	48.5	1.1
	창녕군	0.7	0.1	15.7	29.1	0.1	0.3	1.3	52.5	0.2
	고성군	3.1	0.4	14.9	42.5	3.3	0.8	6.5	26.3	2.2
	남해군	2.1	0.1	3.5	73.6	0.3	0.4	3.8	15.7	0.5
	하동군	0.9	-	8.5	69.5	-	0.4	2.0	15.3	3.4
	산청군	3.2	-	3.6	28.1	-	-	7.4	57.2	0.4
	함양군	2.8	0.8	14.0	39.6	0.8	1.1	2.1	32.8	6.1
	합천군	2.8	-	6.9	41.0	0.2	0.9	5.0	43.1	-
제주도	제주시	-	-	-	-	-	-	10.0	90.0	-
	서귀포시	1.7	-	1.7	68.8	-	0.4	0.7	26.7	0.4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11〉 시군구별 레저용 자전거 이용 장소

(단위: %)

구 분		강/하천 주변	인근 공원	주변 산	원거리 지역	기타	레저용 이용안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15.5	40.1	2.0	3.2	20.2	19.0
	중구	10.6	50.7	4.7	6.3	8.9	18.8
	용산구	49.2	24.1	12.1	4.9	3.0	6.6
	성동구	43.2	37.3	0.4	2.4	6.1	10.6
	광진구	38.5	17.5	0.5	8.9	13.5	21.0
	동대문구	55.8	30.2	1.0	2.0	4.7	6.2
	종랑구	21.9	10.8	0.5	0.6	63.4	2.7
	성북구	14.6	20.4	1.0	2.7	52.8	8.5
	강북구	51.9	25.5	3.5	8.0	9.0	2.1
	도봉구	54.6	16.6	3.1	4.3	10.2	11.3
	노원구	48.3	20.5	0.9	1.9	22.0	6.3
	서대문구	76.4	13.0	0.8	1.6	6.5	1.6
	마포구	52.3	24.5	1.1	1.0	9.7	11.5
	양천구	29.0	41.7	2.4	1.8	2.9	22.3
	강서구	37.5	28.6	1.7	1.8	16.9	13.5
	구로구	41.9	38.5	1.6	5.7	5.9	6.4
	관악구	28.0	43.4	3.1	4.6	14.1	6.9
	서초구	55.1	21.7	2.4	2.8	9.1	8.7
	송파구	21.0	38.0	11.1	21.3	4.8	3.7
	강동구	27.3	44.4	0.5	5.5	5.1	17.3
부산광역시	중구	9.2	35.3	6.5	5.2	22.2	21.6
	서구	7.2	69.2	2.2	2.2	11.2	7.9
	동구	2.3	35.4	2.9	18.9	9.6	31.0
	영도구	7.4	35.3	4.3	2.5	18.1	32.4
	부산진구	6.2	32.7	1.8	14.2	23.7	21.5
	동래구	46.1	20.2	1.2	11.7	14.9	5.8
	남구	2.6	55.0	1.6	8.1	9.2	23.5
	북구	18.4	31.8	8.8	3.8	16.5	20.7
	해운대구	22.0	29.9	1.7	2.8	28.7	14.9
	사하구	26.0	13.5	8.9	18.5	32.8	0.3
	금정구	67.2	14.8	0.3	0.7	2.1	14.9
	강서구	34.6	4.4	0.1	2.7	0.9	57.4
	연제구	41.5	26.2	0.5	1.3	22.6	7.9
	수영구	12.7	26.9	0.5	1.1	18.5	40.4
	사상구	30.0	37.8	1.0	0.5	9.3	21.4
	기장군	8.1	31.4	32.9	2.4	23.3	1.8
대구	중구	25.0	16.6	0.8	1.2	11.4	44.9
	동구	32.8	19.8	0.8	1.5	16.2	29.0
	서구	8.2	60.6	4.1	6.6	6.2	14.3
	남구	19.5	39.8	5.3	1.2	11.4	22.8

〈부록 표 11〉 계속

(단위: %)

구 분		강/하천 주변	인근 공원	주변 산	원거리 지역	기타	레저용 이용안함
광 역 시	북구	19.9	28.9	2.7	8.3	6.2	34.0
	수성구	30.8	29.7	4.7	4.5	12.4	18.0
	달서구	1.1	26.9	-	5.2	19.5	47.3
	달성군	10.7	21.5	2.0	12.0	37.3	16.3
인 천 광 역 시	중구	2.9	77.1	-	2.9	17.1	-
	동구	0.2	63.0	0.2	28.8	6.3	1.4
	연수구	9.6	58.0	2.4	4.4	24.3	1.3
	남동구	4.7	70.1	8.2	2.7	7.7	6.6
	부평구	1.1	66.4	0.9	7.8	19.9	4.0
	계양구	11.1	61.8	2.3	4.7	11.9	8.3
	서구	3.9	69.7	2.6	7.7	13.1	3.1
광 주 광 역 시	동구	48.8	35.4	7.3	4.2	2.2	2.2
	서구	19.6	42.3	0.4	3.1	12.6	22.0
	남구	21.4	39.8	1.1	19.9	14.9	2.9
	북구	7.3	50.5	2.5	31.5	5.3	3.0
	광산구	3.5	38.1	0.7	6.0	2.0	49.7
대 전 광 역 시	동구	13.8	27.2	1.7	13.0	32.0	12.4
	서구	28.1	53.2	1.0	2.3	2.1	13.3
	유성구	35.4	40.2	1.9	4.7	9.1	8.7
	대덕구	14.9	44.6	3.0	3.5	22.0	12.1
울 산 광 역 시	중구	45.5	12.2	1.8	5.2	13.2	22.1
	남구	31.6	44.5	1.0	1.4	13.3	8.2
	동구	8.8	35.3	10.3	3.8	19.3	22.5
	울주군	41.1	31.0	6.6	4.5	13.3	3.5
경 기 도	수원시	11.2	46.5	2.4	4.2	23.9	11.7
	성남시	56.7	30.4	1.2	1.8	8.9	1.0
	의정부시	50.1	23.9	1.6	0.8	15.0	8.6
	안양시	35.7	44.2	2.0	2.5	12.1	3.5
	부천시	5.1	62.0	3.5	6.8	13.2	9.5
	광명시	60.0	26.2	1.1	1.2	4.8	6.6
	평택시	12.8	35.3	3.5	16.9	9.6	22.0
	안산시	3.6	69.7	2.5	12.1	8.9	3.2
	고양시	4.7	81.7	1.4	3.1	6.8	2.3
	과천시	38.0	34.1	1.1	2.7	10.4	13.7
	구리시	72.7	20.5	0.3	1.6	3.2	1.7
	남양주시	23.4	33.8	1.4	2.2	38.0	1.2
	시흥시	4.0	60.9	7.8	5.7	16.0	5.7
	군포시	9.7	43.4	1.4	0.9	42.2	2.4
	의왕시	34.0	38.3	1.5	6.1	10.1	9.9
	하남시	61.1	11.4	0.7	2.4	2.5	21.9

〈부록 표 11〉 계속

(단위: %)

구 분		강/하천 주변	인근 공원	주변 산	원거리 지역	기타	레저용 이용안함
경기도	용인시	21.9	50.0	0.8	2.2	15.1	10.0
	파주시	32.7	31.6	4.7	1.6	12.7	16.7
	이천시	14.6	52.8	7.5	4.8	15.4	4.9
	안성시	24.3	29.6	1.2	4.8	15.3	24.7
	김포시	15.8	57.1	1.4	1.8	20.6	3.3
	광주시	6.5	54.9	0.6	0.4	29.5	8.1
	연천군	9.7	29.9	8.8	2.1	18.7	30.8
	양평군	24.3	26.4	3.8	1.7	28.1	15.6
강원도	춘천시	35.7	17.8	1.7	1.2	5.8	37.8
	원주시	34.5	26.7	5.3	5.0	12.3	16.3
	강릉시	39.5	26.7	2.1	2.7	19.5	9.5
	동해시	34.8	25.2	3.7	1.7	24.5	10.1
	속초시	3.0	79.4	1.2	6.6	4.6	5.2
	삼척시	7.0	56.4	1.7	2.6	11.3	20.9
	홍천군	46.0	23.1	3.6	4.5	16.8	6.1
	횡성군	26.6	18.2	3.3	5.5	21.9	24.5
	영월군	31.1	11.0	4.4	2.9	14.2	36.3
	평창군	31.3	11.9	10.8	5.1	10.4	30.6
	정선군	20.1	18.1	3.7	5.7	23.3	29.0
	철원군	19.2	6.0	0.9	8.0	6.3	59.6
	화천군	26.6	30.0	1.0	8.9	29.6	3.9
	양구군	22.0	21.4	0.6	1.0	13.4	41.6
	인제군	22.3	24.3	2.9	6.4	16.1	28.0
	고성군	13.0	13.5	4.8	1.3	8.0	59.3
	양양군	56.1	6.7	8.9	0.7	19.6	8.0
충청북도	청주시	24.6	59.2	1.6	1.5	11.1	2.1
	충주시	9.1	45.9	2.2	3.8	36.7	2.2
	제천시	3.5	41.8	3.2	25.7	1.9	24.0
	청원군	21.4	9.6	5.0	8.7	33.4	22.0
	보은군	17.2	7.8	3.2	5.0	18.8	48.1
	옥천군	1.3	20.2	1.7	-	13.2	63.5
	영동군	6.7	4.3	2.6	1.2	3.8	81.5
	진천군	21.1	45.4	3.3	19.9	4.6	5.7
	괴산군	24.6	6.8	5.5	5.5	34.8	22.9
	음성군	15.1	61.4	0.4	1.2	21.0	0.9
	단양군	19.4	45.3	2.1	3.2	8.7	21.3
	증평군	22.0	36.0	3.0	6.0	12.0	21.0
	천안시	9.6	46.2	5.5	6.0	15.0	17.6
	공주시	31.0	8.9	13.2	3.6	25.7	17.6
	보령시	16.1	16.1	4.5	4.2	18.8	40.1

〈부록 표 11〉 계속

(단위: %)

구 분		강/하천 주변	인근 공원	주변 산	원거리 지역	기타	레저용 이용안함
충청 남도	아산시	3.5	21.3	9.6	1.4	15.4	48.7
	서산시	4.6	57.2	3.3	10.5	10.9	13.6
	논산시	5.0	21.4	9.5	36.2	4.0	24.0
	계룡시	1.4	33.6	0.2	3.6	25.0	36.2
	금산군	47.7	22.6	1.5	0.7	27.2	0.3
	부여군	18.8	23.5	7.2	4.1	17.8	28.6
	서천군	5.0	2.4	0.7	0.4	18.9	72.7
	청양군	100.0	-	-	-	-	-
	홍성군	13.6	37.9	10.0	7.9	14.3	16.3
	예산군	1.3	18.5	1.3	12.1	3.4	63.4
	태안군	9.1	31.8	7.6	5.8	9.9	35.8
	당진군	7.2	32.8	2.6	3.8	33.6	20.0
전라 북도	전주시	30.9	15.4	0.9	1.0	38.5	13.3
	군산시	7.5	29.7	3.6	2.4	10.0	46.9
	익산시	0.8	38.4	0.5	5.5	27.3	27.4
	정읍시	13.7	26.0	1.2	1.9	5.9	51.3
	남원시	40.1	18.4	2.9	5.7	8.0	24.8
	김제시	10.8	14.4	7.5	3.9	22.5	40.9
	완주군	4.8	-	-	-	0.4	94.8
	진안군	22.1	15.9	3.7	2.1	14.9	41.3
	임실군	3.8	16.4	2.7	1.1	8.0	67.9
	순창군	26.0	8.2	4.3	3.2	10.1	48.2
	고창군	16.4	19.7	4.5	5.0	11.9	42.5
	부안군	97.7	0.6	0.5	0.2	0.9	0.2
전라 남도	목포시	15.3	48.8	2.8	19.0	9.8	4.3
	여수시	5.9	73.5	0.2	9.6	9.8	0.9
	순천시	36.8	29.2	0.5	3.1	15.7	14.7
	나주시	2.9	5.0	1.6	1.1	1.5	87.9
	광양시	5.8	57.1	12.7	0.3	15.9	8.2
	곡성군	40.9	15.9	2.9	15.7	6.9	17.8
	구례군	33.9	27.9	2.1	1.4	31.3	3.5
	보성군	14.6	52.2	0.9	12.5	18.8	0.9
	화순군	16.9	16.2	5.0	3.8	17.1	40.9
	장흥군	19.4	6.8	4.4	2.1	4.7	62.6
	강진군	14.6	2.8	18.1	19.6	10.3	34.7
	해남군	2.5	7.7	1.6	1.8	1.6	84.8
	무안군	3.2	22.9	1.0	6.6	11.5	54.9
	함평군	9.1	11.9	2.8	1.5	9.7	65.1
	영광군	6.9	20.7	4.9	9.4	18.1	40.1
	완도군	6.3	23.5	3.3	6.0	29.2	31.7

〈부록 표 11〉 계속

(단위: %)

구 분		강/하천 주변	인근 공원	주변 산	원거리 지역	기타	레저용 이용안함
경상북도	포항시	18.0	24.8	3.9	3.9	18.6	30.9
	경주시	28.2	20.7	4.7	3.1	6.8	36.5
	김천시	39.7	33.1	0.4	2.1	3.1	21.7
	안동시	41.9	8.8	3.4	1.3	11.3	33.3
	구미시	2.7	54.1	2.8	2.6	19.2	18.7
	영주시	38.2	3.7	-	15.7	23.0	19.4
	영천시	64.1	7.1	4.0	4.5	19.1	1.3
	상주시	17.2	12.0	1.9	2.2	10.1	56.7
	경산시	14.7	42.9	2.4	7.1	9.6	23.2
	군위군	13.5	20.4	2.0	0.8	1.3	61.9
	의성군	23.8	16.2	1.9	5.5	13.6	39.1
	청송군	17.0	1.7	2.3	19.9	25.6	33.4
	영양군	12.8	19.3	4.6	8.3	8.3	46.8
	영덕군	24.5	43.4	4.9	9.9	10.7	6.7
	청도군	24.6	2.9	13.8	3.7	41.9	13.1
	성주군	33.0	11.1	5.1	1.0	9.3	40.5
	칠곡군	21.7	28.7	1.9	9.2	26.6	11.9
	예천군	40.3	16.1	2.4	0.8	15.8	24.8
경상남도	창원시	3.8	41.1	4.9	7.3	10.0	32.9
	마산시	7.2	37.1	13.0	15.7	19.8	7.1
	진주시	44.0	10.9	2.7	6.3	10.2	25.9
	진해시	7.3	35.6	2.3	1.9	8.2	44.6
	통영시	14.7	46.2	1.1	14.8	10.4	12.8
	사천시	21.1	23.8	4.3	8.1	18.2	24.5
	김해시	19.0	50.1	4.4	6.4	11.8	8.3
	밀양시	22.3	11.6	0.8	3.9	6.8	54.7
	거제시	5.4	17.3	0.4	5.9	3.5	67.6
	양산시	14.9	35.0	1.6	4.0	31.3	13.2
	의령군	10.2	7.7	3.9	4.5	9.4	64.4
	창녕군	1.6	15.1	1.1	0.3	4.4	77.5
	고성군	30.1	20.9	5.1	4.5	12.1	27.3
	남해군	7.9	19.0	2.7	0.5	47.9	21.9
	하동군	10.9	50.8	0.4	2.3	27.3	8.3
	산청군	3.7	4.1	0.2	0.4	0.8	90.7
	함양군	8.2	55.3	1.9	3.5	24.3	6.8
	합천군	18.7	29.5	0.7	0.5	22.8	27.8
제주도	제주시	-	-	-	-	100.0	-
	서귀포시	29.5	50.2	7.0	2.5	10.9	-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12〉 시군구별 자전거 이용의 주 목적

(단위: %)

구 분		통근 (출퇴근)	통학 (등하교)	쇼핑	업무 (출장, 배달)	레저/ 스포츠	학원	친교	기타	생활형	레저형
서울특별시	종로구	5.9	2.2	5.1	3.2	58.8	1.7	20.5	2.7	18.0	82.0
	중구	6.8	3.0	6.8	5.5	52.9	4.7	16.3	3.8	26.9	73.1
	용산구	5.5	4.6	6.9	2.6	72.6	1.0	5.8	0.9	20.7	79.3
	성동구	6.0	5.0	8.5	1.3	66.9	2.5	9.1	0.8	23.2	76.8
	광진구	7.7	32.4	12.6	1.0	19.7	9.4	10.5	6.6	63.1	36.9
	동대문구	5.3	2.7	23.2	3.0	53.9	1.2	7.8	3.0	35.3	64.7
	중랑구	2.1	1.5	3.8	0.4	21.9	1.5	5.3	63.6	9.3	90.7
	성북구	5.2	4.2	5.4	2.4	57.8	1.7	11.2	12.1	18.9	81.1
	강북구	14.1	1.6	4.6	3.0	68.5	0.2	5.9	2.2	23.4	76.6
	도봉구	10.5	5.9	13.0	3.2	44.7	4.4	14.1	4.3	37.0	63.0
	노원구	6.1	5.1	10.8	0.7	55.9	4.0	12.2	5.3	26.6	73.4
	서대문구	8.1	1.6	5.7	1.6	75.6	-	4.1	3.3	17.1	82.9
	마포구	5.8	2.3	9.2	1.7	64.0	2.0	12.3	2.6	21.1	78.9
	양천구	6.7	6.7	13.6	0.8	47.3	12.2	12.5	0.3	39.9	60.1
	강서구	4.1	2.6	8.4	0.4	70.1	2.6	9.0	2.8	18.1	81.9
	구로구	7.8	4.8	9.9	1.6	52.8	3.0	14.7	5.4	27.1	72.9
	관악구	7.2	2.9	8.3	2.6	56.0	2.7	14.0	6.3	23.7	76.3
	서초구	8.0	5.1	9.9	1.9	55.6	5.3	8.5	5.6	30.2	69.8
	송파구	12.2	4.7	9.7	14.0	39.7	1.0	11.1	7.8	41.5	58.5
	강동구	5.9	5.0	14.1	1.0	51.3	3.0	17.3	2.5	29.0	71.0
부산광역시	중구	7.7	6.5	3.9	4.5	43.2	1.9	21.9	10.3	24.5	75.5
	서구	2.2	1.2	3.5	1.3	53.5	1.3	35.7	1.4	9.4	90.6
	동구	7.3	2.7	10.1	19.7	36.9	0.2	10.3	12.8	40.0	60.0
	영도구	8.3	1.9	5.2	5.0	45.0	1.0	15.3	18.2	21.5	78.5
	부산진구	9.7	1.3	15.4	16.3	39.1	0.5	13.8	3.8	43.3	56.7
	동래구	8.0	3.6	12.1	3.9	47.0	1.6	16.7	7.1	29.3	70.7
	남구	4.1	2.3	13.9	2.3	43.0	0.4	31.0	2.9	23.0	77.0
	북구	5.3	2.4	6.4	3.6	44.7	1.6	31.4	4.7	19.2	80.8
	해운대구	6.9	1.1	11.4	1.4	45.7	0.6	26.6	6.2	21.5	78.5
	사하구	4.6	2.0	9.2	1.7	54.9	3.9	9.9	13.7	21.5	78.5
	금정구	1.3	0.9	10.7	-	81.4	0.2	4.9	0.7	13.1	86.9
	강서구	19.3	2.4	7.9	1.0	13.7	0.2	50.9	4.6	30.8	69.2
	연제구	7.7	2.0	5.4	3.5	53.2	0.8	20.8	6.6	19.4	80.6
	수영구	8.1	8.8	8.7	0.5	38.0	1.1	15.2	19.7	27.1	72.9
	사상구	6.6	0.6	4.2	1.6	65.1	0.5	12.4	9.0	13.5	86.5
	기장군	3.5	0.8	4.9	1.7	38.8	1.3	44.3	4.8	12.1	87.9
대구	중구	13.4	4.7	7.9	5.7	38.4	3.4	23.8	2.7	35.1	64.9
	동구	8.0	4.1	14.1	2.1	31.3	3.8	30.4	6.1	32.1	67.9
	서구	7.7	2.6	23.6	7.3	48.1	1.7	8.2	0.8	42.9	57.1
	남구	14.8	2.2	15.5	5.4	28.9	1.1	28.1	4.1	38.9	61.1

〈부록 표 12〉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출퇴근)	통학 (등하교)	쇼핑	업무 (출장, 배달)	레저/ 스포츠	학원	친교	기타	생활형	레저형
광 주 시	북구	7.1	2.9	17.6	1.7	35.8	6.0	19.7	9.2	35.3	64.7
	수성구	11.8	6.0	15.3	3.7	34.1	5.2	15.7	8.2	42.0	58.0
	달서구	8.1	1.8	10.2	0.5	27.9	3.9	29.0	18.5	24.5	75.5
	달성군	3.3	3.6	12.3	1.9	29.4	1.8	22.7	25.0	22.8	77.2
인 천 광 역 시	중구	4.2	18.8	6.3	-	27.1	2.1	39.6	2.1	31.3	68.8
	동구	8.1	2.5	1.4	6.3	77.8	-	2.1	1.9	18.3	81.7
	연수구	5.3	4.3	6.8	0.8	52.1	3.1	23.8	3.9	20.2	79.8
	남동구	6.1	3.0	7.2	0.8	71.1	0.9	9.2	1.7	18.0	82.0
	부평구	10.4	4.1	6.5	0.9	67.8	3.5	5.0	1.8	25.4	74.6
	계양구	7.8	9.9	7.6	0.8	32.6	3.6	31.3	6.5	29.7	70.3
	서구	4.9	4.0	10.7	1.3	50.7	1.9	17.9	8.6	22.8	77.2
광 주 광 역 시	동구	4.8	3.9	10.2	18.7	52.9	0.8	8.3	0.4	38.4	61.6
	서구	8.0	1.7	5.3	4.6	43.0	2.8	31.3	3.3	22.5	77.5
	남구	8.4	2.2	9.1	2.0	57.3	1.3	13.2	6.6	22.9	77.1
	북구	9.3	2.7	6.1	6.8	45.2	1.6	27.3	1.0	26.5	73.5
	광산구	8.9	3.7	21.8	2.7	26.4	5.2	24.8	6.5	42.2	57.8
대 전 광 역 시	동구	10.7	6.9	16.5	1.5	41.6	0.9	11.0	10.9	36.5	63.5
	서구	4.7	3.8	7.5	0.7	57.3	3.5	20.0	2.5	20.3	79.7
	유성구	13.5	5.1	16.1	1.5	46.5	4.3	9.0	3.9	40.6	59.4
	대덕구	12.8	5.0	11.6	3.9	33.3	4.7	15.4	13.3	38.0	62.0
울 산 광 역 시	중구	12.2	3.8	6.6	3.2	43.6	2.3	23.6	4.8	28.0	72.0
	남구	13.2	3.0	3.9	1.7	65.0	4.7	6.7	2.0	26.4	73.6
	동구	27.3	1.8	5.0	2.3	36.5	2.9	16.5	7.8	39.3	60.7
	울주군	3.3	1.8	10.3	1.3	50.1	0.8	27.3	5.2	17.5	82.5
경 기 도	수원시	10.1	5.7	16.7	2.9	39.4	9.3	13.3	2.5	44.8	55.2
	성남시	2.2	2.9	0.9	0.3	74.0	3.8	14.7	1.1	10.1	89.9
	의정부시	3.1	4.6	5.7	0.6	62.7	1.4	18.3	3.5	15.4	84.6
	안양시	5.9	2.5	6.7	0.6	69.9	2.9	5.4	6.2	18.5	81.5
	부천시	12.0	6.7	15.2	2.8	38.1	4.7	12.5	8.0	41.4	58.6
	광명시	6.7	2.6	5.7	1.1	68.4	3.4	10.6	1.6	19.5	80.5
	평택시	5.6	5.1	4.4	2.6	52.9	2.0	11.8	15.6	19.7	80.3
	안산시	6.5	3.1	7.4	0.8	66.8	2.6	11.2	1.7	20.3	79.7
	고양시	4.4	5.1	12.8	0.4	60.2	5.8	7.6	3.6	28.6	71.4
	과천시	6.4	9.0	17.9	0.7	38.5	14.5	9.4	3.5	48.7	51.3
	구리시	7.4	5.8	3.6	0.9	74.8	1.3	4.2	2.1	19.0	81.0
	남양주시	2.8	2.4	4.0	0.4	71.0	1.4	12.4	5.7	10.9	89.1
	시흥시	6.9	2.3	7.2	0.4	38.0	2.9	28.0	14.2	19.8	80.2
	군포시	5.9	2.1	2.1	2.6	64.5	1.4	12.6	8.8	14.2	85.8
	의왕시	6.1	3.2	8.0	0.5	49.1	5.2	19.9	8.1	22.9	77.1
	하남시	6.4	2.7	17.7	10.8	46.6	0.7	13.5	1.6	38.3	61.7

〈부록 표 12〉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출퇴근)	통학 (등하교)	쇼핑	업무 (출장, 배달)	레저/ 스포츠	학원	친교	기타	생활형	레저형
경기도	용인시	3.1	2.5	4.9	0.7	62.1	2.9	16.0	7.8	14.1	85.9
	파주시	4.6	2.1	9.9	1.5	51.7	3.0	19.3	7.9	21.1	78.9
	이천시	12.0	2.5	13.4	9.7	44.0	0.7	6.7	11.0	38.3	61.7
	안성시	6.6	4.5	11.1	2.8	37.5	1.8	28.2	7.4	26.8	73.2
	김포시	3.3	2.2	6.7	0.2	58.7	3.3	21.8	3.9	15.7	84.3
	광주시	3.1	2.4	2.1	0.6	71.2	1.6	12.9	6.2	9.7	90.3
	연천군	10.6	2.8	11.7	2.5	48.9	0.9	21.6	1.1	28.5	71.5
강원도	양평군	4.5	2.1	11.5	6.3	34.0	0.7	18.8	22.2	25.0	75.0
	춘천시	8.1	4.3	8.9	1.9	42.9	1.3	26.7	5.8	24.6	75.4
	원주시	7.5	4.6	9.5	2.5	39.0	1.5	24.5	10.8	25.7	74.3
	강릉시	8.6	5.5	7.5	1.0	52.1	1.7	18.1	5.4	24.4	75.6
	동해시	7.7	3.1	6.2	1.5	62.3	1.1	16.4	1.7	19.6	80.4
	속초시	7.4	1.6	2.2	1.0	65.9	1.2	17.2	3.4	13.4	86.6
	삼척시	9.0	4.3	8.4	0.9	60.3	0.3	11.0	5.8	22.9	77.1
	홍천군	7.6	8.6	6.8	3.9	44.3	1.6	23.2	4.0	28.5	71.5
	횡성군	4.3	4.1	7.0	4.5	49.9	0.2	11.5	18.6	20.0	80.0
	영월군	4.9	2.9	3.8	2.3	27.3	0.9	45.6	12.2	14.8	85.2
	평창군	10.6	10.4	9.9	3.7	27.1	2.9	29.3	6.2	37.4	62.6
	정선군	11.8	2.3	10.1	5.2	26.1	1.7	33.9	8.9	31.0	69.0
	철원군	12.3	21.4	10.5	0.6	14.5	6.6	29.1	5.1	51.3	48.7
	화천군	26.1	1.5	7.4	14.8	35.5	-	5.9	8.9	49.8	50.2
	양구군	9.1	11.0	11.4	2.7	28.3	1.7	9.5	26.2	36.0	64.0
	인제군	4.1	10.3	6.2	1.4	36.2	1.0	29.4	11.3	23.0	77.0
	고성군	2.4	2.2	11.1	2.0	10.9	0.7	60.0	10.9	18.3	81.7
	양양군	5.2	2.3	3.2	11.8	69.7	0.2	5.8	1.8	22.7	77.3
충청북도	청주시	5.0	4.1	4.0	0.7	68.6	2.2	14.6	0.7	16.0	84.0
	충주시	5.5	10.6	18.4	0.4	56.4	1.4	4.8	2.5	36.4	63.6
	제천시	5.5	2.6	5.7	1.0	77.7	0.8	5.8	1.0	15.5	84.5
	청원군	9.3	5.9	6.2	4.0	30.2	1.9	24.1	18.5	27.2	72.8
	보은군	2.4	7.1	4.8	9.3	22.8	0.2	33.9	19.4	23.8	76.2
	옥천군	4.2	1.6	24.6	0.3	9.9	-	31.0	28.5	30.7	69.3
	영동군	7.1	5.2	9.0	3.8	6.7	1.2	53.0	14.0	26.4	73.6
	진천군	1.9	8.8	16.6	4.5	9.1	1.4	54.1	3.7	33.1	66.9
	괴산군	3.1	3.1	2.1	4.1	25.3	0.7	30.8	30.8	13.0	87.0
	음성군	4.2	3.4	7.9	5.7	51.3	0.5	7.9	19.1	21.7	78.3
	단양군	5.8	5.0	6.5	10.6	51.3	0.8	17.5	2.5	28.8	71.3
충청남도	증평군	12.0	6.0	27.0	2.0	29.0	1.0	14.0	9.0	48.0	52.0
	천안시	7.3	5.5	11.0	2.2	40.7	3.7	20.8	8.8	29.6	70.4
	공주시	8.3	2.6	4.8	2.8	44.4	0.1	19.7	17.3	18.6	81.4
충청남도	보령시	9.5	4.2	13.6	6.0	19.6	0.4	32.6	14.1	33.7	66.3

〈부록 표 12〉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출퇴근)	통학 (등하교)	쇼핑	업무 (출장, 배달)	레저/ 스포츠	학원	친교	기타	생활형	레저형
충청남도	아산시	2.6	2.9	4.2	1.2	43.2	0.7	38.4	6.7	11.6	88.4
	서산시	5.4	8.1	12.8	4.6	42.1	1.5	23.3	2.3	32.4	67.6
	논산시	2.7	0.7	38.7	3.5	12.2	0.1	37.9	4.2	45.6	54.4
	계룡시	9.4	5.0	8.4	1.0	40.4	2.5	22.0	11.4	26.2	73.8
	금산군	1.8	1.5	35.4	6.0	16.9	-	31.7	6.6	44.7	55.3
	부여군	11.2	4.7	20.5	9.0	21.2	0.8	19.5	13.2	46.2	53.8
	서천군	7.9	4.3	7.7	2.5	8.3	1.2	57.1	11.1	23.6	76.4
	청양군	6.7	40.0	13.3	16.7	13.3	10.0	-	-	86.7	13.3
	홍성군	14.0	10.8	11.9	6.8	25.1	0.6	21.5	9.4	44.0	56.0
	예산군	10.3	9.0	4.7	3.9	7.3	0.4	63.5	0.9	28.3	71.7
	태안군	6.4	0.8	9.3	6.6	8.9	0.4	52.7	14.9	23.5	76.5
	당진군	4.9	2.7	5.7	2.5	52.0	0.4	20.1	11.6	16.3	83.7
전라북도	전주시	4.7	3.9	12.0	0.6	21.4	1.6	22.0	33.8	22.8	77.2
	군산시	7.0	4.1	15.5	3.6	36.3	1.9	26.5	5.1	32.1	67.9
	익산시	3.3	9.5	6.1	4.0	20.4	3.2	51.1	2.5	26.0	74.0
	정읍시	9.5	9.2	8.4	5.2	24.0	1.7	33.4	8.7	34.0	66.0
	남원시	10.8	9.4	17.5	1.2	20.7	9.4	27.7	3.3	48.2	51.8
	김제시	7.8	3.8	8.5	9.1	17.1	0.3	23.9	29.5	29.5	70.5
	완주군	0.2	0.8	2.4	0.2	5.6	-	12.7	78.1	3.6	96.4
	진안군	6.0	6.0	8.7	7.8	28.7	0.8	33.7	8.3	29.3	70.7
	임실군	6.7	4.6	15.9	6.2	15.0	2.6	29.5	19.5	36.0	64.0
	순창군	7.7	3.4	8.2	8.4	19.7	0.6	28.1	23.8	28.3	71.7
	고창군	7.2	9.4	4.3	7.7	18.6	2.0	24.2	26.6	30.7	69.3
	부안군	6.4	22.5	8.2	5.6	29.5	18.6	6.4	2.8	61.3	38.7
전라남도	목포시	10.0	11.7	5.8	1.4	48.4	3.2	17.2	2.2	32.1	67.9
	여주시	2.3	1.1	3.8	2.4	77.8	0.8	9.9	1.8	10.5	89.5
	순천시	6.3	3.7	6.2	2.6	50.5	1.8	21.9	7.0	20.6	79.4
	나주시	0.7	4.6	7.9	4.2	10.6	0.9	20.5	50.5	18.4	81.6
	광양시	8.2	5.5	9.8	0.8	41.7	5.4	23.5	5.1	29.7	70.3
	곡성군	9.9	2.6	8.2	3.9	31.3	0.6	8.6	34.9	25.1	74.9
	구례군	2.8	4.4	3.5	0.5	59.7	0.2	10.1	18.9	11.3	88.7
	보성군	3.5	9.4	2.1	18.7	46.6	0.7	5.2	13.8	34.4	65.6
	화순군	5.6	6.5	8.2	5.8	19.2	-	23.0	31.7	26.1	73.9
	장흥군	5.3	6.2	8.0	9.2	15.3	1.8	24.0	30.2	30.5	69.5
	강진군	1.6	2.7	3.8	32.6	22.1	1.1	31.1	5.0	41.7	58.3
	해남군	2.8	9.4	6.3	2.6	8.5	0.8	35.3	34.3	22.0	78.0
	무안군	2.3	1.7	7.6	3.6	15.7	1.6	52.4	15.0	16.9	83.1
	함평군	1.6	2.6	0.9	0.7	16.7	0.7	33.5	43.3	6.5	93.5
	영광군	7.8	5.2	8.2	5.3	18.3	1.0	24.8	29.4	27.5	72.5
	완도군	5.8	5.5	2.7	3.2	37.3	1.8	31.5	12.3	18.9	81.1

〈부록 표 12〉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출퇴근)	통학 (등하교)	쇼핑	업무 (출장, 배달)	레저/ 스포츠	학원	친교	기타	생활형	레저형
경상북도	포항시	9.3	3.8	23.8	2.7	25.8	4.2	19.0	11.4	43.7	56.3
	경주시	10.5	5.6	16.1	6.1	24.5	3.0	25.8	8.4	41.3	58.7
	김천시	5.6	1.8	12.8	1.6	39.0	3.5	34.6	1.0	25.3	74.7
	안동시	5.4	2.9	13.2	3.7	31.3	0.3	16.4	26.7	25.6	74.4
	구미시	9.7	4.2	6.4	5.5	49.1	1.8	19.7	3.6	27.6	72.4
	영주시	11.6	3.7	18.5	10.1	24.9	1.1	9.0	21.2	45.0	55.0
	영천시	4.9	2.5	5.8	1.9	52.5	0.4	15.5	16.5	15.5	84.5
	상주시	10.1	8.0	34.1	1.7	7.2	1.6	24.2	13.1	55.5	44.5
	경산시	6.7	6.1	9.8	3.4	45.0	1.3	21.6	6.0	27.4	72.6
	군위군	3.0	3.3	7.2	5.3	9.9	-	56.6	14.9	18.7	81.3
	의성군	5.2	18.3	13.4	3.8	23.3	2.8	23.0	10.3	43.4	56.6
	청송군	2.3	2.9	1.2	3.5	30.0	0.3	34.6	25.4	10.1	89.9
	영양군	7.3	5.5	9.2	17.4	18.3	6.4	26.6	9.2	45.9	54.1
	영덕군	7.1	1.0	10.5	7.7	17.9	0.2	37.5	18.1	26.4	73.6
	청도군	4.4	1.3	2.0	1.3	41.0	0.7	12.3	37.0	9.7	90.3
	성주군	7.5	4.0	31.2	13.6	13.2	0.9	25.9	3.7	57.2	42.8
	칠곡군	2.7	2.3	8.1	3.9	46.3	3.4	18.1	15.1	20.5	79.5
	예천군	11.3	8.1	10.0	2.6	27.0	0.7	34.9	5.4	32.7	67.3
	봉화군	4.5	5.7	9.8	5.9	21.3	1.5	41.2	10.2	27.4	72.6
	울진군	10.2	5.7	12.2	3.3	25.6	2.8	30.5	9.8	34.1	65.9
경상남도	창원시	26.8	5.0	12.5	2.0	31.7	4.1	9.7	8.2	50.4	49.6
	마산시	9.9	2.6	15.0	4.9	41.4	2.0	12.5	11.6	34.4	65.6
	진주시	9.3	6.1	14.7	5.4	32.5	3.8	21.7	6.5	39.3	60.7
	진해시	11.4	3.0	37.3	3.3	28.7	0.6	12.5	3.1	55.6	44.4
	통영시	6.9	1.3	10.0	4.5	49.9	2.0	21.0	4.5	24.7	75.3
	사천시	12.4	10.7	10.9	3.8	28.4	1.5	21.9	10.5	39.3	60.7
	김해시	4.4	4.4	10.1	1.3	50.8	2.4	18.9	7.7	22.6	77.4
	밀양시	13.3	3.2	9.8	5.6	23.2	0.8	34.1	10.0	32.8	67.2
	거제시	37.5	2.7	8.5	3.4	10.9	2.4	26.2	8.5	54.4	45.6
	양산시	2.9	5.7	34.3	1.2	26.2	1.5	23.4	4.8	45.6	54.4
	의령군	8.2	7.2	10.6	5.1	10.3	0.3	40.2	18.0	31.4	68.6
	창녕군	1.8	3.6	3.6	1.9	19.7	0.4	19.4	49.4	11.4	88.6
	고성군	4.7	6.1	10.8	6.7	28.5	1.2	30.3	11.6	29.5	70.5
	남해군	3.9	2.2	9.6	1.6	59.5	0.8	15.7	6.7	18.1	81.9
	하동군	4.4	6.6	6.6	2.9	54.9	2.4	14.6	7.5	23.0	77.0
	산청군	3.4	6.1	6.8	1.1	3.6	1.7	59.7	17.6	19.1	80.9
	함양군	11.4	9.8	11.4	8.0	22.7	4.9	23.9	8.0	45.5	54.5
	합천군	3.1	0.2	15.3	3.6	26.6	-	17.5	33.7	22.2	77.8
제주도	제주시	66.7	-	-	-	-	-	33.3	-	66.7	33.3
	서귀포시	2.5	8.4	4.6	-	26.2	1.1	40.2	17.1	16.4	83.6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13〉 시군구별 교통수단의 통행목적비율

(단위: %)

구 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서 울 시	종로구	24.8	9.4	2.6	1.2	6.2	2.1	49.0	4.6
	중구	31.1	8.0	2.5	0.5	4.2	2.5	49.2	2.0
	용산구	22.1	4.6	3.1	4.3	9.5	5.7	45.8	4.9
	성동구	23.1	8.1	5.0	2.1	9.0	3.4	46.6	2.7
	광진구	15.3	27.4	10.2	2.9	9.0	4.6	28.7	1.8
	동대문구	21.1	3.3	2.1	0.8	7.3	6.5	48.6	10.2
	종각구	16.4	5.1	4.6	1.3	10.6	6.9	45.9	9.0
	성북구	26.0	6.8	3.2	2.2	6.9	2.5	47.5	5.0
	강북구	24.1	2.8	0.9	3.0	11.6	3.2	47.6	6.6
	도봉구	17.7	9.2	4.9	2.9	9.3	5.6	44.8	5.7
	노원구	15.4	8.8	3.3	1.5	10.4	5.4	47.2	7.8
	서대문구	19.3	4.1	5.3	5.9	14.4	4.7	43.4	3.0
	마포구	22.5	4.8	4.3	2.5	11.3	3.7	46.8	4.2
	양천구	14.1	5.8	6.9	1.7	13.0	5.8	46.3	6.4
	강서구	24.8	10.0	3.5	0.9	5.2	2.7	49.7	3.3
	구로구	24.1	9.9	3.0	3.0	6.9	4.1	46.0	2.9
	관악구	18.6	7.2	4.8	6.3	9.4	5.6	40.4	7.7
	서초구	14.8	7.6	8.9	5.4	18.0	6.9	29.9	8.5
	송파구	39.4	3.5	0.6	6.8	6.4	2.4	36.7	4.2
	강동구	24.6	9.6	5.0	0.8	4.0	1.6	48.5	5.9
부 산 광 역 시	중구	25.2	6.8	1.8	3.6	6.8	2.6	44.1	9.1
	서구	18.4	7.4	5.7	6.6	5.7	4.0	44.5	7.6
	동구	27.9	6.9	2.7	5.6	2.8	3.2	44.6	6.3
	영도구	20.2	7.7	4.2	4.2	10.6	3.8	44.8	4.6
	부산진구	34.4	7.1	1.0	6.0	8.0	7.8	28.0	7.9
	동래구	26.7	9.8	3.8	1.8	6.7	4.7	43.0	3.7
	남구	27.7	10.6	2.6	0.5	3.5	2.2	49.0	3.9
	북구	27.7	10.4	2.8	0.2	4.6	2.3	49.4	2.7
	해운대구	29.8	8.9	2.0	0.3	2.8	1.7	48.7	5.7
	사하구	24.5	6.3	2.2	0.2	3.1	1.6	48.2	13.9
	금정구	39.1	4.5	1.1	5.7	3.8	1.4	42.7	1.6
	강서구	19.6	3.3	1.6	1.3	16.5	4.0	48.3	5.4
	연제구	17.5	5.6	3.8	10.2	12.3	4.7	41.8	4.0
	수영구	18.7	5.7	3.5	3.8	5.8	6.4	44.0	12.1
	사상구	26.9	9.7	4.3	0.2	3.4	0.5	49.2	5.8
	기장군	18.1	6.1	4.0	2.3	7.7	5.4	48.3	8.1
대 구	중구	23.7	5.0	3.4	2.0	8.5	4.9	48.0	4.4
	동구	21.6	10.3	2.9	2.4	6.8	3.3	47.4	5.3
	서구	15.1	2.1	1.9	4.7	12.7	10.1	37.0	16.4
	남구	19.4	3.0	2.5	4.6	7.9	5.8	45.8	10.9

〈부록 표 13〉 계속

(단위: %)

구 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광역시	북구	20.3	10.2	6.3	0.8	6.0	2.0	48.7	5.9
	수성구	16.3	9.7	6.1	5.5	10.3	6.4	42.4	3.4
	달서구	20.9	12.3	5.1	0.0	1.6	1.1	49.7	9.2
	달성군	22.6	9.2	3.8	1.7	4.9	3.0	40.3	14.6
인천광역시	중구	19.3	3.5	2.5	3.4	13.5	9.2	46.2	2.4
	동구	64.5	3.9	0.8	0.8	1.5	0.4	20.4	7.7
	연수구	24.9	10.9	5.4	0.2	3.8	1.7	49.1	4.1
	남동구	28.6	2.5	1.2	1.1	9.4	5.9	44.8	6.4
	부평구	27.2	10.6	3.1	0.6	2.9	0.8	49.4	5.4
	계양구	17.7	27.3	13.8	3.5	19.0	4.2	10.3	4.2
	서구	14.8	3.0	2.8	6.4	22.1	7.3	41.3	2.3
광주광역시	동구	27.1	6.4	2.8	2.1	9.2	2.2	47.2	2.9
	서구	12.8	4.5	4.3	2.3	13.4	10.1	47.7	4.9
	남구	40.9	11.4	2.7	2.5	9.9	5.8	15.6	11.1
	북구	23.5	6.0	1.3	1.2	9.8	3.4	49.6	5.2
	광산구	19.4	8.4	6.4	1.5	9.8	3.6	46.3	4.6
대전광역시	동구	23.7	9.1	3.9	0.5	5.4	2.5	48.9	5.9
	서구	19.0	10.3	3.8	0.4	7.1	3.4	49.1	6.9
	유성구	21.9	5.3	1.6	0.9	9.1	6.6	49.5	5.1
	대덕구	16.9	5.3	3.5	7.1	14.3	6.5	41.2	5.0
울산광역시	중구	16.2	5.3	5.6	2.5	11.3	5.5	47.2	6.4
	남구	18.8	8.0	7.6	0.5	9.0	2.3	48.8	5.0
	동구	22.2	10.6	4.6	2.6	8.6	4.3	40.6	6.5
	울주군	17.3	7.8	5.6	3.1	8.8	5.4	44.2	7.8
경기도	수원시	18.9	9.3	6.4	1.9	5.4	3.7	46.1	8.3
	성남시	24.2	11.8	3.5	0.8	4.3	1.7	49.0	4.8
	의정부시	18.3	9.6	6.7	1.7	7.8	4.1	46.8	4.9
	안양시	21.0	4.2	2.4	1.0	8.0	3.3	48.5	11.7
	부천시	19.3	4.5	5.4	6.2	10.6	8.2	38.9	6.9
	광명시	31.4	6.3	4.1	0.3	6.3	1.3	49.6	0.8
	평택시	25.3	7.7	4.1	3.4	6.3	1.9	47.2	4.1
	안산시	20.5	10.9	4.1	1.9	7.9	3.2	47.0	4.6
	고양시	17.8	7.2	6.0	2.1	11.0	5.8	42.4	7.8
	과천시	15.4	9.7	9.1	1.4	8.6	3.7	47.1	5.0
	구리시	11.3	3.8	3.4	1.9	26.8	2.1	46.7	4.0
	남양주시	21.8	8.1	4.4	1.1	6.3	3.1	48.3	6.9
	시흥시	26.1	13.4	3.0	0.6	3.8	1.7	48.5	3.0
	군포시	32.0	7.9	1.1	0.3	4.1	2.0	49.7	3.0
	의왕시	17.2	17.1	6.6	2.2	4.5	2.4	45.6	4.5
	하남시	31.9	6.3	0.9	7.3	9.2	2.6	39.4	2.3

〈부록 표 13〉 계속

(단위: %)

구 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경기도	용인시	16.1	8.2	8.1	1.8	8.3	4.3	46.6	6.4
	파주시	22.4	4.1	5.4	7.3	8.1	4.7	42.1	5.9
	이천시	26.4	6.4	2.5	6.8	27.7	9.8	15.0	5.4
	안성시	21.7	11.1	4.9	3.9	5.6	4.1	43.7	5.0
	김포시	25.9	12.3	5.0	0.5	4.8	1.0	48.5	2.0
	광주시	28.3	11.3	3.8	0.1	3.4	1.4	49.8	1.9
	연천군	25.6	5.1	2.9	1.3	9.9	2.4	49.2	3.6
	양평군	12.0	3.4	1.3	10.0	20.9	8.9	32.7	10.9
강원도	춘천시	16.5	8.0	3.4	2.1	11.4	3.4	47.0	8.2
	원주시	15.9	6.7	4.2	7.2	16.8	8.8	34.2	6.3
	강릉시	13.9	7.6	5.4	1.3	13.1	4.9	47.9	5.9
	동해시	23.2	8.1	2.6	4.3	6.1	3.1	46.7	5.8
	속초시	28.8	5.1	3.2	2.0	3.3	3.9	47.7	6.0
	삼척시	30.1	9.3	3.1	2.8	4.0	1.1	45.1	4.5
	홍천군	11.7	6.3	6.3	7.2	14.2	4.1	39.7	10.4
	횡성군	14.1	4.9	1.4	15.4	11.6	3.6	42.3	6.6
	영월군	18.4	3.7	3.0	10.5	14.1	4.1	41.6	4.6
	평창군	15.4	7.5	3.0	11.5	9.6	8.8	35.7	8.5
	정선군	24.5	3.3	2.1	7.1	13.3	7.7	36.0	6.0
	철원군	16.3	6.8	7.8	4.2	10.7	4.8	42.1	7.2
	화천군	37.2	0.5	1.0	0.5	1.7	1.4	49.7	8.0
	양구군	12.7	11.3	7.1	4.6	9.4	3.3	43.9	7.7
	인제군	21.1	12.4	2.5	4.9	7.6	2.3	45.8	3.3
	고성군	8.4	8.4	1.9	16.7	12.4	9.3	37.7	5.2
	양양군	8.3	2.5	1.7	9.7	20.2	10.1	41.3	6.3
충청남도	청주시	19.7	8.6	4.3	0.6	8.9	3.7	48.2	6.0
	충주시	26.9	4.9	2.4	2.5	6.1	3.8	48.0	5.6
	제천시	20.5	4.5	0.8	0.2	9.2	3.1	49.6	12.1
	청원군	13.8	6.6	2.4	5.5	8.8	8.5	40.4	13.9
	보은군	4.4	5.2	0.9	17.2	7.5	3.3	43.4	17.9
	옥천군	16.1	6.0	3.2	0.1	7.1	4.1	48.5	15.1
	영동군	20.3	3.2	0.2	10.2	5.2	1.6	49.2	10.1
	진천군	18.3	15.5	7.3	4.2	3.4	3.2	43.3	4.8
	괴산군	3.8	3.0	0.2	7.8	9.5	10.3	45.6	19.8
	음성군	19.1	5.9	1.7	5.4	7.1	1.8	47.6	11.5
	단양군	12.3	3.8	1.4	15.0	17.4	5.1	43.9	1.1
	증평군	18.4	7.8	3.6	13.5	8.4	9.1	36.3	3.0
충청북도	천안시	24.2	8.4	4.4	2.8	6.5	3.4	46.3	4.0
	공주시	23.3	3.0	2.4	1.7	5.7	4.2	46.8	12.8
	보령시	11.5	4.3	2.7	10.6	11.7	8.4	37.7	13.1

〈부록 표 13〉 계속

(단위: %)

구 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충청남도	아산시	23.7	7.4	1.8	3.7	9.2	1.2	49.6	3.4
	서산시	28.8	9.1	4.3	2.3	2.7	2.1	47.6	3.2
	논산시	19.1	0.7	0.4	21.8	18.3	7.2	21.8	10.8
	계룡시	18.6	3.7	3.9	0.6	10.4	5.9	48.7	8.3
	금산군	5.4	1.7	2.0	4.0	22.9	9.2	36.8	18.1
	부여군	18.0	3.4	1.2	12.7	12.7	12.3	29.2	10.7
	서천군	21.5	4.3	3.8	0.7	8.8	0.9	48.2	11.8
	청양군	25.8	3.4	11.2	7.7	14.2	12.0	8.2	17.6
	홍성군	14.2	7.8	0.6	5.8	34.2	7.3	25.5	4.5
	예산군	8.7	6.9	1.4	9.2	20.8	15.6	31.5	5.8
	태안군	17.5	1.2	1.1	18.7	9.0	4.9	38.7	8.9
	당진군	25.2	11.3	8.6	0.7	2.2	1.9	46.2	3.8
전라북도	전주시	17.4	7.4	4.9	3.5	8.6	4.7	45.0	8.4
	군산시	17.2	8.0	4.5	2.3	6.3	2.9	47.8	11.1
	익산시	19.0	17.8	9.2	2.0	2.5	0.7	46.7	2.2
	정읍시	25.6	12.0	4.3	3.8	3.0	2.1	46.6	2.6
	남원시	22.1	12.0	13.6	6.6	6.4	4.4	29.4	5.5
	김제시	18.2	4.2	1.6	10.5	10.4	5.6	27.8	21.6
	원주군	5.2	5.4	0.2	-	8.3	3.8	48.8	28.3
	진안군	8.9	4.1	2.0	18.5	8.2	4.0	40.1	14.3
	임실군	19.9	4.5	2.7	6.8	8.9	4.6	44.7	7.9
	순창군	11.7	4.1	2.8	13.4	10.8	6.5	37.3	13.4
	고창군	9.4	2.3	2.0	22.4	9.5	7.7	37.7	9.0
	부안군	11.4	3.0	1.5	11.8	13.6	8.7	43.8	6.1
전라남도	목포시	23.0	11.1	5.9	3.0	5.0	2.7	45.9	3.5
	여수시	15.8	5.4	4.1	1.8	12.2	4.2	47.2	9.2
	순천시	12.6	3.3	3.3	2.0	13.3	7.9	46.2	11.3
	나주시	3.8	3.0	2.0	18.2	11.7	8.9	49.5	2.9
	광양시	17.9	10.1	6.0	0.2	6.3	2.8	49.5	7.1
	곡성군	7.7	1.3	1.3	5.2	20.6	6.8	33.0	24.2
	구례군	15.9	14.4	1.3	3.1	7.3	0.6	30.1	27.3
	보성군	6.6	5.7	3.8	8.6	27.4	9.7	13.1	25.0
	화순군	6.0	3.2	1.2	9.8	9.9	7.1	42.1	20.7
	장흥군	8.2	4.0	1.7	13.0	8.8	6.1	42.6	15.6
	강진군	4.8	3.4	1.7	25.2	10.6	3.6	45.3	5.4
	해남군	5.7	5.1	4.0	4.1	3.9	4.0	43.9	29.4
	무안군	12.1	7.7	5.0	17.3	3.0	1.3	46.5	7.2
	함평군	5.1	5.7	1.8	1.5	3.8	2.8	48.2	31.0
	영광군	19.6	4.8	4.2	4.2	9.3	4.0	44.0	9.8
	완도군	15.8	6.3	2.4	9.7	6.6	5.9	40.2	13.2

〈부록 표 13〉 계속

(단위: %)

구 분		출근	등교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경상북도	포항시	20.8	9.0	4.9	1.6	7.3	3.8	47.5	5.1
	경주시	12.8	6.5	3.2	5.8	9.2	7.1	45.0	10.3
	김천시	34.8	13.5	8.1	2.3	29.6	5.9	0.5	5.4
	안동시	7.8	3.1	1.1	3.7	6.7	3.8	48.5	25.4
	구미시	28.8	10.6	4.8	0.9	3.2	0.9	48.5	2.2
	영주시	43.0	3.5	2.3	6.2	10.5	3.1	5.0	26.4
	영천시	18.2	8.4	4.3	7.0	6.8	3.6	40.4	11.3
	상주시	8.2	2.7	2.3	4.4	13.4	10.4	43.2	15.4
	경산시	19.8	9.6	5.2	1.5	6.2	2.7	47.6	7.4
	군위군	13.8	5.5	2.2	3.0	10.8	9.4	46.7	8.4
	의성군	12.2	6.9	3.8	15.4	7.6	4.7	42.2	7.2
	청송군	3.7	2.2	1.6	16.1	13.4	3.5	44.8	14.6
	영양군	24.6	7.1	2.0	19.2	2.0	2.0	41.3	2.0
	영덕군	8.4	0.2	0.4	6.6	9.4	14.3	40.7	19.9
	청도군	6.0	1.9	0.6	0.4	9.6	1.0	48.9	31.5
	성주군	5.9	2.3	1.3	15.0	13.1	8.2	45.4	8.7
	칠곡군	16.7	6.8	3.8	4.6	8.2	2.4	47.4	10.0
	예천군	15.7	5.9	1.8	3.1	6.7	2.6	48.3	15.9
	봉화군	10.4	4.8	1.8	1.5	6.5	3.3	46.3	25.4
	울진군	16.4	5.7	4.9	13.4	10.5	10.3	33.9	4.9
경상남도	창원시	23.6	6.7	5.1	0.9	5.8	4.2	48.0	5.7
	마산시	22.9	1.5	2.2	1.7	12.3	4.0	48.0	7.3
	진주시	15.8	5.9	6.4	8.0	9.6	5.1	41.4	7.9
	진해시	28.3	8.4	1.5	1.2	5.0	2.2	48.8	4.6
	통영시	18.5	6.4	5.3	7.8	9.3	6.0	40.4	6.3
	사천시	20.7	8.3	2.3	3.6	11.9	8.5	32.1	12.7
	김해시	21.6	4.5	6.8	1.0	6.8	4.9	48.0	6.4
	밀양시	18.7	9.0	5.2	4.6	5.7	3.1	44.3	9.4
	거제시	27.1	8.8	6.8	0.6	3.3	1.0	48.4	3.9
	양산시	15.6	5.9	5.2	4.2	11.3	8.2	40.2	9.4
	의령군	14.0	5.2	2.3	7.9	8.5	4.8	43.4	13.8
	창녕군	6.2	2.7	0.4	1.4	11.0	6.6	49.6	22.2
	고성군	15.4	4.3	2.2	9.0	9.6	6.7	39.7	13.2
	남해군	13.0	5.9	3.7	8.6	8.9	5.4	42.6	11.9
	하동군	15.5	7.1	5.3	11.6	6.1	2.9	41.4	10.1
	산청군	2.5	2.1	2.2	8.7	15.9	7.1	41.2	20.4
	함양군	15.5	4.3	5.5	8.1	13.6	3.6	42.3	7.1
	합천군	22.2	0.2	0.2	6.0	13.1	7.8	24.0	26.5
제주도	제주시	1.6	5.0	0.6	8.1	10.0	8.8	56.9	9.1
	서귀포시	9.1	9.9	6.9	8.7	7.7	3.5	40.9	13.4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은 문제점이 있음.

〈부록 표 14〉 시군구별 교통수단분담율(Expansion 후)

(단위: %)

구 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36.3	2.3	14.6	29.7	14.8	0.9	1.0	0.2
	중구	42.8	4.8	9.8	20.4	19.8	0.8	1.1	0.5
	용산구	37.2	3.8	12.0	36.3	7.1	1.0	2.0	0.8
	성동구	37.6	5.7	14.6	18.6	20.5	1.8	0.9	0.3
	광진구	31.4	24.6	13.1	16.8	10.2	1.0	1.2	1.8
	동대문구	26.4	7.2	17.0	40.0	7.2	1.2	0.3	0.7
	종랑구	48.9	5.9	10.2	20.1	13.4	0.4	0.4	0.7
	성북구	18.8	3.3	19.4	38.6	17.2	1.1	0.9	0.7
	강북구	36.6	16.0	8.6	27.4	9.3	0.4	0.9	0.8
	도봉구	35.4	16.6	13.1	21.6	11.3	0.8	0.6	0.6
	노원구	35.0	21.4	10.6	19.2	12.5	0.9	0.1	0.3
	서대문구	32.8	23.1	6.0	24.7	12.1	0.2	1.1	-
	마포구	36.3	9.0	14.8	22.8	14.7	0.9	0.8	0.7
	양천구	41.5	15.0	13.1	19.0	9.8	0.9	0.3	0.5
	강서구	34.3	2.9	16.8	24.4	20.1	0.7	0.3	0.5
	구로구	30.5	7.7	17.1	32.0	10.7	0.5	0.7	0.7
	관악구	36.8	6.9	13.8	27.7	12.1	0.6	1.3	0.8
	서초구	26.8	21.2	20.1	20.1	9.4	1.3	0.4	0.8
	송파구	24.4	16.1	18.1	35.4	4.7	0.3	0.2	0.8
	강동구	34.7	8.5	19.2	18.5	17.4	0.7	0.5	0.6
부산광역시	중구	50.8	1.0	13.3	28.1	3.7	1.5	1.0	0.6
	서구	33.8	1.4	19.3	35.0	4.8	2.2	2.0	1.6
	동구	40.9	2.8	14.5	25.6	9.2	1.9	3.0	2.1
	영도구	31.9	1.4	18.0	41.7	1.5	2.7	1.4	1.4
	부산진구	25.3	19.2	18.4	33.5	1.3	0.6	0.7	0.9
	동래구	28.3	8.6	23.0	33.6	3.0	1.2	0.6	1.7
	남구	33.7	1.2	23.8	33.4	5.7	1.0	0.5	0.7
	북구	35.3	1.7	22.6	32.3	4.9	0.4	0.3	2.3
	해운대구	31.7	2.5	26.9	34.2	1.0	1.0	1.2	1.6
	사하구	40.0	2.3	21.6	29.0	5.3	0.9	0.5	0.4
	금정구	26.5	3.4	34.3	26.7	2.0	3.5	1.1	2.5
	강서구	21.1	29.5	19.1	22.5	0.3	0.1	3.0	4.5
	연제구	36.3	3.5	22.4	28.0	6.0	1.0	1.0	1.9
	수영구	54.3	2.7	17.5	18.1	5.4	0.8	0.3	0.9
	사상구	27.9	2.6	29.4	31.4	5.7	0.9	0.7	1.5
	기장군	34.7	2.4	30.3	29.3	0.2	1.3	0.2	1.7
대구	중구	38.0	12.7	27.1	16.6	2.4	1.9	0.8	0.5
	동구	28.2	10.6	26.5	27.2	2.6	0.8	1.3	2.9
	서구	57.1	5.4	16.7	18.8	0.5	0.2	1.1	0.2
	남구	39.3	11.1	19.3	25.8	0.9	1.5	0.8	1.3

〈부록 표 14〉 계속

(단위: %)

구 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광역시	북구	39.6	7.7	28.4	20.9	0.3	1.0	0.4	1.7
	수성구	35.3	16.9	23.9	20.6	1.1	0.6	0.6	1.0
	달서구	42.8	2.3	28.0	19.5	4.4	1.0	0.4	1.5
	달성군	27.7	16.2	36.3	15.2	2.4	0.2	0.7	1.3
인천광역시	중구	40.8	5.6	24.9	21.7	4.7	1.3	0.3	0.7
	동구	50.0	3.8	23.8	19.3	2.1	0.4	0.2	0.4
	연수구	33.1	4.6	33.9	21.4	5.2	0.7	0.1	0.9
	남동구	31.1	7.8	23.0	33.7	1.2	0.6	0.8	1.9
	부평구	32.7	4.9	25.3	23.4	12.0	0.6	0.2	0.9
	계양구	43.2	26.4	16.8	7.5	4.9	0.0	0.0	1.1
	서구	18.4	38.6	24.4	17.1	0.3	0.5	0.1	0.6
	동구	33.4	3.0	29.9	31.5	0.2	0.5	0.5	1.0
광주광역시	서구	52.7	2.8	17.6	25.0	0.8	0.4	0.1	0.6
	남구	27.9	5.2	29.0	35.7	0.2	1.0	0.1	0.9
	북구	41.5	6.5	25.5	24.5	0.0	0.5	0.5	0.9
	광산구	35.5	7.0	31.0	21.7	0.7	2.7	0.3	1.1
	동구	29.4	5.4	33.9	23.4	3.6	1.6	0.6	2.1
대전광역시	서구	41.7	5.1	25.3	26.6	0.4	0.5	0.1	0.4
	유성구	32.9	8.5	38.6	16.2	2.6	0.6	0.2	0.4
	대덕구	45.2	8.2	27.9	14.7	0.2	1.2	0.6	2.0
	동구	29.4	5.4	33.9	23.4	3.6	1.6	0.6	2.1
울산광역시	중구	39.6	10.3	25.9	21.5	0.0	1.4	0.6	0.7
	남구	40.9	8.8	30.7	17.5	0.0	1.4	0.3	0.3
	동구	41.8	7.4	19.1	22.1	0.0	0.6	8.5	0.6
	울주군	36.5	11.3	29.9	19.8	0.2	0.2	0.4	1.7
경기도	수원시	34.6	18.0	24.5	18.6	2.9	0.4	0.4	0.6
	성남시	33.2	2.3	23.8	34.2	4.3	1.0	0.6	0.7
	의정부시	26.5	6.0	27.1	29.4	9.9	0.5	0.2	0.5
	안양시	27.2	8.7	32.1	22.2	8.1	0.8	0.3	0.5
	부천시	35.4	19.7	19.3	17.8	5.5	0.8	0.5	1.1
	광명시	27.4	17.9	24.6	23.7	4.7	0.4	0.4	1.0
	평택시	34.3	7.1	31.3	21.8	2.4	1.1	0.8	1.2
	안산시	36.9	7.5	24.4	24.3	4.8	1.0	0.2	0.9
	고양시	32.7	12.2	26.9	20.8	6.4	0.6	0.1	0.4
	과천시	31.5	19.0	23.1	15.8	9.7	0.3	0.1	0.4
	구리시	44.3	21.9	13.4	17.0	1.3	1.3	0.2	0.4
	남양주시	30.2	3.8	30.5	27.8	5.0	0.6	0.4	1.6
	시흥시	33.9	4.8	36.4	20.8	1.8	0.4	0.3	1.5
	군포시	33.3	2.5	29.0	23.0	9.4	1.7	0.2	0.9
	의왕시	37.4	4.6	24.4	29.5	1.9	1.1	0.4	0.7
	하남시	37.8	11.8	18.3	26.9	2.3	0.4	0.7	1.8

〈부록 표 14〉 계속

(단위: %)

구 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경기도	용인시	28.2	5.5	37.0	28.0	0.4	0.3	0.2	0.6
	파주시	27.6	6.8	40.2	21.3	1.4	0.4	0.4	2.0
	이천시	26.1	35.7	23.5	10.6	0.4	1.0	0.6	1.9
	안성시	31.1	6.0	42.8	17.2	0.2	1.0	0.8	0.9
	김포시	33.9	2.1	32.9	28.7	0.3	0.3	0.7	1.1
	광주시	27.1	2.4	42.2	26.8	-	0.3	0.2	0.9
	연천군	22.7	14.9	32.2	15.8	2.2	0.2	2.9	9.1
	양평군	13.2	48.5	26.8	5.3	0.4	-	3.1	2.7
강원도	춘천시	31.7	16.9	29.9	16.8	0.1	3.0	0.8	0.9
	원주시	28.7	20.1	29.5	16.7	0.1	1.4	0.7	2.8
	강릉시	24.5	26.0	32.8	13.2	0.1	2.4	0.4	0.5
	동해시	31.0	5.5	35.6	22.6	0.1	2.5	0.8	2.0
	속초시	34.8	3.2	41.3	16.7	0.0	2.5	0.3	1.1
	삼척시	43.3	8.5	32.6	10.6	-	2.8	1.0	1.2
	홍천군	17.8	52.7	18.3	5.5	-	0.5	0.8	4.4
	횡성군	24.9	16.6	43.2	7.5	0.0	0.2	2.2	5.4
	영월군	23.5	17.2	32.6	13.4	-	2.5	1.9	8.9
	평창군	26.2	27.0	29.9	8.2	0.1	0.4	2.4	5.8
	정선군	30.5	15.4	42.0	6.0	1.2	0.4	1.8	2.6
	철원군	35.5	13.3	39.8	4.7	0.1	0.6	2.4	3.6
	화천군	28.0	16.7	39.0	12.3	0.1	1.2	2.0	0.8
	양구군	34.2	6.8	40.5	10.8	-	0.4	2.7	4.6
	인제군	37.1	13.3	37.3	7.4	0.3	1.4	1.1	2.2
	고성군	26.6	13.3	34.5	14.7	0.2	0.3	2.8	7.5
	양양군	25.0	24.2	31.2	11.3	-	1.0	4.3	3.1
충청북도	청주시	43.1	4.3	26.9	23.8	0.1	1.2	0.2	0.4
	충주시	24.0	8.6	43.9	14.7	0.2	3.4	1.6	3.6
	제천시	33.2	9.8	33.6	16.4	0.1	5.8	0.2	0.8
	청원군	16.6	23.7	34.1	21.4	-	0.7	2.1	1.5
	보은군	23.0	19.3	23.8	11.2	-	0.2	5.4	17.2
	옥천군	34.7	6.5	34.3	12.4	0.1	1.2	6.5	4.4
	영동군	30.7	15.0	30.0	6.3	-	0.4	5.9	11.7
	진천군	27.4	13.6	33.8	17.0	-	0.8	2.6	4.9
	괴산군	34.3	10.5	14.0	27.4	0.0	0.4	3.7	9.6
	음성군	44.6	6.8	29.8	9.7	-	0.5	3.7	5.0
	단양군	45.3	20.3	19.2	8.0	-	0.6	2.0	4.6
	증평군	16.0	22.9	39.8	8.9	0.2	6.2	1.4	4.5
	천안시	26.7	13.4	36.3	19.8	0.7	1.1	0.8	1.2
	공주시	24.4	7.4	47.2	16.7	0.0	0.8	1.7	1.8
	보령시	20.6	27.9	32.1	13.1	0.2	0.4	2.2	3.5

〈부록 표 14〉 계속

(단위: %)

구 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충청남도	아산시	33.0	12.7	34.9	15.8	1.0	0.5	1.1	1.0
	서산시	22.3	8.3	48.5	16.9	0.0	0.5	1.2	2.2
	논산시	25.3	11.2	28.4	25.3	-	1.7	2.5	5.6
	계룡시	31.8	11.3	41.9	13.2	0.6	0.6	0.2	0.3
	금산군	19.9	32.3	19.1	12.5	0.4	0.3	10.1	5.4
	부여군	20.2	28.9	33.8	8.4	0.2	1.2	3.0	4.3
	서천군	42.9	9.0	30.1	9.0	0.0	0.1	4.7	4.1
	청양군	17.1	39.5	17.9	6.4	2.3	4.2	2.3	10.3
	홍성군	2.0	95.7	1.7	-	0.2	-	0.2	0.3
	예산군	7.7	81.6	3.1	3.6	0.9	2.1	1.0	-
	태안군	39.5	2.9	28.7	11.9	-	0.4	4.8	11.8
전라북도	당진군	28.1	6.3	47.1	14.1	0.1	0.7	1.3	2.4
	전주시	31.5	5.7	28.6	28.5	0.0	2.0	1.0	2.7
	군산시	32.5	9.3	37.6	15.3	0.0	3.7	0.4	1.1
	익산시	39.8	4.4	36.1	15.2	0.0	0.6	0.8	3.1
	정읍시	30.5	12.2	37.8	12.4	0.1	2.3	1.0	3.6
	남원시	34.3	16.2	33.9	5.9	0.0	3.4	2.1	4.1
	김제시	23.6	29.9	23.0	11.5	-	0.6	4.8	6.6
	완주군	22.9	17.9	27.4	19.5	-	-	2.4	9.9
	진안군	26.5	23.1	25.9	7.5	-	0.2	3.9	13.0
	임실군	24.6	25.9	27.0	8.1	-	0.5	4.7	9.1
	순창군	24.8	17.5	30.1	12.0	0.1	0.1	4.8	10.6
	고창군	30.3	18.6	23.2	9.7	0.0	0.5	3.1	14.5
	부안군	23.1	25.6	23.4	13.3	-	1.1	3.5	9.9
전라남도	목포시	30.8	3.4	28.1	32.0	0.1	3.4	0.5	1.8
	여수시	39.3	1.6	29.2	26.1	0.0	1.8	0.5	1.5
	순천시	36.5	15.6	24.0	17.3	0.1	2.8	1.5	2.2
	나주시	51.4	10.7	9.7	22.7	-	0.5	1.9	3.0
	광양시	42.0	9.0	30.9	13.8	0.0	1.0	0.9	2.2
	곡성군	24.3	56.8	11.6	4.1	0.0	0.1	1.5	1.6
	구례군	21.5	21.6	27.8	14.6	0.1	1.5	4.1	8.8
	보성군	53.1	12.9	14.8	7.1	0.3	1.0	3.8	7.1
	화순군	27.3	23.7	17.9	19.2	0.2	0.6	2.2	8.8
	장흥군	38.1	19.4	20.0	4.8	-	0.7	5.0	11.9
	강진군	35.8	9.5	18.5	8.7	-	1.1	7.4	18.9
	해남군	25.9	4.9	25.5	7.8	-	0.4	6.3	29.3
	무안군	33.7	2.6	31.0	13.8	-	0.5	6.1	12.3
	함평군	20.9	8.8	27.2	19.4	-	0.5	8.4	14.7
	영광군	36.9	16.7	16.9	18.4	0.0	1.1	1.9	8.1
	완도군	32.2	6.3	32.6	11.6	-	2.2	2.6	12.4

〈부록 표 14〉 계속

(단위: %)

구 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오토바이	기타
경상북도	포항시	33.8	9.0	32.3	20.5	0.0	1.7	1.2	1.5
	경주시	30.0	20.4	26.9	16.4	0.1	0.9	1.9	3.4
	김천시	27.2	22.7	29.5	16.4	0.6	1.0	1.5	1.2
	안동시	31.9	13.9	27.2	16.7	0.1	3.2	1.8	5.2
	구미시	37.4	3.9	37.1	18.4	0.4	0.7	0.8	1.2
	영주시	16.1	19.6	50.6	7.9	0.1	0.3	0.7	4.7
	영천시	33.9	4.2	35.7	17.9	0.1	0.8	2.1	5.3
	상주시	20.2	46.1	17.1	5.9	0.0	0.6	4.3	5.8
	경산시	24.4	7.7	38.7	25.5	0.5	0.5	0.8	2.1
	군위군	28.5	18.7	21.5	16.5	-	0.3	6.7	7.7
	의성군	28.8	13.1	36.2	2.3	-	1.4	7.0	11.3
	청송군	36.4	8.0	23.1	8.4	-	0.5	6.7	16.9
	영양군	25.6	11.7	34.4	13.4	0.1	0.2	3.4	11.1
	영덕군	23.4	27.1	33.5	4.4	-	-	4.3	7.4
	청도군	18.8	12.0	18.2	11.3	0.4	0.1	8.0	31.1
	성주군	34.3	20.1	21.4	8.3	0.2	0.2	6.2	9.4
	칠곡군	29.3	10.3	35.2	16.9	1.1	0.7	2.9	3.7
	예천군	45.6	11.0	26.7	5.9	-	1.4	5.3	4.1
	봉화군	34.4	9.9	22.8	11.3	-	0.5	2.6	18.5
	울진군	32.5	24.2	26.5	10.5	-	1.2	2.5	2.6
경상남도	창원시	43.9	11.6	19.3	23.1	0.0	0.9	0.7	0.4
	마산시	38.8	5.7	30.6	19.3	0.0	2.5	1.1	1.9
	진주시	33.7	16.0	28.0	16.5	0.0	1.1	1.0	3.7
	진해시	29.5	6.7	38.5	23.2	0.1	0.5	0.9	0.5
	통영시	40.4	3.7	21.9	28.8	-	2.0	0.9	2.3
	사천시	32.1	22.7	24.1	14.9	0.0	1.9	2.0	2.2
	김해시	31.6	9.5	40.0	15.8	0.1	1.1	0.5	1.4
	밀양시	21.6	11.7	38.1	13.8	1.5	1.5	4.4	7.4
	거제시	30.4	6.8	32.9	22.3	-	0.8	5.5	1.1
	양산시	42.2	3.8	28.2	22.1	0.4	1.0	0.3	1.9
	의령군	35.5	17.2	26.7	9.5	0.1	0.4	5.4	5.2
	창녕군	32.6	23.9	17.2	8.7	-	0.4	7.7	9.4
	고성군	28.7	21.7	30.6	11.3	0.0	0.4	3.2	4.0
	남해군	36.6	12.3	25.5	17.7	-	0.6	1.9	5.3
	하동군	39.5	6.0	32.1	6.8	0.1	0.6	2.1	12.8
	산청군	35.2	15.7	17.2	12.1	-	1.4	5.5	12.9
	함양군	45.8	13.2	22.1	6.1	0.0	0.9	6.3	5.5
	합천군	27.4	13.9	35.4	8.8	0.1	0.8	8.7	4.9
제주도	제주시	70.3	16.6	11.3	1.9		-	-	-
	서귀포시	19.7	15.2	36.4	8.4	0.1	0.8	1.0	18.3

주: 제주도의 경우 표본율이 너무 낮아 전수화 과정 상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수화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음.

〈부록 표 15〉 시군구별 통행목적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단위: %)

구 분		통근	통학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통근·통학
서 예 특 제 시	종로구	2.0	2.7	8.0	4.8	2.6	2.0	2.1	1.6	2.2
	중구	2.0	1.9	9.3	27.3	24.9	8.4	4.9	3.8	2.0
	용산구	1.5	4.0	4.5	4.2	9.4	3.1	3.4	1.8	1.9
	성동구	3.5	4.7	5.9	8.8	14.5	11.5	6.3	5.3	3.8
	광진구	18.9	32.0	39.4	13.1	33.0	39.0	25.0	24.5	27.3
	동대문구	3.5	5.5	12.6	9.7	16.3	7.1	7.1	8.6	3.8
	종각구	3.7	4.1	10.6	13.5	10.9	5.5	6.1	5.2	3.8
	성북구	2.8	3.2	6.4	9.8	6.1	7.1	3.3	2.5	2.8
	강북구	9.5	3.7	9.2	19.8	53.1	14.5	19.6	16.3	8.9
	도봉구	10.5	9.3	24.5	11.7	32.1	23.5	16.3	17.9	10.1
	노원구	8.8	11.7	36.7	19.0	50.4	26.7	21.9	13.7	9.8
	서대문구	4.2	5.0	15.4	13.8	78.9	21.7	23.8	13.3	4.3
	마포구	5.3	7.0	12.7	14.5	19.4	13.3	9.9	8.7	5.6
	양천구	6.2	8.8	23.9	4.0	23.4	14.5	15.4	10.4	7.0
	강서구	2.3	2.3	6.7	6.9	6.3	4.8	3.1	2.8	2.3
	구로구	4.4	4.9	12.8	7.0	15.2	9.4	5.9	6.5	4.5
	관악구	4.2	4.0	9.2	7.1	22.9	10.3	7.0	8.1	4.1
	서초구	14.1	15.4	26.9	20.2	43.3	24.6	15.7	17.7	14.5
	송파구	13.3	25.6	17.9	44.9	28.3	27.2	9.2	7.1	14.3
	강동구	6.4	7.5	12.8	19.0	22.7	14.0	9.6	13.3	6.7
부 산 관 외 시	중구	1.0	0.5	1.9	1.4	2.6	1.4	1.0	0.6	0.9
	서구	1.2	0.9	1.8	3.7	3.1	1.2	1.3	1.5	1.1
	동구	1.9	0.5	3.8	11.9	4.9	7.4	2.8	2.9	1.6
	영도구	1.6	0.4	0.9	4.2	2.5	0.8	1.5	-	1.3
	부산진구	9.5	4.6	42.1	75.7	60.7	28.8	18.8	32.3	8.6
	동래구	4.4	4.0	6.9	17.2	30.4	12.6	8.4	6.6	4.3
	남구	0.9	1.0	0.9	20.0	4.7	3.1	1.3	2.1	0.9
	북구	1.4	0.7	4.5	8.0	6.9	3.1	1.9	2.7	1.2
	해운대구	1.5	0.5	1.8	10.3	16.8	5.8	2.6	4.3	1.2
	사하구	1.8	2.0	9.1	16.7	11.7	8.0	1.7	0.8	1.9
	금정구	0.7	2.5	13.8	0.7	35.0	10.5	3.6	-	0.9
	강서구	32.8	8.9	12.0	50.0	42.4	45.8	34.6	32.8	29.3
	연제구	3.6	1.9	1.9	7.5	8.6	3.5	3.7	2.1	3.2
	수영구	1.8	4.2	2.5	0.4	6.4	2.2	3.1	2.2	2.4
	사상구	2.4	0.5	2.2	8.3	16.0	-	3.3	5.9	1.9
	기장군	1.3	0.8	3.4	2.9	4.6	2.5	2.3	4.3	1.2
대 구	중구	7.4	7.7	13.0	20.5	27.9	22.3	12.0	11.2	7.4
	동구	6.6	5.7	17.3	13.4	35.7	17.4	11.5	12.5	6.3
	서구	4.2	4.2	8.2	11.4	9.2	2.9	5.3	2.3	4.2
	남구	10.9	7.3	11.7	10.5	27.8	7.6	13.6	10.3	10.4

〈부록 표 15〉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통학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통근·통학
광역시	북구	5.0	3.5	14.4	7.3	18.3	15.3	8.5	11.3	4.5
	수성구	11.9	9.3	22.8	15.8	32.4	27.8	16.4	22.9	11.0
	달서구	3.1	1.2	4.2	-	6.8	3.2	2.6	1.6	2.4
	달성군	4.5	8.1	8.9	24.5	53.9	59.3	5.7	63.8	5.6
인천광역시	중구	19.3	3.5	2.5	3.4	13.5	9.2	46.2	2.4	2.9
	동구	64.5	3.9	0.8	0.8	1.5	0.4	20.4	7.7	4.0
	연수구	24.9	10.9	5.4	0.2	3.8	1.7	49.1	4.1	2.7
	남동구	28.6	2.5	1.2	1.1	9.4	5.9	44.8	6.4	5.5
	부평구	27.2	10.6	3.1	0.6	2.9	0.8	49.4	5.4	4.0
	계양구	17.7	27.3	13.8	3.5	19.0	4.2	10.3	4.2	12.1
	서구	14.8	3.0	2.8	6.4	22.1	7.3	41.3	2.3	11.4
광주광역시	동구	1.6	3.8	3.2	5.0	5.6	0.7	2.7	3.1	2.0
	서구	3.5	2.0	2.9	5.8	4.9	2.2	3.1	2.2	3.1
	남구	2.1	1.9	14.3	8.8	12.1	7.0	10.5	17.0	2.0
	북구	6.2	4.8	9.6	11.4	20.6	5.4	8.7	6.5	5.9
	광산구	4.2	3.8	10.6	22.5	10.5	9.2	7.1	6.5	4.1
대전광역시	동구	3.7	5.1	5.9	8.7	13.0	9.0	5.1	4.8	4.1
	서구	3.0	2.5	7.8	6.8	15.4	7.0	5.0	2.0	2.9
	유성구	6.9	6.3	21.7	13.0	15.1	9.1	9.2	7.7	6.8
	대덕구	7.2	7.2	9.5	3.1	8.6	9.0	7.9	5.7	7.2
울산광역시	중구	8.5	8.4	10.3	14.1	17.3	6.5	10.2	7.2	8.5
	남구	8.6	3.5	10.6	20.6	19.3	5.2	9.1	4.2	7.1
	동구	11.2	1.2	6.8	10.8	11.5	6.5	6.8	5.9	8.0
	울주군	6.5	3.6	12.7	27.3	25.8	15.7	11.7	11.5	5.6
경기도	수원시	14.1	12.9	32.1	44.0	42.4	33.8	18.3	16.3	13.7
	성남시	1.5	1.4	8.7	2.1	7.7	4.3	2.4	1.7	1.5
	의정부시	2.4	7.8	13.0	3.4	11.9	7.0	6.8	7.3	4.3
	안양시	6.1	7.1	13.9	10.8	14.8	12.2	8.7	8.2	6.3
	부천시	10.9	17.7	28.0	11.2	35.9	24.4	18.3	18.6	12.2
	광명시	5.2	4.5	29.4	59.6	80.3	33.2	17.7	33.1	5.1
	평택시	4.8	5.3	12.8	5.3	18.0	7.5	7.9	10.7	4.9
	안산시	6.1	3.4	10.0	9.6	19.6	18.6	7.9	11.2	5.2
	고양시	5.4	11.4	26.4	8.6	17.3	12.3	10.7	9.8	7.1
	과천시	7.2	10.6	36.0	24.3	28.5	33.1	18.9	18.9	8.5
	구리시	16.3	13.8	22.1	17.2	32.2	14.4	23.6	14.9	15.7
	남양주시	1.8	1.7	5.7	1.9	12.3	4.2	3.7	5.1	1.8
	시흥시	3.9	2.0	9.8	7.5	17.6	11.2	4.8	8.6	3.3
	군포시	1.6	0.8	5.9	-	10.9	6.2	2.7	4.2	1.4
	의왕시	3.0	1.3	4.4	0.8	12.0	5.1	3.4	4.4	2.1
	하남시	8.4	11.3	29.4	27.6	58.3	20.8	6.8	23.8	8.9

〈부록 표 15〉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통학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통근·통학
경기도	용인시	2.8	2.8	7.5	4.6	16.1	3.6	5.9	4.9	2.8
	파주시	3.1	2.6	6.7	2.6	19.5	12.0	7.4	8.8	3.0
	이천시	31.2	12.9	27.8	50.3	59.3	37.9	21.4	24.6	27.6
	안성시	2.2	5.2	6.6	4.1	19.5	6.6	6.0	6.0	3.2
	김포시	1.8	0.8	1.9	5.1	4.7	3.5	2.0	7.2	1.5
	광주시	1.2	0.9	4.1	-	12.1	3.2	2.5	11.0	1.1
	연천군	14.3	10.4	14.7	16.0	26.3	25.9	16.4	11.1	13.6
강원도	양평군	16.4	21.1	42.9	60.7	65.0	50.0	48.1	57.4	17.4
	춘천시	11.7	10.7	13.3	16.3	40.4	22.4	20.4	18.0	11.4
	원주시	13.6	20.0	20.4	20.8	34.5	24.7	17.6	13.9	15.5
	강릉시	16.6	16.4	12.1	25.4	61.9	23.5	27.9	17.3	16.5
	동해시	5.0	5.4	4.6	2.8	11.6	3.8	5.8	3.8	5.1
	속초시	2.9	3.6	2.3	2.7	7.8	2.4	3.3	4.6	3.0
	삼척시	5.4	5.8	11.1	8.1	39.6	31.0	7.6	12.8	5.5
	홍천군	30.5	28.3	28.1	39.4	79.8	68.0	46.3	53.4	29.8
	횡성군	6.7	12.8	11.1	12.9	37.1	18.8	18.4	19.7	8.2
	영월군	2.1	15.4	3.2	6.4	34.0	34.9	18.7	37.5	4.3
	평창군	24.5	21.6	38.5	28.2	44.0	28.7	26.9	16.2	23.6
	정선군	7.7	7.9	56.0	8.5	18.1	27.0	11.9	10.0	7.7
	철원군	7.0	23.1	21.0	9.4	17.8	18.9	11.5	8.8	11.8
	화천군	16.3	40.0	-	40.0	33.3	13.3	13.0	2.4	16.6
	양구군	4.6	5.9	9.4	8.1	8.0	7.6	6.8	7.0	5.2
	인제군	2.6	7.2	21.6	10.1	41.6	36.2	10.5	7.5	4.3
충청남도	고성군	6.3	6.9	9.1	15.3	41.8	21.7	16.0	22.2	6.6
	양양군	12.0	12.2	21.3	43.4	28.9	14.6	24.8	16.3	12.0
	청주시	2.8	4.4	7.0	4.6	8.0	4.9	4.2	3.8	3.3
	충주시	5.8	10.5	11.5	6.4	18.6	11.5	9.1	11.5	6.5
	제천시	3.7	8.1	12.5	-	22.2	10.2	7.9	3.4	4.5
	청원군	14.7	20.0	41.9	10.0	51.3	47.7	25.9	28.7	16.4
	보은군	11.5	23.6	7.7	10.5	34.6	23.9	19.5	21.9	18.0
	옥천군	2.5	4.6	4.0	-	8.9	8.7	7.7	13.6	3.1
	영동군	7.5	26.2	40.0	4.3	40.0	18.8	13.6	17.6	10.0
	진천군	3.2	11.9	10.3	7.1	56.0	32.9	13.6	21.9	7.2
	괴산군	9.1	13.0	-	13.8	11.3	2.9	8.1	6.5	10.8
	음성군	4.5	5.3	2.6	10.3	13.2	21.9	6.8	8.3	4.7
충청북도	단양군	9.7	9.0	30.4	17.1	37.8	18.5	20.5	22.2	9.5
	증평군	16.1	10.8	35.3	10.9	37.5	53.5	26.2	14.3	14.5
	천안시	6.2	14.4	19.4	11.3	35.4	23.4	12.9	15.4	8.4
	공주시	6.0	11.3	4.2	4.7	17.4	8.5	7.1	7.9	6.6
충청남도	보령시	16.9	20.5	25.0	28.1	47.9	34.7	28.4	30.8	17.9

〈부록 표 15〉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통학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통근·통학
충청남도	아산시	1.3	7.8	17.2	26.0	35.5	14.5	11.7	15.6	2.9
	서산시	5.0	10.7	13.6	10.6	27.9	20.0	7.8	8.6	6.4
	논산시	2.9	50.0	12.0	16.2	35.7	13.0	7.6	12.9	4.5
	계룡시	5.5	11.4	20.7	15.8	15.8	6.0	9.6	5.8	6.5
	금산군	6.6	15.9	31.4	7.9	47.6	21.8	27.6	28.8	8.8
	부여군	17.9	36.4	38.5	18.2	37.3	40.7	22.1	15.9	20.8
	서천군	4.2	6.4	15.4	25.0	11.3	44.1	8.4	11.7	4.6
	청양군	56.7	100.0	23.1	61.1	42.4	35.7	15.8	17.1	61.8
	홍성군	92.3	92.0	100.0	97.3	96.3	87.2	98.8	96.6	92.2
	예산군	53.3	91.7	40.0	93.8	84.7	96.3	92.7	95.0	70.4
	태안군	3.5	3.4	1.3	2.4	4.3	2.6	3.0	1.9	3.5
	당진군	2.1	3.0	4.8	10.5	23.7	24.5	4.8	14.9	2.4
전라북도	전주시	3.0	5.5	6.6	2.6	9.4	5.6	6.4	9.9	3.7
	군산시	6.3	5.0	9.7	18.1	21.1	16.0	9.7	10.6	5.9
	익산시	2.1	5.5	4.7	7.7	14.5	5.9	4.6	6.3	3.7
	정읍시	8.9	11.2	5.6	10.6	47.1	19.4	12.6	18.6	9.6
	남원시	11.0	16.1	14.1	13.3	23.0	18.4	16.9	14.4	12.8
	김제시	13.5	25.0	21.1	25.7	44.1	25.0	27.1	45.6	15.7
	완주군	1.4	5.6	-	-	29.1	33.3	38.5	56.0	3.6
	진안군	11.9	19.6	19.2	23.8	43.3	27.9	21.7	18.9	14.3
	임실군	14.0	14.6	38.0	12.9	48.5	33.3	26.4	30.6	14.2
	순창군	12.6	18.2	16.4	12.1	33.5	20.7	17.6	16.0	14.1
	고창군	7.8	25.7	31.3	14.7	35.4	12.0	17.4	29.2	11.3
	부안군	18.9	22.7	29.6	22.0	48.1	35.9	22.2	13.4	19.7
전라남도	목포시	3.1	3.3	3.7	5.9	5.0	7.5	3.3	2.1	3.2
	여수시	1.1	0.1	1.0	4.6	4.4	1.5	1.9	1.4	0.9
	순천시	4.7	7.4	13.4	18.9	34.2	11.2	15.4	10.5	5.2
	나주시	3.3	3.7	9.3	18.3	9.6	7.9	11.3	7.4	3.5
	광양시	6.1	8.6	20.6	8.7	14.3	12.5	10.2	10.3	7.0
	곡성군	22.2	50.0	65.9	54.2	86.9	61.0	46.6	67.7	26.3
	구례군	6.0	22.7	14.3	25.0	76.3	66.7	17.8	19.7	13.9
	보성군	7.0	15.5	32.9	12.7	10.9	13.5	14.5	10.2	10.9
	화순군	11.5	41.6	24.3	22.7	36.6	23.8	28.2	33.8	21.8
	장흥군	9.9	21.7	28.8	19.9	27.4	16.2	19.8	25.2	13.8
	강진군	6.3	9.6	14.9	8.4	13.4	4.2	10.1	10.7	7.7
	해남군	1.9	5.8	5.4	1.6	5.3	2.4	5.5	6.0	3.8
	무안군	1.5	1.4	2.6	2.3	8.1	1.7	2.7	4.3	1.4
	함평군	7.5	5.6	9.1	10.4	16.8	3.4	10.2	11.7	6.5
	영광군	15.0	12.2	13.2	10.4	31.8	16.5	19.5	16.5	14.4
	완도군	4.0	11.7	20.3	2.8	12.9	7.2	5.2	5.3	6.2

〈부록 표 15〉 계속

(단위: %)

구 분		통근	통학	학원	업무	여가	쇼핑	귀가	기타	통근·통학
경상북도	포항시	6.8	6.8	7.0	18.0	20.4	21.9	10.5	14.8	6.8
	경주시	13.6	16.7	24.6	19.5	35.7	27.2	22.7	25.6	14.6
	김천시	9.3	4.3	25.7	24.4	48.2	35.4	17.6	19.2	7.9
	안동시	4.7	3.4	9.5	14.3	27.3	21.9	15.5	18.4	4.3
	구미시	3.1	3.2	4.9	11.2	11.8	6.6	4.1	10.7	3.1
	영주시	9.9	22.2	33.3	25.0	18.5	25.0	15.4	11.8	10.8
	영천시	3.1	1.3	2.2	1.6	9.4	5.2	5.1	8.6	2.5
	상주시	35.0	56.2	63.1	36.9	44.6	51.6	44.2	40.7	40.3
	경산시	4.0	6.4	11.6	7.4	18.3	13.7	8.0	7.8	4.8
	군위군	11.3	21.2	5.4	13.3	41.1	16.6	20.9	17.6	14.1
	의성군	6.0	24.7	22.1	11.6	15.7	17.2	12.6	9.1	12.8
	청송군	4.9	4.6	7.8	7.3	10.4	2.2	7.5	8.6	4.8
	영양군	3.0	13.8	37.5	9.0	37.5	-	5.4	-	5.4
	영덕군	15.5	25.0	12.5	18.9	45.5	11.9	32.3	34.9	15.7
	청도군	8.8	11.4	13.6	7.1	29.3	5.6	11.1	5.7	9.4
	성주군	12.4	11.4	26.8	16.6	20.9	28.1	19.9	16.9	12.1
	칠곡군	2.2	4.5	5.9	24.3	24.6	8.2	12.1	22.3	2.8
	예천군	7.6	11.2	17.4	18.8	19.7	20.0	10.4	7.8	8.6
	봉화군	6.6	15.2	13.9	22.2	16.9	11.9	9.8	8.3	9.3
	울진군	11.9	26.3	38.5	9.5	54.3	32.1	25.1	20.0	15.6
경상남도	창원시	11.5	9.6	16.3	9.7	12.8	8.2	10.6	6.5	11.1
	마산시	4.3	4.8	6.3	4.2	5.5	7.2	4.8	3.6	4.3
	진주시	10.0	14.2	18.8	17.2	32.2	24.9	17.4	20.2	11.1
	진해시	4.6	3.1	11.0	10.4	28.5	24.8	9.7	22.6	4.3
	통영시	2.1	1.1	3.8	3.3	11.5	2.7	3.9	1.4	1.8
	사천시	16.6	25.6	35.6	28.0	32.3	31.8	20.5	29.8	19.2
	김해시	3.3	6.7	12.0	15.3	25.4	13.1	9.1	9.9	3.9
	밀양시	14.2	5.9	2.6	18.5	32.5	12.8	14.3	12.9	11.5
	거제시	10.6	1.0	2.5	-	4.2	3.3	6.9	3.3	8.3
	양산시	2.0	3.9	3.4	1.8	4.3	6.0	4.0	4.0	2.5
	의령군	5.7	18.1	17.2	18.4	23.0	20.3	15.7	15.6	9.0
	창녕군	7.7	19.5	48.0	16.8	37.6	18.8	25.9	28.3	11.2
	고성군	8.2	22.2	26.3	22.4	38.3	27.6	19.6	29.8	11.2
	남해군	10.9	6.7	8.9	10.8	30.1	14.8	14.2	10.6	9.6
	하동군	3.0	2.8	4.1	1.9	12.2	11.3	5.9	5.0	2.9
	산청군	12.3	16.2	15.8	8.2	15.3	17.1	16.5	20.4	14.1
	함양군	8.3	27.9	26.1	14.6	17.0	21.0	11.6	12.1	12.5
	합천군	5.8	50.0	-	53.6	23.8	20.8	5.8	18.7	6.3
제주도	제주시	60.0	-	-	3.8	81.3	-	11.0	10.3	14.3
	서귀포시	4.3	15.8	18.9	3.0	44.1	7.4	16.8	8.7	10.3

주: 제주도의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선별적으로 코딩작업을 한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유효 표본율(제주시 0.03%, 서귀포시 0.43%)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부록 2 자전거 보유 및 이용실태조사 설문지

자전거 보급 및 이용 현황 조사

분류번호(이 칸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자전거 보유 및 이용 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자전거DB구축을 위해 자전거 보급 및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는 단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2009년 월 XX시청 담당자 : 홍길동 실장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XXX-XXXX**
AM 08:00 ~ PM 10:00

• 작성시 유의사항 필독 후 작성요망

면접 날짜 2009 년 ____월 ____일
면접 시간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 총 면접 시간 ____분 소요)

성 명 (가구원 중 연락가능한분) :	
전화번호 :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를 적어주세요)
주 소 :	

조사지역	조사원
	서명:

1차검수	2차검수	입력	3차검수
서명:	서명:	서명:	서명:

A. 가구현황조사(가구원 중 대표자 한분이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조사내용은 가구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A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본인포함) _____명

가구원 중 미취학아동(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은 몇 명입니까? _____명

A2. 귀댁에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을 종류별로 적어 주십시오. (□ 없음)

□ ① 7인이하 승용차 _____대 □ ② 9인이상 승합차 _____대 □ ③ 화물차 _____대
□ ④ 택시 _____대 □ ⑤ 오토바이 _____대 □ ⑥ 기타() _____대

A3. 귀댁의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빌라) □ ③ 다세대/다가구주택
주택 종류는? □ ④ 단독주택 □ ⑤ 오피스텔 □ ⑥ 기타 ()

아래 조사내용은 가구의 자전거 보유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A4. 귀댁에서 소유하고 계신 자전거는 총 몇 대입니까? (유아용 세발자전거는 제외하고)

□ ① 총 자전거 대수 □ ② 생활자전거 □ ③ 스포츠 및 레저용 □ ④ 아동용 □ ⑤ 기타
_____대 _____대 _____대 _____대 _____대

A5. 현재 귀댁에서 소유하고 계신 자전거는 구입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이내 □ ② 2-3년 이내 □ ③ 4-6년 이내 □ ④ 6-10년 이내 □ ⑤ 10년 이상
_____대 _____대 _____대 _____대 _____대

A6. 현재 귀댁에서 소유하고 계신 자전거의 구입가격은? (유아용자전거, 중고자전거 구입한 경우는 제외)

□ ① 무상구입 □ ② 10만원 이하 □ ③ 10-20만원 □ ④ 20-50만원 □ ⑤ 50-100만원 □ ⑥ 100만원 이상
_____대 _____대 _____대 _____대 _____대 _____대

(가구원 개인별로 개별 작성해 주십시오)

B1. 귀하께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귀하의 자전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 이하는 B1 문항에서 ①번을 답한 사람만 작성해 주십시오

☞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신 분은 조사표 C 를 작성해 주십시오

C. 개인정보 일일 자전거 통행 특성 조사 (가구원 개인정보를 개별 작성해 주십시오)

통행일자 : 2009년 ()월 ()일 ()요일		작성가구원 번호 : ①	
1) 인물을 아십니까? ☐ ① 예 ☐ ② 전 ☐ ③ 아니오		세대주와의 관계 : ☐ ① 본인 ☐ ② 배우자 ☐ ③ 자녀 ☐ ④ 부모 ☐ ⑤ 기타	
2) 통행목적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및 업무유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들 사러가기(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기(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3)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통근용/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4) 도차유무는? (자신이 이동한 경우만) 시간 _____ 구 _____ 통행 _____		5) 도차유무는? (자신이 이동한 경우만) 시간 _____ 구 _____ 통행 _____	

1) 통행목적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및 업무유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들 사러가기(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기(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통근용/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3) 도차유무는?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여행 ☐ ⑤ 공휴일/연휴, 산, 강등지 ☐ ⑥ 장애인/장애인(정확) ☐ ⑦ 기타 도차유무 ☐ 오전 _____ 시 _____ 분 ☐ 오후 _____ 시 _____ 분	4) 도차유무는? (자신이 이동한 경우만) 시간 _____ 구 _____ 통행 _____
1) 통행목적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및 업무유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들 사러가기(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기(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통근용/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3) 도차유무는?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여행 ☐ ⑤ 공휴일/연휴, 산, 강등지 ☐ ⑥ 장애인/장애인(정확) ☐ ⑦ 기타 도차유무 ☐ 오전 _____ 시 _____ 분 ☐ 오후 _____ 시 _____ 분	4) 도차유무는? (자신이 이동한 경우만) 시간 _____ 구 _____ 통행 _____
1) 통행목적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및 업무유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들 사러가기(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기(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통근용/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3) 도차유무는?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여행 ☐ ⑤ 공휴일/연휴, 산, 강등지 ☐ ⑥ 장애인/장애인(정확) ☐ ⑦ 기타 도차유무 ☐ 오전 _____ 시 _____ 분 ☐ 오후 _____ 시 _____ 분	4) 도차유무는? (자신이 이동한 경우만) 시간 _____ 구 _____ 통행 _____

■ 조사표작성시 참고 및 유의사항

- ☞ 교통수단별 이상 모든 가구원 각각 작성하며, 동일한 날짜의 통행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 개인정보 하부 통행의 기록내용을 기록합니다.
- ☞ 조사당일 하루 동안(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통행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 ☞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통행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도보)이동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집 근처 슈퍼마켓, 화산 근처 식당, 갈아타는 곳의 정류장만 이동 등)

단, 등하교, 출퇴근, 학원 통행 등의 경우 걸어서 이동하였다도 통행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 열악운차량(택시, 버스, 유람선 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출근 및 퇴근에 해당하는 통행

(“집에서 차고지까지”, “차고지로부터 집까지” 등)만 기록하시고 승인의 의사에 따라 이동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개인목적에 의한 통행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여가/병원/은행 등의 경우 여가/병원/은행, 주가 기입에 주십시오.

여유공간양식	거주권 번호 ()	※ 해당거주권 번호 기재	여유공간양식	거주권 번호 ()	※ 해당거주권 번호 기재
임대 주택 유형 1) 동거주택인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외 업무용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을 사려고(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려고(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아파트 주택 유형 1) 동거주택인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외 업무용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을 사려고(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려고(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임대 주택 유형 1) 동거주택인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외 업무용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을 사려고(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려고(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거주권 번호 () 1) 동거주택인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외 업무용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을 사려고(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려고(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여유공간양식 1) 동거주택인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외 업무용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을 사려고(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려고(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거주권 번호 () 1) 동거주택인가? ☐ ① 출근 ☐ ② 등교 ☐ ③ 학원수업(배우기 위해) ☐ ④ 업무 외 업무용 복귀 ☐ ⑤ 여가/오락/친교 ☐ ⑥ 물건을 사려고(쇼핑) ☐ ⑦ 집으로 돌아가려고(귀가) ☐ ⑧ 기타(병원, 은행 등 개인용무)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버스(통근/통학/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버스(통근/통학/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버스(통근/통학/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버스(통근/통학/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버스(통근/통학/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2)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까? ☐ ① 도보(걸어서) ☐ ② 자전거 ☐ ③ 승용차(승합차) ☐ ④ 버스/시내/외곽버스(통근/통학/전세 등) ☐ ⑤ 철도 ☐ ⑥ 택시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화물차 등)
3) 도착하신 곳?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병원 ☐ ⑤ 공영공원, 산, 강(등지) ☐ ⑥ 레저/스포츠/여가/주거시설 ☐ ⑦ 기타 도착지 ☐ 오전 ☐ 오후 시 ____ 분	3) 도착하신 곳?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병원 ☐ ⑤ 공영공원, 산, 강(등지) ☐ ⑥ 레저/스포츠/여가/주거시설 ☐ ⑦ 기타 도착지 ☐ 오전 ☐ 오후 시 ____ 분	3) 도착하신 곳?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병원 ☐ ⑤ 공영공원, 산, 강(등지) ☐ ⑥ 레저/스포츠/여가/주거시설 ☐ ⑦ 기타 도착지 ☐ 오전 ☐ 오후 시 ____ 분	3) 도착하신 곳?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병원 ☐ ⑤ 공영공원, 산, 강(등지) ☐ ⑥ 레저/스포츠/여가/주거시설 ☐ ⑦ 기타 도착지 ☐ 오전 ☐ 오후 시 ____ 분	3) 도착하신 곳?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병원 ☐ ⑤ 공영공원, 산, 강(등지) ☐ ⑥ 레저/스포츠/여가/주거시설 ☐ ⑦ 기타 도착지 ☐ 오전 ☐ 오후 시 ____ 분	3) 도착하신 곳? ☐ ① 집 ☐ ② 직장 ☐ ③ 학교 ☐ ④ 병원 ☐ ⑤ 공영공원, 산, 강(등지) ☐ ⑥ 레저/스포츠/여가/주거시설 ☐ ⑦ 기타 도착지 ☐ 오전 ☐ 오후 시 ____ 분
4) 도착하셨는지? (시간이 아예 없었는지?) ____ 시(간) ____ 구 ____ 동(읍/면)	4) 도착하셨는지? (시간이 아예 없었는지?) ____ 시(간) ____ 구 ____ 동(읍/면)	4) 도착하셨는지? (시간이 아예 없었는지?) ____ 시(간) ____ 구 ____ 동(읍/면)	4) 도착하셨는지? (시간이 아예 없었는지?) ____ 시(간) ____ 구 ____ 동(읍/면)	4) 도착하셨는지? (시간이 아예 없었는지?) ____ 시(간) ____ 구 ____ 동(읍/면)	4) 도착하셨는지? (시간이 아예 없었는지?) ____ 시(간) ____ 구 ____ 동(읍/면)